日政下 朝鮮의 租稅政策

1998. 3

車 軿 權

kipf 한국조세연구원

序　　言

우리나라의 租稅政策은 많은 변화를 겪으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조세정책이 經濟政策의 일환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국경제가 직면한 새로운 경제적 상황에서 조세정책이 능동적인 정책수단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과거의 조세정책에 대한 면밀한 평가가 요구된다.

本院에서는 광복 50주년을 기념하는 사업으로 『韓國 租稅政策 50年』을 통하여 우리나라 조세정책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각 시대의 조세정책을 평가하는 작업을 집대성하였다. 그러나 해방 이후 우리나라의 조세제도는 日帝下의 租稅制度를 근간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일제하의 조세구조를 파악하는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해방 이전 일제하에서의 조세정책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 및 문헌이 매우 부족하며,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본 보고서는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로 계시는 車耕權 교수께서 집필하였다. 일제하의 조세정책을 연구하는 데 관련 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일제하 조세정책의 역사를 정확히 남기기 위해서 쾌히 집필에 응해 주신 저자에게 감사를 드린다. 저자는 집필과정에서 자료확보 및 여러 가지 행정편의를 제공해 준 본원의 玄鎭權 박사에게 감사를 표하고 있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저자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1998年 3月

韓國租稅硏究院　院長　金 仲 秀

目　　次

Ⅰ. 序　論 …… 11

Ⅱ. 朝鮮末의 近代化를 위한 試圖와 그 挫折 …… 13

1. 近代化를 위한 試圖 …… 13

2. 日本의 植民地化 工作 …… 20

Ⅲ. 日本에 의한 植民地 統治期의 特性 …… 24

1. 顧問·統監政治 時代 …… 24

2. 武斷統治期 …… 33

3. 植民地統治 擴充期 …… 43

4. 侵略戰爭期 …… 50

Ⅳ. 植民地 統治下의 租稅政策 …… 59

1. 植民地 統治의 基盤造成期(1904～1919) …… 59

2. 植民地統治 擴充期의 租稅政策(1920～1936) …… 80

3. 侵略戰爭期의 租稅政策(1937～1945) …… 100

Ⅴ. 政策變化의 效果分析 …… 174

1. 租稅政策의 基調 …… 174

2. 財源調達 效果 …… 175

3. 租稅負擔의 急增과 그 配分 …… 190

Ⅵ. 評　價 …… 201
1. 多種多樣한 稅目으로 構成된 複雜한 租稅體系 …… 201
2. 課稅의 公平과 租稅構造 …… 204
3. 植民地 統治를 위한 租稅政策의 遺産 …… 209

參 考 文 獻 …… 212

附　　錄 …… 216

表 目 次

〈表 Ⅲ－ 1〉 朝鮮總督府特別會計로부터 日本 臨時軍事費
特別會計에의 轉出額(1937～1945) …… 54
〈表 Ⅳ－ 1〉 雜稅의 構成(1911年 現在) …… 77
〈表 Ⅳ－ 2〉 所得稅의 增徵(1938) －支那事變特別稅令－ …… 104
〈表 Ⅳ－ 3〉 酒稅(造石稅)의 稅率引上(1940) …… 117
〈表 Ⅳ－ 4〉 物品稅의 稅率引上(1941) …… 125
〈表 Ⅳ－ 5〉 遊興飮食稅의 稅率引上(1941) …… 126
〈表 Ⅳ－ 6〉 入場稅의 稅率引上(1941) …… 128
〈表 Ⅳ－ 7〉 法人利得에 대한 臨時利得稅 稅率引上(1942) …… 132
〈表 Ⅳ－ 8〉 酒稅 造石稅의 增徵(1943) …… 137
〈表 Ⅳ－ 9〉 酒稅 庫出稅의 增徵(1943) …… 138
〈表 Ⅳ－10〉 砂糖消費稅의 稅率引上(1943) …… 139
〈表 Ⅳ－11〉 物品稅의 稅率引上(1944) …… 143
〈表 Ⅳ－12〉 遊興飮食稅의 稅率引上(1943) …… 144
〈表 Ⅳ－13〉 入場稅의 稅率引上(1944) …… 145
〈表 Ⅳ－14〉 砂糖消費稅의 稅率引上(1944) …… 147
〈表 Ⅳ－15〉 廣告稅의 稅率引上(1944) …… 148
〈表 Ⅳ－16〉 酒稅 중 造石稅의 稅率引上(1944) …… 149
〈表 Ⅳ－17〉 酒稅 중 庫出稅의 稅率引上(1944) …… 150
〈表 Ⅳ－18〉 酒稅의 稅率引上(1944) …… 150
〈表 Ⅳ－19〉 所得稅의 稅率引上(1944) …… 152
〈表 Ⅳ－20〉 臨時利得稅의 稅率引上(1944) …… 153
〈表 Ⅳ－21〉 相續稅의 稅率引上(1944) …… 154

〈表 Ⅳ－22〉 其他 所得稅의 稅率引上(1944) …… 155
〈表 Ⅳ－23〉 第1種 所得稅 稅率引上(1945) …… 159
〈表 Ⅳ－24〉 第2種 所得稅 稅率引上(1945) …… 159
〈表 Ⅳ－25〉 第3種 所得稅 稅率引上(1945) …… 160
〈表 Ⅳ－26〉 酒稅의 稅率引上(1945) …… 161
〈表 Ⅳ－27〉 入場稅의 稅率引上(1945) …… 161
〈表 Ⅳ－28〉 其他稅의 稅率引上(1945) …… 162
〈表 Ⅴ－ 1〉 植民地統治基盤 造成期의 租稅增徵
(1910～1919) …… 176
〈表 Ⅴ－ 2〉 地方稅의 增收(1910～1919) …… 177
〈表 Ⅴ－ 3〉 植民地統治 擴充期의 租稅增徵(1920～1936) …… 179
〈表 Ⅴ－ 4〉 租稅收入의 推移(1919～1936) …… 180
〈表 Ⅴ－ 5〉 地方稅의 增收(1919～1936) …… 181
〈表 Ⅴ－ 6〉 侵略戰爭期의 租稅增徵(1937～1943) …… 185
〈表 Ⅴ－ 7〉 侵略戰爭期의 國稅增徵(1937～1945) …… 186
〈表 Ⅴ－ 8〉 所得稅·臨時利得稅 稅率引上(1938～1945) …… 187
〈表 Ⅴ－ 9〉 主要 消費稅 稅率引上(1937～1945) …… 188
〈表 Ⅴ－10〉 地方稅의 增收(1937～1943) …… 189
〈表 Ⅴ－11〉 朝鮮의 人口 1人當 租稅負擔 推移
(1910～1943) …… 190
〈表 Ⅴ－12〉 朝鮮과 日本의 1人當 租稅負擔額 比較
(1920～1943) …… 191
〈表 Ⅴ－13〉 朝鮮의 人口 1人當 租稅負擔의 增加倍數
(1910～1943) …… 192
〈表 Ⅴ－14〉 租稅增徵의 대한 寄與度(1910～1943) …… 193
〈表 Ⅴ－15〉 直接稅와 間接稅의 比重(1910～1943) …… 194
〈表 Ⅴ－16〉 主要 地方稅의 比重(1910～1943) …… 194
〈表 Ⅴ－17〉 租稅 등 財政資金 調達計劃(1942～1945) …… 197

〈表 Ⅴ－18〉 朝鮮과 日本의 1人當 租稅負擔額과
國民所得 比較(1941～1944) …… 198
〈表 Ⅴ－19〉 朝鮮과 日本의 租稅負擔率 比較(1941～1945) … 199

〈附表 1〉 國稅體系의 變遷(1905～1909) …… 216
〈附表 2〉 國稅體系의 變遷(1905～1909) …… 216
〈附表 3〉 國稅體系의 變遷(1910～1919) …… 217
〈附表 4〉 國稅體系의 變遷(1920～1936) …… 217
〈附表 5〉 國稅體系의 變遷(1920～1936) …… 217
〈附表 6〉 國稅體系의 變遷(1937～1945) …… 218
〈附表 7〉 國稅體系의 變遷(1937～1945) …… 218
〈附表 8〉 國稅體系(1945. 8. 15) …… 219
〈附表 9〉 地方稅體系(1909年 現在) …… 220
〈附表 10〉 地方稅體系의 變遷(1910～1919) …… 220
〈附表 11〉 地方稅(道稅)의 新設과 廢止(1920～1936) …… 221
〈附表 12〉 府稅의 新設과 廢止(1920～1936) …… 221
〈附表 13〉 邑面稅의 新設과 廢止(1920～1936) …… 222
〈附表 14〉 學校費賦課金·學校組合費의 改正(1920～1936) …… 222
〈附表 15〉 地方稅體系의 變遷(1937～1945) …… 223
〈附表 16〉 地方稅體系(1945. 8. 15) …… 224
〈附表 17－1〉 府·邑面特別營業稅 課稅率(1940～1942)(Ⅰ) … 225
〈附表 17－2〉 府·邑面特別營業稅 課稅率(1940～1942)(Ⅱ) … 226
〈附表 17－3〉 府·邑面特別營業稅 課稅率(1940～1942)(Ⅲ) … 227
〈附表 18－1〉 府·邑面雜種稅 課稅狀況(1940)(Ⅰ) …… 228
〈附表 18－2〉 府·邑面雜種稅 課稅狀況(1940)(Ⅱ) …… 229

Ⅰ. 序　論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근대화는 일본에 의한 식민지 통치의 일환으로서 시작되었다. 물론 朝鮮末에 개국과 쇄국 그리고 開化派와 守舊派 사이의 알력과 세계 열강들의 각축으로 빚어진 소용돌이 속에서도 조세제도의 근대화를 위한 자율적 개혁의 움직임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大院君에 의한 洞布制의 실시나 免稅田結의 환수(1864), 書院에 대한 과세(1868) 등 개혁조치는 그 성과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근대화를 지향한 시도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甲申政變(1884)을 통하여 공표되었던 세제 및 재정에 관한 혁신정강이나 乙未年의 개혁까지 포함하는 甲午更張(1894. 7～1895. 7)에서 추진된 재정, 조세제도의 개혁은 비록 그것이 일본의 영향력하에서 당시 일본의 제도를 많이 모방한 것이기는 하나 다른 모든 제도의 개혁과 같이 전근대적인 제도로부터 근대적인 제도로 전환하는 첫 걸음이었다는 데에는 異論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근대화를 위한 시도는 조선을 식민지화하기 위한 일본의 군사력을 앞세운 공작 때문에 좌절될 수밖에 없었다. 일본은 러·일전쟁을 일으킨 후 곧 「한·일의정서」를 강압적으로 성립(1904. 2. 23)시켜 조선을 보호국화하는 첫 단계 목표를 성취하였다. 이어 제1차 한·일협약(1904. 8. 22)에 의해 顧問政治를 실시하고 乙巳條約의 강제조인(1905. 11. 17)으로 統監政治를 실시하여 조선을 완전히 보호국화한 후 마침내 1910년 8월 22일에는 조선을 합병하였던 것이다.

본고는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화한 후 조선에서 실시한 조세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개관, 정리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나 식민지 통치하에서 이루어진 조세제도의 근대화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먼저 조

선말에 추진된 세제 등의 근대화를 위한 시도가 좌절된 경위를 살펴보기로 한다.

일본의 식민지 통치기간중 조선에서는 일본의 정책기조에 따라 수다한 新稅를 도입하여 조세를 대폭 증징하였다. 일본은 조선을 식민지화하기에 앞서 재정고문이나 통감부 치하에서 재정정리라는 구실 아래 재정실권을 장악하였고, 조선을 식민지화한 후에는 「재정독립계획」을 추진하여 각종 신세의 도입으로 조세수입의 증대를 도모하였다. 이어 3·1운동 후 사법경찰비가 대폭 증가하고 그간 세입조달을 위하여 확장한 관업이 경비팽창을 증폭시키게 되자 1926년에 제1차 세제정리를 실시하였다. 그후 1931년에는 대륙침략의 전초전으로서 「만주사변」을 일으켜 다시 군사비가 급팽창하고 재원조달이 시급하게 되자 1934년에 제2차 세제정리를 실시하였다. 1937년에는 본격적인 대륙침략을 위해 중·일전쟁을 일으켜 세제도 전시세제로 개편하고 1940년 전시세제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제3차 세제정리를 실시하였다.

그후에도 1941년에는 군사비의 격증에 대처하여 酒稅 등 간접세의 증징을 실시하였고 침략전쟁을 태평양지역에까지 확대하였던 1941년 이후 1945년 8월 15일 연합군에 무조건 항복을 할 때까지 매년 대폭적인 조세의 증징조치가 거듭되었다.

편의상 여기서는 일본의 식민지 통치기간을 3기로 나누어 증세로 일관하였던 세제의 변천을 고찰한다. 제1기는 고문정치가 시작된 1905년에서 이른바 일본의 武斷統治가 일단락되는 1919년까지의 기간이다. 제2기는 일본이 조선에서 식민지 통치의 實益을 증대시키기 위해 주력하였던 1920년에서 1936년에 이르는 기간이다. 제3기는 일본이 중국에 대한 침략을 개시하여 침략전쟁을 동남아·태평양지역에까지 확대한 끝에 패전하여 연합군에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된 1937년에서 1945년 8월에 이르는 기간이다.

본고에서는 특히 일본의 「1940년 체제」가 확립된 침략전쟁 말기에 추진되었던 조세증징의 내용을 정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II. 朝鮮末의 近代化를 위한 試圖와 그 挫折

1. 近代化를 위한 試圖

19세기 중엽에 조선에 대한 서구열강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대응이 필연적으로 생겨나게 되었다. 고종의 즉위로 정치적 실권을 장악하게 되었던 흥선대원군은 고종원년(1864)에 종래 일반서민에게만 부과하던 軍布(軍役 대신에 납부하는 布木)制 대신에 양반이나 상민을 가리지 않고 모두 부과하는 洞布制를 실시하였다. 이 동포제는 고종8년(1871)에 양반들은 노비이름으로 출포하도록 수정한 戶布法으로서 전국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또 고종원년에는 都結이라 하여 稅吏가 사용한 공금이나 군포를 미봉하기 위해 정액 이상의 稅를 田結에 부과하는 폐습을 금지시켰다. 또한 왕실종친과 양반세도가들의 면세전결을 환수하고 당시 田地와 노비를 소유하고 면세·면역의 특권을 누리고 있었던 書院에 대한 과세를 도입(고종5년, 1868)하는 한편 서원을 정리·철폐하여 그 지배하에 있었던 免稅田을 없앴다. 뿐만 아니라 양반세도가들이 묘소를 위하여 한지를 넓게 차지하는 것도 금지하도록 하였다.

대원군은 또한 각 官房이 삼남지방에서 無土收稅하던 폐단을 폐지시키고 가장 폐단이 심했던 還穀制를 좁은 지역단위로 운영하는 社倉制로 고쳐 농민들이 실제로 규휼의 혜택을 받도록 하는 한편 재고를 실사하여 착복한 자는 엄벌하도록 하고 각도의 還上穀과 田結稅米 등의 미납분을 철저히 조사하여 그 수납을 독려하되 만일 稅政을 담당하는 관리 중에서 농간이나 횡령이 있는 경우에는 용서없이 엄벌하도록 하였다.

대원군의 개혁정책에 대한 평가에는 상반된 두 가지 견해가 있다[1]. 그 하나는 「전통사회의 각종 폐단을 과감히 개혁하여 국가의 자주권을 지키려는 노력에서 근대 민족국가의 성격을 찾아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시각이다. 또 다른 하나는 「전통사회질서를 재정리하고 왕권의 집권체제를 강화하려 한 것이었으며 또 대외적으로는 쇄국정책의 강화로 근대사회로의 발전에 역행하였다」는 부정적인 인식이다.

그러나 대원군의 개혁추진으로 국가재정이 튼튼해져 「이때의 富力은 족히 十年은 쓸 수 있을 만했으니 그 성적이 실로 근래에는 없었던 것이다」[2]라는 朴殷植의 평가를 접어두더라도 극도로 문란했던 당시의 三政(田政·軍政·還穀)을 바로잡기 위한 개혁조치는 그 자체가 제도의 근대화를 지향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고종13년(1876)에 일본과 江華島條約(丙子修好條約)을 체결한 후 세계 각국에 문호를 개방하게 되자 당연히 개화사상이 고조되고 다양한 개화운동이 전개되는 가운데 개화와 보수의 대립과 갈등도 깊어 갈 수밖에 없었으나 그 와중에서 고종21년(1884)에는 甲申政變이 일어났다. 이 정변은 壬午軍亂(고종19년, 1882) 후 개화사상을 가진 젊은 관료들로 형성된 개화당(또는 독립당)이 일본의 힘을 빌려 보수정권을 무너뜨리고 淸과의 종속관계를 청산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개화당은 정권을 장악하자 그들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14개조의 革新政綱을 마련하였는바 그 중에는 다음과 같은 세제 및 재정에 관한 요강도 포함되어 있었다.

① 전국의 地租의 법을 개혁하여 관리의 농간을 막고 백성의 괴로움을 펴게 하며 겸하여 國用을 유족하게 할 것(제3항).

② 각도의 還上은 영영 정지할 것(제6항).

③ 무릇 국내 재정은 모두 戶曹에서 관할케 하고, 그 밖의 모든 재

---

1) 邊太燮, 『韓國史通論(四訂版)』, 서울 : 삼영사, 1996, p. 373.

2) 朴殷植(李章熙 譯), 『韓國通史(上)』, 서울 : 박영사, 1974, 第2編(原文)第4章 稅政釐革, pp. 251~252.

정 관계관부는 폐지할 것(제12항).

이 세제 및 재정에 관한 개혁안은 地租法의 개혁으로 국가의 수입을 확대하고 춘궁기에 빈민에게 官穀을 대여해 주고 추수 후에 회수하는 還上(還穀)制를 영구히 폐지하여 재정을 戶曹로 단일화함으로써 근대적인 세제와 재정제도를 확립하려 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개화파에 의한 정변은 淸軍의 출동으로 실패로 돌아가고 「淸으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을 목표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양반중심의 지배체제를 청산하여 근대적 국민국가를 지향하는 최초의 정치개혁운동」[3]은 3일천하로 끝나고 말았다.

고종21년에 일어난 甲申政變이나 고종31년(1894)에 일어난 동학농민운동은 비록 그 주체가 다르기는 하나 모두 개항 이후 서양의 근대문물과 접촉하면서 형성된 개화사상에 바탕을 두고 근대국가로의 발전을 위한 정치·사회·경제체제의 개혁을 주장하였고 외세의 내정간섭과 경제적 침투에 주체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정부나 지배층에 대한 반발이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었다.

고종31년 7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의 기간에 걸쳐 추진된 甲午更張(甲午改革)도 내부적으로는 전근대적인 전통사회를 부정하는 근대적 개혁의 필요성이 그 시대적 배경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갑오경장은 일본이 무력을 개입하여 金弘集을 수반으로 하는 중립적 인사와 친일적 인사들로 새로운 정부를 구성케 하고 「軍國機務處」라는 초정부적인 회의기구를 설치하여 일본이 요구하는 내정개혁을 추진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조선을 식민지화하기 위한 일본의 기초공작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4].

군국기무처는 고종31년 6월 28일에 설치되어 동년 11월 20일에 폐지될 때까지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208건의 개혁안을 의결

3) 邊太燮, 前揭書, p. 390.
4) 이에 대하여 甲午更張이 봉건적 조선을 文明開化시키기 위한 근대적 개혁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하였다[5]. 주요한 개혁의 내용을 보면 정치면에서는 淸과의 종속관계에서 벗어났음을 선포하는 開國紀元의 사용과 議政府와 宮內部를 구별하는 대대적인 중앙관제의 개혁, 科擧制度를 대신하는 새로운 관리임용법의 실시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 사회면에 있어서는 신분제도의 폐지를 위시하여 죄인의 처벌에 있어서의 고문이나 연좌법 폐지, 조혼의 금지와 재가의 자유 등 가족제도의 개혁 등도 규정되었다.

재정면에서는 전국의 회계·출납·조세·화폐·은행 등 재정에 관한 모든 사무를 度支衙門에서 일원적으로 관장하게 하였다. 고종31년 10월 29일 이후에는 모든 조세제도를 金納制로 개편하였다. 이와 함께 동년 7월 11일에는 新式貨幣章程을 정하여 銀本位制를 채택하고 數種의 銅貨를 補助貨幣로 삼았다. 또한 동년 7월 14일에는 議政府 내에 독립기관으로 會計審査局을 설치하여 의정부의 各 府衙(중앙관서)의 모든 회계검사를 전담케 하는 개혁조치를 의결하였다. 그 밖에 해산물 등 토산식료품이나 軍器 등 현물공납과 같은 전근대적 外貢進上制를 철폐하고, 중앙 각 관아에서 여러 가지 명목을 붙여 外方營이나 邑에 현물 또는 錢貨로 責徵하던 外道求請制도 폐지하였다. 또 度量衡도 개정·통일하였다.

갑오경장은 갑오년에 이루어진 개혁조치(제1차)만이 아니라 을미년의 개혁조치(제2차)까지도 포함한다. 이 제2차 갑오경장은 金弘集·朴泳孝의 연립내각이 성립된(1984. 12) 후 박영효가 실각하여 일본에 망명할 때(1895. 7)까지 약 7개월 동안 일본의 간섭이 강화되고 급진개혁파가 참여한 가운데 추진되었으며 이 기간에 제정된 개혁안은 모두 213건에 달하였다[6].

제2차 갑오경장은 고종31년 12월 12일에 고종이 종묘에 나아가 개

5) 李瑄根, 『韓國史(現代編)』, 서울 : 震檀學會, 1963, p. 226.
6) 김영모, 「甲午更張의 法制的 樣相과 日帝의 干涉」, 『日本 帝國主義와 韓末의 社會變化』, 한국의 사회와 문화 제13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0, p. 80.

혁의 추진을 서약하고 정치의 기본강령으로서 선포한 「洪範14조」가 지침이 되었다. 이 洪範 14조는 비록 일본의 간섭에 의하여 발표되고 또 그 내용이 당시 일본이 받아들이도록 강요한 20개조의 내정개혁강령을 수용한 것이기는 하나, 淸國으로부터의 자주독립, 왕실과 국정의 분리, 度支衙門에 의한 재정의 관장, 조세법률주의의 채택과 예산제도의 실시 등 비교적 근대적인 국정지표를 제시하고 있었다[7].

제2차 갑오경장은 중앙관제에 있어서도 종래의 의정부를 내각으로, 衙門을 部로 고치고, 지방관제에 있어서는 종래의 8道 대신에 23개 府를 신설하고 그 밑에 337개 郡을 두었으며, 地方官에게는 종래의 사법권과 군사권을 부여하지 않고, 단순한 행정관으로 그 권한을 대폭 축소시켰다.

제2차 갑오경장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는 사법권을 행정권으로부터 분리·독립시킨 것이었다. 즉 제1차 개혁에 있어서는 재판권이 法務衙門에 예속되었으나 제2차 개혁에서는 재판소에서 사법관(판사·검사)이 이를 담당하게 되었다. 사법제도는 2심제로 하고 제1심 재판은 지방재판소와 개항재판소, 제2심 재판은 고등재판소와 순회재판소가 각각 맡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경찰제도는 제1차 개혁에서 좌·우포도청을 통합하여 內務衙門에 경찰청을 설치하여 서울의 경찰권을 일원화한 데 이어 제2차 개혁에서는 각도 觀察使의 지휘아래 경무관을 두고 지방의 치안을 담당케 하여 행정과 분리시켰다.

교육제도에 있어서도 漢城師範學校를 설립하고 외국어학교관제를 공포하였으며 소학교령을 공포하여 서울에 소학교를 설립하였다.

재정면에서는 을미년(1895) 2월에 田稅, 大同米, 三手米, 砲糧米와 모든 附加稅 및 雜稅를 폐지하고 이를 結稅(土地稅)로 통합하여 지역

7) 이 洪範14條는 거의 軍國機務處에 의해 실시된 여러 개혁조치를 총괄하여 成文化한 것이었으나 종전과 달리 純漢文만이 아니라 純漢文, 純國文과 國漢文 混用 등 세 가지를 작성하여 똑같이 발표한 것이 획기적이라고 지적되고 있다.

별 肥沃度와 地目에 따라 차등과세하되 세율을 대폭 인하하는 개혁을 실시하였다. 이어 동년 3월 26일에는 管稅司 및 徵稅署制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조세와 기타 세입의 징수 사무를 전담하는 기관으로서 度支部大臣의 관할에 속하는 管稅司(전국에 9개소)와 徵稅署(전국에 220개소)가 설치되어 地方守令과는 독립하여 징세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管稅司는 관내 징세서의 징세사무를 감독하고 또 각 郡縣의 세무를 감시하며, 徵稅署는 수입조달관이 발부하는 징세명령 또는 납세고지에 의거하여 조세 및 기타 세입의 징수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또한 동년 3월 30일에는 「會計法」을 제정·공포하여 4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이 회계법에서는 「조세법률주의」의 실현을 명문화(제1조)하고, 정부의 예산제도 채택을 명시(제3조)하였으며, 회계연도와 통일적 회계 및 총계예산주의 등 재정회계상의 원칙을 규정한 이외에 예산의 형식과 내용 및 집행, 수입과 지출에 관한 절차, 그리고 출납관리의 책임부담 등이 규정되었다. 우리나라의 재정제도 역사상 획기적인 개혁조치로 평가되는 이 회계법은 그후 몇 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한일합병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기본골격을 유지하였다.

갑오경장은 정치·경제·사회 등 다방면에 걸쳐 획기적인 제도개혁을 추진함으로써 우리의 전통적인 제도를 근대적인 것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나 일본의 편의에 따라 짧은 기간내에 과감한 개혁정책을 통하여 봉건사회를 근대적 사회로 전환시키려 했기 때문에 왜곡된 근대화의 출발점이 될 수밖에 없었다. 예컨대 新貨幣章程은 당시 일본의 은본위제도를 모방한 것으로서 신화폐를 일본의 화폐와 동질의 것으로 하고, 일본의 화폐도 혼용할 수 있게 함(제7조)으로써 일본의 경제적 침투를 용이하게 하였다. 또 조세의 금납제도도 아직 화폐가 농촌에까지 널리 유통되지 못하고 있었던 당시에는 농민에게 큰 고통을 주었던 반면에 稅穀의 환금을 담당하였던 일본대금업자에게는 부당한 횡재의 기회를 제공하는 엉뚱한 결과가 생겨났다. 또한 도량형의 개정·통일도 일본상인들의 편의를 도와주는 것이 되었다.

일본공사 미우라(三浦梧樓)가 일본군대와 낭인을 앞세워 명성황후를 살해한 이른바 乙未事變(을미년 8월 19일) 후에도 친일파 일색의 내각에서 태양력의 채용, 어린이에 대한 종두 규칙의 제정, 충주·안동·동래·대구 등지의 郵便司 설치와 一世一元의 연호를 사용하되 1896년부터 「建陽」이라고 하는 등의 개혁(乙未改革)조치와 함께 단발령을 공포(개국 504년 11월 15일)하였다.

또한 세제면에서는 모든 잡세를 폐지하는 법률 제13호(동년 8월 25일 공포·시행), 包蔘의 세율개정 법률 제14호(동년 9월 5일 공포), 지세 및 호포전에 관한 법률 제15호(동년 9월 5일 공포·시행)를 각각 제정하였다. 이 「地稅 및 戶布錢에 관한 법률」은 지세와 호포전을 각각 1년을 2기로 나누어 절반씩 납부하게 하고, 隱結 등 탈세를 엄벌한다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었으며, 「各 邑 賦稅所章程」(직령 제74호, 동년 4월 5일 공포, 4월1일 시행), 「各 郡 稅務章程」(직령 제162호, 동년 9월 5일 공포·시행)과 함께 우리나라 근대적 세법령의 효시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갑오경장과 을미개혁에 이어 국호를 「大韓帝國」, 연호를 「光武」로 하였던 연대에도 근대적 개혁이 단행되었다. 고종31년에 실시한 驛屯土 정리에 이어 光武2年(1898)에는 量田事業이 보다 실효성 있는 계획하에서 실시되었다. 즉 정부는 측량을 관장하는 量地衙門을 설치하고 미국의 근대적 측량기사를 초빙하여 量田技術을 전습시키는 한편 일부지역의 양전에 착수하였다. 또 광무5년(1901)에는 量地衙門을 地契衙門으로 개편하여 토지 등기 사업을 병행하고, 측량이 완료된 지역에 대하여는 量案을 작성하여 地契를 발급하였다. 또 이 광무개혁기에는 정부가 상공업의 진흥·육성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섬유·해운·철도·운수·광업·금융부문에 근대적 관영기업들이 설립되었으며, 근대적 생산시설이 도입되었다. 이와 함께 교육부문에서는 실업교육이 강조되어 기예·상공·광무학교 등 실업학교와 의학교, 외국어학교, 모범양잠소, 공업전수소 등이 설립되었다. 또한 세제면에서는 建陽元年

(1896)에 庖肆(오늘날의 정육점)規則이, 광무2년(1898)에는 典當鋪規則이, 광무3년(1899)에는 國內船稅規則이 각각 제정되어 포사세, 전당포세, 선세(종래의 雜稅)가 각각 창설되었다. 금융면에서는 광무5년(1901) 2월에 정부의 화폐제조발행권을 명기하고 금본위제를 채택하도록 한 신화폐조례를 칙령으로 발표하였으나 러·일전쟁의 발발로 실시되지 못하였다.

광무개혁은 19세기 말 「제국주의 열강의 침투 속에서 자주독립의 방책을 찾으며 근대사회로의 발전을 주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8] 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이는 이 개혁이 갑신정변이나 갑오·을미개혁과 달리 자주적인 입장에서 근대적인 개혁을 추진하였다는 점에서 그렇다.

2. 日本의 植民地化 工作

일본은 고종13년(1876) 2월에 砲艦外交라고 일컬어지는 무력적 위압에 의해 江華島條約(한일수호조규)의 체결에 성공하자 이를 기점으로 하여 조선을 식민지화하기 위한 침략을 본격화하게 되었다. 즉 동년 8월에는 강화도조약에 따라 韓日修好條規付錄과 貿易章程을 체결하여 조선정부가 알지 못하였던 것을 기화로 개항장에 있어서의 일본화폐의 사용과 朝鮮銅貨의 수출입자유, 조선연해 측량의 자유활동 등 불평등한 개항특권을 얻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개항장에서의 양곡의 수출입, 일본선박의 港稅 면제, 수출입품에 대한 비과세 등을 규정하여 경제적 침투를 본격화하게 되었다.

이어 고종14년(1877) 7월에는 일본이 地代 또는 地租負擔을 명기한다는 조건으로 「釜山港居留地借入約書」가 조인되어 일본의 조선침

8) 邊太燮, 前揭書, p. 411. 그러나 光武改革에 대하여는 그것이 과장이며 우리나라 근대사 발전의 주류가 될 수는 없다는 주장도 있다. 李基白, 『韓國史新論』, 新修版, 서울 : 일조각, 1990, p. 390.

략 교두보가 될 부산에 일본인의 거류지가 설정되었으며 강화도조약에서 규정한 영사재판권과 결부되어 조선의 주권을 침해하게 되었다.

또한 강화도조약에 따른 일본의 강요로 元山(1880. 5)과 仁川(1883. 1)이 각각 개항되어 조선침략을 본격화하기 위한 토대가 확대되었다. 그 밖에 고종19년(1882) 7월의 壬午軍亂 후 동년 8월에 체결된 濟物浦條約에서는 일본공사관 경비를 명목으로 일본군 1개 대대의 서울주재를 실현하였고, 韓日修交條約續約에서는 개항장 유보지역의 확대와 楊花津의 開市를 통하여 내륙통상권을 확대하게 되었다.

조·일간에 체결된 불평등 조약인 修好條規는 1880년대에 구미열강이 조선과 불평등조약을 체결하는 가운데 정착되었으나, 임오군란과 갑신정변을 계기로 하여 조선에 대한 청국의 영향력이 강화되자 고종 31년 1월에 일어난 동학농민군의 봉기를 기화로 조선에 출병한 일본은 동년 6월에 왕궁을 점령하여 친일개화파 정권을 수립하는 한편 동년 7월에는 청·일전쟁을 도발하였다. 청·일전쟁중 일본은 「暫定合同條款」과 「朝日兩國盟約」의 체결을 강요하였다. 잠정합동조관이란 잠정이라는 전제하에 일본이 그간 촉구하여 왔던 여러 가지 중요한 권익을 장악·점거하는 것이었다. 즉 경부·경인간 철도의 조기부설, 개전전에 무단 가설한 경부·경인간 군용전신의 조약화, 전라도 내 1개 무역항의 개항 등이 그 내용이었다. 또 양국맹약은 攻守同盟으로서 淸兵의 조선국경 외 철수와 일본군대의 진퇴 및 그 식량준비 등의 사항에 대한 협조와 편의 제공을 규정하였다[9].

한편 광무원년(1897)에 대한제국이 성립되자 정부는 동아시아에 집중된 구미열강의 상호 대립과 견제를 이용하여 침략을 막고 自強에 의해 독립유지를 추구하는 것을 외교방침으로 삼았고, 조선의 구체적인 중립화 구상을 주축으로 하는 외교전략이 태동되었다. 그러나 일찍이 조선에 대한 독점적 지배를 구상하고 있었던 일본과 극동에 있어서 현

9) 李瑄根, 前揭書, pp. 271~283.

저하게 그 세력을 확장시키고 있었던 러시아의 이해관계는 첨예하게 대립되었으며, 결국 광무8년(1904) 2월에 러·일전쟁이 발발하게 되었다.

러시아와 일본의 개전에 앞서 동년 1월 21일에 정부는 국외중립을 선언하였으나 일본은 개전에 앞서 임시파견대의 선견부대를 漢城에 입경시켜 한성중립지대화계획을 저지하기 위해 정부와 한성주재 외국외교단에 대하여 군사적 위압을 가하였다. 그리고 일본군의 점령제압 아래서 韓日議政書를 강압적으로 성립시켰다(광무8년, 1904. 2. 23). 이 의정서는 조선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을 보장한다는 상투적인 구실 아래 조선에 대한 내정간섭, 외교권 침해, 군사요지의 수용권 등 조선에 대한 일본의 정치적·군사적 간섭을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한일의정서의 제6조에서는 세세한 개별사항을 그때 그때 협정하도록 규정하여 일본의 권익을 무한대로 확대하도록 하였으며, 러·일전쟁 중 義州와 龍岩浦의 開市, 어업권 적용범위의 전국확대, 우편전신전화사업의 일본지배, 연해항행권 및 河川遡航權 획득 등이 이루어졌다. 이와 함께 광무8년 8월에는 제1차 韓日協約이 체결되어 이른바 일본의 고문정치가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정부는 일본정부가 추천한 일본인 재정고문과 외국인 외교고문을 초빙하여 주요 정책에 대한 협의를 하고 외국과의 조약 체결, 기타 중요한 외교안건, 즉 외국인에 대한 특권의 양여나 계약 등의 처리는 미리 일본정부와 협의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일본은 한국의 외교권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재정을 중심으로 조선내정의 식민지적 재편성에 착수하게 되었다.

제1차 한일협약의 체결을 전후하여 조선의 내정에 대한 일본의 개입도 크게 진전되었다. 광무8년 6월 일본은 토지의 강탈을 위한 황무지개간권을 요구하였으나 심한 여론의 반대로 철회하였고, 동년 7월에는 군사경찰제가 시행되었다. 이와 함께 동년 9월에는 조선의 재외공관 폐지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또 일본인 재정고문이 취임한 후 광무9년(1905)부터 화폐조례에 따른 새로운 화폐발행과 구화폐의 회수에 의

해 조선을 일본의 통화체계에 편입시켰고, 동년 1월에는 일본의 第1銀行이 은행권발행과 국고금취급의 특권을 획득하기도 하였다. 이같이 조선을 식민지화하기 위한 일본의 침략이 착착 진행되는 가운데 러·일강화조약에 따라 러시아로부터 일본의 조선지배에 대한 양해를 얻게 되자 일본은 광무9년 11월 17일에 군대를 앞세워 왕궁을 포위하고 황제와 대신들을 위협하여 불법적으로 乙巳條約(제2차 한일협약)을 강제 체결하였다. 이 을사조약의 핵심은 일본이 조선의 외교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동시에 조선의 외교를 관장하기 위해 황제 아래에 일본인 統監을 둔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광무10년(1906) 2월에 통감부가 설치되어 이른바 통감정치가 시작되었다. 통감은 일본천황에 직속되고 일본천황의 대리로서 조선에 군림하게 되었던 것이다. 또 을사조약에는 내정간섭에 관한 규정은 없었으나 실제로는 모든 내정을 관장하였다. 이로써 통치권이 완전히 일본인 통감에게 넘어가 대한제국의 주권은 사실상 상실되었다. 더욱이 광무11년(1907) 6월에 네덜란드의 헤이그(海牙)에서 열린 제2회 만국평화회의에 고종이 특사를 파견하여 을사조약 체결의 부당성과 조선의 억울한 사정을 호소케 한 것을 문제삼아 동년 7월에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 순종을 황제로 즉위시킨 후 韓日新協約(丁未七條約)을 체결하여 통감이 조선의 내정권을 장악하고 또 정부의 각 部의 차관에 일본인을 임명하게 됨으로써 이른바 차관정치가 시작되었다.

한일신협약을 체결한 후 일본은 1907년 7월에 얼마 남아 있지 않았던 조선의 군대를 해산하고 이어 1909년 7월에는 조선의 사법권을 일본에 위탁케 하는 방식으로 침탈하였다. 이같이 조선의 식민지화를 위한 단계적 조건을 하나 하나 마련하였던 일본은 1909년 7월에 조선합병방침을 각의에서 결정하여 같은 날 천황의 재가를 얻은 후 1910년 8월 22일에는 한일합병조약의 강압적인 체결로 대한제국은 종말을 고하고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통치하에 들어가는 민족적 비극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이다.

III. 日本에 의한 植民地 統治期의 特性

1. 顧問·統監政治 時代

가. 朝鮮植民地 經營의 基本計劃

제1차 한·일협약에 따라 일본인 재정고문이 취임한 1904년 10월에서부터 다음해 11월에 강제조인된 을사조약에 의해 통감정치가 시작된 후 1910년 8월 29일 일본이 조선의 합병을 선언할 때까지의 기간은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화하기 위한 계획을 순차적으로 실행한 시기였다.

일본은 1904년 2월 23일에 체결된 「한일의정서」에 따라 이미 어느 정도 조선에 대한 보호권을 손에 넣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한걸음 더 나아가 보호의 실권을 확립하기 위해 1904년 5월 30일에는 元老會義에서, 다음날 31일에는 閣議에서 조선의 식민지 경영을 위한 기본계획인 對韓施設綱領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1].

「軍事」

전쟁 종료 후 일본군의 조선 상주, 군용지 수용은 조선의 독립 및 영토보존을 보장한 「한일의정서」 제3조에 의한 일본의 권리라고 규정한다.

「外交」

조선정부가 행하는 외국과의 조약 체결 등 중요안건의 처리를 일본

1) 海野福壽, 『韓國併合』, 東京 : 岩波書店, 1995, pp. 132~133.

정부의 사전승인제도로 하며, 이를 위해 외교업무와 외국인에 대한 특권의 양여를 외부아문에 집중시키고 거기에 일본공사가 감독하는 외국인 고문관을 두어 외교정무의 실권을 장악한다.

「財政」

일본인 고문관을 두어 징세법이나 화폐제도의 개혁, 재정재건을 실시하여 재무의 실권을 장악한다.

「交通」

주로 군사적 관점에서 건설중인 경부철도(한성－부산)와 경의철도(한성－의주)의 완성을 위시하여 한성－원산－웅기만간, 마산－삼랑진간 철도부설권을 획득한다.

「通信」

조선정부로 하여금 우편전신, 전화사업의 관리를 일본정부에 위탁하도록 하여 일본 통신사업과의 합동을 도모한다.

「産業」

조선 내 일본인의 토지소유권, 용지권, 두만강·압록강의 산림벌채권, 광산채굴권, 全道의 어업권 취득 등에 의해 산업개발을 추진한다.

나. 舊韓末의 經濟概況

당시 조선의 경제는 농본국가의 자급자족 경제로서 인구의 83%가 농업에 종사[2]하였으며 그 밖의 산업은 거의 새로운 개발을 위한 첫발

---

2) 『朝鮮總督府統計年報』(1912)에 따른 職業別 人口構成比임. 四方博, 『朝鮮社會經濟史研究(上)』, 東京 : 國書刊行會, 1976, p. 305.

을 내딛고자 하는 상태에 있었다. 특히 회사 형태의 조선인 기업은 한일합병 전후기에 합명회사 3개, 합자회사 4개, 주식회사 14개, 도합 21개사로서 그 업종은 은행 및 금융업 10개사, 농업 및 운수업 각 2개사, 임업·수산업, 상업 및 공업 각 1개사, 기타 3개사로서 공업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은 1개사에 불과하였다. 이에 비해 일본인 회사수는 1910년 11월 현재 102개사에 달하였고 주로 농림업, 상업, 운수업 등을 경영하였으며, 외국인 회사수는 10개사에 이르고 있었으나 그 대부분이 광산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었다[3].

한편 당시의 공업에는 綿布·絹布·麻布 등 機業과 窯業, 제지업, 양조업, 목공 및 가구제조업, 금속가공업 등이 있었고 국민생활에 필요한 물건은 대개 국내에서 제작할 수 있었으나 가내공업 내지 공장제 수공업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더욱이 공장 공업은 그 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규모가 매우 작았고 기술수준도 낮았으며 사용하는 기구 역시 불완전하였기 때문에 제품의 품질도 낮았던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4].

또한 조선의 대외무역은 1879년의 개국 이래 꾸준히 늘어나기는 하였으나 봉건제에서 벗어나고 있었던 당시의 조선은 제1차 산업을 위주로 하는 농업국이었기 때문에 주로 미곡과 대두 등 농산물과 금·은을 수출하고 직물, 제당이나 소맥분 등 식료품, 석유, 금속제품 등 공산품을 수입하는 전형적인 후진국 무역유형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특히 러·일전쟁 후 조선에서 일본의 정치적 패권이 확립되자 무역부문에 있어서도 일본은 경제적 우위를 확보하게 되었다.

그 밖에 조선말에는 宮府의 혼동, 세제의 불비, 세출의 남발 그리고 화폐제도의 문란 때문에 재정의 문란이 극심하게 되었다는 이유를 내세워 일본은 1904년 10월에 大韓帝國 정부에 재정고문부를 설치하여

3) 朝鮮總督府 殖産局, 『朝鮮商工業』에 수록된 「併合前의 概況」. 四方博, 前揭書, pp. 350~351.
4) 四方博, 前揭書, pp. 376~377.

조선의 재무기관을 감독하도록 하는 동시에 즉시 화폐제도의 정리에 착수하였으며 근대적 금융제도의 확립에 나섰다. 또 1906년 9월부터 管稅官制를 실시하여 징세기관의 정비를 기하고 1908년 6월에는 궁부의 혼동, 즉 황실재산과 국유재산의 混淆를 정리하였다.

그러나 당시 일본이 내세웠던 재정문란의 원인은 「조선고래의 인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각국의 재정발달과정에서 찾아볼 수 있는 공통적인 현상이었고 또 화폐제도의 문란도 같은 맥락에서 다루어져야 했던 현상이었다는 데 문제가 있었다. 요컨대 개국 504년(1895년)의 재정개혁이 그 후 10년간 조선에 있어서의 러시아와 일본간 이해의 대립과 분쟁 때문에 실효를 얻지 못하고 「낡은 재정제도」가 유지되었던 데 그 원인이 있었으며 또한 조선이 스스로 그 낡은 제도를 개혁하는 기회조차 상실하게 되었다는 견해[5]에 유의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다. 財務行政의 掌握

일본인 재정고문의 취임과 함께 1904년 10월에는 대한제국 정부 내에 재정고문부를 설치하여 중앙재무기관을 감독하는 한편 평양, 대구, 전주 등지에 재정고문지부를 설치하고 재무관을 파견하여 지방재무행정을 감독케 하였다. 이어 1905년부터 국내 주요지역에 13개 고문지부와 21개 분서를 점차 설립하여 그 기능을 확대하였다.

한편 1905년 11월에는 종래 외국인의 관장하에 독립기관으로서 운영되던 關稅 사무도 재정고문이 인수하여 장악하게 되었다.

1906년 1월에는 재정고문부의 조직이 평양, 전주, 대구, 경성에 地方監府를 두고 지부 이하의 조직을 감독하도록 개편되었다. 그러나 1906년 2월에 統監府가 설치되자 재정고문부는 통감의 감독하에 들어

5) 鈴木武雄, 「李朝末期に於ける朝鮮の財政」, 『朝鮮經濟の研究 第二』, 京城帝國大學法學會 論集 第2册, 東京 : 刀江書院, 1929. 9, pp. 591~592.

갔으며 통감부 財政監査廳의 발족(1907년 3월)과 지방재정감부의 조직개편에 따라 종래의 재정고문부는 점차 통감부에 흡수되었다. 지방재정감부는 통감부 재정감사청의 지방감부와 재정고문부의 지방감부의 이중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는데 일본이 재정개혁에서부터 재정의 집행 및 감독에 이르기까지 모든 실권을 장악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1907년 7월에 한일신협약이 체결되어 통감이 모든 실권을 장악하게 되고 일본인들을 한국관리로 직접 임명할 수 있게 되자 재정고문부 및 재정감사청을 폐지하고 재정고문부 제도를 관세관제도와 통합하여 1907년 12월에 財務監督局制를 시행하게 된 데에서 알 수 있다.

재무감독국은 종래의 지방징세기관 및 재정고문부 지방감부 대신에 내국세무 및 지방재무 감독기관으로서 설치되었으며 그 집행 기관으로서 財務署를 두었다.

라. 貨幣制度의 整理

일본이 조선에 대한 보호권을 확립하였을 당시 조선은 금화본위제의 채택을 위해 1901년에 공포하였던 「화폐조례」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 조례는 「그간 여러 차례 시도한 신식 화폐제도 중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근대적인 화폐제도를 본뜬 것」이라고 평가[6]되고 있으나 러·일전쟁의 발발로 실시되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당시에는 소액 유통되는 화폐를 제외하면 중부 및 서북지방에서는 白銅貨가, 남부 및 동북부지방에서는 葉錢이 유통되고 있었다. 엽전은 주조 발행의 역사가 수백년에 이르고 있었으나 부피가 클 뿐만 아니라 종류도 극히 많고 가치도 적어서 근대적 통일화폐로서는 적합하지 않았다. 또 백동화는 당시 정부의 濫鑄, 민간의 私鑄가 성행하여 위조가 많았기 때문

6) 조기준, 『한국경제사 신강』, 서울 : 일신사, 1994, p. 375.

에 화폐로서의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조선에 자본주의체제를 수립하고 식민지 수탈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화폐제도를 정리하여 새로운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가 되었던 것이다.

일본은 1904년 10월에 일본인 재정고문이 조선에 취임하자 즉시 화폐제도의 정리에 착수하였으며 그 기본방향은 본위화폐를 일본의 그것과 동일하게 함으로써 일본의 상인이나 상품, 자본의 우위를 고정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조선과 일본간의 지역적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전제조건을 마련하는 데 두었다.

이에 따라 화폐정리는 다음과 같은 방침 아래 추진되었다. ① 광무5년(1901년)에 직령 제4호로 발포된 「화폐조례」의 실시를 선언한다. ② 일본화폐의 유통을 인정하여 정부의 收支에 사용하도록 한다. ③ 화폐조례 중 보조화폐의 양식을 개정하여 이를 공포한다. ④ 구백동화의 통용기한을 정하여 교환 및 환수하도록 한다. ⑤ 靑銅貨 및 엽전은 일정한 기한 및 그 유통제한액을 한정한다.

이상과 같은 화폐정리방침에 따라 광무9년(1905) 1월에는 광무5년에 발포한 금화본위제 채택을 내용으로 하는 「화폐조례」의 실시를 선언하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일본통화의 유통을 공인하는 한편 일본계 은행인 제1은행과 국고금 취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중앙은행의 기능을 담당케 하고, 그 발행 은행권을 공사 모든 거래에 유통케 할 것을 공인하는 동시에 본위화폐에 대신하는 兌換券의 효력을 갖도록 하였다. 또한 제1은행과 화폐정리에 관한 계약 및 화폐정리자금 차입계약을 체결하여 同行으로부터 300만円을 차입하여 이를 同行에 교부하는 한편 정리사무를 위탁하였다.

광무9년 7월부터 구백동화의 환수에 착수하고 특히 한성과 기타 지방에 교환소를 설치하여 이를 교환하도록 하다가 隆熙2년(1908) 11월말을 기한으로 하여 그 통용을 금지하도록 하였다. 다만 기한 후 6개월간은 公納에 사용하도록 하고 金庫(第1銀行) 외에 농공은행, 지

방금융조합으로 하여금 매수하도록 하였고 또 지방상인으로 하여금 교환조합을 조직케 하여 수수료를 지급하여 수집하는 방법도 강구하였다. 그러나 그 기한 내에도 시장에 유통하는 구백동화가 많았기 때문에 융희3년(1909) 5월에 공납사용기한을 동년 12월말까지로 연기하고 지방금융조합을 동원하여 기간 종료까지에는 거의 모든 구백동화를 환수하였다.

그러나 엽전은 이를 급격히 정리하게 되면 엽전유통 지방의 민심이 동요될 우려가 있었고 또 실질가치가 대체로 양호하였기 때문에 점진주의를 채택하여 매수와 공금수납 방식을 쓰도록 하였다. 또 엽전 1매당 공정가격을 광무9년 7월에는 1厘 5毛로 정하였으나, 銅 가격의 상승에 따라 융희2년 7월부터는 그 가격을 1매당 2厘로 인상하고 1圜에 한하여 법화로 인정하였다. 이로써 엽전은 보조화폐의 일종이 되었다.

화폐조례에 의해 금화 20圜에서 靑銅貨 半錢에 이르는 9개 종의 새로운 화폐가 제정(광무9년 10월)되었으나 新貨의 주조는 화폐정리에 앞서 정부의 典圜局을 폐지하였기 때문에 일본 大阪 조폐국에 의뢰하여 주조되었다. 금화는 1909년에 조선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설립될 때까지 145만圜을 주조하였으나 거의 모두 正貨準備로 보장되고, 그 밖의 보조화폐는 보급을 위하여 각 농공은행 및 지방금융조합에 이자 없이 대부하여 그 유통을 도모하였다.

마. 金融機關의 擴充

일본은 러·일전쟁 후 조선에서 독자적인 지배권을 장악한 후 금융면에 있어서도 배타적인 지배체제를 확립하는 일에 착수하였다.

이미 1878년에 조선에 진출한 일본의 제1은행을 조선의 중앙은행으로 삼은 데 이어 1905년 9월에는 漢城에 共同倉庫株式會社를 설립케 하여 상품 등을 보관하고 이를 담보로 금융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는

한편 상업어음 할인이나 부동산담보대출도 겸업하도록 하였다. 이어 동년 10월에는 평양에 정부창고를 설립하여 미곡을 담보로 자금을 융자하도록 하였다. 공동창고회사는 그후 인천, 평양, 기타 등지에 출장서를 설치하였고 정부창고는 대구, 충주, 전주, 광주, 수원 등에 설치되어 그 기능이 확대되었다.

또 1905년 9월에는 약속어음조례 및 어음조합조례를 제정·공포하고, 동년 12월에는 먼저 한성의 유력한 상인들로 하여금 어음조합을 조직케 하여 조합원이 발행하는 어음에는 조합이 지급보증을 하게 함으로써 어음의 유통을 장려하였다. 이어 익년 11월에는 약속어음조례를 폐지하고 「어음조례」를 제정·공포하였으나 새로운 조례에서는 '환어음' 및 '수표'를 공인하고 종래 어음조합원에 한하여 어음을 발행할 수 있었던 제한을 철폐하였다.

1905년에 착수한 화폐정리를 전후하여 금융핍박이 생겨나자 1905년 12월에는 일본정부로부터 금융자금 150만円을 무이자로 차입하여 공동창고회사, 정부창고, 보통은행, 농공은행, 어음조합 및 지방금융조합 등에 대한 補助貸下金으로 충당하도록 하였다.

일본이 고문정치하에서 조선의 재정정리에 착수하였던 당시에 조선에는 大韓天一銀行(1899년 설립)과 漢城銀行(1903년 설립)이 있었고 1906년에 韓一銀行이 설립되었다[7]. 그러나 한일은행을 제외한 2개 은행이 1905년에 발생한 경제공황으로 경영난에 빠지게 되자 1906년 3월에는 은행업에 대한 度支部의 강력한 통제를 내용으로 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은행조례」를 발포하는 한편 일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이들 은행의 구제에 나섰으며 이를 통하여 조선계은행에 대한 일본의 지배를 확대·강화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함께 1906년 3월에는 농업 및 공업의 개량·발달을 위한 대부

7) 度支部, 『韓國財政施設綱要』, 漢城, 1910, p. 197에 의하면 漢城銀行은 1899년(光武3年)에 第1銀行 감독하에 설립되고 그후 1903년(光武7年) 2월에 公立漢城銀行으로 개편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를 목적으로 장기의 부동산저당대부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농공은행조례」가 공포되었다. 이에 따라 1906년 6월부터 漢城을 위시하여 各道에 본점이 설치되었다. 그러나 당초 설립자금으로 일본 興業銀行으로부터 대부받기로 되어 있던 35만円을 일본의 위약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되자 그 설립자금을 조선인 실업가나 농공인에게 의존하게 되었다. 그러나 주식응모가 매우 저조하여 농공은행의 합병이 불가피하게 되어 1908년 8월에는 11개 농공은행이 6개로 줄었다. 뿐만 아니라 이 은행은 조선인의 자본으로 설립되었으나 운영은 일본인만이 임명될 수 있었던 지배인의 수중에 넘어가는 식민지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또한 1907년 5월에는 지방소농민에 대한 금융을 통하여 농업의 발달을 도모하는 사단법인인 地方金融組合規則이 공포되었다. 이 조합의 사업은 농업상 필요한 자금의 대부, 생산한 곡물의 창고 보관, 종묘·비료·농구 등 농업상 필요한 재료의 분배 또는 대여, 생산물의 위탁판매로 규정되었다. 조합에는 조합원이 선출한 조합원 1명과 약간명의 평의원을 두고, 정부의 보조금을 받은 조합은 탁지부 대신이 추천한 이사 1명으로 하여금 常務를 집행하도록 하였다. 이 지방금융조합은 官選理事制의 시행으로 전적으로 일본인에 의해 운영되었고 상호금융기관으로서 기능했다기보다는 정부대하금으로 최고 35~45%에 달하는 고리로 농민을 착취하였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8].

끝으로 일본은 1909년 6월에는 1905년부터 중앙은행의 기능을 담당하여 왔던 제1은행으로부터 은행업무의 거의 전부를 무상으로 한국은행에 양도한다는 각서를 받은 후 동년 7월에 구한국정부와 일본정부 사이에 「한국중앙은행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고, 「협정」과 같은 날짜(1909년 7월 26일)로 공포된 「한국은행조례」에 의해 구한국정부는 한국은행 설립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일본정부에 위탁하였다. 이에

8) 權斗榮, 「日帝侵略下의 韓國金融」, 『日帝의 經濟侵奪史』, 日帝下의 韓國研究叢書 II, 亞細亞問題研究所, 서울 : 민중서관, 1971, p. 487.

따라 1909년 10월 29일에 개최된 창립총회에서는 구한국정부가 임명하는 형식으로 제1은행 한국총지점 지배인이었던 일본인이 총재로 임명되어 「한국은행」이 발족하였던 것이다.

2. 武斷統治期

가. 朝鮮總督府의 設置와 憲兵政治의 特性

일본은 1910년 8월 29일에 조선을 식민지화한 후 조선에 총독부를 설치하고 조선총독을 두었으며 조선총독으로 하여금 위임의 범위 내에서 육해군을 통솔하고 일체의 정무를 통괄하도록 하였다. 또 총독은 일본천황에 직접 예속되고 그 직권 또는 특별한 위임에 의해 조선총독부령을 공포하여 사법처분을 할 수 있고, 법률을 요하는 사항은 조선총독의 命令으로 규정할 수 있었다. 이 명령은 制令이라고 불리었고, 총독의 제령 공포권은 조선을 합병한 다음해인 1911년 3월부터 시행되었으나 이로써 조선총독은 조선의 사법·행정·입법의 三權을 한손에 장악하게 되었다. 더욱이 총독은 陸海軍大將으로서 補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같이 조선을 식민지화하되 일본의 헌법을 시행하지 않고 육해군대장인 총독에 모든 大權을 위임하였던 것은 일본이 러·일전쟁 때부터 조선에서 실시하여 왔던 헌병정치를 계속하고자 하는 속셈에서 비롯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악명이 높았던 헌병정치란 조선에 주둔하였던 헌병(장교, 준사관, 하사 상등병)으로 하여금 재직상태에서 경찰관의 직무를 집행케 하였던 것을 의미하고 있으나 조선주둔헌병의 長인 陸軍將官으로 보하였던 警務總長이나 각 道憲兵의 長인 憲兵佐官(領官)으로 보하였던 警務部長이 각기 그 직권 또는 위임의 범위 내에서 명령을 공포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래와 같은 광범위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었다.

헌병정치의 본질상 당시의 헌병 및 경찰은 諜報活動과 義兵의 토벌을 위시하여 장교·하사의 檢事事務 대리, 범죄의 즉결, 민사소송의 조정 그리고 집달리의 업무에서부터 노동자의 단속, 在留禁止者의 단속, 외국여권 사무 및 여행자 보호, 국고금 및 공금의 경호 등 경찰사무와 함께 種痘의 실시, 屠獸의 검사, 수출하는 소의 검역, 묘지의 단속 등 위생에 관한 사무까지도 수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도로의 개수, 殖林 및 농사의 개량, 호적 사무 등 행정을 지원하는 업무도 담당하였으며 그 밖에 지방에 따라서는 陸接 국경세관사무나 산림감시, 어업단속, 우편물 보호 등의 업무도 맡았다. 이와 함께 僻地에서는 일본어의 보급이나 부업의 장려, 법령의 보급, 납세의 권고, 雨量水位의 관측, 害獸의 驅除 등의 업무도 수행하였다[9].

러·일전쟁 이래 조선에서 공포의 대상이 되었던 '헌병정치'를 제도화하였던 초대 조선총독 데라우지(寺內正毅)는 제3대 통감으로 조선에 부임(1910. 5)하자 조선의 합병을 위해 먼저 『황성신문』·『대한민보』·『대한매일신보』 등 반일신문[10]을 폐간하고, 합병직후에는 정치결사의 해산과 정치집회 및 강연회 등의 금지에 이어 조선의 민족주의 사상을 높일 우려가 있는 책과 잡지 등에 대해 대대적인 禁書와 焚書를 단행하였다. 또한 1911년에는 범죄를 날조하고 악독한 고문을 가하였던 것으로 악명이 높았던 105인 사건을 조작하였고, 1912년에는 5만명 이상의 조선인을 하찮은 언동을 구실로 검거하여 무단정치의 진면목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이같이 일본은 조선을 식민지화한 후 악명이 높았던 헌병정치를 감행하면서도 식민지 수탈을 위한 경제침략에는 가일층 박차를 가하였다. 토지조사사업의 실시(1910. 3~1918. 11)나 會社令의 공포(1910. 12), 森林令의 공포(1911. 6), 漁業令의 공포(1911. 6), 銀

9) 山辺建太郎, 『日本統治下の朝鮮』, 東京 : 岩波書店, 1971, p. 17.
10) 가장 강경한 反日新聞이었던 『大韓每日申報』는 이를 매수하여 御用新聞인 『京城日報』로 개조하였다.

行令의 제정·실시(1912. 10) 그리고 鑛業令의 제정(1915. 12) 등 일련의 조치는 식민지 조선의 자본주의적 재구성을 통하여 일본의 國益을 극대화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나. 朝鮮總督府 特別會計의 設置와 財政運營方針

1) 朝鮮總督府 特別會計의 設置

일본은 구한국을 합병하는 동시에 재정상의 긴급처분을 발동하여 구한국정부에 속하는 세입세출예산은 당분간 종전대로 답습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구한국정부의 隆熙4年度(1910) 예산의 현재액(세출에서는 예산잔액)이 총독부 예산이 되었다.

이어 동년 9월 30일에는 일본의 「회계법」을 조선에 시행하는 동시에 조선총독부의 회계는 그 세입을 갖고 세출에 충당하되 부족분은 일본정부의 일반회계로부터 보충한다는 경비지변의 대강을 緊急勅令으로서 공포하였다. 이로써 조선총독부특별회계가 설치되고, 합병당시 재정상의 긴급처분에 의해 답습된 구한국정부의 예산은 1910년 9월 30일에 회계연도가 종결되도록 정하였다.

이와 함께 종래 이미 일본정부의 사업으로서 경영하고 있었던 철도·삼림·통신사업이나 평양광업소사업 및 공채금특별회계에 대하여는 1910년도분에 한하여 종전의 예에 따르기로 하고 구한국정부의 채권 및 채무는 조선총독부 특별회계에 이관하였다.

2) 朝鮮總督府 財政의 運營方針

조선총독부특별회계를 설치한 당시에는 조선의 세출은 그 세입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족분은 일본 일반회계의 보충금으로 충당한다는 대강을 밝힌 바 있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地稅의 증징, 市街地稅의 부과, 한두 개의 소비세 신설로 세입을 늘려 일본 일반회계로부터의 보충금을 매년 100만円 내지 200만円씩 체감하여

1918년에는 전폐하도록 하는 5년간(1914～1918)에 걸친 財政獨立計劃을 입안하여 1914년부터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1914년도에는 지세율을 개정하여 약 40%를 증징하고, 1919년도에는 토지조사가 끝남에 따라 1914년도 예정액의 약 2배의 增收를 전망하였다. 또 1915년도에는 일부 하급 朝鮮酒를 제외하고 酒類에 소비세를 부과하고, 1918년도 내지 1921년도에 그 세율을 인상하도록 계획하였다. 또한 煙草稅에 있어서는 1914년도에 새로이 製造稅를 부과하는 한편 販賣稅 및 耕作稅를 개정하고, 이에 더하여 제조연초에 從價 10%의 소비세를 부과하였으며 1917년도에는 세율을 종가 20%로, 1920년도에도 종가 30%로 높이는 방침을 수립하였다. 이와 함께 지세의 증징에 대응하여 驛屯賭料(국유지 소작료)의 인상을 1914년도와 1919년도에 실시하도록 계획하였다.

이상과 같은 재정독립계획은 기존계획 이외에 약간의 新稅를 창설한 것을 제외하고 대체로 예정과 같이 진척되어 1919년도에 이르러서는 조선의 재정이 완전히 자립자영하는 단계에 도달하게 되었다.

다. 土地調査事業의 實施

토지조사사업은 통감정치 시대였던 1910년 3월에 구한국정부로 하여금 착수하게 하였던 것인데 조선총독부가 동년 9월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하여 본격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그 목적은 조선에 진출한 일본인이 토지를 소유할 수 있게 하고 토지의 貨幣化를 촉진하기 위해 토지소유권을 법적으로 확정하고자 하는 데 있었다. 토지조사사업은 토지소유권의 조사와 토지가격의 조사 그리고 地形·地貌의 조사로 나누어 실시되었으며 특히 토지소유권조사는 신고주의를 채택하였다.

8년 8개월에 걸쳐 실시된 토지조사사업은 토지소유권을 법적으로 확립하는 한편 전국토의 지가를 통일적으로 조사함으로써 지세부담의 공평을 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또한 필지마다 그 기초가 되는

토지대장이나 地籍圖 등을 작성하고 전국에 걸쳐 地形圖도 작성하였다.

그러나 토지조사사업은 경작자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봉건적 토지소유자인 收租權者의 토지소유권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경작자는 세습적인 토지 점유권을 상실하고 단순한 계약 소작인으로 전락하였다. 즉 소수의 봉건지배층을 지주로 만들고 다수의 농민을 소작인으로 전락시켰던 것이다. 더욱이 驛屯土나 삼림 등은 모두 국유지로 편입되고, 신고를 하지 않거나 私有의 사실을 증명할 수 없는 토지는 국유화되어 경작자인 농민은 토지를 상실한 반면에 총독부재정은 그 기초가 확대되었던 것이다.

특히 토지소유권이 확립되면서 당시 자금과 권력의 배경을 갖고 있었던 일본인의 수중에 토지가 집중된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인이 조선에서 지주가 된 것은 토지매입을 통해서가 아니라 조선인에게 돈을 빌려 주고 그 저당으로 잡은 토지를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취득하거나 또는 대금을 미끼로 사취한 것이었다는 당시 경험자의 많은 이야기가 기록에 남아 있다. 더욱이 일본은 1908년에 일본정부의 發案으로 토지매수와 이민사업에 경영의 중점을 둔 東洋拓殖株式會社를 구한국정부와 합작으로 설립하여 1909년부터 영업을 시작하였다. 이 회사의 소유지는 동년말에 구한국정부 출자토지를 포함하여 4,784町步에 불과하였던 것이 1910년에는 1만 1,035정보로 늘어나고 1920년말에는 7만 7,297정보로 늘어났다. 이같이 소유지가 늘어난 것은 토지조사사업을 계기로 하여 일단 국유지로 편입된 「驛屯土」 등의 토지가 불하의 형식으로 일본인 회사나 일본인 지주에게 넘어가고 토지회사인 동양척식주식회사가 貸金의 저당물인 토지를 취득한 데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라. 會社令의 公布

1910년 10월에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화한 직후에 제정·공포된 회

사령은 회사의 설립을 조선총독의 허가사항으로 정하고 조선총독에 의한 「사업의 정지·금지, 지점의 폐쇄 또는 회사의 해산」을 규정하였다. 이는 조선인의 민족자본을 억제하는 반면에 일본기업의 조선진출을 장려하여 일본인에 의한 경제적 지배를 확립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회사령이 공포된 후 1920년에 철폐될 때까지 일본인 기업이 그 수에 있어서나 자본금의 규모에 있어서 압도적으로 증가하였으므로 그러한 목적은 충분히 달성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선총독부 자료에 의하면 1911~1920년 기간중 설립된 일본인 회사수는 398개사이고 자본금총액이 2억 3천여만円, 평균자본금 57만여円에 달하였으나 조선인 회사는 129개사에 자본금 총액 4,500여만엔에 불과하였다. 그 밖에 외국인 회사는 1개사에 자본금은 15만円이었다[11].

마. 森林令의 公布

1908년 1월에 구한국정부는 삼림법을 공포하여 임야를 帝室林,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으로 구분하고, 삼림소유에 대하여는 신고주의를 채택하여 삼림법 시행일부터 3년 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 모두 국유림으로 간주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無主公山과 같은 부락의 공유재산인 관습에 따른 공동소유의 산림(공유림)은 문서에 의해 그 소유관계를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국유로 처리되었다.

조선총독부는 구한국의 林政을 계승한 보다 강권적인 삼림령을 1911년 6월에 공포하여 9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그 결과로 조선 전국토의 70% 이상을 점하는 광대한 산림이 국유림으로 편입되어 임야소유에 관한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조선총독부는 국유림

11) 小林英夫(編), 『植民地への企業進出－朝鮮會社令の分析－』, 東京：柏書房, 1994, p. 109.

구분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1918년에는 조선임야조사령을 공포하여 신고주의에 의거하되 緣故를 인정하여 書證에 의한 신고에 의해 사유권을 확정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삼림령에 있어서도 造林貸付制度를 두어 국유림에 편입된 林地를 일본인에게 대여하여 조림을 시킨 후 그 일본인에게 양여하도록 하였다. 표면상 이 제도는 일본인이 아니더라고 적용되도록 되어 있었으나 실제 국유림의 대여를 받은 사람은 일본인뿐이었다.

바. 漁業令의 公布

일본은 구한국정부와 이미 1904년에 조선의 모든 연안과 일본해 연안 및 九州 일원에서 상호간에 완전히 어로를 할 수 있는 협정을 체결한 바 있었으나 1908년에는 통감정치하에 '한국어업법'을 제정하여 면허·허가·신고어업의 세 가지 제도를 창설하고 어업단속에 나섰다.

일본은 조선을 식민지화한 후 1911년 6월에 자국의 어업법을 본떠 새로운 어업령을 제정·공포하고 다음해 4월부터 이를 시행하였다. 이 어업령은 종래의 한국어업법과 비교할 때 첫째로 면허어업으로서 전용어업제도를 창설한 것과 둘째로 면허어업에 대한 보호구역을 설정한 것, 셋째로 어업조합 및 수산조합제도를 창설한 것이 특징적이었다.

專用漁業制度란 일정한 지역 내에 거주하는 연안어업자에게 특정 水面의 전용권을 공유형태로 부여하여 공동이익을 증진시키는 제도를 말하지만 이 제도의 도입에는 당시 일본이 추진하고 있었던 일본인의 移住漁村 건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의도가 있었던 것이다.

다음에 보호구역의 설정이란 면허어장에 있어서 어업권 행사를 방해하거나 또는 어업권의 가치를 손상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 내지 제한하는 구역의 설정을 의미하고 있다. 이러한 보호구역의 설정으로 풍요한 어장과 왕실소유 어장은 일본인의 수중에 들어가게 되고 조선어민은 그러한 어장을 상실하게 되었던 것이다.

어업조합 및 수산조합제도의 창설은 조선에 있어서 수산업의 발전을 기하려는 조치였다고 볼 수 있으나 그 실권을 장악한 것은 일본인 어민이었기 때문에 어업권의 취득 내지 대부, 어업에 관한 조합원의 공동시설 설치, 어업자금의 대부 등에 있어서 일본인 어민이 보다 많은 이익을 얻게 되었으리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근대적인 대규모어업은 일본인 어업자에게만 편중적으로 허가하여 주었기 때문에 1918년에는 일본인이 5戶 이상 거주하는 이주어촌은 약 38개, 이주어업자가 근 1만 3천명에 달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조선인 출어선의 생산성(1척당 어획고)은 1912년에 일본인 출어선의 71.5%에서 1920년에는 33%로 크게 떨어졌던 것이다.

사. 銀行令의 發布와 金融機關의 整理

일본은 1910년 8월에 조선을 합병하자 총독부제령 제1호로 「한국은행조례」는 그 효력이 계속되도록 하였으나 다음해 3월에 「조선은행법」을 공포하여 동년 8월 15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

한편 한일합병 후에 조선인과 일본인의 합동경영에 의한 보통은행의 설립이 늘어나게 되자 은행에 대한 종래의 감독 및 준거법을 통일할 필요가 생겨 1912년 10월에는 「銀行令」을 제정(制令 제5호)·공포하였다[12]. 이에 따라 은행의 설립은 「회사령」, 그 영업의 면허 및 감독은 「은행령」의 적용을 받게 되었고 은행의 신설·합병이 추진되었다. 이 은행령의 주된 목적은 조선인에 의한 보통은행 설립을 억제하는 데 있었으며 1912년에서 1916년에 이르기까지 조선인만에 의한 은행설립은 없었으나 조선인과 일본인의 합작출자에 의해 설립된 보통은행은 4개, 일본인 단독출자로 설립된 보통은행은 4개에 이르렀다.

12) 그때까지 日本人 設立의 銀行과 朝鮮人 設立의 銀行이 각각 별개의 法規로 규제되어 있었으나 이를 하나의 법규로 규제하도록 하였다.

다만 1912년에 조선계 은행인 대한천일은행이 화폐정리에 따른 과도기적 금융기관이었던 한성창고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여 朝鮮商業銀行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였다.

또한 화폐정리 후의 일시적 금융경색을 완화하기 위하여 과도기적 시설로 설치되었던 지방의 공동창고나 어음조합도 농공은행과 지방금융조합에 흡수되어 갔으나 1918년 11월에는 朝鮮殖産銀行을 설립하여 각 농공은행을 합병하고 지방에 소재하는 수백에 달하는 금융조합의 중추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된 조선식산은행은 그 자본금이 「조선은행」이나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설립자본금과 같은 1천만円이었고 산업금융기관으로서의 특수업무와 함께 보통은행의 일반업무도 겸하였다. 그러나 이 은행은 농공은행과 달리 조선총독부의 정책금융기관으로 발족하여 제도적 및 행정적 지원을 받았다.

그리고 농공은행의 외곽기관이었던 지방금융조합은 1914년 5월에 종래의 「지방금융조합규칙」이 「지방금융조합령」으로 바뀜에 따라 ① 조선에 있는 일본인 소농의 조합가입이 허용되고 ② 조합원의 출자금제도를 도입하였으며 ③ 보통은행과 같이 예금을 취급할 수 있게 되었다. 그후 1916년 9월과 1917년 12월에 각각 지방금융조합령을 부분적으로 개정하여 비조합원도 조합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또 장기대부도 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1918년 6월에는 지방금융조합에 대한 획기적인 개정이 이루어졌다. ① 지방금융조합이란 명칭을 금융조합으로 바꾸고 ② 촌락조합 이외에 府 또는 총독이 지정하는 시가지에 조합을 설치할 수 있게 하였으며 도시조합에는 어음할인업무를 겸하도록 하였다. ③ 조합원의 자격범위를 확대하였다. 즉 종래에는 농업을 경영하는 자에 한하여 조합원이 될 수 있고 또 거주연한에 대한 제한도 있었으나 이를 모두 철폐하였다. ④ 대부한도를 확장하여 촌락조합의 담보대부는 400円, 도시조합은 500円으로 정하고, 도시조합은 당좌예금도 취급하게 하였

다. ⑤ 이사의 관선제를 일부 완화하였다. 즉 일부 조합에서는 조합총회에서 조합원 중 한 사람을 이사로 선출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이는 주로 일본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던 도시조합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다.

이 개정에서 각 道를 구역으로 하는 금융조합연합회가 설립되었다. 각 촌락조합 및 도시조합을 회원으로 하는 이 연합회는 소속조합에 대한 융자를 담당하고 그 자금은 정부의 低利資金과 조선식산은행의 차입금으로 충당하도록 하였다. 또 연합회의 이사장 및 이사는 총독이 임명하였다. 요컨대 이 연합회의 업무에 대한 감독은 총독부가 직접 맡고, 자금의 융통은 주로 조선식산은행으로 하여금 관장하도록 하여, 사실상 조선식산은행이 연합회의 중앙회와 같은 기능을 하게 됨으로써 이 분야에 있어서의 금융기관의 계통은 거의 완전한 정리·통일을 보게 되었다.

끝으로 1918년 3월에는 일본의 「貨幣法」을 조선에 시행하도록 하고, 구한국화폐는 1920년 12월말을 기한으로 통용을 금지하도록 하여 화폐의 통일을 기하였다. 다만 엽전에 한하여는 조선의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당분간 종전과 같이 통용하도록 하였다.

아. 鑛業令의 公布

구한국정부가 광업에 관한 법규를 마련한 것은 광무11년(1907) 7월에 鑛業法 및 砂鑛採取法을 제정·공포한 때부터이다. 이 법에 따라 광업 및 사광업의 허가와 취소를 정부가 관장하고 허가는 出願順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내·외국인에게 균등한 광업권 향유의 기회가 부여되었다.

일본은 합병 후에도 이 법령의 효력을 계속 인정하였으나 1915년 12월에 새로 광업령을 제정·공포하여 익년 4월 1일부터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광업령 실시 이후 일본인 이외의 광업권 취득은 금지되었

고, 또 구법에 규정이 없는 새롭게 발견된 주요 광물은 모두 동령에 따르도록 하였다. 또한 이 광업령은 1918년 12월에 중요광물로서 그 산출을 보호·장려하여야 할 금·은·연·철·사금 및 사철에 대한 광업세를 면세하도록 개정되었다.

이러한 광업령의 실시에 따라 외국인에 의한 광업은 점차 쇠퇴하고 일본인의 광업은 독점적인 성장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다.

3. 植民地統治 擴充期

가. 統治政策의 轉換이 意味하는 것

3·1운동(1919) 후 일본의 식민지통치에는 표면상 몇 가지 변화가 있었다. 총독부관제를 개정하여 종래 총독의 임용은 武官에 한하던 제한을 철폐하고 또 재래의 헌병경찰제도를 폐지하여 보통경찰제도를 도입하고 관리나 교원 등의 制服·帶劍도 폐지하였다. 이와 함께 조선인 文官에 대한 차별대우도 철폐하고 조선인 인재등용의 범위도 확대하였으며 공립학교 교장에 조선인들을 임명하기도 하였다. 또 1919년 12월 이후 조선인이 경영하는 한글신문인 『朝鮮日報』와 『東亞日報』가 창간되었고, 1920년 10월부터 시행된 지방제도의 개정으로 도·부·면·학교에 자문기관인 評議會와 協議會가 창설되었다. 이 중 부·면협의회의 회원은 도지사 등이 임명하고 도평의회는 정원의 3분의 1을 총독이 임명하되 나머지 회원은 부·면협의회 회원 중에서 2배수를 公選하여 그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였다.

3·1운동 후 조선총독이 교체됨에 따라 헌병경찰에 의한 음습한 무단정치가 이른바 유연한 「文化政治」로 전환되었다고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官制上 總督을 文官으로 임명하도록 개정한 것은 사실이지만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군에 무조건 항복하여 조선이 해방될 때까지 계속 육해군 대장급만이 총독이 되었다. 또 헌병경찰제도를 폐

지한 것도 사실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헌병이 경찰관으로 전직할 수 있게 되어 있었고, 일본에서 채용한 경찰관을 포함하여 약 1만명의 경찰관을 증원하여 대체로 부·군에 경찰서 하나, 각 면에 주재소 하나씩을 두되 필요한 장소에는 2개 이상의 경찰서 또는 주재소를 두도록 하였다. 또한 지방자치에 대한 연습과정이라는 명분으로 설치된 도평의회 등 각 지방단체의 자문기관은 그 평의회원이나 협의회원을 외관상 공선하되 실질적으로는 친일 조선인을 임명하는 기만적 술책에 의해 구성하였다. 뿐만 아니라 『東亞日報』나 『朝鮮日報』 등 한글신문의 발간을 허용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조선인의 언론을 통제하기 위한 방편이었고, 엄격한 검열제도를 마련하여 용서없는 삭제·압수·정간 처분이 계속되었다.

그런 점에서 이른바 「문화정치」라는 것은 본질적인 정치개혁이 아니라 관리나 교원의 제복과 대검을 폐지한 것과 같은 표면상의 개혁에 불과하였고, 私有墓地의 설치를 골자로 하는 묘지규칙의 개정(1919. 9)이나 笞刑令의 폐지(1920. 3), 교육제도의 개혁(1922. 2) 등이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이 식민지정책을 착실하게 시행하기 위한 회유책이라고 할 수 있다.

나. 補充金制度의 復活과 그 代價

일본은 조선을 식민지화한 후 얼마되지 않아서 재정독립계획을 수립하여 1919년도에는 일본정부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되는 보충금을 받지 않게 되었으나 3·1운동 후 회유·유화정책을 지향하는 「표면상의 개혁」을 추진하게 됨에 따라 1920년도부터 일본의 일반회계로부터의 보충금을 부활시켰다. 그러나 이와 함께 1920년 7월에는 소득세(법인소득세에 한함)를, 1921년 4월에는 取引所(去來所)稅를 각각 도입한데 이어 1927년에는 일본의 대규모 세제정리에 호응하여 조선에서도 영업세, 자본이자세를 신설하여 종래의 地稅와 함께 收益稅體系를 정

비하는 한편 酒稅나 사탕소비세를 증징하도록 하였다.

한편 조선을 합병할 때 일본은 구한국정부가 시행하던 대외관세를 10년간 거치한다고 선언한 바 있었으나 그 기한이 1920년 8월 28일에 만료됨에 따라 일본의 관세제도를 조선에서도 시행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조선과 일본간의 관세를 폐지하기로 한 방침에 따라 일본측의 移入稅는 즉시 폐지하였으나 조선측의 이입세는 재원보전을 위하여 당분간 존속하도록 하였다. 그 밖에 조선에 별도로 出港稅를 신설하여 조선과 일본간의 소비세 및 관세의 차이를 조절하도록 하였다.

또한 세입의 증가를 도모하기 위하여 1921년 4월부터 專賣局을 설치하여 담배·소금·인삼·아편의 專賣 내지 官營을 실시하였다. 다만 담배는 정부의 제조설비가 완성된 1930년부터 완전한 전매제도가 실시되었다.

1927년에 제1차 세제정리가 실시된 후 골패세(1931년 4월)나 청량음료세(1934년 3월)의 도입이 있었으나 1934년에는 개인소득에 대하여도 과세하는 소득세령의 개정, 상속세의 도입, 지세의 경감, 주세의 증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2차 세제정리가 실시되었다. 이와 함께 1935년 4월에는 수출공업 및 군수품공업의 호황에 대해 임시이득세를 과세하도록 한 일본의 개혁에 상응하여 조선에서도 임시이득세를 창설하였다.

일반회계로부터의 보충금이 부활된 1920년도의 그 규모는 1천만円이었으나 1936년에도 1,290만円 수준에 머물렀으며 조선총독부의 조세수입은 같은 기간중 3,484만円 수준에서 7,539만円으로 2배 이상이 늘어났다. 또한 조선총독부의 관업·관유재산수입은 1920년도에 2,673만円에 달하였으나 1936년도에는 1억 9,814만円으로 7.4배 이상으로 늘어나 歲入總額의 51.5%를 점하였다.

한편 이른바 「문화정치」를 표방하였던 1920년도 조선총독부 세출예산에 있어서도 警務費가 일약 4배의 규모로 늘어나고, 1919~1931년 기간중에는 약 4.2배가 되었으나 동 기간중 교육비는 3.4배가 늘어

난 데 그쳤다. 그런데 이 기간중 총독부 세출총액은 3배로 늘어났으며 관업비는 약 4.9배의 규모로 팽창하였다. 이러한 관업비의 증가는 담배전매의 실시(1921년)와 1917년 7월에 남만주철도주식회사에 위탁하였던 조선의 국유철도에 관한 업무를 다시 총독부직영으로 환원(1925년 3월)한 데에 따른 경영비의 증가에 기인하는 것이었다.

다. 産米增殖計劃의 得失

1914년 7월에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함으로써 당시 공업면에서 아직 후진국이었던 일본에도 군수품의 주문이 쇄도하여 전쟁경기에 들끓게 되었다. 즉 수출의 신장과 해운의 활황 그리고 외화수입의 증가로 일본경제는 전쟁 '붐'을 맞아 공업중심의 경제구조로 변화하였다. 그러나 전쟁으로 인한 일본경제의 번영은 다른 한편에서는 큰 희생도 수반하였다. 그러한 예 중의 하나가 바로 1918년에 벌어진 '쌀소동'이었다. 이 소동은 1917년에 1석당 20円하던 쌀값이 다음해 여름까지 1석당 40円으로 폭등한 것을 계기로 하여 한 지방(富山縣) 일각에서 벌어진 소동이 神戶, 大坂, 東京에까지 번져 군중이 미곡상을 습격하여 쌀을 약탈하였던 사건이었다. 더욱이 이 소동에 가담한 군중의 수는 40만 내지 50만명에 달하였다.

이러한 사건 이후 일본이 조선에서 쌀을 증산하여 일본에 移出함으로써 '쌀소동'의 재발을 억제하고자 계획한 것이 「산미증식계획」이었다.

이 사업은 당초 灌漑施設을 개선하여야 할 畓, 田의 지목변경으로 조성하여야 할 畓, 황무지, 간석지 등 80만 町步에 대하여 1920년도 이후 30년에 걸쳐 실시하되 우선 제1기 계획으로서 15년 동안 총공사비 1억 6,800만円을 투자하여 약 40만 정보에 대해 개량을 실시하여 920만석의 산미증식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는 1920년도부터 시행되었으나 계획에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1925년말에 이르러서도 6개년간의 토지개량 면적이 9만정보에 불과하였다. 이에 따라 1925년에는 종래의 계획을 수정하여 1926년도 이후 12년(완성까지는 14년)간에 ① 기존 畓의 관개개선 19만 5천정보 ② 田의 畓 전환 9만정보 ③ 개간·간척 6만 5천정보 등 도합 35만정보의 토지개량으로 약 280만석의 산미증식을 도모하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이와 함께 우량품종의 종자갱신과 施肥의 증가를 골자로 하는 耕種改善計劃의 실시로 192만석, 기존 답 139만정보에 대한 농사개량으로 344만석의 증산을 도모하여 도합 816만석의 산미증식을 목표로 하였으며 이 중 500만석을 일본에 이출할 계획이었다.

총독부는 토지개량사업을 대행시키기 위해 1935년에 동양척식회사에 토지개량부를 신설하는 한편 일본정부의 종용에 따라 자본금 500만円의 조선토지개량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각각 사업의 절반씩을 분담·실시하도록 하였다. 그후 1931년 8월에는 동양척식회사의 토지개량부를 폐지하고 조선토지개량회사에 사업을 전담시켰다. 이 회사는 산미증식계획을 실시하기 위한 측량·설계에서부터 工事를 담당하고 공사완성 후에는 토지의 매매와 경영, 지주와 농민이 설립한 水利組合의 위임사무까지 담당하였다. 이 회사의 주식은 동양척식주식회사와 조선식산은행이 인수하였으며 그 자금은 일본대장성 예금부가 저리로 융자한 것에 兩社가 이자를 얹어 출자하였다.

이같이 일본은 막대한 국가자본을 투입하여 産米增産更新計劃을 추진하였으나 그 목적은 첫째로 일본의 식량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둘째로 조선 내의 식량수요 증가에 대비하며, 셋째로 조선농가경제의 향상을 도모하는 데 두었다. 그러나 첫째 목적만 달성되었을 뿐 나머지 목적은 달성되지 않았다. 조선 내에서 쌀의 對日本 移出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만주로부터 수입한 좁쌀 등 잡곡의 소비가 늘어나고, 수리조합사업으로 토지소유의 集積이 진행됨에 따라 토지가 없는 농민의 수도 비약적으로 늘어났다. 뿐만 아니라 1932년경부터 일본의 米價를

유지하기 위해 조선이나 대만으로부터의 쌀 移入을 억제하라는 요구가 일본의 지주로부터 제기되었으며 마침내 1934년에는 산미증식계획 자체가 중지되었다.

이로써 조선의 산업구조를 쌀 중심의 單種耕作型으로 확립하려던 일본의 구상은 자본주의 경제의 성장과정에서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다. 산미증식계획은 쌀의 수출상, 좁쌀의 수입상, 특권회사인 조선토지개량주식회사와 이 회사의 공사를 청부 맡았던 건축업자, 이자를 붙여 자금을 토지개량회사에 대출하여 준 조선식산은행과 동양척식주식회사에는 막대한 이득을 가져다 주었던 반면에 수리조합을 지배하고 있었던 일본인 지주가 수리조합비(水稅)나 개량공사의 수익자부담금을 대개 조선농민에게 전가하였기 때문에 조선농민은 큰 부담을 안게 되었다.

라. 會社令의 廢止와 朝鮮의 工業化

1910년 12월에 공포된 조선회사령은 민족자본을 억제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던 制令이었으나 그렇다고 회사령을 시행한 초기부터 일본공업자본의 조선진출을 크게 고무하였던 것은 아니다.

일본의 공업화 자체가 제1차 세계대전(1914~1918년)의 산물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조선은 일본을 위한 식량 및 원료 공급지인 동시에 일본상품의 시장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새로 일어난 공업은 양조·연초·피혁·펄프·성냥·방직·제당업 등 중소규모의 경공업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 총독부의 기록에 의하면 1918년에 자본금이 50만円을 초과하는 제조공장은 6개사에 불과하였다[13].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 후 일본경제가 戰後恐慌에 빠지고 수출품을 제조하던 중소기업이 불황을 격게 되자 이들 군소자본을 조선에 진출

13) 朝鮮總督府, 『施政三十年史』, 京城, 1940, p. 113.

케 하여 회생을 도모하여야 할 필요가 증대되었다. 이에 따라 1920년 4월 1일을 기하여 일본 내에서도 비난과 비판이 자자하였던 '회사령'을 철폐하였다. 다만 거래소·보험업·무진업·유가증권매매 중개업만은 계속 종전의 회사령을 적용받도록 하였다.

회사령이 철폐된 후 20년대에는 조선에도 많은 근대기업이 설립되었다. 이는 1919년부터 시작된 전후 경제공황에 더하여 1929년 9월의 '관동대지진'으로 공황이 확대되어 많은 중소상공업이 도산되었던 반면에 은행 및 기업의 집중과 재벌의 형성이 촉진되는 가운데 일본이 불황타개의 일환으로 유휴자본을 조선에 진출하도록 한 것과 조선에서도 토착자본에 의한 기업투자가 늘어났던 데 그 원인이 있었다. 총독부자료에 의하면 제1차 세계대전 후 대소공장이 현저하게 늘어나 1927년 현재 자본금이 50만円 이상인 각종 제조공장은 74개에 달하게 되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14]. 그러나 1930년도 회사실태에 의하면 광업 및 제조업 부문의 1社당 평균자본액은 14만 5천円에 불과하였으며 이 시기에 설립된 제조공업도 대부분이 소규모 기업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조선에서 본격적으로 중공업이 건설되기 시작한 것은 일본이 1931년에 만주사변을 일으켜 滿州國을 세우고 이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기 시작한 이후였다고 할 수 있다. 당시 조선에는 중요 산업통제법이 실시되지 않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임금도 쌌기 때문에 일본의 중공업자본이 조선에 진출하게 되었던 것이다. 물론 만주사변 이전에도 1927년 5월에 설립된 조선질소비료주식회사는 부전강전력개발로 얻은 전력을 이용하여 흥남에 질소비료를 생산하는 대화학공장을 건설한 바 있으나 일본의 재벌자본이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시작한 것은 만주사변 이후의 일이었다.

이에 따라 조선경제는 식민지형 米作을 중심으로 하는 단일 농경제

14) 前揭書, p. 183.

로부터 광공업 중심으로 재편성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4. 侵略戰爭期

가. 大陸兵站基地 構想과 朝鮮經濟의 再編成

1936년 10월에 총독부가 개최한 조선산업경제조사회는 조선의 산업경제 개발에 관한 일반방침으로서 「일본과 만주의 一體를 강화한다는 국책상 조선이 지리적으로나 또 자원면에서 맡아야 할 중책에 비추어 볼 때 국책의 大綱에 순응하여 적극적으로 개발진흥 방책을 강구하여야 할 시기에 당면하였기 때문에 속히 원시산업중심 방책에서 다종 광범한 산업의 전면적 발전 방책에 전환하여 농공병진의 취지하에서… 특히 요람시대에 있는 광공업에 대하여는 그 비약적 진흥을 기하여야 한다」는 답신[15]을 내놓았다. 뿐만 아니라 이 조사회는 공업관계 답신에서 「조선의 지위와 자원, 기타 기업조건을 고려하여 일본과 만주에 있어서의 대책과 연계를 유지하면서 제철업, 경금속공업, 조선업, 자동차 및 비행기 조립수리공업, 광업용 기계제조공업의 확립을 기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조선을 대륙병참기지로 삼는다는 구상은 전쟁이 시작되면 일본과의 해상수송로가 차단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대륙작전군의 식량이나 군수물자를 보급하기 위해서는 조선의 산업을 다각화하고 특히 군수공업의 육성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같은 대륙병참기지로서의 구상은 1937년 7월 7일에 중·일전쟁의 발발로 급속히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

---

15) 朝鮮總督府, 『施政三十年史』는 p. 545에서 「1936년 10월, 內鮮滿의 권위자를 망라하여 朝鮮産業經濟調査會를 개최하여 産業經濟開發에 관한 일반적 방침을 토의한 바 있으나 그 결과 農工併進政策을 채용하게 되고 각종 광범한 산업을 전면적으로 장려하게 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1) 第3次 産米增殖計劃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일본은 쌀의 자급을 확보하기 위해 조선에서도 급속한 증산을 기도하였다. 이 제3차 산미증식계획은 1939년도에 耕種法 개선에 의한 120만석의 증산계획을 수립·실시한 데 이어 1940년 이후 5개년, 토지개량사업의 경우 1940년 이후 6개년(준공 8개년, 농사개량 완성 11개년)을 기간으로 하여 계획완성연도(1950년)의 증산목표를 약 680만석으로 하는 총생산량 약 3,500만석을 확보한다는 것이었다. 그 내역은 耕種法 개선으로 511만석, 토지개량사업으로 169만석, 합계 680만석을 증산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2) 産金5個年計劃

국제수지의 조정을 기하고, 나아가 正貨準備를 공고히 하기 위해 1937년에는 産金5개年計劃을 수립하여 금의 증산을 도모하였다. 이어 동년 9월에는 금의 증산과 그 정부에의 집중을 목적으로 조선산금령을 공포하였다.

그러나 1941년 7월에 미국이 대일자산동결을 단행함에 따라 일본의 산금열은 급속히 냉각되기 시작하였고 戰局이 일본에 불리하게 돌아가기 시작한 1943년에 금광산을 정비하게 되자 금광산은 폐광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3) 朝鮮의 重工業基地化

1936년 10월에 조선산업경제조사회는 공업관계 답신[16]에서 「국책상, 특히 국방상의 견지에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업에 대하여는 현하의 정세를 고려하여 특별한 진흥책을 강구하여 급속히 또한 적극적으로 그 발달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또 특별한 진흥책으로서는 장려금의 교부, 동력요금 및 운임의 경감, 운수시설의

16) 山辺建太郎, 前揭書, pp. 191~194.

정비, 원료 확보, 용수조사 등에 관한 특전 내지 편의 제공, 사업에 대한 인허가제의 설정, 사업을 위해 필요한 토지수용권의 부여, 조세에 관한 특전, 보호관세의 설정 등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공업의 합리적 분포를 도모하기 위한 공업지대를 설치하되 「공업의 설립 및 경영을 용이하게 하고 나아가 경제적인 것이 되기 위해 공업지대의 지가 폭등을 억제하는 데 필요한 방도를 강구하는 한편 교통, 운수, 전력, 용수, 산업교육 등에 관한 집약적 그리고 합리적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것도 제안하였다.

총독부는 「調査會」의 답신에 제시된 이러한 방안을 그 완급에 따라 실시하게 되었으며 中·日戰爭이 시작된 1937년 이후 공업원료의 증산, 수력발전의 개발, 교통정비, 경제권의 확대 등과 상응하여 중화학공업부문에 대한 일본자본의 진출에 따라 조선의 공업은 급신장하게 되었다.

총독부 자료에 의하면 1931~1939년 기간중 공장수는 4,613개에서 6,952개(1.5배)로, 종업원수는 10만 6천여명에서 27만여명(2.5배)으로, 생산액은 2억 5,300円에서 14억 9,800만円(5.9배)으로 급신장하였다. 더욱이 일본이 중·일전쟁을 일으킨 이후부터 조선의 공업화는 가속화되었다. 1939~1943년 기간중 공장수는 6,952개에서 14,856개(2.1배)로 종업원수는 27만여명에서 약 55만명(2배)으로, 생산액은 14억 9,800만엔에서 20억 5,100만円(약 1.4배)으로 늘어났다.

또 工業生産構造도 1931년에는 重化學工業(금속, 기계기구, 화학)의 비중이 22.3%에 불과하였으나 중·일전쟁이 발발한 다음해인 1938년에는 그 비중이 41.2%가 되었고 1943년에는 49.5%로 높아져 중화학공업화가 급속히 촉진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이 급신장한 조선의 공업은 민족자본의 성장을 억제·저지하는 식민지정책 때문에 일본자본에 의한 지배가 압도적이 될 수밖에 없었다. 1940년 자료에 의하면 공칭자본금 100만円 이상의 공장을 대상으로 할 때 그 94%는 일본자본이었고, 특히 화학·가스전기·요

업·금속공업에 있어서는 일본자본이 100% 내지 그에 가까운 수준을 점하였다. 더욱이 공장규모별 비중을 보면 일본자본이 지배하였던 94%에 해당하는 공장이 대부분 대규모 공장이었고 토착자본은 중소기업으로서 정미, 양주, 고무신, 양말, 피복, 메리야스 등 일부 소비재의 생산과 일본공업에 의존하였던 영세·청부적 공업에 불과하였다.

뿐만 아니라 조선의 공업은 당시의 대일무역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과 같이 다량의 미완성 반제품의 수출과 동일 계통의 완제품 수입 및 생산수단의 수입을 뒷받침하는 식민지적 종속성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나. 軍事費의 負擔

일본은 1937년 7월 7일에 중·일전쟁을 일으켜 중국대륙에 대한 침략에 착수하면서 전비조달의 일환으로 동년 8월에 시행기간 1년 한도의 임시세로서 「北支事件特別稅法」을 공포·실시하고 이 세법을 조선을 포함한 모든 일본의 식민지에도 적용하여 그 세수를 각 지역의 특별회계로부터 일본의 일반회계에 전입시키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조선에서는 동년 8월에 소득특별세, 임시이득특별세, 이익배당특별세, 공채 및 사채이자 특별세, 물품특별세로 구성되는 「北支事件特別稅」를 창설하였다.

그러나 戰火가 확대되자 일본은 1938년 3월에 1년 시한의 임시세인 「北支事件特別稅」 대신에 「支那事變特別稅」를 창설하여 조세의 증징에 의해 전비를 조달하도록 하였으며 이로써 일본의 조세제도도 전시체제로 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일본의 세제개혁에 순응하여 동시에 조선에서도 소득세, 법인자본세, 사탕소비세 및 취인소(거래소)세를 증징하고, 이익배당세, 공채 및 사채이자세, 통행세, 입장세, 특별입장세 및 물품세의 창설을 골자로 하는 「支那事變特別稅令」이 공포·실시되었다.

이어 1939년 3월에는 「支那事變特別稅令」을 개정하여 소득세, 이익배당세 및 사채이자세, 사탕소비세, 청량음료세, 인지세, 물품세 등의 증징률 인상과 과세대상의 확대에 의해 증징하는 한편 건축세와 유흥음식세를 신설하여 군사비에 충당하는 세수를 늘리도록 하였다.

전비를 조달할 목적으로 도입되었던 「支那事變特別稅」는 1940년 3월에 실시된 제3차 세제정리를 통하여 폐지되었으나 종전의 사변특별세는 각기 單行稅令으로 규정되어 세목전반에 걸쳐 증징을 하도록 하였다.

조선총독부특별회계에서 일본의 임시군사비특별회계에 전입된 군사비의 재원은 「支那事變特別稅」로 증징한 세수 외에 조선총독부특별회계의 매년 세제상 잉여금의 3분의 2로 충당되었다. 원래 잉여금 전액을 군사비재원으로 전입하게 되어 있었으나 「임전태세에 있는 조선의

〈表 Ⅲ－1〉 朝鮮總督府特別會計로부터 日本 臨時軍事費 特別會計에의 轉出額(1937～1945)

(單位 : 천円, %)

	금 액	총독부 특별회계예산에 대한 비중
1937	11,034	2.7
1938	26,978	5.4
1939	41,291	6.1
1940	50,482	6.2
1941	94,568	10.0
1942	163,212	14.1
1943	203,058	12.2
1944(예산)	414,075	17.0
1945(예산)	606,213	19.4
합 계	1,610,911	13.9[1]

註 : 1) 1937～1945 세출합계에 대한 비중.

資料 : 大藏省 昭和財政史編集室(編), 『昭和財政史, 第16卷, 舊外地財政(下)』, 1961. 2.

특수사정 및 민심의 귀추를 특히 고려하여」 잉여금의 3분의 1은 조선 자체의 소요경비 재원으로 충당하도록 하였다고 설명되고 있다[17].

조선총독부 특별회계의 1940년도 세출결산액은 8억 1,352만円이었으나 1945년도 예산에서는 그 규모가 31억 1,711만円으로 3.8배 이상 현저하게 팽창하였다. 이러한 팽창의 일부는 전매·철도·체신 등 관업비의 증가에도 연유하였으나 그 주된 요인은 임시군사비의 재원 염출을 위한 증세와 담배값 인상에 따른 收支의 계상 그리고 戰局에 대처하는 여러 가지 시책의 예산화에 있었다.

특히 1942년도에서 1945년도에 이르는 기간중 네 차례의 조세증징과 담배값 인상으로 각기 4억 2천만円과 2억 8,300만円의 증수를 도모하는 한편 철도운임·우편요금의 인상으로 수입을 증대하여 그 중 5억 2천만円을 임시군사비재원으로서 전출하도록 계획하였다. 이 전출액의 증가는 여러 사업비 증가를 합한 세출액 증가분의 약 절반에 가까운 규모였다. 이같이 조세의 증징과 담배값 인상에 따른 증수분의 대부분은 임시군사비의 재원으로 충당되었다.

다. 戰時經濟統制의 強化

일본은 만주사변(1931년) 이후 非常時體制를 유지하여 왔으나 중·일전쟁(1937년)에 돌입하게 되자 準戰時體制로 전환하게 되었다. 당시 일본은 산업의 군사화를 위해 「생산력의 확충」, 「국제수지의 균형」, 「물자수급의 조정」이란 세 가지 정책을 내세우고 이를 「재정경제 3원칙」이라 불렀다.

먼저 1937년 9월에는 「임시자금조정법」과 「수출입품 등 임시조치법」이 제정·실시되었다. 이 두 법은 자금과 물자를 통제하여 군수산업에 집중시키고자 하였던 것이다. 「임시자금조정법」은 물자 및 자금

17) 水田直昌(監修), 『總督府時代の財政』, 東京 : 友邦協會, 1974, p. 152.

의 수요와 공급을 맞추기 위해 국내 자금의 사용을 조정한다는 목적에 따라 사업자금을 통제하여 회사설립을 위한 자금의 융통을 정부의 목적에 일치하도록 하고 또 자금의 공급력을 증강시키기 위해 정부가 흥업채권 및 저축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하였다. 요컨대 정부는 한편에서 일본은행과 시중은행을 통하여 군사목적을 갖지 않는 사업에는 자금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정부 스스로 거액의 자금을 조달하여 이를 군사목적에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수출입품 등 임시조치법」은 수출입에 대한 허가제의 강화에 의해 군사적으로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을 선별하여 물적 통제를 가할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이 법에 따라 제한 또는 통제를 받는 품목은 금, 백금, 동, 선철, 강재, 면화, 면제품, 피혁, 고무, 공작기계, 휘발유 등이었고, 이들 품목은 대부분 그 배급에 대해서도 통제를 받았다.

그 밖에 1937년 9월에는 「軍需工業動員法을 지나사변에 적용하는 법률」도 제정하여 군수생산을 위한 공장을 국가관리하에 두도록 하였다.

이상과 같은 세 가지 법률은 「통제3법」이라고 불렸으나 1938년 4월에는 「국가총동원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국방목적 달성을 위해 국가의 전력을 가장 유효하게 발휘하게 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자원을 통제·운용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었고, 나라의 자원과 노동력 모두를 전쟁목적을 위해 동원하는 통제권한을 정부에 위임하였던 수권입법이었다.

이 「국가총동원법」에 의거하여 인적자원의 통제와 이용에 관한 「종업자 고용 제한령」, 「종업자 이동 방지령」, 「임금통제령」 등이 칙령으로 제정되었다. 또 물적자원의 통제와 이용에 관하여는 「가격 등 통제령」, 「소작료 통제령」, 「지대·집세 통제령」이 각각 공포되었다. 그리고 자금의 통제와 운용에 관하여는 「회사이익배당 및 자금융통령」, 「은행 등 자금운용령」, 「회사경리 통제령」이 제정·시행되었다. 이와 함께 사업의 통제와 운용에 관하여는 「중요산업단체령」, 「금융

통제단체령」, 「금융사업정비령」이 제정되었으며, 문화의 통제와 운용에 관하여는 「신문사업령」이 제정되었다.

1939년 3월에서 1942년 4월에 이르는 기간중에 이루어진 이러한 일련의 입법조치는 총력전을 수행하기 위한 생산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었으나 관료통제와 중앙집권적 재정제도의 확립과 함께 일본이 이른바 「1940年體制」[18]를 수립하기 위하여 실시한 경제통제의 강화조치는 거의 모두 조선에서도 시행되었다. 1937년 9월에는 「수출입임시조치법」이 시행되고 이어 1938년 5월에는 「국가총동원법」이 조선에서도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총동원법」에 의거한 각종 경제통제는 조선에서도 시행되게 되었다.

이와 함께 1941년 6월에는 「조선주택영단」이, 1942년 12월에는 「조선농지개발영단」이, 1943년 10월에는 「조선식량영단」이 각각 설립되었다. 이들 조직은 보다 직접적으로 정부의 의향을 반영하는 비영리 특수법인으로서 정부의 지도감독을 받는 동시에 재정투융자의 융자도 받아 일반회계 사업을 보완하기도 하였다. 주택영단은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수립과 함께 근로자나 봉급생활자를 위한 중소주택의 건설·공급을 담당하였으며 주택증서의 발행으로 주택건설자금을 조달하였다. 농지개발영단은 수리조합과 함께 관개·배수 또는 방수사업을 비롯하여 開畓, 경지정리, 구역 내 농지개량시설 등의 설치를 통해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원과 함께 토지개량에 의한 미곡증산을 도모하였다. 또한 식량영단은 당시 중앙 및 지방의 양곡회사를 통합한 것으로서 양곡의 수집과 매도를 대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배급업무도 취급하였다. 이어 1943년 12월에는 중요물자에 대한 통제를 위하여 「조선중요물자영단」이 설립되었다.

---

18) 日本의 「1940年體制」란 日本이 太平洋戰爭에 돌입하기 직전인 1940년 전후에 집중적으로 채택한 戰時經濟體制의 확립을 위한 諸改革을 통하여 형성된 總力戰 수행을 위한 經濟體制를 말하고 있다.
野口悠紀雄, 『1940年體制』, 東京 : 東洋經濟新聞社, 1995, p. 7.

그 밖에 일본의 이른바 「1940년 체제」는 국민징용령(1939. 10)에 의하여 44만명 이상의 조선인 근로자(1939~1944년 6월말 현재)를 일본이나 일본이 통치하던 지역에 송출하였고, 이와 함께 군사요원으로서도 7만 5천명(1939~1944년 8월 현재) 이상이 일본이나 일본이 통치 내지 점령하고 있었던 지역에 보내졌다(제85회 帝國議會說明資料, 1944. 9). 뿐만 아니라 지원병제도(1938년)나 학도병제도의 실시(1943년 10월) 그리고 징병제의 실시(1944년)로 수많은 조선의 젊은이들이 침략전쟁에 강제적으로 동원되었다.

Ⅳ. 植民地 統治下의 租稅政策

1. 植民地 統治의 基盤造成期(1904～1919)

가. 顧問·統監政治期

일본에 의한 조선의 식민지 통치는 합병조약이 조인된 1910년 8월 22일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일본의 식민지조선 통치를 위한 기본계획은 제1차 한일협약이 체결(1904년8월 22일)되기 전인 1904년 5월 31일 일본의 閣議에서 결정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재정부문에서는 일본인 고문관을 들여 보내서 징세법이나 화폐제도의 개혁, 재정재건을 실시하여 재무의 실권을 장악한다는 것이었다.

일본인 재정고문은 동년 10월에 초빙되었으나 재정을 중심으로 조선내정을 식민지적으로 편성한다는 개혁방침에 따라 즉시 화폐개혁과 재정개혁에 착수하였다. 그후 통감부의 설치(1906. 9)와 한일신조약의 체결(1907. 7)로 다수의 일본인관리를 채용케 함으로써 시작된 이른바 次官政治를 거쳐 한일합병(1910. 8. 22)에 이르는 기간중 일본은 식민지지배체제의 확립을 위해 세제면에서도 적지 않은 변화를 유발하였다.

1) 旣存 稅制의 槪要

일본의 고문정치가 시작되었던 광무 9년도(1905) 세입예산에서 조세수입은 98.3%를 점하고 있었으나 당시 조세수입 가운데 地稅가 66.3%, 戶布錢이 3.2%, 港稅가 11.6%, 鹽稅 및 雜稅가 0.6%, 驛賭稅가 1.4%, 旣往年度 未收納稅收入이 17%를 각각 차지하였다.

가) 地稅

지세는 본래 토지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전답에 한하여 그 면적단위(結負)당 정률로 부과되었다. 이 지세는 개국 503년(1894)에 당시 토지에 대하여 부과되던 田稅, 大同, 三手米, 結作, 砲粮, 火田稅, 蘆稅 등을 일괄하는 조세로서 도입되었으며, 이와 함께 현물납부로부터 금납제로 개혁되었다. 金納制로 바뀐 당시의 세율은 1結에 30兩이었으나 광무4년(1900)에는 每結에 50兩, 광무6년(1902)에는 각 결에 80兩으로 각각 인상되고 토지의 肥沃에 따라 23等級으로 나누어 과세되었다.

나) 戶布錢(戶稅)

호포전은 중종 10년(1516)에 도입된 軍保布에서 유래된 조세로서 대원군의 개혁(고종8년, 1871)에 따른 호포제(처음에는 동포제)의 실시로 호포전으로 개칭되어 상민이나 양반을 불문하고 모두 부담하게 되었다. 갑오개혁(고종31년, 1894)으로 금납제가 실시됨에 따라 각 호당 상급 45전, 하급 17전 6厘를 춘추2기로 나누어 호주가 납부하도록 하였으며 광무 11년(1907)에는 세율이 각 호당 30전으로 조정되었다.

다) 港稅

항세는 관세를 의미하고 있으나 관세라는 명칭을 쓰게 된 것은 일본인 재정고문이 취임한 후인 융희원년(1907)이었다. 朝鮮 港稅의 기원은 柵門后市稅, 中江市稅, 항구세 등이라고 불리던 세목에 있고, 청나라와 통상이 시작된 宣祖26년(1593)부터 수납되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세목은 근대적인 관세라고 할 수는 없고, 근대적 개념의 관세는 조선말기에 일본과 강화도조약을 체결(1876)함으로써 문호를 개방한 후 구미제국과도 각기 통상조약을 체결하여 세계열강과 무역관계를 갖게 된 이후부터 징수되기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다.

당시의 관세제도는 각국과의 통상조약에 의한 협정세율을 토대로 하

고 있었으며 國定稅率을 기준으로 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일본은 1876년에 조선과 수호조약을 체결하고 동년 8월에 통상장정을 맺으면서 조선정부가 관세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기화로 관세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도 두지 않고 일본선박에 대하여는 항세도 부과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수출입물품에 대해 수년간 수출입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공약을 얻어냈다. 이에 따라 조일간의 불평등조약에 의한 무관세·무세관시대가 7년간(1876. 2~1883. 11)이나 계속되었고 일본은 조선에 대한 무역을 독점하였다.

그러나 고종 19년(1882) 5월에 체결된 조·미수호통상조약에서는 조선정부의 관세 자주권이 명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한세율도 규정되었다. 즉 수입품 중 생필품에 대하여는 10%, 양주, 呂宋煙, 시계 등 사치품에 대하여는 30%, 수출토산물에 대하여는 5%로 정하였다. 이와 함께 船稅는 톤당 5錢으로 규정하였고, 最惠國條約도 설정하였다.

조·미수호통상조약의 체결을 계기로 하여 영국과 독일이 이에 뒤따르게 되자 일본도 고종 15년(1878) 9월 30일의 부산 豆毛鎭收稅事件 후 朝·日間의 현안이 되어 왔던 통상장정 및 해관세칙에 관한 협상을 더 이상 회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고종 20년(1883) 7월에는 조·일통상장정과 조·일해관세칙이 체결되어 강화도조약 후 7년간에 걸친 무관세 무역시대의 막이 내리게 되었다.

이로써 조선은 관세권의 일부를 회복하여 관세체제는 片務的인 협정관세로 전환되었으나 이와 함께 최혜국 조관도 인정하였다. 또 조·일해관세칙에 규정된 관세율은 수입세의 경우 세율이 從價 5%에서 30%에 이르는 7단계로 구분되었으며 일반상품인 섬유류·금속제품·잡화 등에는 8~1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수출세는 홍삼에 15%의 세율을 적용한 것 외에 貨幣·金銀·地金 등 면세품 이외의 모든 수출상품에 대하여 5%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한편 영국은 조·미조약과 같은 내용의 조·영조약을 체결한 바 있으

나 관세율이 높다는 등의 이유로 그 비준을 미루다가 마침내 고종20년(1883) 11월에 조·영수정조약과 부속통상장정 및 부속세칙이 조인되었다. 이 세칙에 따르면 수입세의 경우 從價 5～20%로 4단계로 나누고, 조·미조약에서 규정되었던 세율보다 일용품은 5% 포인트, 사치품에 있어서는 10% 포인트를 각각 인하하였다. 또 수출상품에 대하여는 소수 품목을 제외한 모든 수출상품에 從價 5%로 과하도록 하였다.

이 조·영조약의 발효(1884. 4. 28)로 청국이나 일본, 미국도 최혜국 조관에 의해 가장 낮게 책정된 조·영조약세칙의 관세율을 적용받게 되었다. 즉 1884년 11월부터 일반상품의 수입세율은 8～10%에서 5～7.5% 수준으로 인하되고, 사치품의 수입세율은 25～30%에서 10～20% 수준으로 인하되었던 것이다.

관세사무는 갑오개혁 이후 관제상으로는 度支部의 관할하에 있는 總稅務司廳에 의해 專管되었으나 실제로는 외국인 총세무사의 관리하에서 독립된 기관으로 항세를 징수하여 제경비를 제외한 나머지만을 국고에 납입하였다.

라) 鹽稅

염세는 소금 제조업자에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조선 건국초부터 적용되어 왔다. 조선중엽에 均役廳에서 왕실재원을 위해 징세하다가 갑오개혁과정에서 탁지부로 이관되었다. 그후 광무5년(1901)에서 광무8년(1904)까지는 궁내부에 속하여 왕실수입이 되었다가 다시 탁지부에 환속되었다.

염세는 「釜座」에 부과하고 거의 세율의 규정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수시 무명부정한 雜稅를 징수하였기 때문에 염업자의 부담은 가증번잡의 극에 달하고 크게 공평을 상실하였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조선말기에 염세는 소금을 만드는 가마의 크기에 따라 10등급으로 나누어 10円 내지 1円을 부과하였다.

마) 雜稅

기타 제세에는 渾稅, 薹稅, 鑛稅, 船稅, 庖肆稅, 典當鋪稅, 進出口稅

(화물세) 등이 있었다.

渾稅는 연안어업자에게 부과하였으며 이 세금은 종래 어구·어법과 어획고 또는 어장의 규모 및 지역(道)에 따라 3~12등급으로 나누어 차별 과세되었다. 藿稅는 미역 등 해조류 채취에 대한 과세이며 혼세와 함께 漁藿稅라고 불리기도 하였다.

鑛稅는 17세기 중엽에서부터 收稅가 시작되었으며 개항 후 1895년에 砂金開採條例를 반포하여 광세의 증수를 시도하였다. 이와 함께 각도의 우수한 鑛區를 왕실에 부속시켜 직영하거나 수세하기도 하였다. 이 광세도 상납금, 허가수수료 또는 그 밖의 다른 명목으로 궁내부·탁지부 그리고 지방관청에서 각기 징수하였으며 그 징세방법이나 부과율 등이 번잡하였다.

船稅는 조선 중기 이후 漁鹽藿業用 선박에 대하여 과세하게 된 것이고 효시이며 1750년 균역법 시행에 따라 어·염·곽세와 함께 海稅에 포함되어 각 도별로 船種·船體의 대소에 따라 세율을 정하되 최하 1냥에서 30냥에 이르는 여러 단계의 차별과세가 적용되었다. 이어 광무3년(1899) 7월에 「국내선박규칙」이 반포되어 선세의 과세대상이 확대되었다.

庖肆稅는 건양원년(1896)에 제정된 「포사규칙」에 의해 도입된 소·돼지 등의 도축장을 경영하는 자에 대한 세금이었다. 이 세는 屠牛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5등급으로 나누어 과세하였다.

典當鋪稅는 개항 후 일본인에 의한 저당업이 성행함에 따라 광무3년에 「전당포규칙」을 제정하여 영업자본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를 3등급으로 나누어 정률과세한 세금이다.

進出口稅(화물세)는 조선말기에 각국과 통상조약을 체결한 후 함경도 경흥부에 開市場을 설정하여 만주에 수출되는 상품에 대하여 과세하였던 관세와 같은 세금이었다. 또 沿江稅는 중국인에 의한 압록강 流下木과 각종 화물에 대하여 과세하였던 세금으로서 관세와 같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광무3년부터 왕실의 수입이 되었다.

바) 驛賭稅

驛賭稅는 개국 503년(1894) 이래 폐지된 驛土 및 屯土에 대한 소작료와 별도로 소작인으로부터 징수한 지세로서 궁내부가 이를 관리하였다. 고려시대부터 공문서의 전달과 공무로 여행하는 관원의 마필, 기타 식량을 급부하기 위한 역참을 마련하고 역졸과 역마를 배치하여 왔는데 역토란 그 給養에 충당할 목적으로 급부된 전답을 말하였다. 또 둔토란 옛날에는 변경에 머물러 있는 군대가 농사를 짓던 땅을 의미하였으나 조선에 이르러서는 군영 외에 중앙의 각 관청 및 지방 道郡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부여한 국유지, 개간지, 범죄인으로부터 몰수한 토지 등 전답을 의미하였다.

2) 財政實權의 掌握을 위한 稅制改革

조선을 식민지화하기 위한 첫 단계 계획으로 이루어진 고문·통감정치시대에는 조선에서 재무의 실권을 장악하기 위한 「재정조정」의 일환으로 세제 및 세정면에서도 여러 가지 개혁이 추진되었다.

가) 新3稅의 導入

植民地 經營을 위한 재원조달의 일환으로 융희3년(1909) 2월에 家屋稅와 酒稅 및 煙草稅를 도입하였다.

家屋稅는 종래 호세를 징수하지 않았던 漢城府 및 郡의 행정을 맡아보는 관아소재지 등 시가지에 있는 가옥에 대한 과세로서 都農間 과세의 공평을 기하는 데 그 도입목적이 있었다고 설명되고 있다. 이 세는 가옥소유자에 부과하되 가옥의 넓이에 따라 4등급으로 나누고 또 가옥의 구조(石·煉瓦造 또는 기와지붕과 기타 보통 민가)에 따라 차등과세하였다.

酒稅는 주류를 제조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주류를 釀成酒, 蒸溜酒, 混成酒로 나누어 販賣用과 自家用을 불문하고 제조장마다 제조석수에 따라 차등 과세하되 세율은 제1류 양성주가 가장 높았다.

煙草稅는 연초경작세와 연초판매세로 나뉘었다. 연초경작세는 자가

용과 판매용을 불문하고 연초경작자에 부과하되 植付根數 900 이하와 이상으로 나누어 차등과세하고 연초판매세는 도매와 소매로 나누어 차등과세하였다.

나) 地方費賦課金의 新設

식민지지배기구의 확립과 국고부담의 경감이라는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감부가 설치되었던 광무10년(1906) 12월에는 최초의 地方財政法規라고 할 수 있는 「地方稅規則(칙령 제81호)」이 반포되었다. 이 규칙에서는 漢城府 및 각 道가 부과할 수 있는 지방세 세목을 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로 충당할 경비의 費目과 지방세수입 및 지출에 관한 예산편성의 의무 등을 규정하였는데 지방재정에 관한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었다.

이 규칙에서 규정된 지방세의 세목은 市場稅, 浦口稅, 旅閣(客主)稅, 轎稅, 人力車稅, 自轉車稅, 荷車稅, 花稅와 같은 雜種稅였다.

그러나 조선의 재정정리보다 지배체제의 기초를 확립하는 것이 보다 급선무였던 당시의 일본은 동 규칙의 실시를 서두를 필요가 없었으며 융희3년(1909) 3월에 「地方費法(법률 제12호)」이 제정되자 同 規則은 폐지되었다.

地方費法은 지방세규칙과 본질적으로 다른 점은 없었으나 광역지방단체의 재정에 대한 중앙통제를 강화한 것이나 지방비부과금의 課目과 課率 등을 府令이나 道令으로 정하도록 한 것 등이 다른 점이었다. 그러나 한성부 및 각 도는 부과금의 종류를 획일적으로 地稅附加稅, 市場稅, 屠場稅(屠畜稅)로 정하였으며 한성부에 한하여 토지가옥소유권 취득세 및 저당권 취득세를 부과하였다.

다) 稅源의 擴大

조선이 개국초부터 징수하여 왔던 염세, 어업세, 광세 등을 법제화하여 징세의 기초를 명확히 하는 한편 세원을 확대하였다.

鑛稅는 조선 말기에 궁내부에서 관장하던 鑛區稅와 鑛稅를 국고에 이관하는 한편 광무10년 6월에 반포된 鑛業法(법률 제3호)에 따라

부과하게 되었다. 광세는 광구세, 광산세 그리고 사금채취세로 구성되었으나 광구세와 광산세는 광업법에 의거하여 과세하고, 사금채취세는 동년 7월에 제정된 사금채취법에 의해 부과되었다.

鹽稅도 조선 개국초부터 부과되어 왔던 조세로서 광무5년에서 광무8년까지에는 궁내부에서 관장하였다. 제염업자에게 부과하는 염세는 염부나 염정의 규모에 따라 차등과세되었으나 광무10년 11월 「염세규정」을 제정하여 제조근량의 多寡에 따라 100근당 6전의 세율로 부과하도록 하였다.

漁業稅도 조선말기에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차등과세되었으나 광무10년 12월에 반포된 수산세규칙(칙령 제38호)은 채취한 수산물의 매매가격에 세율 1,000분의 10을 적용하여 과세하도록 과세방법을 통일하였다. 그러나 이 수산세 규칙은 납세의무자의 記帳義務와 面長의 신고의무 등 稅政의 어려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융희3년(1909) 3월에는 漁業稅法(법률 제10호)을 제정하여 어업을 면허어업(2종), 허가어업(5종), 신고어업(3종)으로 구분하여 과세표준과 부과액을 각각 달리하도록 하였다. 어업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따라 최고 150圓에서 최저 50錢으로 정하여졌으며 인지로 납부하도록 규정되었다. 이에 따라 수산세 규칙은 폐지되었다.

人蔘稅도 오래전부터 과세되어 왔으나 융희원년(1907) 12월에 홍삼전매수입과 함께 삼세가 궁내부로부터 탁지부 소관으로 옮겨지게 되자 융희2년(1908) 7월에 인삼세법(법률 제15호)을 제정하여 매년 수확할 蔘圃1間(1평)에 인삼세 10錢을 수확 전 정부사정에 의한 間數에 따라 인삼경작자에게 부과하도록 하였다. 다만 삼묘만을 재배, 판매하는 자에게는 비과세하고, 개성지방(지정 특별경작구역) 외에서 경작하는 인삼만을 과세대상으로 하였다.

라) 徵稅制度의 整備

징세제도의 정비는 조세징수절차의 법제화와 징세기관의 통일과 정비를 주축으로 이루어졌다.

(1) 租稅徵收節次의 法制化

광무9년(1905) 6월에 제정·공포된 「歲入歲出處理順序」(度支部令)는 조세는 반드시 법정징수원이 징수하고, 징수에는 반드시 납입고지서를 사용하여 종래의 불법징수와 개별적 任意收支를 방지하며 外劃制度를 폐지하여 징수의 통일을 기하도록 하였다.

이어 광무10년 10월에는 「조세징수규정」(칙령 제60호)을 제정·공포하여 港稅 등을 제외하고 모든 조세를 이 규정에 따라 징수하도록 조세징수절차를 법제화하였다. 즉 조세우선권, 납세의 고지, 조세체납에 대한 독촉과 강제징수 등 조세징수에 관한 절차가 법제화되었다. 이에 따라 징세사무는 종래의 郡守·胥吏 등으로부터 세무관·세무주사 등으로 옮겨갔다.

또한 융희3년 2월에는 일본의 법규를 모방하여 국세징수법(법률 제5호)을 제정하여 종래의 조세징수규정을 폐지하였다. 이 국세징수법은 벌칙을 제외하고 현행의 국세징수법과 거의 동일한 체제와 내용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국세징수법은 각 面으로 하여금 面內의 각종 국세(지세·호세·가옥세·선세·염세·주세·연초세·삼세)를 징수하여 국고에 납부하도록 하고 국세를 징수할 때는 재무관리 또는 면장이 납세자에 대하여 납부금액, 납기일 및 납부장소를 고지하며, 각 면은 재무서장이 인허한 公錢領收員(징세원)으로 하여금 국세의 영수·납입을 하게 하였다. 이와 함께 조세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을 압류할 것을 규정함으로써 조세의 강제적 징수를 가능하게 하였다. 또 당시의 사회적 조건을 고려하여 악의로 납세를 거절하는 자 등에는 笞刑 50 이하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도 규정하였다.

(2) 徵稅機構의 統一과 整備

甲午改革 후 국가재정과 왕실재정이 다시 분립하게 되자 탁지부 관장하에 지방군수가 조세를 부과·징수하는 한편 왕실재정을 위한 재원은 궁내부 관장하에 收租官을 두어 각종 조세를 징수하는 이원적 징수

제도가 정착되었다.

광무10년 9월에 「管稅官 官制」(칙령 제54호)를 제정·시행한 것은 그러한 이원적 징수기구를 통일·정비하는 데 그 명분이 있었다. 관세관 관제에 따르면 관세사무는 탁지부에 통일 귀속되고, 그 관할하에 각 도에는 세무행정을 감독할 세무감(觀察使 겸임)을 두며, 道內의 주요지에는 세무관을 배치하여 내국세무 집행기관으로 삼고 그 하부기관으로 세무주사를 각 군에 派駐시켜 세무를 집행하도록 하였다. 관세관 관제의 실시로 조세를 부과·징수하는 징세사무는 종래의 郡守·吏胥·鄕任層으로부터 세무관·세무주사로 이관되었다.

이어 광무11년(1907) 7월 제3차 朝·日協約의 체결로 일본이 朝鮮의 내정권을 전면적으로 장악하게 되자 동년 12월에는 관제개정에 의해 종래의 관세관 관제에 의한 지방징세기관을 폐지하고, 탁지부대신의 지휘를 받아 內國稅務 및 지방재정 전반에 관한 감독기능을 담당하는 재무감독국과 그 산하기관으로 집행기관인 재무서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종래 세무감을 겸직하고 있었던 각 도의 관찰사도 세무로부터 배제되어 재무기관과 행정기관이 완전히 분리·독립되었다.

한편 광무8년(1904) 10월에 부임한 일본인 재정고문은 광무 10년 11월에 그간 외국인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관장되어 왔던 關稅事務를 인계받아 관세수입을 직접 국고에 납부하게 되었다. 그후 융희2년(1908) 1월 新官制의 실시와 함께 총세무사청을 폐지하고 탁지부에 관세국을 설치하여 관세총장으로 하여금 관세행정을 담당하게 하였다.

마) 王室財政의 國家財政으로의 編入

甲午改革이 쇠퇴하는 과정에서 궁내부에 이관되었던 驛屯土와 왕실 특별기관인 1司 7宮에 소속된 宮庄土 등이 융희2년 6월에 칙령 제39호로 모두 국유로 이관되고 역둔토의 관리는 탁지부에 맡겨졌다. 이에 따라 종래 궁내부에서 관장하던 驛屯賭(역둔토의 소작료)나 궁장토, 賭稅(궁장토의 소작료)는 모두 국고에 귀속되어 역둔토 수입이

되었다.

역둔토는 종래 地稅(結稅)가 면제되어 왔으나 갑오개혁의 일환으로 역둔토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지세(驛賭稅)를 부과하고 이를 탁지부에 납부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융희2년 이후 역둔토 소작료가 국고수입으로 전환되자 역둔토 및 기타 국유지에 대한 지세를 폐지하는 대신에 이를 소작료에 포함시키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漁磯稅, 洑稅, 기타 궁내부 소관 諸稅의 징수권도 모두 국고에 귀속시켰다. 어기세(낚시터에 대한 세)는 일종의 면허세라고 볼 수 있고 보세는 봇물을 이용할 때 그 값으로 내는 세금으로서 일종의 給水料라고 할 수 있었다.

바) 旣存稅制의 改編

(1) 地稅의 改編

융희2년 6월에는 「地稅에 관한 件」(법률 제10호)을 제정하여 종래 23등급으로 나누어 과세하던 지세의 과세등급을 13개 등급으로 줄이고, 세율을 최고 8圓에서 최저 20錢으로 통일하였다.

이 지세의 개정은 광무9년에 이르러 광무5년에 제정한 화폐조례(금본위제의 채택과 일본통화의 유통을 공인)를 실시하여 2元을 1圓으로 환산하도록 하였으나 지방에 따라 舊貨幣가 통용되었기 때문에 1結當 지세액의 실질부담에 차이가 생겨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를 시정하기 위해 「元」으로 정하여진 것은 1元當 10錢, 「兩」으로 정하여진 것에 대해서는 1兩당 10錢으로 환산하여 지세를 징수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지세의 납세의무자가 토지소유자라는 것을 명시하였으나 지방의 습관 또는 계약에 의해 소작인, 기타 토지사용자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 그 사용자로부터 징수하고, 그 사용자가 체납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로부터 징수한다는 것을 부가하였다.

(2) 印紙收入의 新設

소액 조세 및 수수료의 국고수납에 도움을 주기 위해 광무9년 11월에는 칙령에 의해 정부가 수입인지를 제조하여 일부 조세 및 수수료를

인지에 의해 납부하게 할 것을 규정하였다. 이어 동년 동월에는 탁지부령으로 수입인지규정이 제정되어 典當鋪稅, 포사세, 官設屠畜 수수료, 집문서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납부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광무10년 1월에 土地家屋證明規程의 실시에 따라 토지가옥증명수수료가 추가된 반면에 집문서 수수료는 폐지되고 그후 鑛業出願·民事訴訟 수수료, 酒稅法, 煙草稅法에 따라 납부하는 免許準牌料, 어업세, 船稅 등이 추가되었다.

나. 植民地統治基盤의 確立과 稅制

조선의 병합에 앞서 일본은 이미 조선의 정무를 총괄하게 될 조선총독부의 비용을 조선의 歲入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기본방침을 확정하고 있었다[1]. 이에 따라 일본은 1914년에 이른바 「조선재정독립계획」을 수립하고 기존 세제의 정리와 함께 新稅의 창설로 稅收增大에 박차를 가하였다.

1) 新稅의 創設

식민지통치에 소요되는 재원의 증수를 위해 신설된 세목에는 시가지세, 조선은행권발행세, 등록세, 법인소득세, 사탕소비세, 인지세 및 전시이득세가 있었다.

市街地稅(1914년 3월에 제정된 市街地稅令으로 도입)는 종래 지세의 부과가 면제되고 있었던 중요 市街地에 대한 과세로서 대체로 집단호수 千戶 이상을 갖고 있고 市況이 흥성한 시가를 지정하여 그 구역내에 있는 택지, 전답, 연못, 늪, 잡종지 등의 地目에 부과하였다. 地

---

1) 朝鮮에서 財政獨立計劃이 실시된 것은 1914년 이후였으나 朝鮮財政의 獨立은 日本이 朝鮮을 합병할 당시 이미 기획되었던 것으로 『元師寺內伯爵傳』, p. 676에서 밝혀지고 있다.
小田忠夫, 「併合初期に於ける朝鮮總督府財政の發達」, 『朝鮮經濟の研究 第三』, 京城帝國大學法學會論集 第十册, 東京 : 岩波書店, 1938, pp. 188~189.

價는 時價를 표준으로 하되 10년마다 이를 개정하도록 하고 稅率은 0.7%를 적용하였다.

朝鮮銀行券發行稅는 朝鮮銀行法(1911년, 법률 제22호)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制限外 銀行券發行에 대해 최저 연 5%의 세율로 납부하게 되어 있었고, 별도로 특별한 세법은 없었다.

登錄稅는 1911년 회사령의 실시에 따라 동년 6월에 제정·공포된 회사등록령에 의해 처음에는 주로 회사의 등록에만 부과되었다. 또 1912년 4월에 朝鮮不動產證明令이 실시되자 종래 부분적으로 또는 手數料로 징수되던 부동산에 관한 登記 및 證明에도 과세하도록 하였다. 이어 1912년 3월에는 朝鮮登錄稅令이 공포되어 부동산에 관한 등기 또는 증명을 받을 때에는 부동산 또는 채권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사항별로 차등세율을 적용·과세하도록 하였다. 그 밖에 상법이나 민법에 규정된 각 사항을 등기하는 경우에도 과세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不動產의 등록은 조선등기세령에 의해 과세되고, 회사의 등기는 회사의 등록세에 관한 制令에 의하여 징수되기 때문에 법규상 통일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세율 중에도 지나치게 낮아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이 있었다.

그리하여 1916년 3월에 다시 朝鮮登記稅令을 개정하였으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회사의 등록세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여 법규의 통일을 기하였다. 둘째로 세율이 낮은 것은 적절하게 시정하여 공평을 기하였다. 셋째로 朝鮮鑛業令의 공포로 광업권에 관하여 등기 대신에 등록제를 채용하게 되었으므로 그 등록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였다. 넷째로 종래 收入印紙로 납부하던 것을 稅額이 많을 경우에는 현금납부를 인정하였다. 끝으로 課稅標準인 가격이 알맞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즉시 평가인의 평가에 부치지 않고 먼저 등기소 또는 證明官署에서 알맞는 가격을 인정하고 이를 등기 또는 증명신청인에게 고지하도록 하였다.

法人所得稅는 1916년 5월 1일부터 일본의 소득세법 중 법인의 소

득에 관한 규정만을 조선에서 시행한다는 칙령에 의해 신설되었다. 법인소득세는 발생주의원칙에 따라 과세하되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총소득 중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고 이를 초과소득, 유보소득, 배당소득, 청산소득으로 나누어 과세하였다. 세율은 소득종류별로 4~20%에 이르는 매우 복잡한 세율이 적용되었다. 법인소득세의 도입은 조선 내에서 발생하는 법인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반면에 일본 내 거주자가 조선 내 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한 高率의 제3종 소득세를 면세함으로써 일본자본의 對朝鮮投資를 촉진하는 동시에 조선재정독립계획에 따라 歲入을 증가시키자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砂糖消費稅는 주세와 연초세에 이어 도입된 세번째 간접세였다. 1919년 4월 1일부터 砂糖消費稅令에 따라 부과된 이 세는 제조장, 保稅地域 또는 藏置場으로부터 사탕, 당밀 또는 당수를 반출할 때 부과되었으나 조선 내 제당업 및 제당을 원료로 하는 각종 공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세율을 일본에서 적용되는 세율의 2분의 1로 정하였다.

印紙稅는 1919년 4월 1일부터 인지세령에 따라 부과되었다. 재산권의 창설·이전·변경 등을 증명할 증서나 장부의 작성에 대하여 부과된 이 세는 정액세와 비례세의 2종이 있었으며 정액세는 증서와 장부의 명칭 및 내용에 따라 세액이 1錢에서 25錢까지의 4종으로 구분되었다. 또 기타 일반증서는 기재금액에 대한 1만분의 5의 비례세가 적용되었다.

戰時利得稅는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에 즉응하여 일본이 군비확충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재원조달을 목적으로 1918~1919년 기간중 실시하였으며 이를 조선에서도 시행하였다. 이 세는 법인에 대하여 전시사업연도의 소득이 평시사업연도의 평균소득금액을 초과할 때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금액을 법인의 이득금액으로 보아 20%의 세율로 과세하도록 되어 있어다. 또 개인에 있어서는 그 소득금액이 1913년

이전 2개연도의 평균소득금액을 초과할 때,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금액을 개인의 이득금액으로 보아 이에 15%의 세율로 과세하도록 하였다. 다만 이득금액이 3천円 미만일 때는 비과세하도록 하였다.

또 이 세는 법인에 대해서는 1918년 1월 1일을 포함하는 사업연도부터 강화조약 조인의 날이 속하는 해(年)에 속하는 최후의 사업연도까지 과세하고 그후는 폐지하도록 하였다. 개인에 대해서는 1918년 귀속분부터 역시 강화조약 조인의 날이 속하는 해까지 과세하고 그후에는 폐지하도록 하였다.

2) 在來稅制의 整備

한일합병 이전부터 있었던 이른바 在來諸稅에 대한 정비는 원칙적으로 1914년에 수립된 조선재정독립계획과 함께 제정·공포된 지세령과 연초세령에서 시작되어 1916년의 주세령 제정, 1917년 12월의 광업령 개정에 수반되는 광업세의 부분적 개정을 거쳐 1919년 3월의 戶稅 및 家屋稅의 지방이양, 1920년 3월에 실시된 잡세의 정리로 일단락을 짓게 되었다.

가) 地稅

地稅의 정비는 1911~1913년 기간중에 이루어졌던 소작인에게 지세를 과하는 舊慣의 개선과 1914년의 지세령 제정 그리고 1918년의 토지대장 정비와 세율의 개정이란 3단계를 거쳐 이루어졌다.

(1) 舊慣의 整理

조선시대의 토지과세는 과세대장인 量案을 20년마다 현상을 조사하여 개조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세의 탈루가 심화되어 1905년에는 300여년 전의 基本結總數 145만 5천여결이 96만 1,494결로 감소되었다. 이에 따라 일본은 재정고문부 설치 이후 탈세지인 隱結의 발견을 긴급과제로 삼고 조사를 추진한 바 있으나 1911년에는 結數連名簿規則(府令 제 145호)을 제정하여 각 府·郡·面에 새롭게 지세의 課稅臺帳으로 결수연명

부를 작성·비치하게 하여 과세객체와 납세주체를 명확히 파악하도록 하였다. 이어 1912년~1913년에 걸쳐 「과세겨냥도」를 작성하여 각 府·郡·面에 비치함으로써 지세의 과징을 정확히 하는 한편 대체로 토지소유권의 소재를 분명히 하였다. 이와 함께 지세의 납세자가 토지소유주인 지주가 아니라 資力이 박약한 소작인이라는 구관을 고쳐 지세를 직접 토지소유자인 지주로부터 징수한다는 방침을 세워 1913년에 이르러서는 거의 모든 구래의 습관을 개선하게 되었다.

(2) 새로운 地稅令의 制定

1914년 3월에 제정·공포된 地稅令은 지세의 징수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동시에 부과·감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종래의 예규나 관례를 정리·통일하여 성문화하는 한편 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해 토지수익을 기준으로 하여 세율을 인상·조정하였다.

지세령과 함께 시가지세령을 제정하여 종래 지세의 부과를 면제하고 있었던 시가지에 대해 시가지세를 부과하고, 황무지와 매립지에 대하여는 지세를 면제하도록 하였다. 또 일본의 지세부담에 비해 약 20%에 불과하였고 토지의 순익에 대한 지세의 비율이 3%에 불과하여 土地兼倂의 폐해가 생겨나고 있었던 실정을 감안하여 종래의 結價, 즉 지세율을 13등급으로 나누어 8円에서 20錢으로 구분하던 것을 11円에서 2円까지 7등급으로 개정하였다.

(3) 土地臺帳의 整備와 課稅率 改正

토지제도를 확립하는 데 기초가 될 土地調査事業은 일찍이 광무2년(1898)에 量地衙門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한 후 한일합병을 전후하여 여러 가지 제도적 변천을 겪으면서도 계속되었고 1918년 6월에는 마침내 그 기본적 사업이 완료되어 전조선을 망라한 토지대장 및 지적도가 작성·비치되었다. 이에 따라 종래의 지세령을 근본적으로 개정하여 오랫동안 과세표준으로 삼아 왔던 結制度를 폐지하고 토지수익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土地臺帳登錄 地價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제도로 개혁하였다.

이로써 종래 각 지방별로 구분하였던 복잡한 세율의 등급을 폐지하고 전국 일률적으로 지가의 1,000분의 13을 지세율로 정하게 되어 조선의 근간적 세원인 지세제도의 확립을 보게 되었다.

나) 煙草稅

1914년 3월 새롭게 제정·공포된 연초세령은 융희3년에 구한국정부가 제정하였던 연초세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첫째로 耕作稅는 종래 植付株數에 따라 900본 이하와 이를 초과하는 것 2종으로 나누어져 있었으나 이에 2만본 이상의 한개 급을 더 설정하여 3종으로 구분하였다. 둘째로 販賣稅는 종래 都賣와 小賣의 2종으로 구분하였으나 소매를 다시 賣上金額에 따라 300円 미만과 그 이상의 2종으로 나누었다. 셋째로 종래의 연초경작세와 연초판매세에 제조세와 소비세가 추가되었다. 제조세는 1개소마다 공장의 坪數에 따라 부과하고, 소비세는 그 세율을 제조연초의 소매정가에 대하여 100분의 10으로 과세하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수할 때 인수자로 하여금 납부하게 하였다. 다만 조선재래의 방법으로 葉煙草를 단지 거칠게 썬 조선인이 피우는 담배는 제조연초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였다.

다) 酒稅

酒稅도 煙草稅와 같이 융희3년 2월에 구한국정부가 제정한 주세법에 의거하여 과세된 최초의 간접세의 하나이다. 이 세법도 한일합병 후 계속 실시되었으나 세율이 낮았고 규정상 不備한 점이 많아 시대적 변화에 상응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생겨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조선의 재정독립계획에 따라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하게 되어 우선 1914년에 지세 및 연초세를 개정하고 1916년에는 새롭게 주세령을 제정하여 동년 8월부터 이를 실시하였다.

改正稅令은 일반적으로 세율인상과 함께 품질의 우열, 소비자의 담세력에 따라 세율을 적당하게 구분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였다. 즉 종래 주세를 부과하지 않았던 輸移入酒에도 동일한 酒稅를 과하고 조선주 이외의 주류에 대하여는 自家用酒의 제조를 금지하였다.

더욱이 제조자의 최소한 造石數에 제한을 가하여 소규모 제조자의 난립을 막고, 輸移入酒에 대한 과세로 종래 단지 조세의 환불을 목적으로 하였던 日本産 劣等酒의 수입을 감소시켰다.

이어 1919년 3월에는 다시 주세령을 개정하여 일반주류의 세율을 인상하는 한편 조선주(濁酒, 藥酒, 燒酒) 중 품질이 열등한 것에 대하여는 다른 주류에 비하여 세율의 인상을 경미한 수준에서 억제하였다.

라) 鑛稅

광무10년 9월부터 시행한 광업법 및 사금채취법에 의하여 광산세, 광업세, 사금채취세를 부과하여 왔으나 1915년 12월에 조선광업령을 제정·공포하여 종래의 광업법 및 사금채취법을 폐지하고 광세로 개편하였다. 이 광업령은 광물의 범위를 확대하여 硫化鐵·黑鉛·水鉛·燐·高嶺土 등 15종을 추가하고, 사금채취세를 폐지하여 砂鑛區와 採取砂鑛에 대해서는 각각 광구세와 광산세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광구세의 세율도 인상하였다.

이어 1918년 12월에 조선광업령 중 일부를 개정함에 따라 중요 광산물로서 그 생산을 보호·장려하여야 할 金·銀·鉛 및 鐵에 대해서는 일본 본토에서와 같이 광산세를 면제하도록 개정하였다.

마) 戶稅 및 家屋稅의 地方移讓

戶稅는 일종의 인두세와 같은 것으로서 지방의 郡部에서 한 집을 꾸미는 자에 대한 과세였다. 그러므로 호세는 본래의 성질상 국세로서는 매우 부적당하며 인두세적 성질을 제외하면 지방세로서 보다 합리적인 과세라고 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한일합병 후 지방단체의 지방비 지변 사업이 크게 늘어나게 되자 지방재원에 보충하기 위해 1919년 3월에 가옥세와 함께 각 도에 이양하였다. 가옥세는 종래 호세가 면제되고 있었던 漢城府와 각 道廳 및 각 郡衙 등이 위치하고 있었던 이른바 시가지에 소재하는 가옥에 대하여 과세의 공평상 도입된 조세였으며 국세보다 지방세로서의 성질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이같이 호세와 가옥세를 지방에 이양함으로써 국세로서는 부적당한

조세를 정리하는 동시에 적절한 조세를 새롭게 도입하는 한편 지방에 대한 補助金도 정리하는 기회를 마련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사) 雜稅의 整理

한일합병 이후에도 조선말기의 많은 잡세가 남아 있었다. 잡세는 그 세액이 근소할 뿐만 아니라 징세사무를 번잡하게 만들어 국세로서 부적당한 세목이 많았다. 이에 따라 1911년 9월에는 잡세정리방침을 결정하여 대부분의 세목을 통합하거나 폐지하였다. 정리 직전의 세목별 세수구성은 〈表 Ⅳ－1〉과 같다.

〈表 Ⅳ－1〉 雜稅의 構成(1911年 現在)

(單位：円, %)

세 목	세 수 액	비 중
船 稅	4,942	19.6
典 當 鋪 稅	287	1.1
水 產 稅	285	1.1
庖 肆 稅	198	0.8
人 蔘 稅	1,316	5.2
藘 草 稅	117	0.5
漁 區 稅	72	0.3
水 鐵 稅	45	0.2
毛 藿 稅	372	1.5
藿 鰒 稅	120	0.5
沿 江 稅	14,993	59.4
貨 物 稅	2,515	10.0
합 계	25,262	10.0(0.2)
조 세 총 계	12,438(千円)	100.0(100.0)

註：( ) 내는 조세총계에 대한 비중
資料：재무부, 『한국세제사(上)』, 서울, 1979. 12.

또 잡세 중 洑稅·水稅와 같은 공공시설인 堤堰(댐) 또는 洑(봇물)의 수익자로부터 징수하는 일종의 用水料와 竹田稅, 蘆田稅·蘆稅·火耕稅·柴山稅·草坪稅와 같은 국유지의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일종의 임대료는 驛屯土 收入에 통합하였다. 또 漁區稅·漁基稅·漁磯稅·基址稅와 같이 굴조개의 채취장에 대하여 부과하던 세금이나 藿岩稅·毛藿稅와 같이 미역·김·다시마 등의 채취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은 漁業稅에 통합하였다.

이어 1912년도에는 水鐵稅·水鐵店稅와 같은 鐵器에 대한 과세를 폐지하고, 典當鋪 단속에 관한 制令의 실시에 따라 典當鋪稅를 폐지하였다. 또한 1913년 3월에는 朝鮮陸接國境關稅令이 제정·공포되어 익년도부터 陸接國境通貨貨物에 대하여 關稅를 부과하게 되어 沿江稅와 貨物稅를 폐지하였다.

그 밖의 제염업자로부터 징수하던 염세는 부과를 위한 조사가 어렵고 가격이 저렴한 중국산 수입염의 압박으로 제염업이 점차 쇠퇴하였기 때문에 1920년에 폐지되었다. 또 어업세도 어업법규의 개정에 수반하여 1912년 2월에 어업세령의 제정·공포로 종래 採捕物價格을 표준으로 과세하던 免許漁業稅로서 均一稅率로 과세하던 것을 捕獲物價格의 증가에 따라 稅率을 累進하도록 개정되었다. 그러나 어업세도 과세물건의 조사에 많은 시간과 수고가 필요하고 그 단속이나 부과의 공평을 기하기가 어려울 뿐더러 세액이 근소하기 때문에 국세로서 유지하기가 부적당하여 1920년 3월에 船稅와 함께 지방에 이양하였다. 이와 함께 人蔘稅도 폐지되어 1920년에 이르러 우리나라 고래의 雜稅는 모두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3) 關稅의 据置

일본은 조선의 식민지화에 대한 구미열강의 반발을 의식하여 영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한일합병조약을 공포한 1910년 8월 29일에 政府聲明을 통하여 10년간 舊條約國船舶의 조선개항장 沿岸貿易 종사와 화물 및 선박에 대한 수출입세 및 톤세율을 그대로 유지할 것을 선언하

였다. 이에 따라 조선은 1920년 8월까지 10년간 경제적으로는 일본의 관세영역에서 유리된 입장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관세제도의 정리·통일에 의해 과세의 공평을 유지하는 한편 화물취급을 간소화할 필요가 있어 1912년 3월에는 관세령, 톤세령, 保稅倉庫 및 관세정률령, 기타부속법령을 제정하였다. 輸移入稅率에 관하여는 별단의 변경을 가하지 않았으나 과세품의 분류 및 세율의 적용을 정리하는 동시에 각종 물품에 대해 일일이 세율을 표시하여 舊條約과 대비하는 번잡을 덜어 줌으로써 그 준거하는 바를 명백히 하였다. 또 輸移出稅에 관하여는 소맥, 대두, 소두, 들깨, 생우, 우피, 석탄 및 철광의 8개 물품을 제외하고 모두 폐지하였다. 또한 1913년 3월에는 전술한 바와 같이 朝鮮陸接國境關稅令 및 그 부속법칙을 제정·공포하여 종래 관세법규가 없었기 때문에 수출입화물에 대하여 화물세 또는 沿江稅라는 일종의 내국세를 부과하던 제도를 폐지하였다.

1913년에는 가공무역을 장려하기 위해 가공 또는 제조를 위해 輸移入하여 1년 내에 가공품 또는 제조품으로서 輸移出하는 물품에 대해 필요에 따라 품종을 지정하여 관세를 면제하는 租稅誘引을 마련하였다. 그 밖에 1918년~1919년중에는 사업계의 지원을 위해 布帛原料인 綿織絲 및 大麻, 製油原料인 棉子, 製粉原料인 小麥 및 繰綿原料인 實棉을 면세하도록 하였다.

4) 地方稅制의 擴充

道地方費法을 실시한 1909년에는 道財政의 基幹이 되었던 지방세의 종목은 단지 지세부가세, 시장세, 屠場 및 屠畜稅 그리고 漢城府에 한하여 과세한 토지가옥소유권취득세 및 저당권취득세에 불과하였다. 또 합병초기에 面에서 징수하던 부과금에는 戶別割, 地稅割 등이 있었으며, 1911년 10월에 제정·공포된 「공립보통학교 비용령」에 의거하여 군수관리하에 학교비용의 부족분을 학교설립구역 내의 조선인에게 부과하도록 하였다. 이 학교비 부과금에는 호세부과금, 가옥세부과금, 지

세부과금이 있었다.

이어 1914년 4월에는 道稅로서 시가지세부가세를 신설하는 한편 府制의 실시와 함께 종래 일본인 居留民團에서 부과하던 세목을 모두 계승하도록 하고, 국세부가세로서 시가지세부가세와 가옥세부과세, 부특별세로서 營業稅, 잡종세, 소득세(淸津府), 호별세(경성·인천·신의주부), 建物稅(평양부 등), 電柱稅(경성부)를, 1916년에는 특별호별세를 신설하였다.

또한 1917년에 面制가 실시되자 종래 面이 과징하던 호별할, 지세할 이외에 시가지세할, 영업·어업·임야·광업할 그리고 잡종세할이 신설되었다. 그후 1919년에는 국세이던 호세 및 가옥세를, 1920년에는 어업세 및 선세를 도지방비에 이양하였고, 府稅로서 花代를 과세물건으로 하는 助興稅가 신설되었다.

이로써 1910~1920년 기간중 지방비부과금은 4개 세목에서 9개 세목으로, 府稅는 2개 세목에서 9개 세목으로, 面稅는 8개 세목으로, 학교비는 4개 세목으로 늘어났다.

2. 植民地統治 擴充期의 租稅政策(1920~1936)

가. 概況

3·1운동을 계기로 하여 식민지조선에 대한 일본의 통치는 무단통치로부터 형식적이나마 宥和·懷柔政策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조선통치를 위한 사법경찰비의 급증과 식량수탈을 위한 산미증산계획의 강행 그리고 재원확보를 위한 관업의 급격한 확대로 재정수요가 팽창되어 1919년에 완전히 종결되었던 일본 일반회계로부터의 補充金 전입을 1920년에 다시 재개하였다. 이와 함께 1920년에는 국세인 어업세와 선세를 1921년에는 국세인 차량세를 道稅(지방세)로 이양하였다.

한편 1920년 8월 29일을 기하여 한일합병시에 일본이 선언한 10년간의 관세거치기간이 만료되자 종래의 조선관세율과 조선관세정률령

을 폐지하고 일본의 관세법과 관세정률법 등을 조선에 시행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조선의 경제발달수준과 그 밖의 특수사정을 고려하여 조선과 일본간의 상품교역에 적용되는 移入稅를 조선측에 한하여 존치하도록 하고, 일본측의 이입세 철폐에 따른 보완책으로서 조선에서 出港稅를 징수하도록 하였다.

일본은 1923년에 조선총독부 내에 조선재정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조세체계의 정비나 재정팽창에 대응할 재원의 조사연구 등을 추진한 바 있으나 동 위원회는 1924년말 행정정리에 따라 해체되었다. 그렇지만 1926년에 일본이 조세의 증징을 위해 대규모의 세제정리를 실시하게 되자 1926년 6월에 다시 세제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본격적인 세제정리에 착수하였다. 동 위원회가 마련한 국세 및 지방세체계와 그 제1차 실행안은 1927년과 1929년 그리고 1931년에 걸쳐 세제정리에 반영되었고, 이어 1934년에 실시된 제2차 세제정리를 통하여 다년간 현안이 되어 온 조선에 있어서의 세제정리가 일단락되었다.

나. 統一關稅制度의 實施와 域內特別關稅의 存續

舊韓國關稅制度를 10년간 거치하였던 기간(1910. 8. 29~1920. 8. 28)중에는 조선과 일본간의 상품교역에 대하여 종래의 수출입세와 같은 세율로 移出入稅가 부과되었다. 그러나 1920년 8월 29일을 기하여 관세거치기간이 만료되어 조선과 일본의 통일관세제도가 실시되자 일본은 조선으로부터 이입하는 상품에 대한 이입세를 폐지하였으나 조선은 재정형편상 域內關稅特惠의 하나인 일본으로부터 이입하는 상품에 대한 이입세를 상당기간 그대로 존속시켰다.

한편 移出稅는 1912년 3월에 제정·공포된 조선관세령 및 조선관세정률령에 의해 수출세와 함께 그 대상품목이 8개 품목으로 대폭 축소되고, 일본의 수입의존도가 높았던 미곡은 無稅品目 속에 포함시킨 바 있으나 통일관세제도의 실시로 전폐되었다.

그러나 일본은 조선과 일본의 소비세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양지역간 상품이동에 관하여 이를 조절할 적당할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구실을 내세워 조선에서 出港稅를 부과하여 양지역간 소비세 및 관세의 차이를 조정하도록 하였다.

1920년 8월에 제정·공포된 조선출항세령은 출항세의 과세대상을 조선에서 일본·대만·가라후도(樺太)에 이출하는 물품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별하였다.

① 일본, 대만, 가라후도에서 내국세를 과하는 물품. 다만 骨牌, 賣藥, 매약유사품 등은 제외한다.

② 조선에서 「특례」에 의해 낮은 세율로 輸入稅를 과하거나 無稅로 수입한 물품, 또는 조선에서 수입세를 경감하거나 면제한 물품

③ 일본 내에서 제조한 직물제품으로서 조선총독이 지정한 것, 조선내에서 제조한 과자 및 당과

출항세는 ①항의 물품에 대해서는 내국세의 세율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고 ②항의 물품에 대해서는 무세물품과 수입세면제물품은 관세정률법에 의한 수입세율과 동일한 세율, 기타물품은 관세정률법에 의한 수입세율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율을 각각 적용하도록 하였다. 또 ③항의 물품에 대해서는 직물제품에는 원료로 사용한 직물가격의 10%, 菓子·糖果에는 含有蔗糖 100근당 5円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과세표준은 移出港에 있어서의 시가로 규정하였다. 그 밖에 관세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은 출항세 면제규정도 두었다.

다. 第1次 稅制整理 前의 改正

제1차 세제정리에 착수할 때까지는 일시적인 방편으로 적당한 세목의 세율인상에 의해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였다. 즉, 1922년 3월에는 지세의 세율을 종전의 1.3%에서 1.7%로 인상하고 市街地稅의 세율도 0.7%에서 0.95%로 높였으며 사탕소비세의 세율을 대폭 인상하였

다. 또 동년 4월에는 주세의 세율을 약 25% 인상하였다.

그 밖에 1921년 4월에는 朝鮮取引所(去來所)令을 제정하여 취인소세(거래소세)와 취인세(거래세)를 도입하였다. 전자는 거래소의 매매수수료수입 전액에 대하여 10%의 세율로 과세하고, 후자는 정기거래의 매매약정 전액에 대하여 0.05%의 세율로 과세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연초전매제도의 실시로 연초세가 폐지되었다.

한편 1923년 4월 1일부터 주정과 주정을 포함하는 음료 그리고 직물류 이외의 물품에 대한 이입세를 폐지하였다. 당시의 잔존 이입세의 세율은 청주가 從價 8%, 麥酒는 10%, 기타 주류는 7.5~20%에 이르는 4종이었고, 직물류는 7.5%를 기준으로 하되 紗, 琥珀緞 등과 같은 견직물에는 10%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1922년의 사탕소비세령 개정으로 정당을 제외한 모든 세율이 일본과 동일하게 되었기 때문에 사탕(당밀 제외)과 조선 내에서 제조한 과자 및 당과에 대한 출항세를 폐지하였다. 이어 1925년에 일본이 직물소비세 중 면직물에 대한 소비세를 면제하는 한편 醬油稅, 賣藥稅 등 대중부담이 되는 세목을 폐지하고 청량음료세를 신설하자 출항세의 과세대상에서 장유를 제외한 반면에 청량음료품을 추가하였으나 1926년에는 매약 및 매약유사품을 과세대상에 추가하고, 직물제품에 대한 출항세의 세율을 종전의 10%에서 9%로 인하하였다.

라. 第1次 稅制整理(1927)

1926에 결정된 조선세제의 기본방침은 첫째로 일반소득세를 중추로 삼고, 둘째로 수익세 계통 세목을 정비하여 일반소득세의 보충세로 하며, 셋째로 그 밖에 소비세, 관세, 교통세 등에 의해 누락된 세원을 포착하여 세수를 확보하고, 넷째로 적당한 시기에 징세기관을 정비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제1차 實行案 작성에 있어서는 朝鮮의 民度, 産業의 상황을 고려하여 一般所得稅의 창설이 시기상조라고 보아 먼저

收益稅體制를 완비하고 이를 消費稅, 交通稅 등으로 보완한다는 方針을 채택하였다[2].

이러한 기본방침에 따라 1927년 3월에는 營業稅, 資本利子稅가 창설되고 소득세와 주세 및 사탕소비세 그리고 이입세가 개정되었으며 시가지세와 관세특례를 폐지하였다. 이와 함께 지방세제에 있어서도 대폭적인 개편이 단행되었다.

1) 營業稅의 新設

물품판매업을 위시한 24개로 구분한 모든 영리사업에 대하여 외형표준(매상금액·자본금액·예금액·收入金額 등)에 최저 0.01%(은행업의 社債 및 차입금액에 적용)에서 최고 1.2%(금전대부업의 수입금액에 적용)에 이르는 16단계 차등세율로 과세하도록 하였다. 다만 산업조합·금융조합·어업조합 및 동 연합회가 하는 영업이나 취인소(거래소)가 하는 영업, 자기수확 농산물 등의 판매에 대하여는 영업세를 비과세하였다. 또 물품판매업의 경우 1년의 매상금액이 2천円 미만인 때나 제조업의 1년 수입금액이 2천円 미만인 때는 영업세를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2) 資本利子稅의 新設

조선에서 공채 또는 사채의 이자를 지급받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자본이자금액에 대하여 2%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도록 하였다. 다만 조선소득세령의 규정(제13조)에 따라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자가 받는 이자나 저축채권 또는 부흥저축채권의 이자 등은 비과세하도록 하였다.

자본이자수익에 대한 과세는 영업수익에 대한 과세와 함께 기존하는 토지수익에 대한 과세와 부담의 權衡을 도모하고 수익세체계를 정비한다는 데 그 창설의 의의가 있었다.

---

2) 朝鮮總督府 財務局,『朝鮮ニ於ケル稅制整理經過槪要』, 京城, 1935, pp. 34~38.

3) 所得稅의 改正

종래 법인의 소득을 초과소득, 유보소득, 배당소득 및 청산소득으로 나누어 각기 그 소득을 산출하여 소득별 차등세율(14~20%, 5단계 구분)을 적용하는 매우 복잡한 세구조를 단순화시켰다. 즉 유보소득과세와 배당소득과세를 폐지하여 법인소득을 보통소득과 초과소득, 청산소득으로 구분하고 보통소득에는 5%, 초과소득에는 4~20%(3단계 구분), 청산소득에는 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도록 하였다.

4) 酒稅의 改正

1920년 8월과 1922년 4월에 이어 다시 세율을 대폭 인상하였다. 청주의 세율은 1石에 23円이던 것을 30円으로 약 30% 인상하고, 조선탁주는 1석 2円 50錢에서 3円 20錢으로 28% 인상하였으며, 조선약주는 1석 7円을 10円으로 약 43%를 인상하였다. 소주는 세율적용구분을 주정도수에 따라 종래의 4개급을 6개급으로 개정하여 세율을 인상하였다. 그리고 맥주는 1석 10円에서 16円으로 60%를 인상하였다.

그 밖에 자가곡주에 대해서도 그 제조자의 상황과 판매주와의 권형상 탁주는 3円 50錢을 6円으로, 약주는 11円을 20円으로, 소주는 3円 50錢을 10円으로 각각 인상하고, 탁·약주와 맥주 이외의 양조주, 주정, 재제주의 세율도 약 17.6~30%를 인상하였다.

5) 砂糖消費稅의 改正

사탕소비세는 1919년 3월 창설 당시 일본본토의 2분의 1로 정한 세율을 1922년 3월에 대폭 인상하였다. 이어 1927년 3월에는 일본의 사탕소비세 개정을 계기로 하여 종래와 같이 첨채당밀 이외의 것에 대하여는 세율을 일본과 동일하게 인상하였다.

6) 移入稅의 改正

세제조사위원회는 이입세의 철폐가 조선과 일본의 경제결합을 공고히 해 양지역 산업의 공동적 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당연히 일본의 내

국세 환급제도의 폐지를 유발할 것이므로 조선 내 산업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뿐더러 일반소비세나 이입과세품의 거래업자에게도 세부담의 경감, 물류비용의 절감 등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재정의 정황을 고려하여 이입세의 철폐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제1차 세제정리에 있어서는 1923년의 개정과 같이 부분적인 철폐에 그치되 일본이 면직물에 대한 소비세를 폐지한 것과 또 면직물이 생활필수품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면직물에 대한 이입세의 세율을 종전의 7.5%에서 5%로 인하하였다.

7) 關稅特例의 廢止

1920년에 조선에 통일관세제도를 실시하면서 당시의 특수사정으로 말, 綿羊, 소금, 연초, 광유, 코크스 및 목재의 7개 물품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특별세율이 설치된 바 있었다. 즉, 소금과 연초에는 관세정률법에 규정된 관세율보다 높은 세율(30~40%)을 적용하고, 기타 물품은 무세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1921년 4월에 연초전매제를 실시하게 되자 엽연초에 대한 특례세율이 철폐되고, 1926년 3월에는 관세정률법의 개정에 의해 綿羊의 수입에 대하여 관세를 무세로 하였던 특혜를 폐지하였다. 이어 1929년 3월에는 말, 광유, 코크스, 목재 및 소금의 수입에 대한 특혜관세를 폐지하고, 그 수입에 대하여는 관세정률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도록 하였다.

다만 소금에 대하여는 공급사정을 고려하여 1930년 4월부터 적용하고, 또 목재에 대하여는 滿州側으로부터 큰 반대가 있어 1932년 3월까지 2단계에 걸쳐 수입세율을 높여 적용한 후 관세특례를 폐지하는 잠정적 조치를 취하였다.

8) 地方稅制의 改正

1921년 6월에 설치된 「세제조사위원회」는 당시의 지방세제가 갖는

결함으로서 다음과 같은 조사결과를 밝혔다.

첫째로 조세체계가 불완전하며 지방단체간 세원의 분배가 원활하지 못하다.

둘째로 稅種이 복잡·다기할 뿐만 아니라 세질이나 과세방법이 타당하지 못한 세목이 있다.

셋째로 부담의 형평이나 과세표준의 的確을 기하기 어려운 세목이 있다. 道地方費稅 중 호세와 가옥세, 시장세, 府稅인 호별세, 面稅인 호별할 등이 이에 해당한다.

넷째로 영세민 과세가 많고 時勢에 적응하기 어려운 세목이 있다. 도지방비의 시장세와 水車稅, 府·面의 영업세, 일부 잡종세가 이에 해당한다.

다섯째로 조선인과 일본인간에 공비부담상 적절하지 못한 면이 있다. 즉 학교비부과금은 지세·시가지세 부가금, 가옥세부가금 및 호세 부가금으로 구성되고 있으나 일본인 교육을 관장하는 학교조합부과금은 호별할의 단일세로서 양자간의 차이가 크다[3].

이에 따라 지방세제는 1927년도에 먼저 세제의 결함이 비교적 현저하여 방임할 수 없는 세목 또는 국세의 정리와 관련하여 필연적으로 개폐가 불가피한 세목 그리고 이상과 같은 정리에 따른 세입결함을 보전하기 위해 신설이 필요한 세목 등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정리하도록 하였다.

가) 地方稅(道稅)

(1) 市場稅를 폐지하고 특별시장세를 창설하였다.

기존 시장세는 당시 시장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에 대해 그 상설점포의 유무에 불구하고 또 거래액의 다과에 관계없이 부과·징수하였고 자가용 경작에 의한 잉여야채류의 판매나 매출액이 근소하여 세부담의 資力이 없는 자에게도 과세하여 악세로서 정평이 나 있었다.

3) 前揭書, pp. 119~121.

특별시장세는 거래소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곡물현물시장에서의 매매 약정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거래세였다.

(2) 부동산취득세를 창설하였다.

시장세 폐지에 따른 財源補塡의 필요에 따라 부동산취득세를 신설하였다. 이 세는 토지·건물·선박의 유상 또는 무상 취득시 그 이전가격 또는 평가가격을 표준으로 하여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세로서 징수가 비교적 간편할 뿐만 아니라 부담상에 있어서도 그다지 고통을 수반하지 않는 지방세이며 상당한 재원을 얻기 위해 가장 적당한 세목이라는 데 그 신설의 이유가 있었다.

(3) 지세(시가지세)부가세의 제한율을 100분의 60(평북, 강원, 함남, 함북의 5도는 100분의 70)으로 개정하였다.

地稅(시가지세)부가세 제한율의 인상은 학교비 지세(시가지세)부가금의 폐지에 따른 재원보전과 학교조합에 대한 지방비 보조를 위한 조치였고, 북한5도에 대한 100분의 10의 增率은 다른 도에 비하여 담세여력이 특히 크기 때문이라고 세제조사위원회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나) 府稅

(1) 영업세를 폐지하고 영업세부가세 및 특별영업세를 창설하였다.

국세인 영업세의 신설에 따라 부세영업세를 폐지하는 대신에 국세영업세의 부가세와 특별영업세를 신설하였다. 이 특별영업세는 국세의 부과를 받지 않는 영업과 국세면세점 이하의 영업에 대하여 부과되었다.

(2) 특별시장영업세를 폐지하였다.

국세영업세의 신설에 따라 府가 거래소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제4호 시장에서 거래하는 자에 부과하던 특별시장영업세를 폐지하였다.

(3) 소득을 표준으로 하는 호별세를 폐지하고 자산·소득·생계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는 호별세를 신설하였다.

호별세의 개정은 영업세를 부가세로 개정하는 데에 따른 減收를 보

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으나 기존의 舊戶別稅는 부담능력에 상응하기 어려운 결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고 그 대신에 자산·소득·생계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는 호별세를 신설하여 府稅의 중추로 삼도록 하였다.

(4) 잡종세 중 영세민과세를 정리하였다.

잡종세의 정리는 주로 사회정책적 입장에서 職工課稅, 노천상인 과세, 酌婦나 幇間 등에 대한 과세를 정리하였던 것이다.

다) 面賦課金

종전의 영업할을 폐지하고 새롭게 영업세할 및 특별영업할을 신설하였다. 이와 함께 잡종할 중 영세민과세를 정리하였다. 면부과금의 개정은 부세의 개정과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졌다.

라) 學校費 및 學校組合賦課金

학교비는 지세(및 시가지세) 부과금을 폐지하였다. 이와 함께 학교조합부과금은 일부 조합에 남아 있던 영업할, 잡종할, 흥행할을 모두 폐지하였다. 원래 토지에 대한 과세는 일반공공단체인 도·부·면의 재원으로서 적합하지만 특수단체인 학교비의 조세로서는 적당하지 않고, 또 학교조합의 경우에도 소액의 영업할, 잡종할, 흥행할을 징수하고 있으나 이들 조세는 부·면의 재원으로서 적합성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 조세를 징수하는 조합수가 29개에 불과하고 그 세액도 근소하기 때문에 전폐하게 되었다. 특히 영업할의 폐지는 국세영업세의 창설로 府·面이 이에 대한 부가세를 부과하고 이에 더하여 특별영업세(할)을 설정한 데에도 그 이유가 있었다.

마. 第1次 稅制整理 後의 改正

제1차 세제정리 후 1934년에 이르는 기간중에도 영업세의 개정, 골패세의 창설, 소득세·자본이자세·취인소(거래소)세·사탕소비세·지방세제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1) 營業稅의 改正

소영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영업세의 과세최저한을 운송취급업은 1년의 보상금액 300円에서 1,000円으로 3.3배, 기타 업종은 50~66.6%를 각각 인상하였다. 이와 함께 수익의 정도가 현저히 낮은 영업에 대한 세부담의 완화를 위해 세율을 최고 50%까지 인하하고, 세율적용구분을 세분하여 부담의 균형을 이루도록 하였다(1929. 8 개정).

2) 骨牌稅의 新設

1931년 4월에는 사치품 소비에 대한 과세로 재원을 확충하고 과세도 일본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골패세를 신설하였다. 麻雀과 그 밖의 골패로 나누어 과세하는 이 세는 마작 1조당 3円, 그 밖의 골패의 경우 紙製 1조당 20錢, 非紙製 1조당 50錢의 정액세를 부과하고 인지를 붙여 납부하도록 하였다.

3) 所得稅의 改正

어업조합연합회 및 수산조합연합회는 공익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득세를 면제하도록 하였다(1929. 8 개정).

4) 資本利子所得稅의 改正

금융조합연합회가 발행하는 조선금융채권의 이자에 대해서도 자본이자세를 과하도록 하였다(1933. 8 개정).

5) 取引所(去來所)稅의 改正

취인소(거래소)세의 세율을 지방채증권 또는 社債券의 매매거래,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상품의 매매거래의 3종으로 구분하고 각기 2단계로 세분화하였다. 종전에는 단일세율(1萬分의 5)로 과세하였으나 개정세율은 1萬分의 0.6~1萬分의 2 범위 내에서 세분·인하되었다(1931. 10 개정, 1932. 7 시행).

6) 砂糖消費稅의 改正

일본이 사탕소비세 부담의 경감을 위해 세율을 약 10% 인하(1931. 4 개정, 1932. 1 시행)하게 되자 종래 日本과 동일한 세율로 과세하여 왔던 조선에서도 부담의 균형을 위해 사탕소비세의 세율을 약 8~10% 인하하였다.

7) 出港稅의 改正

1931년에 조선에서 골패세가 신설되자 골패에 대하여도 출항세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당시 조선과 일본간에는 麻雀을 제외한 '기타'품목에 대한 골패세의 세율에 차이가 있었다. 즉 조선에서는 1조당 20~50錢의 정액세가 부과되었으나 일본에서는 1조당 50錢이 과세되었다.

8) 地方稅制의 改正

1928년에 지방세제에 관한 제2차 개폐안이 마련되어 1929년도부터 실시하였다.

가) 地方稅(道稅)

소득세부가세 및 특별소득세를 신설하고 호세 및 가옥세의 배분방식을 개정하였다. 당시의 소득세(국세)는 법인소득에 한하여 과세하고 있었으므로 그 부가세를 신설하게 되자 법인의 부담과 개인의 부담간의 권형을 유지하기 위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있는 자산·영업소득에 과세하도록 특별소득세를 신설하였다. 또 호세 및 가옥세는 戶數만을 표준으로 하여 각 부·면에 배당과세되었기 때문에 부·면의 빈부정도에 상응하지 못할 뿐더러 부담상 현저한 불균형을 수반하였다. 그러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해 호세 및 가옥세의 반액은 호수에 따라, 나머지 반액은 호세납세의무자가 납부하는 지세액과 영업세액의 합계에 따라 안분·배당하도록 하였다.

나) 府稅

소득세부가세의 세율을 인하하고 특별소득세를 폐지하는 한편 특별

소득세부가세를 신설하였다.

이러한 부세의 개정은 지방세(도세)의 개정에 순응케 하기 위한 필요에서 이루어졌다.

다) 面賦課金

소득세할과 특별소득세할을 신설하였다. 이는 부의 소득세부가세 및 특별소득세부가세와의 權衡上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 學校費賦課金

호세 및 가옥세부가금 제한율을 상향 조정하였다.

이는 공립보통학교증설계획의 대응책으로서 이루어졌으며 호세 및 가옥세의 제한율 납입의무자 1인당 80錢(가옥세부가금은 1호 평균 80錢)을 각 90錢으로 개정한 것으로서 1929년에 개정안을 작성하여 1930년부터 실시되었다.

이어 호세 및 가옥세부가세 제한율이 다시 확대되었다. 이 역시 공립보통학교증설계획의 대책으로서 호세 및 가옥세 제한세율 납입의무자 1인당 90錢(가옥세부가금 1호 평균 90錢)을 각 1円으로 개정한 것으로서 1931년에 입안하여 1932년부터 실시하였다.

바. 第2次 稅制整理(1934)

1) 概況

1926년 세제조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국세체계 수립의 방침은 일반소득세를 조세체계의 중추로 하고, 수익세 조직을 정비하여 일반소득세의 보완세로 삼으며, 소비세, 관세 및 교통세와 함께 조세체계를 구성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제1차 조세정리에서는 납세협력면에서 일반소득세를 도입할 여건이 조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그 도입을 미루게 되었다.

그러다가 1931년에 일본이 대륙침략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하여 만주사변을 일으키게 되자 군사비의 격증으로 비군사비의 증가는 억제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일본의 조선총독부특별회계에 대한 보

총금의 규모(결산 기준)도 1932년도에는 전년대비 16.5%가 감소된 후 1937년도에 이르기까지 1932년도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 반면에 조선총독부 재정은 1932년도부터 대륙침략을 위한 철도의 건설과 전신전화시설의 확충으로 급속히 팽창하였다. 이에 따라 조선총독부는 1932년 12월에 조세개정준비위원회를 설치하여 일반소득세를 창설하고 이를 보완할 세제로서 상속세, 청량음료세를 도입하였으며 맥주의 생산이 개시됨에 따라 주세를 개정하는 등 제2차 조세정리를 1934년 3~6월 사이에 실시하였다.

2) 稅目別 整理內容

가) 所得稅制의 整備

종래 법인에 한하여 과세하던 소득세제를 정비하여 개인의 소득에도 과세하도록 하였다. 그 내용은 당시 일본이 시행하고 있었던 소득세제를 준거로 하였으나 조선의 특수사정을 고려하여 첫째로 급격한 부담증가를 피하기 위해 세율을 일본보다 2분의 1 정도로 정하고, 둘째로 개인의 면세점은 800円(일본은 1,200円)으로 하며, 셋째로 가족부양공제는 2계급으로 구분하여, 소득금액 1,500円 이하인 자에 대하여는 가족 1인당 60円을, 소득금액 1,500円을 초과하고 3,000円 이하인 자에 대하여는 가족 1인당 30円을 공제하도록 하였다(일본은 일률적으로 가족 1인당 100円).

소득은 제1종 법인소득, 제2종 공·사채·예금 등의 이자소득(갑, 을로 구분), 제3종 제2종에 속하지 않는 개인소득으로 구분하되, 근로소득 공제와 부양가족 공제 그리고 생명보험료 공제를 용인하였다. 근로소득 공제는 소득금액 1만 2천円 이하의 소득자에 대하여 용인하되 6천円 이하의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분의 2를, 6천円을 초과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분의 1을 공제하도록 하였다. 또 생명보험료공제는 불입 보험료연액의 공제를 용인하되 연액이 200円을 초과할 때는 200円으로 하였다.

戶主 및 그 동거가족의 소득은 합산과세를 하고, 제1종 소득세액으로부터 당해 사업연도에 납부한 제2종 소득세액을 공제하도록 하였으며, 제3종 소득 중 우편저금, 금융조합예금 및 은행저축 예금의 이자와 영리사업에 속하지 않는 일시소득은 비과세하도록 하였다.

끝으로 세율은 제1종 및 제2종 소득에는 비례세율이, 제3종 소득에는 22단계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었다. 즉 제1종 소득인 보통소득에 대하여는 조선 내 본점이 있는 법인과 없는 법인을 구별하여 각기 5% 내지 8%의 세율이 적용되었다. 또 초과소득에 대하여는 3계급으로 구분하여 4~20%의 세율이 적용되고 청산소득에는 적립금 등에 3%, 기타에 8%의 세율이 각각 적용되었다. 제2종 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의 소득인 공채이자에 2%, 기타 3%, 비거주자의 원천과세소득에는 5%의 세율을 적용하였다. 제3종 소득에 대하여는 8백円 이하의 금액에 대한 0.3%에서 4백만円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27%에 이르는 22단계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었다.

나) 地稅의 改正

국세체계의 중추로서 일반소득세를 도입함에 따라 지세는 일반소득세의 보완세가 되었으나 이에 따라 지세의 세율을 종전의 1,000분의 17에서 1,000분의 15(1934년도는 1,000분의 16)로 인하하여 그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였다. 또 소면적의 토지소유자에 대한 세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1府·邑·面의 지세가 연액 10錢 미만인 소액 지세는 면제하도록 하였다.

다) 相續稅의 創設

1926년에 설치되었던 세제조사위원회에서는 상속세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상속세의 실시에 있어서는 조선의 가족제도나 조선인의 상속세에 대해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과세기술도 발달하지 못한 상태라는 이유에서 그 신설이 미루어졌다. 그러나 일반소득세의 도입과 같이 상속세도 세수확대의 일환으로 1934년 6월에 신설되었다.

다만 신설된 상속세제에는 친족이나 상속에 관한 조선의 습관과 가족제도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특이한 규정을 두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첫째로 조선인간의 상속순위는 민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관습에 따르는 것이므로 상속의 종류에 의한 세율적용구분에 있어서는 조선인간의 상속관습을 고려하여 모두 상속순위에 따라 앞선 순위에 있는 상속인에 대하여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뒤떨어진 순위에 따라 높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둘째로 조선에 있어서의 가족제도의 현상을 감안하여 家督相續의 경우 면세점을 상당히 인상하였다.

셋째로 전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망 그리고 전쟁 또는 이에 준하는 근무 때문에 받은 상이질병에 기인한 사망으로 상속을 개시할 때는 과세하지 않도록 하였다.

상속세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과세대상 상속을 ① 가독상속 및 호주상속을 수반하는 재산상속과 ② 유산상속 및 호주상속을 수반하지 않는 재산상속으로 나누어 과세하되 조선 내에 상속재산이 있을 때에는 상속인이 조선인이든 일본인이든 또 그 상속개시지가 어디든간에 모두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상속세는 조선 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되었으나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1년 전에 행한 증여가액도 포함되었다.

상속세 이외의 준상속규정을 두어 과세하도록 하였다. 즉 조선 내에 있는 부동산 및 선박 이외의 재산 및 신탁의 수익권을 친족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그 증여를 받는 자가 유산상속을 한 것으로 간주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과세가격이 가독상속 또는 호주상속인 경우 5천円, 유산상속 또는 호주상속을 수반하지 않는 재산상속인 경우 1천円에 미달할 때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였다.

상속세의 세율은 ① 家督相續 또는 호주상속과 ② 유산상속 또는 호주상속을 수반하지 않는 재산상속으로 나누어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에 따라 각각 3종으로 구분하여 ①의 경우 0.5～16%까지의 19단계 초과누진세율을 ②의 경우 0.1～21%까지의 20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도록 구성되었다.

라) 淸凉飮料稅의 創設

1926년 세제조사위원회는 국세체계의 수립방침으로서 「청량음료, 기타 현재의 사회관념상 사치적 소비물로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가하다」고 결정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1934년 3월에는 청량음료세를 신설하여 소비세체계의 정비를 도모하도록 하였다.

청량음료세의 과세물건에서 탄산가스를 함유한 음료로 全重量의 0.05% 이하의 미량의 탄산가스를 함유한 것과 주세의 과세대상인 全容量의 1도 이상의 순주정을 포함하는 음료는 제외되었다.

납세의무자는 청량음료의 제조자와 移入品의 경우 보세지역으로부터 인취하는 자 그리고 천연적으로 용출하는 청량음료를 용기에 충전하는 자로 규정하였다.

청량음료세의 과세표준은 ① 병에 담은 음료의 경우 제조장에서 판출된 '리터'수 ② 그 밖의 것은 제조장에서 판출된 청량음료에 사용된 탄산가스량이었으며 세율은 ①의 경우 100리터당 2.75円(레몬수류), 100리터당 5.5円(사이다류) ②의 경우 탄산가스 사용량 1kg당 3円이 적용되었다.

다만 수입청량음료, 수이출청량음료, 자가용 청량음료만을 제조하는 자가 제조한 청량음료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도록 하였다.

마) 酒稅의 改正

1934년 6월에 제정·실시된 주세의 개정은 그 목적이 주세율의 인상에 있었다. 즉 당시 맥주가 제조되기 시작하여 그 移入稅가 감소되었던 것과 약주의 품질이 개선되어 청주와 유사하게 됨에 따라 그 소비도 늘어나 부담의 권형을 도모할 필요가 생겼던 것이다.

주류별 세율의 인상은 양조주의 경우 조선탁주가 1石당 3.2円에서 3.4円으로 약 6%가 인상되었으나 약주는 10円에서 13円으로 30%가 인상되고, 맥주는 1石당 16円에서 19円으로 18.8%가 높아졌다. 그러나 청주는 1석당 30円에서 33円으로 10% 인상되었다.

그 밖에 自家用酒免許制度는 사실상 허용하지 않는 방향에서 운용되어 왔으나 동 개정에서 그러한 규정을 폐지하였다. 또 자가용 국자에 대해서는 종래 무면허제조를 인정하여 왔으나 주세의 검사나 단속상 불편이 많았기 때문에 이를 면허제도로 바꿨다. 또한 조선주인 소주는 제조방법의 개선에 따라 비조선 소주와 구별할 필요가 없어져 이를 조선주에서 제외하였다.

바) 地方稅制의 整備

1934년에 실시한 제2차 국세정리는 지세의 세율인하와 제3종 소득세의 창설로 지방세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러나 제3종 소득세의 창설에 따른 지방세제의 개혁은 1936년도부터 실시하도록 하고, 지세의 세율인하에 수반하여 지방세제에 있어서는 지세부가세의 제한율을 개정하는 데 그쳤다.

당시 도세인 지세부가세의 세율은 북방 5개도(평남·북, 강원, 함남·북)는 본세액의 70%, 기타 도는 본세액의 60%였으나 이를 1934년도에는 각각 75%, 64%로, 1935년도에는 각각 80%와 68%로 중률하도록 하였다. 또 부세인 지세부가세의 세율도 본세액의 60%에서 1934년도에는 64%로, 1935년도에는 68%로 인상하도록 하였다.

끝으로 읍면세인 지세부가세의 세율도 본세액의 46%에서 1934년도에는 50%, 1935년도에는 53%로 각각 인상하도록 하였다.

사. 臨時利得稅의 創設

일본이 1935년 3월에 임시이득세를 도입하자 조선에서도 동년 4월에 조선임시이득세령을 제정·공포하였다. 이 세의 도입은 군사비를 중

심으로 급격히 팽창하는 국가재정에 대해 「건전재정」을 사수하고자 노력하였던 주목할 만한 성과였다고 평가되고 있다[4]. 이는 임시이득세의 창설이 당시 시국의 영향을 받아 수익이 늘어나고 있는 군수품공업이나 수출품공업에 새로 약간의 조세를 부과하여 공채발행액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농어촌 등 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부문에 대한 정부지원을 늘리자는 데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임시이득세는 법인에 한하여 과세하고 그 과세표준인 이득금액은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 중 기왕 사업연도의 평균이익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정하였다. 기왕 사업연도의 평균이익이란 1929~1931년의 3개년간 각 사업연도의 평균이익을 말하는 것이었다. 임시이득세의 세율은 이득금액의 10%로 정하여졌다.

아. 地方稅制의 改編

식민지조선의 세제를 정비하기 위하여 1926년에 설치된 세제조사위원회는 지방세체계가 국세에 대한 부가세와 특별세로 구성되어야 하며 소득세계통의 稅種을 중추로 삼고 수익세로써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는 방침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세에 있어서는 단지 호수를 표준으로 하여 각 부·면에 배당과세하는 호세 및 가옥세를 폐지하고 제3종 소득세부가세를 신설하여 이를 중추세로 삼는 한편 보완세로서 일반수익세인 가옥세, 영업세부가세, 취인소(거래소)세부가세 및 광세부가세를 신설하며 부·면에 있어서는 가옥세부가세와 광세부가세를 신설한다는 지방세제 개편방향을 결정한 바 있었다.

그러나 1934년에 국세로서 일반소득세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제의 개편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제3종 소득세부가세의 각 도

4) 大藏省 昭和財政史編集室(編), 『昭和財政史 第5卷 租稅』, 東京 : 東洋經濟新報社, 1957, p. 303.

별 부과예상액과 기존 호세 및 가옥세 부과액간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다른 세목을 신설하더라도 지방세수 결함이 크게 늘어날 것이 예상되었기 때문이다[5].

이에 따라 1935년에는 조선총독부 내에 지방세제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조선총독부 내무국에서 마련한 지방세제 개편안을 심의하게 한 후 지방세제정리요강을 결정하여 1936년부터 이를 실시하였다.

지방세제 정리방침은 ① 과도적으로 설립한 불합리한 세를 개폐하고 ② 영세민과세는 폐지하거나 경감하며 ③ 人稅와 物稅 및 물세 상호간의 조화를 도모한다는 것이었다.

1) 道稅

제1종 소득세부가세의 세율을 21%로 증률하고, 취인소(거래소)세부가세(세율 15%), 영업세부가세(세율 20%), 광세부가세(세율 : 광구세 7%, 광산세 : 10%)를 신설하였다. 또 특별세로서 호별세(세율 : 1호 평균 1.10円(以北 5道), 1.20円(기타 道)), 가옥세(세율 : 과세건물 1평당 평균 9錢(西北 6道) 내지 10錢(기타 道))를 신설하고, 특별소득세의 세율을 21%로 인상하는 한편 어업세와 차량세는 부담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부분적으로 개정하였다. 이와 함께 주로 호수에 따라 배당과세되던 호세와 가옥세를 폐지하였다.

2) 府稅

광세부가세(세율 : 광구세 7%, 광산세 10%), 가옥세부가세(세율 : 가옥세액), 부동산취득세부가세(세율 : 25%)를 신설하였다. 이와 함께 제1종 소득세부가세와 특별소득세부가세의 세율은 각각 소득세의 14%, 특별소득세의 14/21로 인상하고, 취인소(거래소)세부가세와 영업세부가세의 세율을 각각 35%, 80%로 인하하였다.

---

5) 朝鮮總督府內務局, 『朝鮮ニ於ケル地方稅制整備經過概要』, 京城, 1937, p. 29.

그 밖에 영세민에게 과중한 부담이 되는 잡종세는 그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고 종래의 가옥세부가세는 폐지하였다.

3) 邑面稅

광세부가세(세율 : 도·부와 같음), 가옥세부가세(세율 : 40%), 부동산취득세부가세(세율 25%)를 신설하고, 제1종 소득세부가세 및 특별소득세의 세율을 府稅와 같이 각각 14%, 14/21로 인상하였다. 반면에 영업세부가세의 세율은 종전의 100%에서 80%로 인하하였다. 그 밖에 잡종세 중 영세민의 부담이 되는 것은 그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였다.

4) 學校費賦課金

학교비부과금은 戶稅附加金과 家屋稅附加金을 주축으로 하고 特別賦課金을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었으나 가옥세부가금은 가옥세 시행지가 근소한 邑區域에 한정되고 그 구역에서는 호세부가금을 부과하기가 어려웠던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 그리하여 도세인 호별세를 도내 일원에 과세하게 되자 호세 및 가옥세부가금을 폐지하고 호별세부가금을 도입하였다. 호별세부가금은 조선인 현주호수 평균 1호당 1.1円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되었다.

3. 侵略戰爭期의 租稅政策(1937～1945)

일본은 1937년 7월 7일에 중일전쟁을 일으킨 후 1941년 12월 8일에는 미국의 진주만을 기습공격하여 침략전쟁을 태평양 일대에까지 확대하였으나 마침내 1945년 8월 15일에는 연합국에 항복하여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되었다. 이 침략전쟁 기간중 일본은 매년 전비조달을 위해 특별세의 도입이나 임시조세 增徵 조치를 강행하였으며 이에 상응하여 조선에서도 동일한 세제상의 조치가 취하여졌다.

가. 1937年의 租稅增徵

1) 臨時租稅增徵令의 實施와 新稅의 創設

일본은 군사비의 격증(전년대비 33% 증가)으로 급팽창한 1937년도 예산(전년대비 31% 증가)의 소요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1937년 3월에 임시조세증징법을 공포하고 법인자본세, 외화채특별세, 휘발유세 및 유가증권이전세를 신설하였다. 이에 상응하여 조선에서도 동년 4월부터 임시조세증징령을 공포하고, 법인자본세, 외화채특별세, 휘발유세를 신설하는 한편 자본이자세법을 개정하였다.

임시조세증징령은 법인의 보통소득과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인 제1종 소득세의 세율을 33~100% 인상하고, 공·사채의 이자와 은행예금이자 등에 과세되는 자본이자세와 법인의 임시이득에 대한 과세인 임시이득세의 세율을 각각 50%씩 인상하였으며, 소득세가 비과세되던 국채이자에 대하여는 제2종 소득세로서 1%의 세율로 과세하도록 하였다.

법인자본세는 영리법인의 불입주식금액, 출자금액 또는 기금 및 적립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0.1%의 세율로 과세하도록 하였다.

외화채특별세는 조선에 거주하는 자가 외화채를 소유할 때 외국국채는 이율이 연 5%를 초과하는 이자액에 대하여, 기타 외국채는 이율이 연 5.5%를 초과하는 이자액에 대하여 각각 70%의 세율로 과세하도록 하였다.

휘발유세는 제조장 또는 보세지역으로부터 휘발유를 반출하는 자에 대하여 1kl당 13.2円의 세율로 과세하도록 하였다.

2) 北支事件特別稅의 導入

일본은 1937년 7월에 중·일전쟁을 일으키게 되자 군사비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동년 8월에 북지사건특별세법을 공포하고 이를 조선에서도 시행하도록 하였다.

이 특별세는 시행기한 1년 한도의 임시세로서 소득세의 증징을 목적

으로 하는 소득특별세, 임시이득세를 증징하는 임시이득특별세, 주식 등 이익배당 중 비교적 高率의 것에 과세하는 이익배당특별세, 공·사채이자 중 고율인 것에 과세하는 공·사채이자특별세 그리고 보석류, 악기, 사진기 등에 대한 물품특별세로 구성되어 있었다.

또 이 특별세의 증징률은 소득특별세의 경우 제1종 소득은 세액의 10%, 제2종 소득은 세액의 5%(국채이자 제외), 제3종 소득은 세액의 7.5%로 정하여졌다. 임시이득특별세는 법인이나 개인의 임시이득세액의 15%를 증징하도록 하고 새로 창설된 이익배당특별세는 이익배당금 중 배당률 연 7%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10%의 세율로 과세하며 역시 신설된 공채 및 사채이자특별세도 국채는 이율 연 4%, 기타 공·사채는 동 4.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0%의 세율로 과세하도록 하였다. 끝으로 신설된 물품특별세는 보석·귀금속 등 사치품(제1종)과 사진기·악기 등(제2종)을 구분하여 제1종은 소매과세, 제2종은 제조장으로부터의 판출과세를 하고 세율은 각각 20%로 정하였다.

끝으로 이 특별세 수입은 조선총독부 특별회계로부터 일본의 임시군사비특별회계에 전입하도록 하였다.

3) 域內關稅의 改正

1930년대에 이르러 일본자본의 조선진출로 조선의 공업화가 촉진되고, 특히 일본의 산업이 군수산업으로 재편되기 시작하자 1937년에는 移入稅의 세율을 품목별로 30~43%만큼 경감하였다. 이와 함께 조선과 일본이 다 같이 휘발유세를 신설하자 휘발유를 出港稅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 1937년 8월에 물품특별세가 창설되자 그 대상품목을 출항세의 과세대상에 포함시켰다.

4) 市街地計劃事業特別稅의 新設

朝鮮市街地計劃令의 시행(1934년 8월)에 따라 府 또는 邑에 있어서 市街地計劃으로서 각종 토목사업을 실시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게

되자 그 소요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1937년 2월 16일 政務總監通牒으로 새로 市街地計劃特別稅의 부과를 용인하고 그 세목과 세율을 아래와 같이 한정하였다.

地稅割	地稅의 20% 이내
營業稅割	營業稅의 22% 이내
家屋稅割	家屋稅의 40% 이내
車輛稅割	車輛稅의 40% 이내
不動產取得稅割	不動產取得稅의 40% 이내
特別營業稅割	特別營業稅의 20% 이내

그러나 이 특별세는 당초부터 制限額까지 부과하게 되면 府邑民의 부담을 급격히 늘리고 장차의 재원을 고갈시키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事業執行 상황을 고려하여 점차 증액하여 制限額에 달하도록 하였다[6].

나. 1938年의 租稅增徵

1) 支那事變特別稅의 導入

중·일전쟁의 확대와 장기화에 따라 일본은 1938년 3월에 북지사건특별세를 폐지하고 지나사변특별세를 신설하여 조세증징을 본격화하였다. 즉 이 특별세는 소득세, 법인자본세, 사탕소비세 및 취인소(거래소)세를 증징함으로써 임시이득세 외에 事變利得에 대하여 과세하는 한편 이익배당특별세와 공채 및 사채이자특별세는 계속 북지사건특별세와 같이 과세하도록 하고, 또 물품특별세는 그 과세대상을 확대하였다. 이와 함께 새로 통행세, 입장세 및 특별입장세를 도입하여 세제를 전시체제로 이행시켰다.

이 특별세령이 규정한 세목별 증징률의 폭과 신설된 세목의 내용은

6) 朝鮮總督府, 『施政三十年史』, 京城, 1940, pp. 432~433.

다음과 같다.

가) 所得稅의 增徵率

법인소득에 대한 과세인 제1종 소득세의 증징률은 100%를 상회하였고, 초과소득은 10%, 청산소득은 73~106%에 달하였다.

국·공·사채이자 및 배당 등에 대한 제2종 소득세의 증징률은 10%에서 30%에 달하였으며 개인소득에 대한 제3종 소득세는 22단계 초과누진세의 최저세율이 33%, 최고한계세율이 25.9% 인상되었다.

〈表 Ⅳ-2〉 所得稅의 增徵(1938)-支那事變特別稅令-

(單位 : %)

	과 세 대 상	종전세율	개정세율
제1종 소득세			
갑. 보통소득	1. 조선 내에 본점을 가진 법인	5	12.25
	2. 조선 내에 본점을 가지지 않은 법인	8	16.5
을. 초과소득	1. 자본액에 대한 연 10% 초과금액	4	4.4
	2. 자본액에 대한 연 20% 초과금액	10	11.0
	3. 자본액에 대한 연 30% 초과금액	20	22.0
병. 청산소득	1. 적립금 또는 비과세소득	3	5.2
	2. 기타	8	16.5
제2종 소득세			
갑. 국채이자	이율 연 4% 초과	1	1.3
공채이자	이율 연 4.5% 이하	2	2.2
	이율 연 4.5% 초과	2	2.6
사채이자	이율 연 4.5% 이하	3	3.3
	이율 연 4.5% 초과	3	3.9
기타		3	3.3
을. 배당 등		5	6.5
제3종 소득세	22단계초과누진과세	0.3~27	0.4~34

資料 : 大藏省, 『昭和財政史 第16卷, 舊外地財政(下)』, 東京 : 東洋經濟新報社, 1961. 2.

나) 砂糖消費稅 및 取引所(去來所)稅의 增徵

사탕소비세의 증징률은 사탕의 경우 종별로 1~10%, 당밀의 경우 종별로 4~10%에 각각 달하였다. 다만 일부 사탕과 당밀 그리고 당수의 세율은 인하되었다.

취인소(거래소)세 중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대한 과세는 단기거래세율을 1만분의 1.5에서 1만분의 2.2로 인상하여 46.7%를 증징하고, 장기거래세율은 1만분의 2에서 1만분의 2.7로 인상하여 35%를 증징하도록 하였다.

다) 利益配當稅와 公·社債利子稅

북지사건특별세령에서 규정한 내용과 같이 이자배당세와 공·사채이자세를 증징하도록 하였다. 즉 조선 내에 본점을 갖는 법인으로부터 배당률 연 7%를 초과하는 배당을 받을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익배당세로 징수하도록 하였다. 또 조선 내에서 공·사채의 이자를 받는 경우 국채에 있어서는 年利 4%, 공채 및 사채에 있어서는 연리 4.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각각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공채 및 사채이자세를 과세하도록 하였다.

라) 通行稅, 入場稅, 特別入場稅의 創設

통행세는 기차, 전차 및 기선의 승객에 대한 과세로서 세율은 최저 3등 승객으로서 승차선구간이 50km 이상인 경우 2錢에서 최고 1등 승객으로서 승차선 구간이 800km 이상인 경우 2.4円에 이르는 등급과 거리에 따른 차등정액세율이 적용되었다. 통행세는 운수업자가 운임을 받을 때 이를 영수하여 정부에 납부하도록 하였다.

입장세는 연극, 활동사진, 연애 또는 씨름이나 야구 등을 개최하는 장소, 경마장 등(이상 제1종 장소)에 입장하는 자나 무도장, 마작장, 당구장, 골프장, 스케이트장(이상 제2종 장소)의 설비를 이용하는 자에 대한 과세로서 입장요금의 5%를 과세하였다.

특별입장세는 학생이나 아마추어의 운동경기를 관람하기 위해 경기장에 입장하는 자에 대하여 그 입장요금의 5%를 과세하였다.

마) 物品稅의 增徵

물품세는 1937년의 북지사건특별세령에서 규정한 물품특별세보다 그 세율은 인하되었으나 과세대상을 대폭 확장하여 증징하였다.

북지사건특별세령에서 규정된 물품특별세의 과세대상은 제1종 물품으로서 貴石, 진주 등 5개 물품, 제2종 물품으로서 사진기, 악기 등 5개 물품에 불과하고 세율은 일률적으로 20%를 적용하였다. 그러나 지나사변특별세령에 규정된 물품세의 과세대상은 북지사건특별세령에서 규정한 물품특별세의 과세대상 외에 제1종 물품에는 乙類物品으로서 시계, 만년필, 화장용구, 家具, 메리야스 등 19개 물품을 추가하였고 제2종 물품에도 쌍안경, 총, 골프용구 등 8개 품목을 甲類物品에 추가하고, 라디오청취기, 냉장고, 승용차, 화장품 등 8개 품목을 乙類物品으로 신설하여 도합 16개 물품을 추가하였다. 그 밖에 제3종 물품으로서 성냥, 주류(청주, 맥주, 소주 등 포함)를 과세대상에 추가하였다.

이와 함께 세율은 제1종·제2종 물품 중 甲類에 속하는 물품에는 15%, 乙類에 속하는 물품에는 10%를 각각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제3종 물품의 경우 성냥에는 1,000본당 5錢, 청주 및 맥주에는 1석당 4円, 소주에는 1석당 1円 70錢, 기타 주류에는 1석당 6円의 정액세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2) 臨時利得稅의 改正

임시이득세는 1935년 공포 당시에는 1937년말까지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3년간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그후 임시조세증징령에 의해 1938년까지 1년간 연장하였다. 그러나 1938년 3월에는 임시이득세령을 개정하여 과세범위를 대폭 확대한 데 이어 중·일전쟁이 종료하는 해의 이듬해까지 시행하는 것으로 연장하였다.

개정된 임시이득세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과세되는 임시이득에 중·일전쟁의 영향을 받아 늘어나는 이

득을 포함시켰다. 즉 종래 군수산업과 수출산업의 호황으로 늘어난 법인이득을 대상으로 과세하던 것을 甲種 이득으로 하고 중·일전쟁의 영향을 받아 이익이 증대된 임시이득에 대하여도 乙種 이득으로 과세하도록 하였다.

둘째로 종전의 세율이 10%였던 것을 갑종 이득에는 17.25%, 을종 이득에는 30%를 적용·과세하도록 하였다.

셋째로 영업세령이 정하는 영업으로 인하여 얻는 개인이득에 대해서도 1934년~1936년의 3개년 평균이익을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 13%의 세율을 적용·과세하도록 하였다.

3) 旣存 稅目의 改正

1938년에는 증징세제를 강화하는 조치 이외에도 소득세, 상속세 및 등록세의 일부 개정이 있었다.

소득세 개정에 있어서는 一時恩給 및 그와 유사한 퇴직급여의 일시소득을 제2종 소득으로 추가하여 과세하도록 하였다.

상속세는 종래 조선 내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개시를 불문하고 과세하던 것을 상속개시지가 조선일 때에는 상속재산의 소재를 불문하고 상속재산을 종합하여 과세하도록 하였다. 또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받은 보험금과 타인을 위한 계약으로 인하여 받을 생명보험금을 새로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피상속인이 받은 퇴직수당, 공로금 등을 상속인이 수취한 때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도록 하였다. 또한 종래 준상속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던 부동산 및 선박도 친족간에 증여한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등록세의 개정은 매매 또는 증여에 의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의 등록세율을 다소 인하하고, 종래 과세가 되지 않던 위탁자의 상속인에게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이전할 때에도 그 등기는 상속으로 인한 재산권의 취득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과세하도록 하였다.

4) 臨時租稅措置令의 制定

중·일전쟁의 영향으로 수익이 감소된 자작농이나 중소상공업자에 대한 지세 내지 영업세의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鑛物의 생산을 조장하기 위하여 임시조세조치령을 제정·실시하였다.

첫째로 자작농의 전답소득이 평상소득에 비하여 25% 이상 감소될 경우 그 감소비율에 따라 전답지세액의 20%에서 최고 50%까지 경감하도록 하였다.

둘째로 영업세의 과세표준액(매상·수입금액 등)이 평상 과세표준액에 비하여 25% 감소하는 경우 그 감소율에 따라 영업세액의 20%에서 최고 50%까지 경감하도록 하였다.

셋째로 금광·동광·아연광·석광 등 광물에 대하여 새로 광업권을 설정하여 산출한 광물에는 광산세를 비과세하고, 1937년중 산출량을 초과 생산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광산세를 면제하도록 하였다.

넷째로 면화의 절약을 위해 혼방사나 인조견사 등과 혼방한 면사에 의한 직물을 면직물로 간주하여 그 이입세를 경감하도록 하였다.

다. 1939年의 增稅

중·일전쟁의 확대에 따라 군사비를 위시한 전시체제 이행 등에 필요한 경비가 더욱 증가하게 되자 일본은 1939년에 네번째로 임시군사비의 재원조달을 위해 증세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동시에 전쟁수행상 필요한 생산력 확충과 중요산업진흥을 위한 감면세조치의 강구도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39년의 조세 증징은 임시이득세의 증징과 함께 물품세의 과세범위 확대와 세율의 인상, 사탕소비세 및 청량음료세의 증징 그리고 건축세나 유흥음식세의 신설과 같이 「소비의 절약」에 목적을 두었으며, 군수산업 등에 대한 세제상의 지원확대로 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소득세 경감이나 설비증설에 대한 소득세 면제 등의 조치를 마련하였다.

1) 支那事變特別稅令의 改正

가) 法人負擔의 緩和

제1종 소득세의 증징에 대하여 종래는 지나사변특별세령에 의한 보통소득 및 초과소득의 증징세액과 법인의 보통소득 및 초과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그리고 임시이득세액의 합계액이 보통소득의 50%를 초과할 때는 그 초과액에 대한 증징세액을 징수하지 않도록 되어 있었다. 이에 대하여 개정세령은 징수하지 않는 증징세액의 범위를 보통소득의 55%에서 보통소득 중 유보된 금액의 15%를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확대하여 법인 유보소득의 일부에 대해 소득세 경감의 유인을 마련하였다.

나) 利益配當稅의 增徵

배당금 중 배당률이 연 10%를 초과할 경우 그 10%를 초과하는 배당금에 대한 세율을 15%로 인상하였다. 다만 배당률이 연 7%를 초과할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7%를 초과하는 배당금에 10%의 세율을 적용·과세하도록 하였다.

다) 公債 및 社債利子稅의 增徵

국채는 이율 연 4%, 지방채 및 사채는 4.5%를 넘는 금액에 대한 10%의 세율을 15%로 인상하였다.

라) 砂糖消費稅의 稅率引上

1938년에 북지사건특별세령을 제정할 때와 달리 1939년 개정에 있어서는 일본보다 세율이 높았던 「통에 든 白下糖」(1. 사탕 중 제1종 乙)을 제외하고 사탕, 당밀, 당수에 대한 모든 세율이 인상되었다. 사탕 중에서는 제1종 갑 「통에 든 黑糖」에 대한 세율이 38.1%가 인상되고, 제5종 「얼음사탕, 각사탕 등」의 세율이 6.7%가 인상되었다. 또 당밀에 대한 세율도 최저 8.5%, 최고 40%가 인상되고, 당수에 대한 세율은 10.4%가 인상되었다.

마) 淸涼飮料稅의 增徵

지나사변특별세령에서 새로 증징된 청량음료세는 제1종 玉라무네

병에 담은 것에 대한 세율을 100리터당 2円 75錢에서 3円 35錢으로 21.8%를 인상하고, 제2종 기타 병에 담은 것은 100리터당 5円 50錢에서 8円 25錢으로 50% 인상하였으며, 제3종 병에 담지 않는 것(탄산가스 사용량 1kg당) 3円을 4円 50전으로 역시 50% 인상하였다.

바) 印紙稅의 增徵

종래 상품권에 대하여 3錢의 세율로 과세하던 것을 최고 3円까지의 5단계로 구분된 정액세율을 적용하여 인지세를 증징하도록 하였다.

사) 物品稅의 增徵

과세물품을 추가하고 세율을 인상하여 물품세의 증징을 도모하였다. 제1종 2류에 문방구, 운동구 등 7개 품목이 추가되고, 제2종 2류에 화장비누, 치약 등 6개 품목이, 제3종 품목에 엿, 포도당 및 맥아당이 추가되었다.

또 제1종 을류물품인 모피, 모피제품 등을 제1종 갑류물품으로, 제2종 을류물품인 자동차, 화장품을 제2종 갑류물품으로 각각 변경하여 적용세율을 종전의 10%에서 15%로 인상하였다. 또한 제3종 주류의 세율을 100% 인상하였다.

아) 建築稅 및 遊興飮食稅의 新設

조세증징을 위하여 신설된 건축세는 건축가액 1만円 이상의 가옥으로서 주거용가옥, 요리점업·좌석대여업·기타 이와 유사한 영업용 가옥, 연극·활동사진·연예 등에 사용할 가옥을 건축하는 자에게 과세하고, 건축가액에서 5천円을 공제한 금액에 10%의 세율로 과세하도록 하였다.

역시 조세증징을 위해 새로 도입된 유흥음식세는 소비금액 1인 1회 5円 이상의 유흥음식에 대하여 그 요금의 10%에 상당한 금액을 과세하도록 하였다. 다만 藝妓의 花代에 대하여는 요금에 한도없이 그 요금의 14% 상당액을 과세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국세로서 유흥음식세를 신설함에 따라 지방단체는 과세권을 제한받게 되었다.

2) 臨時利得稅의 改正

법인에 대한 임시이득세의 세율을 모두 인상하였다. 즉 1929~1931년의 3개년 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평균이익을 초과하는 이득(甲種利得)에 대한 세율을 17.25%에서 20%로, 1934~1936년의 3개년 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평균이득을 초과하는 이득(乙種利得)에 대한 세율은 30%에서 40%로 각각 인상하였다. 이와 함께 자본금이 10만円 이하인 법인에 한하여 적용하던 乙種 세율 25%를 30%로 인상하였다. 또 1937년 1월 1일 이후에 증가된 자본에 한하여는 그 평균이익의 계산방법을 개정하여 증가자본금에 대하여 갑종이득은 연 7%, 을종이득은 연 10%를 그 증가된 자본에 대응하는 평균이익으로 하도록 하였다.

개인의 임시이득세에 대하여는 종래의 이득을 보통이라 하고, 세율 13%를 18%로 인상하였다. 이와 함께 새로 개인의 선박, 광업권의 양도이득을 과세대상으로 추가하고, 23%의 세율로 과세하도록 하였다.

라. 第3次 稅制整理(1940)

1) 稅制整理의 背景과 基本方針

가) 稅制整理의 背景

中·日戰爭 이래 매년 격증하여 왔던 일본의 국가예산은 1940년에도 더욱 팽창하였다. 일반회계예산은 전년대비 26.9%가 증가하고, 임시군사비특별회계의 규모는 일반회계예산의 73.2%에 달하였으며, 일반회계 및 임시군사비특별회계의 예산순계에 대하여 64%를 점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같이 팽창한 세출예산에 대하여 조세수입전망액은 세출총액의 24%에 불과하였다. 뿐만 아니라 전비 조달을 위한 국채의 누증과 군수산업의 자금수요 증대로 국채의 소화율은 계속 떨어졌던 반면에 중앙은행(일본은행)의 국채보유액이 격증함에 따라 통화발행

액도 급증하여 1939년에는 도매물가지수가 10% 포인트나 상승하였다.

이같이 군사비를 중심으로 하는 세출액의 급증과 국채소화율의 저하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심화에 직면하여 일본은 戰局의 진전에 대응하여 조세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탄력적인 세제를 수립할 부득이 한 필요가 생겨나게 되었다. 이와 함께 중·일전쟁이 발발한 이래 특별세법 등에 의해 복잡하게 된 조세체계를 통합·정리할 필요도 있었다.

이에 따라 일본은 ① 중앙·지방을 통하여 부담의 균형을 도모한다 ② 경제제정책과의 조화를 도모한다 ③ 수입의 증가를 도모하는 한편 탄력성 있는 세제를 수립한다 ④ 세제의 간소화를 도모한다는 세제개정의 목표에 따라 1940년 3월에 다년간 현안이 되어 온 조세제도의 발본적 개혁을 실시하였다[7]. 이 세제개혁은 국세와 지방세 전반에 걸친 개혁으로서 국세인 소득세에 분류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도입하는 한편 법인세를 신설하고 지방세제를 分與稅와 物稅 중심으로 개혁하였다.

이러한 일본의 세제개혁에 상응하여 조선에서도 1940년 3월에 제3차 세제정리가 실시되었다.

나) 稅制整理의 基本方針

1940년에 실시된 제3차 세제정리의 기본방침은 다음과 같았다.

(1) 국세상호간에 있어서 중앙·지방을 통하여 조세부담의 균형을 도모한다.

(가) 지방별 조세부담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소득세, 기타 국세증수액의 일부를 지방에 분여하여 지방부담을 경감·조정한다.

(나) 지세의 과세표준을 임대가격으로 바꾸며 이를 위하여 임대가격 조사를 실시한다.

(다) 수익세 상호간의 부담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① 영업세의 세율

7) 大藏省, 『昭和財政史 第5卷 租稅』, 東京 : 東洋經濟新報社, 1957, p. 510.

을 인상하고 ② 자본이자세의 세율을 인상하며 ③ 배당에 대하여 자본이자세를 부과한다.

㈑ 일본의 세제개혁에 상응하여 부담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① 일정액 이상 소득자의 제2종(甲)의 소득을 제3종 소득세로 종합과세하고 ② 초과소득세와 법인임시이득세를 통합하며 ③금융조합, 산업조합등의 특별법인에 대하여 과세하고 ④ 사탕소비세의 色相課稅制度를 폐지하고 제조방법과세제도를 실시한다.

(2) 조세수입의 증가를 도모한다.

일본의 1937년도 및 1940년도 증세에 상응하여 소득세, 임시이득세,. 상속세, 외화채특별세, 법인자본세, 주세, 청량음료세, 사탕소비세, 휘발유세, 거래소세, 통행세, 입장세, 특별입장세, 유흥음식세 및 골패세를 증징한다.

(3) 조선의 특수사정을 감안한다.

㈎ 분류소득세제도는 창설하지 않는다.

㈏ 저축예금, 금융조합저금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는다.

㈐ 특수세목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세율을 일본보다 低位에 두며, 면세점도 실정에 맞게 조정한다[8].

2) 稅制整理의 主要內容

가) 旣存稅의 改正

(1) 所得稅

㈎ 제1종소득세

① 법인소득에 대한 과세인 보통소득에 대한 세율을 조선 내에 본점

8) 財務部, 『韓國稅制史(上)』, 서울, 1979, p. 102. 조선총독부 재무국장(1937~1945. 8)을 지냈던 水田直昌은 「朝鮮의 租稅制度는 1927년에 근본방침이 확립되고, 1934년에는 형식상 일단 정비되었으며, 1940년에 이르러 각종 내용이 충실하게 되어 이에 따라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 近代先進國家의 稅制가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水田直昌(監修), 『總督府時代の財政』, 東京 : 友邦協會, 1974, p. 133.

율 둔 법인의 경우 종전의 12.25%에서 15%로, 조선 내에 본점을 두지 않는 법인의 경우 종전의 16.5%에서 20%로 각각 인상하였다. 단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세율은 종전의 16.5%에서 15%로 인하하였다.

② 법인의 초과소득에 대한 과세는 임시이득세에 통합하여 과세하도록 하였다.

③ 법인의 보통소득 계산상 제1종 소득세와 임시이득세는 損金에 산입하지 않게 하고, 임시이득세는 당해 사업연도의 보통소득에서 공제하게 하였다.

④ 청산소득 중 적립금 및 소득세비과세소득으로 이루어진 부분에 대한 제1종소득세 과세는 폐지하였다.

(나) 제2종소득세

① 세율을 인상하였다. 조선 내에서 지급받는 국·공·사채 등의 이자(甲)에 대한 세율은 국채이자의 경우 종전의 1% 또는 1.3%에서 1%로 통일하였다. 공채이자에 대한 세율은 종전의 2.2% 또는 2.6%에서 3%로 인상하고, 기타에 대한 세율은 종전의 3.3% 또는 3.9%에서 4%로 인상하였다.

비거주자가 조선 내 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 또는 이자의 배당 등(乙)에 대한 세율을 종전의 6.5%에서 이익 또는 이자의 배당에는 8%, 기타에는 12%로 차등 인상하였다.

일시은급(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퇴직급여에 대한 세율은 종전에 3~20%의 4단계 초과누진세율로 되어 있던 것을 5~30%로 인상하였다.

비거주자에 대한 제2종(甲)의 소득에 대하여는 국채이자인 경우 5%, 국채 이외의 공채이자에는 7%, 기타에는 8%를 적용·과세하도록 하였다.

② 일정액 이상 소득자의 제2종(甲) 소득 중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3소득(개인소득)에 종합하여 과세하고, 원천징수된

제2종소득세는 제3종소득세로부터 공제하도록 하였다.

(다) 제3종소득세

① 개인소득에 대한 과세인 제3종소득세의 세율을 종전의 22단계 누진세율 0.4～34%에서 0.4～57%로 인상하였다. 최고한계세율의 인상률은 67.6%에 달하였으며 세율인상으로 약 35%의 증수를 기대하였다.

② 법인의 청산분배금 중 출자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등의 이익을 배당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하였다.

(2) 營業稅

(가) 영업세의 세율을 약 50% 인상, 증징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자본이자세의 세율도 인상하고 배당에도 자본이자세를 과세하여 收益稅 상호간 부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나) 영업세의 세율을 인상하되 업종별로 증징률을 달리하였다. 즉 물품판매업 중 도매(甲), 운송취급업, 여인숙업 등에 대한 영업세 증징률은 약 12～25%에 달하고 제조업(甲)에는 증징이 배제되었으나 그 밖의 업종에 대한 증징률은 은행업을 제외하고 40～75%에 달하였다.

(다) 종래 法人의 영업세는 歷年 과세되었으나 이를 사업연도별로 과세하도록 하였다.

(3) 資本利子稅

(가) 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배당에 대하여도 새로 자본이자세를 과세하도록 하였다.

(나) 종전에 일률적으로 3%의 세율이 적용되었으나 이를 국채이자에는 그대로 적용하고 기타에 대하여는 4%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4) 臨時利得稅

(가) 법인의 임시이득세

① 종래의 甲種 임시이득세와 乙種 임시이득세를 전면 정비하여 임시이득세의 乙種利得(기왕 사업연도를 1934～1936년 3개년으

로 하는 것)과 종래의 제1종소득세 중 초과소득을 통합하여 과세하도록 하였다.

② 임시이득세의 과세대상인 법인의 이득을 매사업연도의 이익 중 당해 사업연도 자본금의 연 10%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하되 세율은 자본금을 초과하는 금액이 크기와 평균이익의 초과여부에 따라 25%에서 65%에 이르는 3단계 차등세율을 적용·과세하도록 하였다.

③ 평균이익은 기왕 사업연도(1934~1936년의 3개년)의 평균자본금에 기왕 사업연도의 평균이익률을 곱하여 산출하되 평균이익률이 연 10% 미만이거나 제1차사업연도가 1937년 1월 1일 이후에 종료할 때는 연 10%로 하고, 연 20%를 초과할 때는 연 20%로 하였다.

(나) 개인의 임시이득세

① 보통이익에 대한 임시이득세의 세율이 종전의 18%에서 25%로 인상되었다.

② 평균이익률을 구할 수 없거나 평균이익이 현년분 이익의 3분의 1에 미달할 때에는 현년분 이익의 3분의 1을 평균이익으로 하였다.

(5) 相續稅

인적공제제도를 새로 도입하였다. 즉 家督相續 또는 호주상속에서 그 과세가격이 5만円 이하인 때에 한하여 부양가족과 不具廢病者 1인당 1천円을 공제하도록 하고, 유산상속 또는 호주상속을 수반하지 않는 재산상속에 그 과세가격이 3만円 이하인 때에 한하여 자식인 부양가족과 不具廢病者 1인당 1천円을 공제하도록 하였다.

(6) 利益配當稅

조선에 본점을 둔 법인으로부터 이익배당을 받은 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이익배당세는 종래 ① 배당률 연 7%를 초과하는 배당액에는 세율 10%를 적용하여 과세하고 ② 배당률 연 10%를 초과하는 배당액

에는 세율 15%를 적용하여 과세하였으나 이를 ②로 일원화하였다.

(7) 外貨債特別稅

외화표시 국채·지방채·일본법인이 발행한 社債에 대한 과세인 이 특별세는 종래 외화채에 대하여는 이율 연 5%를 초과하는 이자액, 외화국채 이외의 외화채는 이율 연 5.5%를 초과하는 이자액에 대해 7%의 세율을 적용·과세하였으나 이를 외화국채는 이율 연 4%, 기타 외화채는 이율 연 4.5%를 각각 초과하는 이자액에 대하여 과세하게 함으로써 과세범위를 확대하였다.

(8) 法人資本稅

조선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法人의 자본에 대한 과세인 이 세의 세율은 종래 0.12%였으나 이를 0.15%로 인상하여 증징하도록 하였다.

(9) 酒稅

(가) 맥주 및 양조주인 과실주의 과세방법을 出庫課稅로 바꾸고 주세를 酒類造石稅 및 酒類庫出稅로 구분하였다. 전자는 주류의 제조석수에 따라 그 제조업자로부터 징수하고, 후자는 제조장으로부터 판출된

〈表 Ⅳ-3〉 酒稅(造石稅)의 稅率引上(1940)

(單位 : 1석당 円)

	1939	1940		1939	1940
양조주			증류주		
조선주인 탁주	3.4	5	주정(1도)	1.2	1.5
조선주인 약주	13	18	기타(소주, 30도)	15	15
맥주	19	21.3*	재제주		
청주(20도)	33	36	미림(28도)		36
과실주	—	25*	합성청주(20도)	33	38.5
기타(20도)	33	33	기타(20도)		36

註 : * 庫出稅

資料 : 酒稅令, 제22호, 1934. 6. 25; 『朝鮮總督府官報』, 號外, 1940. 3. 31.

주류의 석수에 따라 제조업자로부터 징수되었다.

(나) 주세의 세율을 인상하고 증징하였다. 물품세가 과세되지 않는 조선약주의 세율은 1석당 13円에서 18円으로 38.5%가, 조선주인 탁주는 1석당 3円 40錢에서 5円으로 47%가 증징되었다.

그러나 그 밖에 주류에 대한 세율은 주정(25% 인상)을 제외하고 종전세율이 유지되거나 9~16.6%에 달하는 인상률에 그쳤다. 이는 1938년에 실시된 「지나사변특별세령」에 의해 주류에 대해서는 물품세가 부과되기 시작하였고, 1939년의 동 「특별세령」의 개정과 1940년의 물품세령에 의하여 주류(탁·약주 제외)에 대한 물품세 세율이 계속 인상된 데 그 이유가 있었다.

(10) 淸涼飮料稅

제1종 병에 담은 玉라무네 이외에 제2종 및 제3종 청량음료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였다. 제2종(사이다류)은 100ℓ당 종전의 8円 25錢에서 11円으로 33.3%를 증징하고, 제3종 병에 담지 않는 것은 탄산가스 사용량 1kg당 종전의 4円 50錢에서 6円으로 역시 33.3%를 증징하였다.

(11) 砂糖消費稅

(가) 종래의 色相課稅制度를 폐지하고 사탕의 제조방법에 따른 과세제도를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과세대상 및 세율이 전면 개정되었다.

(나) 과세대상은 종전과 같은 사탕과 당밀, 당수로 크게 나누어졌으나 사탕은 종래의 5종에서 3종으로 축소되고 당밀도 종래의 3종에서 2종으로 단순화되었다.

(다) 세율은 사탕 중 제1종 分蜜砂糖에 대한 증징률이 66% 이상 100%를 초과하였고, 제2종 기타사탕이나 제3종 얼음사탕·각사탕 등과 당밀 및 당수에 대한 증징률은 10%를 전후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12) 揮發油稅

세율을 종전에 1kℓ당 13円 20錢하던 것을 1갤런에 13錢 정도 인상하여 1kℓ당 34円 35錢으로 日本과 똑같이 인상하였다.

(13) 取引所(去來所)稅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대한 세율을 甲 단기(7일 이내)에 대하여는 종전의 1만분의 2.2를 1만분의 4로, 乙 장기에 대하여는 종전의 1만분의 2.7%를 1만분의 6으로 각각 81.7%, 122%나 대폭 증징하도록 하였다.

(14) 通行稅

(가) 종전에는 비과세하였던 乘車船區間 50km 이하의 3등승객에 대해서도 40km 이상의 구간에는 새로 과세하도록 하였다. 또 급행요금에 대해서도 새로 10%의 세율로 과세하도록 하였다.

(나) 통행세의 세율을 전반적으로 인상하였다. 즉 종전에 통행세의 세율은 50km 미만 1등은 6錢, 2등은 3錢이었으나 새로 제정된 통행세령에서는 승차선구간 40km 이하 1등은 10錢, 2등은 5錢으로 인상되었다. 또 승차선거리가 800km를 초과할 때 종래세율은 1등이 2円 40錢, 2등이 1円 20錢, 3등이 40錢이었으나 개정세법에서는 각각 3円, 1円 50錢, 50錢으로 대폭 인상되었다.

(15) 入場稅 및 特別入場稅

(가) 입장세 및 특별입장세의 면세점을 종전의 39錢에서 29錢으로 인하하여 과세범위를 확대하였다.

(나) 입장세의 세율은 종전에 일률적으로 5%이던 것을 종별로 입장요금에 따라 구분·인상하였다. 즉 제1종의 경우 입장료 1円 50錢 미만에는 5%, 동 4円 미만 15%, 동 4円 이상 20%로 구분하고 제2종의 경우 당구장에는 8%, 기타 장소에는 15%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16) 物品稅

(가) 과세물품이 확대되었다. 제1종 甲類에 상아제품, 칠보제품, 호박제품이, 동 乙類에 일정가격 이상의 과자, 애완용 동물, 분재 등이 추가되었다.

(나) 제1종 甲類와 제2종 甲類에 대한 세율을 종전의 15%에서 20%로 인상하였다.

(다) 조청(飴), 포도당 및 맥아당에 대한 세율을 23~27% 정도 인상하였다.

(17) 遊興飮食稅

(가) 藝妓의 花代에 대한 세율을 종전의 10%에서 30%로 인상하고, 기타 화대 이외의 요금에 대한 세율은 종전의 10%에서 15%로 인상하였다.

(나) 면세점을 종전의 5円에서 3円으로 인하하고, 예기의 화대를 수반하는 요금 및 카페, 바 등의 요금에 대하여는 면세점을 폐지하였다.

(18) 骨牌稅

세율을 전반적으로 40%에서 66.7% 인상하였다. 즉 마작은 종전의 3円에서 5円으로, 紙製物은 종전의 20錢에서 30錢으로, 지제물 이외의 것은 종전의 50錢에서 70錢으로 각각 인상하였다.

(19) 其他

전시재정을 강화하기 위해 조세의 증징에 주력하면서도 생산 확충이 국가적 필요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의 세제개혁에 상응하여 조선에서도 생산력 확충을 위한 조세상의 유인을 확대하였다.

(가) 법인이 유보소득을 생산설비 확장이나 국채구입에 운용할 경우 이에 대한 과세경감을 확대하였다.

(나) 해외기업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경감하였다.

(다) 중요 광물의 채굴에 대하여도 중요산물제조업에 대한 免稅의 예에 따라 3년간 소득세, 영업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면세하도록 하였다.

(라) 時局産業에 사용하는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연한을 舊設備에 대해서도 단축하도록 하고, 일부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시인범위를 확장하였다.

나) 新稅의 創設과 旣存稅의 廢止

(1) 特別法人稅의 創設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金融組合 및 同 聯合會, 産業組合 및 동 연

합회, 工業組合 및 동 연합회 등 출자조합 또는 연합회에 대하여도 일반국민의 부담 증가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 中·日戰爭이 끝나는 이듬해까지 특별법인세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특별법인세는 이러한 단체의 剩餘金에 대하여 5%의 세율로 과세하도록 하였다. 다만 잉여금이 출자금액의 연 3.5% 이하이거나 5천円 이하인 때는 과세하지 않기로 하였다.

(2) 臨時租稅增徵令과 支那事變特別稅令의 廢止

제3차 세제정리로 中·日戰爭 발발 후 임시조세증징령, 북지사건특별세령, 지나사변특별세령 등으로 복잡하게 되고, 그 체계가 통일, 정비되지 못하고 있었던 국세제도가 특별세령에서 규정하였던 세목을 모두 단행세령화하여 정비·통합되고 그 체계가 정비됨에 따라 임시조세증징령(1937. 2 제정)과 지나사변특별세령(1938. 3 제정)이 폐지되었다.

(3) 地方稅制의 改革

(가) 지방세 중 제1종 소득세부가세, 특별소득세 및 동 부가세와 助興稅를 폐지하고 국세 중 제1종 소득세와 제3종 소득세 및 유흥음식세의 일부를 地方分與稅로서 지방에 분여하도록 하였다.

(나) 자작농 보호를 위하여 국세인 地稅가 면제되는 소규모 자작농소유지(면세지)에 대하여 道는 免稅地特別地稅를, 邑面은 同 附加稅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다) 戶別稅를 납세의무자의 資力算定標準인 소득을 표시하는 指數의 단위 및 세액에 의해 세율을 제한하는 한편 자력에 따라 누진과세를 하도록 하였다. 호별세의 세율은 부과표준액 1,200円을 지수 1개로 하여 지수로 표시한 141개단계에 달하는 복잡한 누진구조를 갖게 되고, 단체별 과세제한율은 부과지수 1개당 도세인 호별세는 5円, 부세인 호별세부가세는 10円, 읍면세인 호별세부가세는 10円, 학교비부과금인 호별세는 12円으로 정하였다.

(라) 지방세 중 物稅 계통 세목의 증징이 이루어졌다. 즉 지세부가세는 도·부·읍면에 걸쳐 모두 10%를 증징하고, 국세인 영업세와 가옥

세의 50～40% 증징에 따라 지방세인 동 부가세의 세율을 그대로 두었기 때문에 지방세도 50～40%의 자연 증수 효과를 갖게 되었다.

마. 植民地統治 末期의 增稅政策과 1941年度 租稅增徵

1) 財政金融基本方策과 稅制改革

일본은 1941년 7월에 戰局의 확대와 군사비의 격증에 대응하여 재정금융에 관한 기본정책 요강을 결정하였다[9].

이 요강은 특히 재정금융의 시책 및 운영이 전시경제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에 관한 종합적이고 신속한 필요한 정비를 단행하여 전시경제 諸國策運營의 경제적 기초를 확립함으로써 전시의 여러 요청에 대하여 기동력과 강인한 질서를 확립하는 일이 긴요하다고 인정되어 결정되었으며, 재정과 세제에 관한 改革課題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먼저 財政에 있어서는 ① 회계제도의 개혁 ② 예산편성방법의 개혁 ③ 세제의 개혁 ④ 지방재정의 개혁이란 5개 항목이 제시되었다. 이 중 세제개혁에 대하여는 군사비의 급증을 중심으로 급팽창하는 국가세출에 직면하여 세수의 증대가 긴요한 과제가 되었으며 세제개혁의 구체적인 요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조세는 재정자금의 소요에 상응하여 필요한 수입을 확보하여야 하며, 計劃經濟 운영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더욱 합리적인 세제를 설정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특히 중요한 요강은 다음과 같다.

① 국민각계층이 부담을 분담하도록 稅種을 신설 내지 개폐하고 세율을 개정한다.

② 時局下에서 필요한 생산의 조장, 소비의 규제, 저축의 증강, 구

---

9) 大藏省, 『昭和財政史 第5卷 租稅』, 東京 : 東洋經濟新報社, 1957, pp. 592～594.

매력의 흡수, 기타 여러 정책의 수행에 도움이 되도록 조세정책을 활용한다.

③ 재정자금의 소요에 상응하여 매년도 조세를 증감하는 방침을 채택한다.

④ 과세 및 징세방법을 합리화한다.

이상과 같은 세제개혁에 관한 요강은 그후 전쟁이 끝날 때까지 매년 실시된 조세증징을 위한 세제개정의 기본방침이 되었다.

2) 1941年度 酒稅 等 間接稅의 增徵

1941년 7월 일본의 閣議에서 결정된 재정금융기본방책에 따라 급증하는 임시군사비 재원의 일부를 조달하는 한편 구매력 흡수와 소비절약을 도모하기 위해 1941년 11월에는 酒稅 등 간접세의 증수를 위한 세제개혁이 실시되었다. 특히 이 增稅에 있어서는 구매력의 흡수와 소비의 억제를 도모하기 위해 사치성 소비에 대하여 고율과세하는 한편 국민생활에 있어서 불급하다고 인정되는 소비에 대하여는 세율을 인상하거나 과세범위를 확대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증세의 대상이 되는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증세액에 상당하는 價格引上을 인정하도록 하였다.

가) 酒稅의 稅率引上

조선주인 濁酒에 대한 造石稅가 1石當 5円에서 8円으로 60%가 인상되고 조선주인 藥酒는 造石稅가 1石當 18円에서 30円으로 무려 66.6%가 인상되었다. 그 밖의 주류는 순주정의 용량이 일정량을 초과할 때 가산하는 가산세의 세율을 인상하였을 뿐 기본세율은 인상하지 않았다.

나) 淸凉飮料稅의 稅率引上

제1종 과세대상인 玉라무네, 병에 넣은 것(레몬수류)은 100리터당 3円 35錢에서 4円 80錢으로 43.2%, 제2종 기타 병에 넣은 것(사이다류)은 100리터당 11円에서 16円 50錢으로 50%를, 제3종 병에

넣은 것 이외의 것은 탄산가스 사용량 1kg당 6円에서 11円으로 83.8%를 각각 인상하였다.

다) 砂糖消費稅의 稅率引上

사탕 중 제1종 分蜜하지 않은 사탕은 (甲) 통에 든 흑·백하당의 경우 3円에서 4円 40錢으로 50%, (乙) 기타는 5円에서 6円 50錢으로 30%를 각각 인상하였다.

제2종 기타의 사탕(얼음사탕, 각사탕 등 제외)은 (甲) 蔗糖의 중량이 전중량의 86%를 넘지 않는 것은 百斤當 5円 50錢에서 7円 20錢으로 30.9%가, (乙) 기타는 10円에서 12円으로 20%가 각각 인상되었다.

제3종 얼음사탕, 각사탕 등은 (甲) 얼음사탕은 百斤當 12円 50錢에서 15円으로 20%가 (乙) 기타는 12円 50錢에서 16円으로 28%가 각각 인상되었다. 또 이 개정에서 얼음사탕과 각사탕을 포함하는 기타 사탕이 구분되어 각기 적용세율을 달리하게 되었다.

糖蜜에 대한 세율은 제1종 얼음사탕을 제조할 때 생기는 당밀의 경우 百斤當 5円 20錢에서 6円 70錢으로 28.8%가, 제2종 기타는 3円에서 4円으로 33.3%가 각각 인상되었다.

끝으로 糖水에 대한 세율은 百斤當 8円에서 9円 60錢으로 20%가 인상되었다.

라) 物品稅의 課稅對象 擴大와 稅率 引上

과세대상물품 제1종 乙類에 行李, 遊戲具, 搖籃 및 乳母車類를 포함시키고, 새로 정원수 및 정원용 石材品, 石工品, 발(簾), 燈籠과 초롱, 쇠 주전자 및 茶用具, 부채, 화환 및 꽃다발, 낚시용구를 과세대상으로 신설하였다. 또 제1종 丙類에 구두, 사무용 기구를 추가하였다.

또한 제2종 乙類에 마이크로폰, 우롱차(烏龍茶)를 포함시키고, 불꽃류와 향료, 대리석 및 대리석을 원료로 하는 인조석과 도자기제 타일을 새로 과세물건으로 추가하였다. 또한 제2종 丙類를 신설하여 전구류, 휴대용 전등 및 동 케이스와 전지, 보온병·수통류, 계산기, 타자

기, 윤전 등사기, 금전등록기, 타임 스탬프, 재봉틀 및 재봉용 바늘, 판유리, 종이 및 셀로판, 치약, 녹차 등을 새로 과세대상 품목으로 추가하였다. 이와 함께 제3종 과세대상품목으로 藥酒와 사카린을 추가하였다.

물품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이 인상되었다. 과세품목별로 보면 성냥

〈表 Ⅳ－4〉 物品稅의 稅率引上(1941)

(單位 : %, 円)

	1940	1941		1940	1941
제1종					
갑류	20	50	기 타	20[1]	48[1]
을류	10	20	나. 증류주 주 정	20	95.2
병류	—	10	소 주	9	30
제2종					
갑류	20	50	기 타	20	48.5
을류	10	20		20	48
			다. 재제주 미 림		
병류	—	10	합성청주	20	45.5
제3종[2]					
1. 성냥(천본)	5錢	5錢	기 타	20	48
2. 주류(석당)			3. 조청, 포도당, 맥아당(백근당)		
가. 양조주 맥 주	20	48.5	가. 맥아당화 방법으로 제조한 조청	1.40	1.75
청 주	20	44	나. 기타조청, 포도당, 맥아당	1.85	2.25
과 실 류	—	25	4. 사카린(1kg당)	—	10

註 : 1) 탁주·약주 제외
2) 제3종 과세품목별세율은 円 표시

資料 : 『朝鮮總督府官報』, 號外, 1940. 3. 31, 1941. 11. 29.

을 제외한 전품목에 걸쳐 세율이 21.6%(기타 조청 등)에서 최고 4.7배(주정)까지 인상되었다.

마) 遊興飮食稅의 課稅對象 擴大와 稅率引上

1940년에 제정된 유흥음식세의 세율은 유흥음식요금의 15%, 다만 藝妓의 화대에 대하여는 요금의 30%로 정하여졌고, 예기의 화대나 기타 화대를 수반하지 않는 1인 1회 3円에 미달하는 유흥음식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1941년 개정에서는 여관의 숙박에 대해서도 유흥음식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과세최저한을 유흥음식은 1인 1회 1円 50錢, 숙박은 1인 1박 7円으로 정하였다.

1941년에 유흥음식세의 세율은 예기의 화대에 대하여는 3.3배에서 1.6배 이상이 인상되고, 유흥음식에 대하여 2배가 인상되었다.

〈表 Ⅳ-5〉 遊興飮食稅의 稅率引上(1941)

(單位 : %)

	1940	1941
1. 예기의 화대 (요금)	30	100
2. 기타의 화대 (요금)	30	50
3. 화대수반 유흥음식 (요금)	15	30
4. 요리점에서의 유흥음식 (요금)	15	30
5. 기타 유흥음식 (요금)		
가. 1인 1회 3円 미만	—	20
나. 1인 1회 3円 이상	15	30
6. 여관숙박 (요금)		
가. 1인 1박 10円 미만	—	20
나. 1인 1박 10円 이상	—	30

資料 : 『朝鮮總督府官報』, 號外, 1940. 3. 31, 1941. 11. 29.

바) 通行稅의 增收

통행세는 乘車船區間의 거리에 따른 세율적용 구분을 종전의 8개에서 7개로 줄이되 승차선의 等級이 높을수록 또 승차선구간의 거리가 길수록 세율을 높여 증징을 도모하였다. 개정 전 승차선구간이 40km 이하인 경우 1등승객의 통행세율은 10錢, 2등승객은 5錢이었으나 개정세율은 1등승객이 30錢, 2등승객이 15錢으로 각각 3배가 인상되었다. 또 승차선구간이 500km 이하인 경우 1등승객에 대한 통행세율은 1円 80錢, 2등승객은 90錢, 3등승객은 30錢이었으나 개정세율은 7円, 3円 50錢, 70錢으로 각각 3.8배, 3.8배, 2.3배로 인상되었다. 더욱이 개정전에는 승차선구간이 800km를 넘을 때 통행세는 1등승객에 3円, 2등승객에 1円 50錢, 3등승객에 50錢이 부과되었다. 그러나 개정세율은 승차선구간이 500km를 넘을 때 1등승객에는 10円, 2등승객에는 5円, 3등승객에는 1円이 부과되어 통행세의 부담이 1·2등승객은 3.3배, 3등승객은 2배로 늘어나게 되었다.

그 밖에 急行車船에 승차선할 때 종전에는 급행요금의 10%를 추가부담하게 하였으나 개정된 통행세령은 급행차선만이 아니라 寢臺車船에 승차선하는 경우에도 등급을 나누어 1등에는 30%, 2등에는 20%, 3등에는 1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등급을 나누어 과세하던 貸切乘車船의 세율도 100% 내지 50%가 인상되었다.

사) 入場稅의 稅率引上

입장세도 세율적용구분을 확대하는 한편 세율을 인상하여 증수를 도모하였다.

1941년도 입장세 증징에 있어서는 제1종 장소에 대한 입장의 경우 입장료가 1.5円 미만인 경우 입장세가 3~5배 증가하였으며, 입장료가 1.5円을 넘는 경우에도 입장세의 부담이 2~3배에 달하였다. 또 제2종 장소의 입장에 대한 입장세 부담도 2배를 전후하는 수준으로 높아졌으며, 특별입장세는 3~5배가 늘어났다.

〈表 Ⅳ－6〉 入場稅의 稅率引上(1941)

(單位 : %)

		1940	세율	1941	세율
입장세	제1종 장소	입장료 1.5円 미만	5	입장료 0.75円 미만	15
		입장료 1.5～4.0円	15	입장료 1.50円 미만	25
		입장료 4.0円 이상	20	입장료 3.00円 미만	35
				입장료 4.50円 미만	45
				입장료 4.50円 이상	60
	제2종 장소	당구장	8	당구장, 스케이트장	15
		기타	15	마작장	25
				무도장, 골프장	40
특별 입장세		입장료	5	입장료 1.5円 미만	15
				입장료 1.5円 이상	25

註 : 입장료는 1인 1회분
資料 : 『朝鮮總督府官報』, 號外, 1940. 3. 31, 1941. 11. 29.

아) 其他

① 건축세는 그 과세대상에 여관용 가옥, 당구장·마작장·기타 유기장용 가옥, 클럽·회관 등 가옥을 추가하고 세율을 종전의 10%에서 20%로 인상하였다.

② 骨牌稅의 세율은 마작에 대한 세율을 종전의 1組당 5円에서 10円으로, 그 밖의 골패로서 紙製에 대한 세율은 30錢에서 60錢으로 그리고 지제가 아닌 것은 70錢에서 1円 50錢으로 각각 인상하였다.

③ 出港稅는 조선 내에서 제조한 과자 및 당과에 대한 세율을 2～2.5円에서 2.5～3円으로 인상하였다.

④ 그 밖에 인지세를 약 2배로 인상하였다.

바. 1942年度 直接稅中心의 增稅

1941년 12월 8일 일본의 미국 진주만 기습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태평양지역에까지 확대되자 일본은 1942년 2월에 전시재정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의 구매력을 흡수하기 위해 직접세 중심의 증세와 함께 전기가스세, 廣告稅, 馬券稅를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조선에서도 소득세, 특별법인세, 地稅, 영업세, 자본이자세, 상속세, 임시이득세, 물품세 등을 증수하고, 출항세와 등록세의 세율인상과 함께 馬券稅, 전기가스세, 廣告稅를 신설하였다.

1) 所得稅의 稅率引上

가) 제1종 소득

법인의 보통소득에 대한 세율은 40% 내지 45%, 동 청산소득에 대한 세율은 40%를 인상하였다.

나) 제2종 소득

조선 내에서 지급받는 공·사채, 조선금융채권 또는 은행예금의 이자, 합동은행 신탁의 이익(甲)에 대한 세율은 1.7～4배가 인상되었다.

비거주자가 조선 내 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 또는 이자의 배당과 이익처분으로 받는 상여 또는 상여성격의 급여(乙)에 대한 세율은 66.6～75%가 인상되었다.

一時恩給 또는 이와 유사한 퇴직급여에 대한 세율은 30～60%가 인상되었다.

다) 제3종 소득

제2종에 속하지 않는 개인소득에 대한 세율은 종전에 800円 이하 금액에 대한 0.4%(최저세율)에서 400만円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57%(최고한계세율)에 이르는 22단계 초과누진세율로 이루어졌으나 이를 1,000円 이하 금액에 대한 0.8%에서 50만円 초과 금액에 대한 50%에 이르는 17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개정하였다.

2) 特別法人稅의 增徵

특별법인세의 세율을 종전의 5%에서 10.5%로 인상하여 증징하도록 하였다.

3) 地稅率의 引上

지세율을 1.5%에서 1.7%로 13% 인상하였다.

4) 營業稅의 課稅對象 擴大와 稅率引上

영업세의 과세대상 업종으로서 浴湯業, 이발미용업, 換錢業, 연극흥행업, 유기장업, 遊覽所業 등을 추가하였다.

영업세의 세율은 업종에 따라 16.6%에서 25%까지 인상되었다.

5) 資本利子稅의 課稅範圍 擴大와 稅率引上

주식의 소각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이나 退社 또는 출자의 감소에 따라 持分의 환불로 받는 금액,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주주 또는 社員이 받은 금액 또는 법인 합병시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의 주주 또는 사원이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으로부터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불입필 금액·출자금액·금전의 총액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때 이를 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라고 간주하여 자본이자세를 과세하도록 하였다.

자본이자세의 세율을 국채이자의 경우 3%에서 5%로 66.6%를, 기타 이자의 경우 4%에서 6%로 50%를 인상하였다.

6) 相續稅의 稅率引上

가) 家督相續 또는 호주상속인 경우 세율적용 과세가격구분이 종전 19단계에서 18단계로 축소되고, 최저세율적용 금액이 종전의 5천円 이하의 금액에서 1만円 이하의 금액으로 2배가 되었다.

① 가독상속으로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가족인 직계비속일 때와

호주상속으로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일 때 최저세율은 0.8%, 최고한계세율은 26.5%로 각각 33.3%, 20.4%가 인상되었다.

② 가독상속으로서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지정한 자 등 그리고 호주상속으로서 상속인이 기타인 자의 경우 최저세율은 1%, 최고한계세율은 29%로 종전에 비해 42.8%, 20.8%가 각각 인상되었다.

③ 가독상속으로서 상속인이 민법상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자일 때 최저세율은 1.5%, 최고한계세율은 34%로서 종전에 비하여 각각 50%, 21.4%가 인상되었다.

나) 유산상속 또는 호주상속을 수반하지 않는 재산상속인 경우 세율적용 과세가격구분은 종전의 20단계에서 19단계로 축소되고 최저세율 적용 과세가격은 종전의 1천円 이하의 금액에서 5천円 이하의 금액으로 5배가 되었다.

① 상속인이 직계비속일 때 최저세율은 1.7%로서 종전보다 41.6%가 인상되고 최고한계세율은 39%로 21.8%가 각각 인상되었다.

② 상속인이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일 때 최고세율은 2.1%로서 종래에 비해 50%가 인상되고, 최고한계세율은 41%로 20.5%가 각각 인상되었다.

③ 상속인이 기타의 자인 경우 최저세율은 3%로서 종전보다 50%가, 최고한계세율은 45%로 21.6%가 각각 인상되었다.

7) 臨時利得稅의 課稅範圍 擴大와 稅率引上

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 외에 선박·광업에 관한 권리, 또는 설비의 양도에 따른 개인의 이득(양도이득)에 대해서도 과세하도록 하였다.

또 임시이득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이 인상되었다. 법인의 임시이득세는 법인의 이득을 현 사업연도 자본금액에 일정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과 현 사업연도의 자본금액에 기왕 사업연도의 평균이익률을 곱하

〈表 Ⅳ－7〉 法人利得에 대한 臨時利得稅 稅率引上(1942)

(單位 : %)

이익금 중 (1)과 (2)에 해당하는 이득				
(1) 현 사업연도 자본금액	10% 초과	20% 이하	30% 이하	30% 초과
(2) 기왕 사업연도 평균이익률	이하	초과	초과	초과
1940	25 (22.5)	— —	45 (40.5)	65 (58.5)
1942	35 (25)	55 (45)	65 (55)	75 (65)

註 : ( ) 내는 자본금 10만円 이하 법인에 적용
資料 : 『朝鮮總督府官報』, 號外, 1940. 3. 31, 1942. 3. 24.

여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구분하고 차등세율을 적용·과세하였으나 1942년 개정에서는 최저세율이 40%, 최고세율이 15.3%가 각각 인상되었다.

또 개인소득은 보통이득과 양도이득으로 나누어 과세하였으나 보통이익에 대한 1942년 개정세율은 30%로서 종전보다 20%가 인상되었다. 개인의 양도이득에 대하여는 1940년에는 23%의 단일세율이 적용되었으나 1942년 개정에서는 10만円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 23%, 20만円 초과 금액에 대하여는 35%, 30만円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50%의 3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그 밖에 1942년 개정에서 임시이득세의 시한을 「대동아전쟁 종료 다음해 말까지의 사업연도분」으로 연장하였다.

8) 其他

가) 직물제품에 대한 出港稅의 세율을 종전의 10%에서 15%로 인상하였다.

나) 성냥에 대한 물품세 세율을 천본당 5錢에서 10錢으로 인상하였다.

9) 馬券稅의 新設

勝馬投票券의 발매액과 승마투표권 구입자에게 지급되는 환불금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전자에 5%, 후자에 2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였다. 납세의무자는 「조선마사회」였다.

10) 電氣가스稅의 新設

공공용·산업용·교육용·공중용을 제외한 주택, 여관·요리점 등 영업장소, 극장·영화관 등 관람장소, 당구장·마작장·클럽·회관 등 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와 가스에 대해 전기가스세가 창설되었다.

전기가스세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의해 과세되었다.

가) 전기사업자 또는 가스사업자가 아닌 자가 전기사업자 또는 가스사업자로부터 공급을 받는 전기 또는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요금의 10%를 과세한다.

나) 전기사업자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또는 가스업자가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통상 지급하여야 할 요금의 10%를 과세한다.

다) 전기업자가 아닌 자가 자가발전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발전기 出力 1kW 또는 그 端數마다 매년 12円을 과세한다.

11) 廣告稅의 新設

광고세는 그 과세대상을 제1종과 제2종으로 구분하여 과세하였다.

제1종에는 ① 신문지, 잡지, 서적, 기타 출판물에 의한 광고 ② 기차, 전화, 자동차, 기선, 기타 교통운수기관 또는 교통운수업의 설비에 의한 광고 ③ 영화, 입장권, 승차선권, 氣球에 의한 광고가 포함되었다.

제2종에는 ① 立看板, 掛看板, 깃발 등에 의한 광고 ② 포스터에 의한 광고 ③ 전단에 의한 광고 ④ 野立看板, 액면광고 등이 포함되었다.

광고세의 세율은 제1종 광고는 광고 요금의 10%, 제2종 광고는 ①의 경우 1개당 20錢, 다만 면적이 한 평을 넘을 때는 1개당 50錢 ②의 경우 1개당 10錢 ③의 경우 전단은 천개 또는 그 단수당 20錢,

기타는 천개 또는 그 단수당 50錢 ④는 광고 면적 1평 또는 그 단수당 2円으로 정하였다.

사. 1943年度의 間接稅 增徵

1942년 6월에 「미드웨이」 해전에서 일본이 참패를 당한 후 동년 8월에는 미군이 '과달카날'에 기습상륙하여 연합군의 본격적인 反攻이 시작되었다. 일본은 戰局의 악화에 대처하기 위해 1943년도에도 거대한 임시군사비특별회계 예산을 뒷받침하는 한편 소비억제와 구매력 흡수를 도모할 목적으로 間接稅의 증징을 목적으로 하는 세제개정을 단행하였다. 이 간접세의 증징에 있어서는 사치성 소비에 대하여 특히 고율과세를 하고 전시하에서 아직 절약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소비에 대한 과세에 있어서는 세율을 인상하고 과세범위를 확장한다는 기본방침에 따라 주세, 청량음료세, 사탕소비세, 물품세, 유흥음식세, 입장세 및 거래소(취인소)세를 증세하고 특별행위세를 신설하였으며 임시이득세법과 임시조세조치법을 개정하였다[10].

이러한 일본의 세제개정에 순응하여 조선에서도 주세, 청량음료세, 사탕소비세, 물품세, 유흥음식세, 입장세 등을 다시 증징하도록 하는 한편 과세범위를 확대하였다. 이와 함께 특별행위세와 직물세를 신설하고, 지세의 과세방법과 소득세 및 임시이득세의 감면규정을 고치고 마권세의 세율도 인상하였다.

1) 物品稅의 課稅範圍 擴大와 稅率引上

가) 課稅範圍의 擴大

물품세의 과세대상에 제1종 甲類 물품으로서 羽毛를, 乙類 물품으로서 꽃꽂이 용구와 꽃을 추가하고, 丙類 물품으로서 상자, 통, 기타 유

10) 前揭書, pp. 658~659.

사한 용기에 담은 식료품을 추가하였다. 또 제2종 甲類 물품으로서 現像印畵 용구, 동 乙類에 대리석과 비슷한 장식용 석재, 동 丙類에 타임레코더, 환등기, 실물투영기, 버터, 치즈, 크림 및 그 대용품, 안전면도를 추가하였다. 이와 함께 제2종 丁類를 신설하여 구두약, 조미료, 酒粕, 罐·병·단지 등에 담은 식료품, 자양강장제를 추가하였다. 그 밖에 제3종 물품으로서 벌꿀을 추가하였다.

나) 稅率의 引上

제1종 갑류는 종전의 50%에서 80%로, 을류는 20%에서 30%로 인상하고 신설 병류는 1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제2종 갑류는 종전의 50%에서 80%로, 을류는 20%에서 30%로 각각 인상하고 신설된 병류는 20%, 정류는 10%를 각각 적용하도록 하였다.

또 제3종 물품에 대하여는 ① 성냥은 千본당 10錢에서 15錢으로 인상하고 ② 조청, 포도당 및 맥아당은 맥아당화방법에 의해 제조한 조청에 대하여는 100근당 1.75円에서 3.5円으로, 기타의 조청에 대하여는 종전의 100근당 2.25円에서 3.5円으로 인상하였다. 또 사카린에 대한 세율은 1kg당 10円에서 20円으로 인상하였고 새로 과세하게 된 蜂蜜에는 100근당 5円의 세율이 적용되었다.

이상 물품세의 세율은 제3종 물품을 제외하고 50~60%가 인상되었으며 제3종 물품 중 조청 제1호의 세율은 2배로 인상하였다.

2) 遊興飮食稅의 稅率引上

유흥음식세의 세율은 최고 2배로 인상되었다. 이와 함께 세율적용구분을 늘리고 최저세율이 적용되는 요금금액을 인하함으로써 증수효과를 갖도록 하였다.

藝妓의 화대에 대한 세율은 종전의 100%에서 200%로 인상하고, 기타의 화대는 50%에서 100%로 인상하였다. 또 화대를 수반하는 유흥음식이나 요리점에 있어서의 유흥음식은 그 세율이 각각 50%

와 60%로 인상되었으나 개정 전에는 모두 30%의 세율이 적용되었다.

기타 유흥음식에 대하여는 1인 1회 요금이 2円 50錢 미만에 대하여는 30%, 동 5円 미만에는 40%, 동 5円 초과에는 5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개정 전에는 1인 1회 3円 미만에는 20%, 동 3円 이상에는 30%의 세율로 과세하였다.

여관숙박에 대하여도 종전에는 1인 1박 요금이 10円 미만에 20%, 동 10円 이상에 30%의 세율이 적용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1인 1박 7円 미만에 20%, 동 10円 미만에는 30%, 동 10円 이상에는 50%의 세율로 과세하도록 하였다.

그 밖에 요리점이나 여관 등 이외의 장소에서 예기 등의 파출이나 음식물의 공급을 받을 경우 이를 요리점에서의 유흥음식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도록 하였다.

3) 入場稅의 稅率引上

제1종 장소(연극, 영화, 연예, 야구 등 경기를 개최하는 장소와 경마장)에의 입장에 대하여는 입장료가 1인 1회 75錢 미만인 것에 대한 세율은 15%로 존치하고 그 밖의 세율은 40~66.6%로 인상하였다.

제2종 장소의 설비이용의 대한 세율은 당구장, 스케이트장의 경우 15%에서 20%로 마작장은 25%에서 40%로, 무도장과 골프장은 40%에서 75%로 각각 인상하여 세율의 인상률은 33.3~87.5%에 달하였다.

또 운동경기장에의 입장에 대한 특별입장세도 1인 1회 1円 50錢 미만에 대한 세율은 그대로 두고 동 1円 50錢 이상에 대하여 세율을 종전의 25%에서 35%로 40%를 인상하였다.

4) 酒稅의 稅率引上

주세는 주로 庫出稅를 인상하되 중요산업에 종사하는 勞務者 등에

약간 수량에 한하여 저렴한 價格으로 공급하기 위해 세부담을 경감하도록 하였다.

주류제조업자에 造石數에 따라 부과되는 造石稅는 釀造酒의 경우 1.6배에서 2.2배 이상 세율이 인상되었다. 蒸溜酒는 酒精이 2.3배, 기타 증류주의 세율이 10배 이상 인상되었고 再製酒는 미림과 기타 재제주가 각각 44.4%, 합성청주가 77.9% 인상되었다.

주류를 제조장 밖으로 판출할 때 부과되는 庫出稅는 개정 전에 맥주(21.3円, 1941)와 과실주(25円, 상동)에 한하여 과세되었으나 이 개정에서는 조선주인 탁주와 약주를 제외하고 모든 주류에 과세하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맥주에 대한 고출세의 세율은 7.5배, 과실주는 6배에서 8배가 각각 인상되었다. 더욱이 과실주(제1급)와 재제주(제1급)에 대한 고출세는 總督이 정하는 가격에 50%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도록 하였다.

〈表 Ⅳ-8〉 酒稅 造石稅의 增徵(1943)

(單位 : 1석당 円)

		1941	1943			1941	1943
양조주	탁주	8	16	증류주	소주·고량주(25도 이하)	—	25
	약주	30	68		기타(40도 이하)	15	160
	청주(20도 이하)	36	60	재제주	미림(28도 이하)	36	52
	황주(20도 이하)	—	52		합성청주(20도 이하)	38.5	68.5
	기타(20도 이하)	33	68				
증류주	주정(1도당)	1.5	3.5		기타(20도 이하)	36	52

資料 : 『朝鮮總督府官報』, 號外, 1943. 3. 31.

〈表 Ⅳ－9〉 酒稅 庫出稅의 增徵(1943)

(單位 : 1석당 円)

		세 율			세 율
양조주	맥주	159.8	증류주	주정	143.4
	청주 1급	230		소주·고량주	50
	2급	120		기타	140
	3급	108	재제주	미림	146
	과실주 1급	200		합성청주	115.5
	2급	150		기타 1급	312
	황주	68		2급	228
	기타	48		3급	158

資料 : 『朝鮮總督府官報』, 號外, 1943. 3. 31.

그 밖에 생산력 확충관계 산업에 근무하는 노무자 등에 대해 약간의 수량을 한도로 주류를 싼 가격에 공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비율로 산출한 금액과 주류고출세의 세율에 따라 산출한 금액과의 차액만큼 주류고출세를 경감하도록 하였다.

맥 주 1석당 69.8円
청 주 제2급 1석당 20円
제3급 1석당 20円
소 주 1석당 30円
합성청주 1석당 15.5円

5) 砂糖消費稅의 稅率引上

사탕소비세는 다른 소비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증징에 그치도록 하였으나 업무용·가공용 사탕은 그 소비의 성질은 고려하여 어느 정도 부담을 가중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아 特別消費稅를 부가하도록

하였다.

가) 사탕에 대한 세율은 최대 33.3%(통에 든 흑·백하당), 최소 18.7%(제3종 기타), 당밀은 제1종이 23.8%, 제2종이 32.5%가 각각 인상되고, 당수는 33.3%가 인상되었다.

나) 특별소비세의 세율은 사탕 중 제1종(분밀하지 않는 사탕)은 100근당 4.5円, 제2종과 제3종은 10円, 당밀은 4.15円, 당수는 9.6円으로 책정되었다.

〈表 Ⅳ－10〉 砂糖消費稅의 稅率引上(1943)

(單位 : 100근당 円)

	1941	1943		1941	1943
사탕			제3종 얼음사탕 등		
제1종 분밀하지 않은 사탕			얼음사탕	15	18
통에 든 흑·백하당	4.5	6	기타	16	19
기타	6.5	8.1	당밀		
			제1종 얼음사탕 제조에서 생긴 것	6.7	8.3
제2종 기타사탕			제2종 기타	4	5.3
서당중량 86도 이하	7.2	9			
기타	11	14.5	당수	9.6	12

資料 : 『朝鮮總督府官報』, 號外, 1941. 11. 29, 1943. 3. 31.

6) 淸凉飮料稅의 稅率引上

과세물건 제1종인 玉라무네 병에 담은 것(레몬류)에 대한 세율이 종전의 4.8円에서 8円으로, 제2종인 기타병에 담은 것에 대한 세율이 16円에서 36円으로 그리고 제3종인 병에 넣지 않은 그 밖의 것에 대한 세율이 11円에서 25円으로 인상되었다.

7) 取引所(去來所)稅의 稅率引上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로서 7일 이내의 기한을 履行期로 하여야 할 거래에 대한 세율을 종전의 0.04%에서 0.064%로 인상하고, 기타 거래에 대한 세율을 0.06%에서 0.086%로 인상하였다. 전자는 60%가, 후자는 43%가 인상되었다.

8) 馬券稅의 稅率引下

승마투표권의 발매금액에 대한 세율을 종전의 5%에서 4%로, 승마투표권 구매자에게 지급되는 당첨금에 대한 세율은 20%에서 10%로 각각 인하하였다.

9) 地稅令의 改正

1941년부터 실시한 土地賃貸價格調査가 끝남에 따라 토지과세를 종전의 地價 표준에서 賃貸價格 표준으로 과세하도록 하고 세율은 5%로 정하였다. 또 토지의 임대가격은 10년마다 개정하도록 하고 제1회 개정을 1953년에 실시하도록 하였다.

10) 臨時利得稅令의 改正

법인임시이득에 대한 과세방식을 단순화하였다. 1940년부터 법인의 임시이득세는 법인의 이득을 자본금액과 기왕 사업연도의 평균이윤율을 기준으로 하여 3 구분 내지 4 구분하여 초과누진세율을 적용·과세하여 왔으나 이를 자본금의 일정률에 따라 법인의 이득을 3 구분하여 초과누진과세하는 방법으로 단순화하였다.

이와 함께 법인의 임시이득세 세율도 자본금의 10%를 초과하는 이득에 대한 55%, 동 20%를 초과하는 이득에 대한 65%, 동 30%를 초과하는 이득에 대한 75%로 개정하였다. 또 자본금이 10만円 이하인 법인에 대하여는 세율을 10% 포인트씩 낮추어 적용하도록 하였다.

11) 織物稅의 新設

직물세는 ① 全重量 95% 이상의 綿, 기타 조선총독이 정하는 원료로 조성한 직물, ② 비스코스법에 의해 제조한 인조 絹絲로 조성하거나 비스코스 인조 견사와 면, 또는 조선총독이 정하는 원료로 조성한 직물로서 조선총독이 정하는 직물을 제외하고 모든 직물에 부과되었다. 동 세율은 10%였으며 조선총독이 정하는 직물에는 5%의 세율이 적용되었다.

직물세는 제조장 또는 보세지역에서 직물을 인수할 때 그 가격을 표준으로 하여 인수하는 자가 이를 납부하게 되어 있었다. 다만 일본에 移出하는 직물이나 제품으로서 이출하는 직물에는 직물세가 면제되었다.

12) 特別行爲稅의 新設

특별행위세의 과세대상 행위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었다.

① 사진의 촬영, 현상, 인화 및 복사

② 調髮 및 整容

③ 직물 및 피복류의 염색 및 자수

④ 피복류 등의 재봉

⑤ 서화의 표장

⑥ 인쇄 및 제본

특별행위세의 세율은 요금의 30%로 정하여졌으나 ⑥ 인쇄 및 제본에는 20%의 세율이 적용되었다.

공공목적이나 제조 또는 판매자가 당해 상품에 대하여 하는 행위 등은 비과세되었다. 또 면세점은 사진촬영에 있어서 사진 1조의 요금이 1.8円 미만, 조발 및 정용 요금이 1円 미만, 직물 및 피복류의 염색요금이 7円 미만, 피복류 등의 재봉요금이 조선총독이 정하는 금액 미만일 때도 비과세하도록 하였다.

13) 其他

가) 臨時租稅措置令을 개정하여 시국의 요청에 따라 부동산상의 권

리나 광업권 또는 설비의 양도, 입목의 벌채 또는 양도, 영업의 폐지에 따른 補償金의 수취, 명령에 의한 소유 주식의 양도와 그 양도대금에 의한 특정 유가증권의 취득 등에는 소득이나 임시이득의 계산에 있어서 특례를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영업이익이 현저하게 감소한 자에 대하여 소득세와 영업세, 임시이득세를 경감하도록 하였다.

나) 1943년 4월에 石油專賣制가 도입됨에 따라 1937년 3월에 도입되었던 휘발유세령이 폐지되었다.

다) 물품세령의 개정에 따라 조정, 포도당 및 맥아당을 사용하여 제조한 과자와 당과에 대한 출항세율이 종전의 2.5～3円에서 5～5.5円으로 인상되었다.

아. 1944年의 全面的 大增稅

일본군이 태평양지역에서 점령하였던 외부요지가 미군에 의하여 하나하나 탈환되고 일본군의 패퇴가 도처에서 일어났던 한편 유럽에서는 독일군이 전면적으로 패배함으로써 연합국의 승세가 굳어져 갔던 1944년에도 일본은 전시재정의 기초를 공고히 하는 동시에 전시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기 위해 구매력의 흡수와 소비를 억제한다는 목적을 내세워 세제전반에 걸친 일대 증세를 실시하였다.

일본은 이 증세에서 소득세 등 직접세를 중심으로 삼았으나 조선에서는 세제전반에 걸쳐 대폭적인 증세를 하되 주세와 직물세 그리고 전기가스세를 제외한 모든 소비세를 일본의 소비세에 준거하여 과세하도록 법제화함으로써 소비세를 대폭 증징하였다. 다만 일부 소비세의 세율은 일본보다 다소 낮게 조정되었다[11].

---

11) 水田直昌(監修), 前揭書, pp. 135～136.

1) 物品稅의 稅率引上

가) 물품세에 관하여는 일본의 「물품세법」에 의거하도록 하였으나 다만 「조청, 포도당 및 맥아당」에 대한 적용세율 100근당 12円 대신 「맥아당화」방법에 의해 제조한 조청은 100근당 9.5円, 「기타 조청, 포도당 및 맥아당」은 10.5円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나) 일본의 물품세율이 조선에도 적용됨에 따라 물품세 세율은 1.5배 이상 8배까지 인상되었다. 특히 제1종 丙類에 대한 세율의 인상률이 높았으나 여기에는 국민학교 아동용 모자나 양산을 위시하여 신발, 가구, 직물, 내의, 옷, 양복, 넥타이, 모포, 과실 등 과세물품이 포함되어 있었다.

다) 또한 물품세의 과세대상도 늘어났다. 제1종 과세물품은 종전의 40개의 품목에서 29개 품목으로 줄었으나 제2종 물품은 종전의 49개 품목에서 71개 품목으로 늘어났다. 제3종 과세물품에는 변동이 없었으므로 일본물품세법 적용에 따라 종전이 93개 품목에서 104개 품목으로 늘어났던 것이다.

〈表 Ⅳ－11〉 物品稅의 稅率引上(1944)

(單位 : %, 배)

		종전 세율	개정 세율	증가 배수			종전 세율	개정 세율	증가 배수
제1종	갑	80	120	1.5	제2종	기타	30	60	2.0
	을(고급)*	60	80	1.3		병	20	40	2.0
	기타	30	60	2.0		정	10	20	2.0
	병(고급)*	—	80	8.0	제3종	성냥(천본)	0.15円	0.25円	1.6
	기타	10	40	4.0		조청** 1호	3.5円	9.5円	2.7
	(생필품)*	—	20	2.0		2호	4.15円	10.5円	2.2
	정	—	20	—		사카린(1kg)	20円	50円	2.5
제2종	갑	80	120	1.5		꿀(100근)	5円	12円	2.4
	을(고급)*	—	80	2.6					

註 : *는 총독의 명령에 의하여 정하는 물품에 대한 세율
**는 100근당

資料 : 『朝鮮總督府官報』, 號外, 1943. 2. 28, 1944. 2. 16.

2) 遊興飮食稅의 稅率引上

가) 유흥음식세도 일본의 「유흥음식세법」에 따르되 조선에서는 숙박에 대한 면세점을 5円(일본은 3円) 미만으로 정하고, 최저세율적용 숙박요금도 7円(일본은 5円)미만으로 정하였다.

나) 유흥음식세의 세율은 특히 藝妓의 花代에 적용되는 세율을 종전의 200%에서 300%로 높였으며 화대를 수반하는 유흥음식이나 명령으로 정하는 요리점(카페, 바 등)에서의 유흥음식에 대한 세율은 2배로 높였다. 그러나 그 밖의 유흥음식에 있어서는 1인 1회 요금의 2.5円 미만일 때는 세율을 그대로 두고 5円 이상인 경우에도 세율은 60%만이 인상되었다.

그리고 여관숙박에 대하여도 1인 1박요금이 7円 미만일 때는 세율을 그대로 두고 요금이 10円 이상일 때는 세율을 40% 인상하였다.

〈表 Ⅳ－12〉 **遊興飮食稅의 稅率引上**(1943)

(單位 : %)

		1943	1944			1943	1944
화대	예기의 화대	200	300	음식 요금	5円미만	40	50
	기타 화대	100	120		5円 이상	50	80
음식 요금	화대수반	50	100	여관 숙박 요금	7円 미만	20	20
	카페, 바 등	60	120		10円 미만	30	40
	2.5円 미만	30	30		10円 이상	50	70

資料 : 『朝鮮總督府官報』, 1942. 2. 28, 1944. 2. 16.

3) 入場稅의 稅率引上

가) 입장세도 일본의 「입장세법」에 따를 것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입장세의 세율과 특별입장세의 세율은 일본보다 다소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일본은 제1종 장소에 대한 입장세의 최저세율을 입장료가 1인 1회 50錢 미만인 경우 30%, 최고세율이 5円 이상에 대한 200%로 정하고 있었으나 조선에서는 최저세율을 입장료가 75錢 미만일 때 25%, 최고세율은 5円 이상일 때 170%로 정하였다. 또 제2종 장소에 대한 입장세는 당구장, 스케이트장, 탁구장, 조어장의 경우 40%, 마작장은 80%, 무도장, 골프장은 150%에 달하였으나 조선에서는 이보다 10~20% 포인트가 낮은 수준의 세율이 적용되었다.

나) 입장세의 세율은 제1종 장소에 대한 입장의 경우 57.1~71%가 인상되고 제2종 장소에의 입장의 경우 50~73.3%가 각각 인상되었다.

학생이나 아마추어 운동경기를 관람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자에게 과세하였던 특별입장세는 1943년 개정세율이 그대로 유지되었으나 일본의 특별입장세에 비하여 세율적용 입장료 금액이 50錢 높았던 반면에 세율은 5% 포인트가 낮았다.

〈表 Ⅳ－13〉 入場稅의 稅率引上(1944)

(單位 : %)

		1943	1944			1943	1944
제1종 장소 (입장요금)	75錢 미만	15	25	제1종 장소 (회수, 정기, 대절)	1.5円 미만	50	85
	1.5円 미만	35	55		1.5円 이상	75	125
	3円 미만	50	85	제2종 장소 (입장요금)	당구장·스케이트장	20	30
	5円 미만	70	120		마작장	40	70
	5円 이상	100	170		골프장	75	130
					탁구장·조어장	－	30

資料 : 『朝鮮總督府官報』, 1943. 2. 28, 1944. 2. 16.

4) 特別行爲稅의 稅率引上

가) 특별행위세도 일본의 「특별행위세법」에 의거하도록 함에 따라 과세범위도 확대되고 세율도 인상되었다. 종전에는 사진의 촬영 등, 정발미용, 직물피복류의 염색·자수, 피복류의 재봉, 서화의 표장, 인쇄 및 제본 등 여섯 가지 행위에만 특별행위세가 과세되었으나 이에 「사진기, 축음기 악기, 기타 명령에 의하여 정하는 것의 수선」과 「금융기관의 보호·보관과 이에 유사한 것」이 추가되었다.

나) 종전에는 인쇄 및 제본에는 20%, 그 밖의 행위에는 모두 30%의 세율이 적용되었으나 개정세율은 사진촬영 등, 정발미용, 서화의 표장에는 50%를 적용하고, 직물, 피복류의 염색 및 자수와 피복류의 재봉에는 40%, 인쇄 및 제본에는 30%를 각각 적용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새로 추가된 사진기 등의 수선에는 100%, 금융기관의 보호·보관에는 5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5) 淸凉飮料稅의 稅率引上

청량음료세도 일본의 「청량음료세법」에 따르도록 하였으나 그 세율은 일본의 세율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인상되었다.

제1종 玉라무네, 병에 넣은 것에 대한 세율은 1석당 50円(개정 전 8円), 제2종 기타 병에 넣은 것은 160円(개정 전 36円), 제3종 병에 넣지 않은 것은 탄산가스 사용량 1kg당 50円(개정 전 25円)으로 각각 인상되었다.

조선에서 시행된 이 세율은 제1종에 대한 세율이 20円 낮았을 뿐이다. 청량음료세는 그 성질에 비추어 일본이나 조선에서 모두 그 세율이 대폭 인상되었다. 일본에서도 제2종 사이다에 대한 세율은 석당 65円에서 160円으로 2.4배 이상이 인상되었으며 조선에서는 석당 36円에서 160円으로 4.4배 이상이 인상되었다.

6) 砂糖消費稅의 稅率引上

〈表 Ⅳ－14〉 砂糖消費稅의 稅率引上(1944)

(單位 : 100근당 円)

		1943	1944			1943	1944
사탕 소비세	사탕			사탕 소비세	제1종	8.3	12.0
	제1종 갑	6	8.7		제2종	5.3	7.0
	을	8.1	11.0		당수	12.0	15.0
	제2종 갑	9.0	12.0	특별 소비세	사탕 제1종	4.5	10.0
	을	14.5	17.5		제2·3종	10.0	20.0
	제3종 갑	18.0	22.0		당밀	4.15	10.0
	을	19.0	23.0		당수	9.60	20.0
	당밀						

資料 : 『朝鮮總督府官報』, 1943. 3. 31, 1944. 3. 31.

사탕소비세 및 사탕특별소비세도 일본의 「사탕소비세법」에 의거하도록 하여 요리점, 여관 등의 업무용이나 과자 등 제조 가공용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세율이 2배 이상 인상되었다.

일본은 사탕소비세의 경우 다른 소비세에 비하여 증징률을 비교적 낮은 20% 정도로 억제하고, 업무용 사탕 등에는 소비의 성질을 고려하여 100% 인상하였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사탕에 대한 세율이 20.1%에서 최고 45%(통에 담은 흑·백하당)가 인상되고 특별소비세는 그 세율이 2배 이상 2.4배(당밀)가 되었던 것이다.

7) 骨牌稅의 稅率引上

골패세도 일본의 「골패세법」에 의거하도록 하여 세율을 인상하였다.

마작은 1조당 20円(종전 10円), 그 밖의 골패에 대하여는 紙製가 1조당 0.6円(종전과 같음), 지제가 아닌 것은 3円(종전 1.5円)으로 각각 인상되었다.

8) 通行稅 稅率改正

통행세도 일본의 「통행세법」에 의거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통행

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종래 乘車船區間을 킬로미터로 나타내는 거리에 의해 계급정액세율로 과세하던 것을 원칙적으로 1킬로미터당 1등은 2錢 5厘, 2등은 1錢 2厘 5毛, 3등은 2厘 5毛의 비례세율로 과세하도록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통행세 세수총액의 약 80%를 증징하도록 하고, 3등의 면세점을 20킬로미터(종전 40킬로미터)로 인하하였다.

9) 廣告稅의 稅率引上

광고세도 일본의 「광고세법」에 의거하도록 하여 세율을 1.5배에서 4배까지 인상하였다. 광고세는 1942년에 일본과 같이 신설되었으며 그 세율에는 차이가 없었다.

〈表 Ⅳ－15〉 廣告稅의 稅率引上(1944)

(單位 : 円, %, 배)

		1943	1944	증가배수
제1종 출판물, 교통운수기관, 영화 등에 의한 광고		10	30	3.0
제2종*	제1호(입간판 등) 〔1개당〕	0.2	0.6	3.0
	1평 초과	0.5	1.5	3.0
	제2호(포스터 등) 〔1개당〕	0.1	0.15	1.5
	제3호(살포용 전단) 〔1천개당〕	0.2	0.6	3.0
	(기타) 〔1천개당〕	0.5	2.0	4.0
	제4호(건립간판) 〔年〕	2.0	4.0	2.0

註 : * 세율은 円표시

資料 : 『朝鮮總督府官報』, 1942. 3. 24, 1944. 3. 31.

10) 酒稅의 稅率引上

일본은 종래 주류 造石稅와 주류 庫出稅로 이원화되어 있었던 주세를 1944년에 조석세를 폐지하여 고출세로 단일화하였으나 조선에서는 조석세와 고출세의 세율을 모두 인상하였다.

조석세는 고출세가 부가되지 않았던 조선주인 탁주에 대한 세율이 87.5%, 동 약주에 대한 세율이 95.5%가 각각 인상되었다. 그러나 그 밖의 주류에 대한 조석세의 세율은 변동이 없었다.

다만 소주, 고량주의 경우 순주정의 용량에 따른 조석세의 세율과 동 용량의 초과분에 대한 가산세율은 조정되었다.

주세 고출세는 양조주인 경우 맥주의 세율이 56.4%, 과실주는 50~66.6%가 각각 인상되었으나 청주, 황주, 기타 양조주의 세율은 2배 또는 그 이상으로 인상되었다.

증류주는 세율이 2.4배에서 4.4배까지 인상되고, 재제주는 세율이 최소 17.9%(기타 1급)에서 최고 2배 이상(합성청주) 인상되었다.

또한 과실주(제1급)나 기타 재제주(제1급)의 주류 고출세에 대하여는 종전에 從價 50%의 가산세가 부과되었으나 1944년 개정에서는 그 대상을 기타의 증류주(제1급)에 확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산세 세율도 100%로 인상하였다.

그 밖에 생산력 확충관계 산업 등의 노무자 등에 배급하는 價格特配酒에 대하여는 대체로 종전의 경감률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表 Ⅳ－16〉 酒稅 중 造石稅의 稅率引上(1944)

(單位：1석당 円)

		1943	1944			1943	1944
양조주	조선주인 탁주	16	30	증류주	소주·고량주(30도)	40	40
	조선주인 약주	68	133		기타(40도 이하)	160	160
	청주(20도)	60	60	재제주	미림(28도)	52	52
	황주(20도)	52	52		합성청주(20도)	68.5	68.5
	기타(20도)	52	52				
증류주	주정(1도당)	3.5	3.5		기타(20도)	52	52

資料：『朝鮮總督府官報』, 號外, 1943. 3. 31, 1944. 3. 31.

〈表 Ⅳ－17〉 酒稅 중 庫出稅의 稅率引上(1944)

(單位：1석당 円)

		1943	1944			1943	1944
양조주	맥주	159.8	250	중류주	소주·고량주	50	120
	청주 1급	230	490		기타 1급	140	620
	2급	120	240		2급		388
	3급	108	—	재제주	미림	146	271
	과실수 1급	200	300		합성청주	115.5	235.5
	2급	150	250		기타 1급	312	368
	황주	68	166		2급	228	368
	기타	48	116		3급	158	228
증류주	주정	143.4	458				

資料：『朝鮮總督府官報』, 號外, 1943. 3. 31, 1944. 3. 31.

〈表 Ⅳ－18〉 酒稅의 稅率引上(1944)

(單位：1석당 円)

		1943	1944			1943	1944
양조주	조선주인 탁주	16	30	증류주	주정(94도)	472.4	787
	조선주인 약주	68	133		소주·고량주(30도)	90	160
	맥주	159.8	250		기타(40도) 1급	300	780
	청주(20도) 1급	290	550		2급		548
	2급	180	300	재제주	미림	198	323
	3급	168	—		합성청주	184	304
	과실수 1급	200	300		기타(20도) 1급	364	420
	2급	150	250		2급	280	420
	황주(20도)	120	218		3급	210	280
	기타(20도)	100	168				

註：조석세와 고출세의 합계

資料：『朝鮮總督府官報』, 號外, 1943. 3. 31, 1944. 3. 31.

주류 조석세와 주류 고출세를 합한 주세율의 변동을 보면 〈表 Ⅳ－18〉과 같다. 이에 따르면 조선주인 탁주의 세율은 87%, 동 약주의 세율은 95%가 인상되었으나 그 밖의 양조주의 세율 인상률은 청주(1급) 89%, 황주 81%를 제외하고 50～60% 수준에 머물렀다. 다만 기타 증류주의 세율은 그 인상률이 1급은 2.6배, 2급이 1.8배에 달하였으나 재제주의 세율인상은 최소 15%(기타 1급)에서 최고 65%(합성청주)에 달하였다.

11) 所得稅의 課稅範圍 擴大와 稅率引上

가) 은행저축예금, 금융조합예금, 기타 조선총독이 정하는 예금의 이자와 剩余金의 분배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른 賞與를 과세소득에 포함시켰다. 그 반면에 제2종 소득 중 일시은급이나 퇴직소득에 대한 공제액은 축소하고 제2종 소득 중 제3종 소득과 합산과세하는 요건은 강화하였으며 근로소득 공제요건도 강화하였다.

나) 제1종 소득세의 세율은 조선 내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가 없는 법인의 보통소득에 대한 세율이 37.9%가 인상되고 내국법인의 보통소득에 대한 세율은 23.8%의 인상에 머물렀다.

또 동족법인에 대한 세율도 최저세율이 15%에서 20%로, 최고세율은 60%에 존치되었으나 과세소득 구분이 종전의 5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되어 과세소득 50만円 초과 100만円에 이르는 과세소득의 세부담은 25%가 늘어나게 되었다.

제2종 소득에 대한 세율은 금융자산 소득의 경우 42.8%(은행예금 이자 등)에서 100%(비거주자에 대한 이익 또는 이자의 배당 등)가 인상되었다. 또한 일시은급이나 퇴직소득에 대한 세율(병)도 과세금액 구분에 따라 최고 50%, 최저 20%가 인상되었다.

끝으로 봉급, 급료, 歲費, 비용변상, 연금 등 제3종 소득에 대한 세율은 종전의 0.8%에서 50%에 이르는 17단계 초과누진세율에서 1%에서 53%에 이르는 17단계 초과누진세율구조로 개정되었다.

〈表 Ⅳ－19〉 所得稅의 稅率引上(1944)

(單位 : %)

		1942	1944	증가율
제1종 소득세	보통소득 조선 내에 본점이 있는 법인	21	26	23.8
	조선 내에 본점이 없는 법인	29	40	37.9
	청산소득	21	26	23.8
제2종 소득세	갑 국채이자	4	6	50.0
	공채이자	6	9	50.0
	기타	7	10	42.8
	을 이익 또는 이자의 배당	14	28	100
	기타(이익처분인 상여)	20	32	60
	병 퇴직소득 2만円 이하	8	12	50
	2만円 초과	14	20	42.8
	10만円 초과	26	33	26.9
	50만円 초과	40	48	20
제3종 소득세(17단계 초과누진)		0.8～50	1～53	세수기준 약 25% 증가

資料 :『朝鮮總督府官報』, 1942. 3. 24, 1944. 3. 31.

12) 臨時利得稅의 稅率引上

임시이득세 중 양도이득에 대한 공제액을 종전의 5천円에서 3천円으로 축소하고 세율을 다음과 같이 인상하였다.

법인의 임시이득세는 종전에 법인의 이득을 4계급으로 구분하던 것을 3계급으로 줄이되 자본금액 10% 초과분에 대한 세율을 15% 포인트나 인상하였기 때문에 그 인상률은 71.4%에 달하게 되었다. 그러나 나머지 계급에 대한 세율은 5%씩 인상함으로써 그 인상률은 각각 7.6%와 6.6%에 달하였다.

개인에 대한 임시이득세의 세율 인상률은 보통이득의 경우 10%, 양도이득의 경우 과세소득 구분에 따라 16%에서 22.8%에 달하였다.

〈表 Ⅳ－20〉 臨時利得稅의 稅率引上(1944)

(單位 : %)

		1942	1944	증가율
법인	자본금액 10% 초과	35	60	71.4
	자본금액 20% 이하	55	—	—
	자본금액 20% 초과	65	70	7.6
	자본금액 30% 초과	75	80	6.6
개인	보통이득	30	33	10
	양도이득 10만円 이하	23	28	21.7
	10만円 초과	35	43	22.8
	30만円 초과	50	58	16

資料 : 『朝鮮總督府官報』, 1942. 3. 24, 1944. 3. 31.

13) 相續稅의 稅率引上

가독상속, 호주상속의 경우 상속인의 직계비속일 때 최저세율은 1.2%(종전 0.8%), 최고세율은 40%(종전 26.5%)로 각각 인상되어 그 인상률은 50～50.9%에 달하였다. 상속인이 지정·선정된 자 등일 때 최저세율은 1.8%(종전 1%), 최고세율은 45%(종전 29%)로 각각 인상되어 그 인상률이 80～55%에 달하였다. 상속인이 민법에 의해 선정된 자일 때 최저세율은 2.4%(종전 1.5%), 최고세율은 54%(종전 34%)로 각각 인상되어 그 증가율은 60～58.8%에 달하였다.

유산, 호주상속을 수반하지 않는 재산상속의 경우에도 상속인이 직계비속일 때 최저세율은 2.4%(종전 1.7%), 최고세율은 59%(종전 39%)로 인상되어 그 증가율은 41.1～51.2%에 달하였다. 또 상속인이 배우자·직계존속일 때 최저세율은 2.6%(종전 2.1%), 최고세율은 63%(종전 41%)로 인상되어 그 인상률은 23.8～53.6%에 달하였다. 끝으로 상속인이 기타일 때 최저세율은 4.8%(종전 3%), 최고세

〈表 Ⅳ－21〉 相續稅의 課稅價格別 稅率引上(1944)

(單位 : %)

	1942		1944	
	1만円 이하	500만円 초과	1만円 이하	500만円 초과
	최 저	최고	최 저	최 고
1. 가독상속·호주상속				
(1) 상속인 : 직계비속	0.8	26.5	1.2	40
(2) 상속인 : 지정·선정된 자, 직계존속	1	29	1.8	45
(3) 상속인 : 민법에 의해 선정된 자	1.5	34	2.4	54
2. 유산·호주상속을 수반하지 않는 재산상속				
(1) 상속인 : 직계비속	1.7	39	2.4	59
(2) 상속인 : 배우자·직계존속	2.1	41	2.6	63
(3) 상속인 : 기타	3	45	4.8	66

註 : 1.에 대한 세율구조는 18단계 초과누진세율로 구성,
2.에 대한 세율구조는 19단계 초과누진세율로 구성.
資料 : 『朝鮮總督府官報』, 1942. 3. 24, 1944. 3. 31.

율은 66%(종전 45%)로 각각 인상되어 그 증가율은 60～46.6%에 달하였다.

이러한 세율인상으로 세수기준 약 70%의 증징을 기대하였다.

14) 其他 收得稅의 稅率引上

가) 조선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의 자본에 대하여 과세하던 법인자본세의 세율을 0.15%에서 0.3%로 100% 인상하였다.

나) 금융조합 및 동 연합회 등 특별법인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 잉여금과 청산잉여금에 대해 과세하던 특별법인세 세율을 10.5%에서 18%로 71.4%나 인상하였다.

〈表 Ⅳ－22〉 其他 所得稅의 稅率引上(1944)

(單位 : %)

	조선세율	개정세율	증가율
법인자본세	0.15	0.3	100
특별법인세	10.5	18	71.4
자본이자세 국채이자	5	7	40
기타	6	8	33.3
이익배당세	15	25	66.6
공채 및 사채이자세	15	25	66.6
지세	5	6	20
거래소 특별세	10	7	－30

資料 : 『朝鮮總督府官報』, 1942. 3. 24, 1944. 3. 31.

다) 국공채, 은행예금 등의 이자,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이익의 배당 등 제3종 소득 중 조선 내에서 지급받는 비영업대금의 이자 등에 대한 과세인 자본이자세의 세율이 40% 내지 33.3%가 각각 인상되었다.

라) 조선에 본점을 갖고 있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에 대한 과세인 이익배당세와 조선에서 받는 공채 및 사채의 이자에 대한 과세인 공채 및 사채이자세의 세율도 15%에서 25%로 66.65%가 인상되었다.

마) 지세의 세율도 1943년에 임대가격에 대해 5%로 과세하도록 한 데 이어 1944년에는 6%로 인상하여 20%가 증가하였다. 일본의 地稅는 종전의 2%에서 3%로 인상되었다.

바) 끝으로 取引所特別稅는 사업세의 도입에 따라 그 세율이 종전의 10%에서 7%로 인하되었다.

15) 登錄稅의 稅率引上

등록세의 定率稅는 부동산의 매매 등에 의한 소유권 취득에 대한 세율

을 0.4%(종전 0.3%)로, 회사의 설립 등기에 대한 세율도 0.4%(종전 0.3%)로 각각 인상하는 한편 定額稅도 2배에서 3배까지 인상하였다.

16) 臨時租稅措置의 擴大

가) 법인이 소득의 유보로 설비의 확장이나 국채 등의 매입에 충당하였을 때 그 운용금액의 30%를 보통소득에서 공제하도록 하였다.

나) 법인 등이 特別價格補償金을 취득하여 이를 내부에 유보하였을 경우 소득세, 사업세, 임시이득세의 부과에 특례를 두도록 하였다.

다) 장기예금의 이자나 합동신탁의 이익에 대해 소득세 및 자본이자세를 경감하도록 하였다.

라) 시국의 요청에 의한 기업정비, 기업의 합동 등에 대하여 소득세, 자본이자세, 임시이득세, 특별법인세를 경감, 면제하도록 하였다.

마) 지정하는 鑛物이나 그 생산자인 광업권자 등에 대하여 사업세를 면제하거나 경감하도록 하였다.

17) 事業稅 新設

종래 外形標準에 대하여 과세하던 營業稅를 純益課稅로 대치하고 事業稅를 신설하였다. 사업세에는 영업세와 성질이 같았던 鑛産稅와 取引所(去來所)稅를 포함시키고 그 밖에 새로 醫療事業이나 法務事業 등 이른바 자유직업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종래의 鑛稅는 鑛區稅만이 남게 되었다. 그러나 사업세로 통합된 取引所稅는 取引所가 일종의 독점사업으로 특권을 누린다는 이유로 종래의 외형표준과세를 계속 존치시키고 이를 取引所特別稅로 개정하였다.

사업세는 영업세와 같이 조선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갖고 있는 법인이나 조선에 지점, 기타 주된 사업장을 갖고 있는 법인과 조선에 사업장을 갖고 사업세령에서 정하는 사업을 하는 개인에게 과세되었으나 그 과세대상 업종은 영업세와는 달리 철도업이 제외되고 그 대신

갑종에 광업, 湯屋業(목욕탕업), 이발미용업이, 을종에 의료사업과 법무사업이 새로 추가되었다.

사업세는 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의 순익과 淸算純益에, 개인에 대하여는 사업순익에 부과하도록 하였다. 사업세의 세율은 법인의 경우 4%, 개인의 경우 갑종에 2.6%, 을종(자유직업)에 2%가 적용되었다.

그 밖에 개인의 순익금액이 4백円 미만일 때는 사업세가 비과세되고, 법인이 납부한 자본이자세액은 사업세액에서 이를 공제하도록 하였다.

자. 1945年의 마지막 增稅

미군이 연일 일본의 주요도시에 대하여 폭격을 계속하는 가운데 일본 군부는 1945년 1월에 본토작전계획을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1945년도 국민소득의 94%에 상당하는 임시군사비예산이 편성되고 이를 뒷바침하기 위해 1945년에도 소득세를 위시하여 법인세, 특별법인세, 통행세, 주세, 입장세를 증징하도록 하였다[12].

이어 일본의 대도시 및 중소도시가 공습으로 초토화되는 가운데 1945년 7월에는 과세상의 전시긴급조치인 「1945년 전시긴급조치법에 따른 세제의 적정화에 관한 건」이 공포되었다. 이에 따라 배당이자 특별세, 외화채특별세, 건축세, 유가증권 이전세, 전기가스세, 광고세, 마권세 및 인지세의 과세를 일시 정지하는 한편 신흥소득계층이나 소득 또는 순익 등의 격증자에 대한 豫算課稅, 주세, 사탕소비세, 물품세, 입장세, 청량음료세, 유흥음식세 등의 신고납세제와 징수보조단체에 의한 징세청부 등 일련의 긴급조치가 실시되었다[13].

이러한 일본의 증세조치에 상응하여 조선에서도 소득세, 특별법인

12) 1945년 일본의 國民所得은 약 900억円으로 추정되었고 동년도 臨時軍事費豫算은 850억円이 계상되었다.
大藏省, 前揭書, 1957, p. 724.

13) 前揭書, pp. 751~752.

세, 사업세, 자본이자세, 주세, 유흥음식세, 입장세의 증징을 기도하였다. 이와 함께 1945년 7월에는 「전시행정의 특례에 관한 건」을 공포하여 생산력 확충이나 기타 종합국력의 확충 운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인허가, 면허, 특허, 승인, 검사, 협의, 신고, 보고 등을 생략하거나 신고, 보고 또는 협의로 끝내는 행정간소화조치를 실시하였다[14].

1) 所得稅의 改正

가) 제2종 소득으로서 기존하는 갑, 을, 병 외에 丁(개인이 조선에서 지급받는 報酬 또는 料金)과 戊(개인의 주식청산거래로 인한 소득)을 추가하였다. 전자는 목수, 토공, 자동차운전수 등 일용노무자나 외교원 및 수금원 등 노무자에 준하는 자 등에 지급되는 보수나 요금 그리고 원고, 삽화, 작곡 및 음반취입 요금, 방송사례금 등 보수로서 일본이 1944년에 분류소득세의 丙種事業所得으로 과세하기 시작하였던 것을 조선에도 도입한 것이었다. 후자는 전자와 같이 종래 제3종 소득으로서 과세되어 왔으나 이를 전자와 같이 원천징수의 대상소득으로 전환시켰던 것이다.

보수 및 요금 소득은 지급금액의 30%를 공제한 금액을, 주식의 청산거래로 인한 소득은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각각 과세소득으로 하고, 전자는 1일 2円, 후자는 100円에 미달할 때는 비과세하도록 하였다.

나) 제1종 소득세의 세율도 인상되었으나 법인의 청산소득을 적립금 등과 기타 금액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도록 하여 전자에 대한 세율은 40% 이상 낮아진 반면에 후자의 세율은 46% 이상 인상되었다.

다) 제2종 소득세의 세율은 갑의 경우 국채이자에 대한 세율이 33.3%, 국채 이외 공채이자에 대한 세율은 22.2% 그리고 일시은급 또는 퇴직급여에 대한 기타의 세율은 20%가 각각 인상되었다.

---

14) 『朝鮮總督府官報』, 第5524號, 1945. 7. 4.

〈表 Ⅳ－23〉 第1種 所得稅 稅率引上(1945)

(單位：%)

		1944	1945	증감률
보통소득	조선에 본점 등을 갖는 법인	26	29	11.5
	조선에 본점 등을 갖지 않는 법인	40	43	7.5
청산소득	적립금 등	26	15	−42.3
	기타		38	46.1

資料：『朝鮮總督府官報』, 1944. 3. 31, 1945. 3. 15.

〈表 Ⅳ－24〉 第2種 所得稅 稅率引上(1945)

(單位：%)

	1944	1945		1944	1945
(갑) 국채이자	6	8	(병) 10만円 초과	33	35
국채 이외 공채이자	9	11	50만円 초과	48	51
기타	10	12	(정) 개인 보수·요금	—	2
(을) 이익의 배당 등	28	30	(무) 개인주식청산거래소득		
기타	32	35	1만円 이하	—	4
(병) 퇴직소득 등			1만円 초과	—	8
2만円 이하	12	15	5만円 초과	—	16
2만円 초과	20	23			

資料：『朝鮮總督府官報』, 1944. 3. 31, 1945. 3. 15.

그러나 은행저축예금, 금융조합예금 등의 이자에 대해서는 6%의 세율이 적용되고, 원본이 5천円을 초과하지 않는 은행예금 또는 합동신탁의 이자 또는 이익에 대해서는 4%(종전 3%)의 세율이 적용되도록 개정하였다.

비거주자의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인 율의 세율은 7~9% 정도가 인상되었으며, 조선에서 지급받는 일시은급이나 퇴직급여에 대한 세율도 소득금액구분에 따라 25%에서 6%가 인상되었다.

라) 끝으로 제3종 소득세의 세율은 종전의 최저세율 1,000円 이하에 대한 1%에서 최고세율 50만円 초과에 대한 53%에 이르는 17단계 초과누진세율구조에서 1,000円 이하에 대한 1.5%에서 50만円 초과에 대한 54%에 이르는 16단계 초과누진세율로 개정되었다.

〈表 Ⅳ-25〉 第3種 所得稅 稅率引上(1945)

(單位 : %, 개)

	소득금액	1944	1945	증가율
최저세율	1,000円 이하	1	1.5	50
최고세율	50만円 초과	53	54	1.9
세율적용소득금액구분		17	16	

資料 : 『朝鮮總督府官報』, 1944. 3. 31, 1945. 3. 15.

2) 酒稅의 改正

가) 주류 조석세를 폐지하여 주류 고출세로 통합, 주세로 개정하였다. 이와 함께 중요산업 등에 근무하는 노무자 등에 저렴한 가격으로 주류를 공급하기 위해 실시하던 주세경감제도를 폐지하였다.

나) 주세의 세율은 양조주의 경우 조선주인 탁주가 2배로 인상되고, 동 약주의 세율이 근 2배로 인상되었던 반면에 과실주는 33%, 기타는 66~78%가 인상되었다.

증류주의 세율은 주정이 3.2배, 기타는 66%에서 87%까지 인상되고 재제주의 세율은 66~79%가 인상되었다.

이 같은 주세율의 인상에 따라 주세수입의 약 70% 정도의 증수를 기하도록 하였다.

〈表 Ⅳ－26〉 酒稅의 稅率引上(1945)

(單位：1석당 円)

		1944	1945			1944	1945
양조주	조선주인 탁주	30	60	증류주	주정(1도)	3.5	11.4
	조선주인 약주	133	260		소주·고량주(25도)	133.25	250
	맥주	250	415		기타(40도) 1급	780	1,300
	청주 1급	550	960		2급	548	950
	2급	300	515	재제주	미림	323	580
	과실주 1급	300	400		합성청주	304	580
	2급	250	330		기타(20도) 1급	420	700
	황주	218	380		2급	420	700
	기타	168	300		3급	280	500

資料：『朝鮮總督府官報』, 1944. 3. 31, 1945. 3. 15.

3) 入場稅의 改正

입장세는 제1종 장소에의 입장에 대한 세율구분을 간소화하고 제2종 장소의 설비이용에 대한 세율을 대폭 인상하였다.

가) 제1종 장소의 입장에 대한 세율은 종전에 입장요금에 따라 5단계로 구분되어 있었으나 이를 2단계로 축소하고, 回數, 定期, 貸切에 의한 입장의 경우에도 종전의 2단계 구분을 단일화하였다.

〈表 Ⅳ－27〉 入場稅의 稅率引上(1945)

(單位：%)

		1944	1945	증가율
제1종 장소	1.5円 미만	55	85	54.5
	1.5円 이상	85～170[2]	170	
	회수·정기·대절	85～125[3]	130	
제2종 장소	당구장·스케이트장[1]	30	85	183.3
	마작장	70	130	85.7
	골프장	130	180	38.4

註：1) 탁구장·釣魚場 포함.
2) 1944년 세율은 입장요금 3円 미만 ～5円 이상에 대한 세율
3) 1944년 세율은 입장요금 1.5円 미만～1.5円 이상에 대한 세율

資料：『朝鮮總督府官報』, 1944. 2. 16, 1945. 3. 15.

나) 입장세의 세율은 제1종 장소에의 입장에 있어서도 1인 1회 입장료가 1.5円 미만의 경우 54.5%가 인상되었으나 제2종 장소의 설비 이용의 경우 당구장·스케이트장, 탁구장, 조어장에 대한 세율이 2.8배 이상으로 인상되고, 마작장에 대한 세율은 85% 이상 인상되었다.

4) 其他稅의 稅率引上

가) 특별법인세의 세율구분을 각 사업연도 잉여금과 청산잉여금으로 구분하고 또 청산잉여금을 적립금으로 이루어지는 금액과 기타의 금액으로 다시 나누어 각기 별개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적립금으로 이루어지는 청산잉여금에 대한 세율은 종전보다 인하되었으나 기타 청산잉여금에 대한 세율은 77% 이상 인상되었다.

나) 사업세는 법인의 순익에 대한 세율은 그대로 두고 개인의 순익에 대한 세율은 갑류에 속하는 사업은 15.3%, 을류에 속하는 사업(자유직업)은 25%가 인상되었다.

〈表 Ⅳ－28〉 其他稅의 稅率引上(1945)

(單位 : %)

	1944	1945	증가율
특별법인세			
각 사업연도 잉여금	18	20	11.1
청산잉여금 적립금		15	－16.6
기타		32	77.7
사업세			
법인	4	4	0
개인 갑	2.6	3	15.3
을	2	2.5	25
자본이자세			
국채의 이자	7	8	14.2
기타	8	9	12.5
유흥음식세			
여관숙박요금 7円 미만	－	10	

資料 : 『朝鮮總督府官報』, 1944. 3. 31, 1945. 3. 15.

다) 자본이자세도 그 세율이 각각 1% 포인트씩 인상되었으나 은행저축예금, 금융조합예금 등의 이자에 대하여는 9% 대신에 4%를 적용하고, 원본이 5천円을 넘지 않는 은행예금 또는 합동신탁의 이자 또는 이익에 대하여도 역시 9% 대신에 3%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라) 그 밖에 유흥음식세의 세율 중 보통숙박료가 1인 1박 7円 미만일 때 10%로 개정하였다. 또 地稅의 면세점을 4円에서 8円으로 인상하고, 임시이득세의 年額을 2분하여 징수하도록 하였다.

5) 臨時租稅措置의 擴充

가) 3년 이상 預貯金의 이자 등에 대한 소득세 및 자본이자세의 경감조치를 2년 이상의 預貯金 이자에까지 확대하였다.

나) 법인이 정부의 지도, 알선 등에 의해 합병 등을 할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소득세 경감조치를 확대하였다.

다) 법인이 법령, 명령 또는 정부의 지도, 알선 등에 의해 사업의 설비나 권리 등을 기업정비를 위해 출자 또는 양도할 경우 소득세, 사업세, 임시이득세를 경감하던 조치를 1년 연장하였다.

라) 법령, 명령 또는 정부의 지도, 알선에 의해 법인의 적립금을 갖고 배당한 이익이 주식의 불입이나 출자에 충당될 경우 그 배당에 대한 소득세와 자본이자세를 경감하도록 하였다.

마) 기업정비 등으로 인한 폐업과 퇴직에 대한 소득세와 사업세의 경감특례를 1년 연장하고, 징용으로 인한 퇴직에도 제3종 소득세를 경감 또는 면제하도록 하였다.

바) 기업정비에 필요한 부동산, 부동산상의 권리, 선박 또는 광업에 대한 권리나 설비를 양도한 개인에 대한 임시이득에의 경감조치를 1년 연장하였다. 이와 함께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양도가 防空法에 의거한 명령으로 이루어질 때는 임시이득세를 면제하도록 하였다.

사) 목재 또는 薪炭 증산에 필요한 입목의 벌채 또는 양도를 한 개

인에 대한 소득세 경감을 확대하였다.

아) 경작을 목적으로 소유권을 교환하였을 경우 소유권의 취득 또는 소유권의 보존등기에 대해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하였다.

차. 地方稅의 增徵

日本이 中國에 대해 侵略戰爭을 일으킨 이래 이른바 戰爭關係經費는 戰局의 진전에 따라 급격히 늘어났으며 1941년 12월에 太平洋戰爭이 발발하게 되자 그러한 경비급증은 더욱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급증하는 總督府財政과 地方財政需要에 충당하기 위해 國稅와 地方稅가 모두 매년 증징되었으나 稅源의 中央集中化로 인해 地方稅의 증징은 영세한 稅種에 대한 과세로 이루어져 細民重課의 폐단이 증대되었다.

1) 1941년 地方稅制 改正

가) 免稅地特別地稅의 導入

開墾地에 대하여는 20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地稅를 면제하고 또 埋立地에 대하여도 60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地稅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道稅인 免稅地特別地稅는 이들 免稅地를 대상으로 免稅期間中 土地臺帳에 등록된 地價를 표준으로 하여 부과되는 조세였다. 그 稅率은 平安南北道, 江原道, 咸鏡南北道에서는 地價의 千分의 14, 기타 道에서는 千分의 12로 정하여졌다. 道稅인 免稅地特別地稅에 대하여는 府와 邑面에서 각각 免稅地特別地稅附加稅를 부과하도록 하였으며 그 稅率은 府稅인 경우 以北 5道에서는 道稅인 免稅地特別地稅의 百分의 80, 기타 道는 百分의 94로 정하고, 邑面稅는 以北 5道의 경우 百分의 77, 기타 도는 百分의 90으로 책정되었다.

나) 營業稅附加稅의 稅率引上

국세인 營業稅에 대한 도·읍면세인 營業稅附加稅의 세율을 인상하

였다. 地方稅인 영업세부가세는 종래 법인과 개인을 불문하고 동일한 세율로 과세되었으나 1940년 세제개정으로 國稅인 營業稅가 법인의 영업에 대하여는 事業年度 課稅를 하고 개인의 영업에 대하여는 曆年年分課稅를 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영업세부가세의 세율을 법인과 개인으로 이원화하였다.

道稅인 영업세부가세는 법인 영업세에 대하여는 百分의 52(종전 百分의 26)로 배로 인상하고 개인 영업세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이 百分의 26을 부과하도록 하였다. 府·邑面稅인 영업세부가세는 법인 영업세의 百分의 134(종전 百分의 80)으로 인상하고, 개인 영업세의 百分의 80(종전과 동일)을 유지하였다.

다) 戶別稅의 稅率引上

道戶別稅의 세율을 戶別稅 賦課個數 1개당 5円을 6円으로 인상하였다.

라) 家屋稅附加稅의 稅率引上

府稅인 家屋稅附加稅의 세율을 종전의 家屋稅(道稅)額의 百分의 80에서 百分의 140으로 인상하였다. 邑面稅인 가옥세부가세는 종래 읍면에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읍면에 각각 差等稅率을 적용하도록 하고 읍에 대하여는 종전의 가옥세의 百分의 60을 百分의 80으로, 면에 대하여는 종전의 가옥세의 百分의 60을 百分의 70으로 각각 인상하였다.

마) 車輛稅附加稅의 稅率引上

府·邑面稅인 차량세부가세의 제한세율 중 자동차 및 自轉自動車 이외의 차에 대한 세율도 道稅인 車輛稅의 세액과 同額이던 것을 百分의 150으로 인상하였다. 이와 함께 도세인 차량세 중 '리어커'에 대한 과세를 폐지하고, 自轉車·荷積牛馬車·荷車 등에 대한 과세를 各道 同額으로 하였다.

바) 不動產取得稅附加稅의 稅率引上

府·邑面稅인 不動產取得稅의 세율도 본세의 百分의 25에서 百分의 50으로 2배 인상하였다.

사) 屠畜稅의 課稅對象 擴大

도세인 屠畜稅는 종래 소(牛)의 도살을 대상으로 하여 부과되었으나 그 대상에 돼지(豚)를 추가하고 세율을 한 마리당 50錢으로 정하였다.

아) 府·邑面特別稅의 改編

(1) 特別營業稅의 課稅對象 調整과 稅率引上

국세영업세의 예에 준하여 영업의 업체구분에서 「飮食店業」을 삭제하였다. 그 대신에 상당한 객석을 갖추고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이를 요리점업으로 간주하고, 객석 없이 단지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물품판매업으로 취급하도록 하였다.

또 법인에 대한 특별영업세는 국세영업세에 준하여 曆年의 예산과세를 사업연도의 實積課稅로 개정하였다. 한편 각 업체별 세율은 대체로 국세영업세의 세율인상(약 50%)에 준하여 개정하였다.

(2) 雜種稅의 課稅對象 擴大

道稅 車輛稅의 과세대상에서 리어커가 제외됨에 따라 府·邑面特別稅인 잡종세로 이를 과세하도록 하고 1대당 연액 1円에서 50錢이 부과되었다. 그 밖에 '탱크'에도 잡종세를 부과하되 세액은 1입방척에 연액 10전을 부과하였다. 1941년도에 있어서도 잡종세는 電柱, 犬, 乘馬, 狩獵, 船舶, 리어커, 탱크, 市場, 商品券, 遊藝스승, 幇間, 藝妓(妓生), 藝妓 겸 娼妓, 娼妓, 舞妓, 酌婦, 諸興行, 行商 등을 과세대상으로 삼았으며 細民課稅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2) 1942年度 地方稅制 改編

가) 邑面特別戶稅의 新設

邑面의 區長에 대하여는 종래의 관행에 따라 部落民이 서로 米麥 등 현물을 醵出하여 이를 직무에 대한 보수로 제공하여 왔으나 1942년 1월 9일부 「地第4號通牒」에 의해 邑面住民에 대하여 부과총액이 1戶 평균 2円 이내인 特別戶稅를 부과하여 이를 재원으로 區長에게 상여금

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邑面特別稅인 특별호세는 읍면 내에 한 가구를 갖는 자를 대상으로 생계의 정도를 참작하여 부과하되 公私의 구조나 부조를 받는 자는 비과세하도록 하였다. 이 특별호세는 납세의무자를 10등급으로 나누어 과세하되 1호당 부과액이 最高 10円을 넘지 않고, 最低 50錢을 밑돌지 않도록 하였으며 연 2회로 나누어 과세하였다[15].

나) 特別地稅 및 免稅地特別地稅의 稅率引上

道稅인 特別地稅와 免稅地特別地稅의 세율을 이북 5도는 종전의 千分의 14에서 千分의 15로, 기타 도는 千分의 12에서 千分의 13으로 각각 인상하였다. 이와 함께 府·邑面稅인 특별지세부가세 및 면세지특별지세의 세율도 각각 인상되었다. 부세인 特別地稅附加稅 및 免稅地特別地稅附加稅의 세율은 이북 5도의 경우 종전의 百分의 80에서 百分의 85로, 기타 도는 百分의 94에서 百分의 98로 각각 인상되었다. 邑面稅인 특별지세부가세와 면세지특별지세부가세의 세율은 이북 5도의 경우 종전의 百分의 77에서 百分의 82로, 기타 도는 百分의 90에서 百分의 94로 각각 인상되었다.

다) 道稅 車輛稅의 稅率引上

道稅인 車輛稅 중 自轉車에 대한 세액을 客席이 없는 것에 대하여는 1량당 1円, 객석이 있는 것 또는 3륜차에 대하여는 1량당 1円 50전으로 개정하였다. 또 승용마차에 대해서도 준칙과 같이 과세하도록 하고, 영업용 인력차에 대한 세액을 1량당 종전의 1円에서 1円 50전으로 인상하였다.

라) 特別營業稅의 稅率引上과 雜種稅의 課稅對象 擴大

國稅 營業稅의 개정에 준하여 부·읍면특별세인 특별영업세의 과세업종과 세율이 개정되었다. 특별영업세의 과세업종 중 이발업, 연극장

15) 「邑面區長, 處遇改善ニ關スル件」, 地第4號, 司政局長通牒, 1942. 1. 9, 朝鮮行政學會, 『朝鮮行政』, 京城, 1942. 2, pp. 91~93.

업 및 寄席業(대중적 연예장업)을 삭제하고 理髮美容業 및 演劇興行業을 추가하였다. 또 특별영업세의 과세율도 국세 영업세의 예에 준하여 약 20% 정도 인상하였다. 과세업종별로 보면 은행업의 예금액, 보험업, 제조업 갑에 대한 과세율이 25% 이상 인상되고 寫眞業에 대한 세율은 40%가 인상되었다.

국세 영업세와 과세업종이 동일한 府·邑面特別營業稅의 과세율은 은행·보험·無盡業을 제외하고 국세 영업세와 같은 세율로 책정되었고 국세 영업세의 과세대상을 확대·조정함에 따라 부·읍면특별영업세의 과세대상 영업도 크게 조정되었다.

한편 잡종세의 과세대상도 크게 조정되었다. 종래 娼妓에 대하여도 잡종세를 과세하여 왔으나 이를 세민과세라는 이유로 폐지하는 한편 乘馬 및 諸興行, 소형(3입방척 미만) 金庫와 수렵에 사용하지 않는 엽총에 대한 과세를 제외하였다. 그 대신에 당구대, 선풍기, 피아노, 傭人의 사용 및 給仕人에도 잡종세를 부과하도록 하였다[16].

3) 1943年 地方稅制 改編

가) 地稅附加稅의 稅率改正

1943년도부터 국세인 지세를, 임대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5%의 세율로 과세하게 됨에 따라 지방세인 지세부가세의 세율도 개정되었다. 도세인 지세부가세의 세율은 일률적으로 본세의 48%, 부·읍면세인 지세부가세의 세율은 각각 본세의 52%와 50%로 개정되었다. 새로 개정된 지세부가세의 세율은 종래의 세액을 유지하되 일부 증징액을 調整財源(분여금)에 충당한다는 정책적 고려에 따라 책정되었다.

나) 特別地稅 및 免稅地特別地稅의 稅率改正

국세인 지세의 과세방법 개정에 따라 도세인 특별지세 및 면세지특

16) 「邑面特別稅規則準則改正ノ件」, 地第65號, 1942. 4. 9, 朝鮮行政學會, 『朝鮮行政』, 京城, 1942. 5, pp. 97~105.

별지세도 임대가격(다만 면세지특별지세는 평정임대가격)을 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세율은 지세부가세와 같이 서북 5도와 기타 도의 차별을 없애고 일률적으로 3%로 정하여졌다. 또한 부세인 특별지세부가세와 면세지특별지세부가세의 세율은 각각 본세액으로 인상하고, 읍면세인 특별지세부가세 및 면세지특별지세부가세의 세율은 각각 본세액의 96%로 인상하였다[17].

다) 戶別稅의 免稅點 撤廢와 特別戶別稅의 新設

지방세부담의 분임정신에 따라 호별세의 면세점을 철폐하였다. 다만 府에 한하여 면세점을 철폐하지 않고 부세로서 특별호별세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① 특별호별세는 호별세가 부과되지 않는 자에게 부과하나 貧困 때문에 생계를 위해 公私의 구조나 부조를 받는 자는 제외된다.

② 특별호별세는 균등부과하며 年 2기에 징수한다. 다만 지방실정에 따라 1기에 징수할 수도 있다.

③ 특별호별세의 부과액은 납세의무자 1인당 1기 1円 또는 50錢으로 한다. 1기분 납세액은 당해연도 호별세 최저납세의무자 1인에 대하여 부과하여야 할 호별세 및 동 부가세액(특별경제분 포함)의 합산액이 2円 미만인 府에 있어서는 50錢, 2円 이상인 부에 있어서는 1円으로 한다[18].

라) 道稅인 林野稅의 稅率引上

임야보호비의 증가(주로 직원대우개선비의 증가)에 대응하여 세율제한 1町步당 25錢을 30錢으로 인상하였다.

마) 道稅인 車輛稅의 增收

자동차 및 자동자전차의 1대당 세액을 20% 증수하여 1940년도 개

17) 『朝鮮總督府官報』, 號外, 1943. 4. 31.

18) 「昭和18年度地方稅及地方財政調整補給金ニ關スル件」, 司第29號, 政務總監通牒, 1943. 2. 17, 朝鮮行政學會, 『朝鮮行政』, 京城, 1943. 3, pp. 51~61.

정 전의 세액으로 복귀하는 한편 기타 차량에 대하여는 50%를 증징하도록 하였다. 한편 리어커에 대한 부·읍면잡종세는 1942년도에 폐지하고 1943년도부터 새로 도에서 차량세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부·읍면은 리어커에 대해 차량세부가세를 부과하게 되었다. 그 세율은 1대당 75錢으로 1941년도 폐지 전 세액보다 50%를 인상하였다.

바) 市街地計劃事業特別稅의 稅率引上

府 또는 邑의 시가지계획사업의 재원조달을 위해 1937년 2월에 정무총감통첩으로 신설된 시가지계획특별세의 일부 세목의 세율을 조정하고 새로운 세목을 추가하였다[19].

① 1943년도부터 地稅의 과세표준을 종래의 지가에서 임대가격으로 개정함에 따라 지세할의 세율을 「20% 이내」에서 「16% 이내」로 개정하였다.

② 1937년도 이래 이 특별세는 지세할 이외에 5개 세목을 용인하여 왔으나 지세할과의 균형상 특별지세할 및 면세지특별지세할을 새로 창설하였다.

③ 종래 특별영업세할의 세율은 「20% 이내」로 정하여졌으나 영업세와 특별영업세는 과세객체, 과세표준의 결정방법 및 세율이 동일하기 때문에 특별영업세할의 세율을 영업세할과 같이 「22% 이내」로 인상하였다.

④ 그 밖의 세율은 변경하지 않았다.

사) 交通稅의 新設

1943년 6월 1일부터 경성부(서울)와 부산부(부산)에서 전차요금에 대해 교통세를 부과하기 시작하였다. 교통세의 신설은 府의 전시재정수요의 급격한 팽창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되었다. 경성부의 경우 전차의 기본요금이 1회 승차에 5전이었으나 교통세가 1전 추

19) 「市街地計劃事業特別稅ニ關スル件」, 司第34號, 政務總監通牒, 1943. 3. 2, 朝鮮行政學會, 『朝鮮行政』, 京城, 1943. 5, pp. 59~60.

가되어 요금을 20% 인상된 6전으로 올려받게 되었다[20].

4) 1944年 地方稅制 改編

가) 事業稅附加稅 및 特別事業稅의 新設

종래 외형표준으로 과세하던 국세 영업세가 과세표준을 순익에 따라 과세하는 사업세로 개편됨에 따라 도·부·읍면의 영업세부가세도 사업세부가세로 개편되었으나 세율은 종전의 세율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와 함께 도세로서 특별사업세를 신설하고 부·읍면세로서 특별사업세부가세를 도입하였으며 종래의 부·읍면특별영업세를 부·읍면특별영업수익세로 개편하였다. 특별사업세는 道內에 자산 또는 사업장을 갖고 있는 법인 또는 도내에 사업장이 있고 국세인 사업세의 과세대상인 사업을 경영하는 개인으로서 사업세가 부과되지 않는 법인이나 개인을 대상으로 과세되며 그 세율은 법인의 경우 사업연도의 순익 또는 청산순익의 2.1%, 개인의 경우 사업순익의 0.7%로 정하여졌다. 또 부·읍면세인 특별사업세부가세의 세율은 법인의 경우 본세의 255%, 개인의 경우 본세의 297%로 정하여졌다[21].

나) 鑛稅附加稅 및 取引所稅 附加稅의 改編

사업세의 창설로 광업이 사업세의 과세대상업종으로 추가되자 국세인 광세는 광구세로 개편되고 도·부·읍면세인 광세부가세는 광구세부가세로 개편되었다. 다만 광구세부가세의 세율은 종전과 같이 7%로 정하였다. 또 국세인 취인소(거래소)세가 취인소특별세로 개편됨에 따라 도·부세인 취인소세부가세가 취인소특별세부가세로 개편되었으나 종전의 세율(15%와 35%)이 존치되었다.

다) 旣存 稅目의 增收

도세인 특별지세의 세율을 종전의 3%에서 4%로 인상하고 도세 임

---

20) 『每日申報』, 1943. 5. 5.
21) 『朝鮮總督府官報』, 號外(三), 1944. 3. 31.

야세의 세율은 임야면적 1정보당 30전에서 35전으로 인상하였다. 읍·면세인 특별지세부가세와 면세지특별지세부가세의 세율이 종전의 본세의 96%에서 각각 97%로 인상되었다. 그 밖에 경성부는 전차 1회 승차에 대한 교통세의 세율을 종전의 1전에서 2錢 5厘로 2.5배를 인상하였다.

5) 1945年度 地方稅制 改編

가) 道稅 入亭稅의 創設

도지사가 지정한 요리점, 貸座敷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유흥 또는 음식을 하는 자에 대하여 1인 1회에 1円을 부과하도록 하였다.

나) 府稅 府民稅와 邑面稅 邑面民稅의 新設

부·읍면 내에서 한 세대를 이루는 개인이나 한 세대를 이루지 못하더라도 독립적 생계를 영위하는 개인 및 부·읍면 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갖는 법인에 대하여 부민세 내지 읍면민세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다만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자 중 납세의무자가 2인 이상일 때는 호주(또는 世帶主)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였다.

부민세나 읍면민세는 각각 부과세액이나 납세자 1인당 부과액에 일정한 제한을 두었다. 부민세는 개인에 대한 부민세부과세액이 납세의무자 수에 10円을 곱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고, 납세의무자 1인당 부과액은 개인에 있어서는 100円, 법인에 있어서는 3,000円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였다. 또 읍면민세는 개인에 대한 읍면민세부과세액이 납세의무자 수에 읍에 있어서는 8円, 면에 있어서는 6円을 곱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고, 납세의무자 1인에 대한 부과액은 개인에 있어서는 100円, 법인에 있어서는 3,000円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였다.

그러나 부나 읍면이 모두 부·읍면민세 외에 필요할 때는 따로 세목을 마련하여 특별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신축적인 규정도 특별히 마련하였다.

다) 旣存 稅目의 增徵

① 도세 중 지세부가세의 세율을 종전의 48%에서 60%로 인상하고, 특별사업세의 개인에 대한 세율을 종전의 0.7%에서 1%로 인상하였으며, 임야세의 세율은 임야면적 1정보당 35전에서 50전으로 인상하였다. 이와 함께 부동산취득세의 세율도 종전의 1%에서 2%로 높였다.

② 부세에 있어서는 지세부가세의 세율을 본세의 52%에서 60%로 인상하였다. 그리고 특별부가세의 개인에 대한 세율을 본세의 297%에서 240%로 인하하였다. 그 밖에 경성부에서는 전차 1회 승차에 대한 교통세의 세율을 종전의 2전 5리에서 7전 5리로 3배나 인상하였다.

③ 한편 읍면세에 있어서는 지세부가세의 세율을 종전의 50%에서 60%로 인상하고, 가옥세부가세의 세율을 읍의 경우 본세의 80%에서 120%로, 면의 경우 본세의 70%에서 가옥세액(본세의 100%)으로 각각 인상하였다. 그러나 읍면부가세인 특별사업세 부가세의 개인에 대한 세율은 본세의 297%에서 240%로 각각 인하하였다[22].

22) 『朝鮮總督府官報』, 第5426號(1945. 3. 9), 第5452號(1945. 4. 11), 第5419號(1945. 3. 1).

Ⅴ. 政策變化의 效果分析

1. 租稅政策의 基調

일본은 조선에서 식민지 통치기간중 일관하여 조세의 증징을 정책기조로 삼았다. 당초 일본은 조선총독부특별회계를 설치하면서 조선의 歲出은 조선의 歲入으로 충당한다는 원칙하에 당시 조선의 民度가 낮아 통치개발에 소요되는 경비 전부를 부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족분은 일본의 일반회계로부터의 補充金에 의해 보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조선을 식민지화할 당시부터 조선재정의 독립을 기도하여 왔던 일본은 지세의 증징과 시가지세의 부과 그리고 연초세와 주세의 도입으로 세입을 늘려 1914년부터 5년간에 걸쳐 일본의 일반회계로부터의 보충금 전입액을 점차 줄임으로써 1919년에는 이를 전폐한다는 재정독립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강력히 실시하였다.

이어 3·1운동을 계기로 하여 일본의 조선통치 방침이 외견상 회유, 유화정책으로 전환된 1920년부터는 경찰기관의 확충과 회유책의 일환으로 실시된 지방제도의 개혁, 조선의 산업을 식민지형 米作을 중심으로 하는 單一農耕制로 재편성하기 위한 산미증식계획의 추진 그리고 군사상의 요구에 따라 추진된 철도건설 등으로 재정수요가 크게 늘어나게 되자 1927년에 제1차 세제정리, 1934년에는 제2차 세제정리를 통하여 稅收를 증대하는 데 주력하였다.

더욱이 1931년 만주사변 이후 일본의 대륙침략이 본격화되어 1937년에는 중·일전쟁을 일으키고, 이어 1941년에는 일본의 침략전쟁이 태평양지역에까지 확대되자 전비조달을 위한 불건전한 조세정책은 세제를 파탄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패전과 표리를 같이하여 일본전쟁경

제의 전면적 붕괴에 일익을 담당하였다.

2. 財源調達 效果

가. 植民地統治基盤 造成期

조선을 식민지화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재정독립계획을 추진하였던 식민지 통치기반 조성기(1910~1919)에 조세의 증징을 통하여 달성한 재원조달 효과는 〈表 V-1〉에 요약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1910~1919년 기간중 조세수입은 4.6배로 늘어나고 그 중 국세는 4.3배, 지방세는 6.6배로 각각 늘어나 국세 대 지방세의 비중이 1910년의 83.7% 대 16.3%에서 1919년에는 77% 대 23%로 크게 변화하였다.

또 주요국세의 신장률을 보면 1910~1919년 기간중 연초세는 18.9배, 주세는 17.7배로 늘어나 1919년 국세수입에서 점하는 비중도 1910년에 비해 4배 이상으로 높아졌다. 반면에 조선말 재정수입의 주축이 되어 왔던 지세수입은 그 비중이 반 이하로 떨어졌고 관세수입은 7.7배로 늘어나 국세수입의 40% 이상을 점하는 중요한 재원으로 등장하였다. 이와 함께 1917년부터 징수하기 시작한 조선은행권발행세가 1919년에는 크게 늘어나 국세수입의 4%를 차지하였다.

더욱이 이 기간중 국세나 지방세를 막론하고 그 증가율은 국내총지출이나 국내순생산으로 표시되는 경제규모의 성장률을 크게 상회하였으며 특히 지방세수입의 신장률은 경제규모 성장률의 2배에 달하였다. 즉 경제규모에 대한 지방세부담률이 2배로 늘어났다.

이 기간중 지방세수입이 격증한 것은 1911년 10월에 조선인의 초등교육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公立普通學校費用令」의 공포와 府制의 실시(1914. 4) 그리고 面制의 실시(1917. 10)에 기인하고 있으나 지방교육재정제도나 지방단체의 창설은 다름아니라 「조선총독

〈表 Ⅴ－1〉 植民地統治基盤 造成期의 租稅增徵(1910～1919)

(單位 : 천円, %)

	1910	1919	증가배수[3]
1. 조세수입	10,821	50,041	4.6(3.6)
(1인당, 円)	(0.81)	(2.92)	3.6
국세	9,062	38,519	4.3(3.1)
(1인당, 円)	(0.68)	(2.24)	3.3
지방세	1,759	11,522	6.6(7.4)
(1인당, 円)	(0.13)	(0.67)	5.1
2. 국세 대 지방세(%)	83.7 대 16.3	77.0 대 23.0	
3. 주요국세의 신장[1]			
지 세	6,001(66.2)	11,178(29.0)	1.9
관 세	2,026(22.4)	15,545(40.4)	7.7
연초세	256 (2.8)	4,849(12.6)	18.9
주 세	163 (1.8)	2,886 (7.5)	17.7
조선은행권발행세	—	1,558 (4.0)	—
4. 경제규모[2](1911～1919)			
국내총지출	540,715	1,799,162	3.3
국내순생산	487,639	1,636,010	3.4

註 : 1) ( ) 내는 구성비.
2) 溝口 등의 추정치.
3) ( ) 내는 1911～1919년.

資料 : 재무부, 『한국세제사(上)』, 서울, 1979. 12.
溝口敏行·梅村又次, 『舊日本植民地經濟統計』, 東京 : 東洋經濟新報社, 1988.

부 재정독립계획(1914～1919년)」을 완수하기 위한 방편이었던 것이다. 이는 부제가 실시된 1914년에 府稅로서 시가지세부가세, 가옥세부가세, 영업세, 전주세, 잡종세가 도입되고, 面制가 실시된 1917년에는 面稅로서 시가지세할, 영업세할, 잡종세할이 도입된 것에서 알 수 있다.

〈表 Ⅴ-2〉 地方稅의 增收(1910~1919)

(單位 : 천円, 배, %)

	합 계	도지방비 지방세	부 세	면부과금	학교비 부과금	학교조합 부과금
1910	1,759	1,001	651	(2,728)[1]	(1)[1]	107
1919	11,522	3,823	890	5,080	723	1,006
증가배수	6.6	3.8	1.4	1.9	723	9.4
연평균 증가율	23.2	16.1	3.5	9.3	75.2[2]	37.5

註 : 1) 1912년.
2) 1913~1919년 기간 연평균 증가율.

資料 :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統計年報』 京城, 1923.
朝鮮總督府司政局, 『朝鮮地方財政要覽』; 京城, 1941.

뿐만 아니라 1918년 6월에 토지조사사업이 완료되자 동년 7월부터 종래 結數와 結價에 따라 과세하던 地稅의 과세방법을 地價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 1.3%를 적용·과세하도록 개정하였으며, 토지조사사업에 따라 과세대상지 면적이 46%가 증가한 것과 함께 1919년 지세수입의 실적이 1911년에 비하여 1.9배가 늘어났다. 이에 따라 지방세(도세)인 지세부가세도 동 기간중 약 1.6배로 늘어났다. 또 면의 地稅割도 1912~1919년 기간중 2.1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한편 학교비부과금은 1912~1919년 기간중 기옥세부가금이 26배 이상, 1913~1919년 기간중 지세, 시가지세부가금이 32배 이상, 호세부가금이 29.7배 이상으로 각각 늘어났다. 학교비부과금은 1914년에는 호세부가금이 본세의 10%, 가옥세부가금은 본세의 10%, 지세 및 시가지세부가금은 평안남북·강원·함경남북도는 본세의 2%, 기타 도는 1%로 정하여졌으나 1919년에는 호세부가금이 본세의 30%, 가옥세부가금은 본세의 45%, 지세 및 시가지세부가금은 본세의 40%

로 인상되었다.

그 밖에 1919년에는 국세였던 호세와 가옥세가 지방세(도세)로 이양되고, 부세로서 花代를 과세물건으로 하는 助興稅가 신설되었다.

나. 植民地統治 擴充期

3·1운동 이후 식민지조선에 대한 일본의 통치방침이 표면적으로나마 회유·유화정책으로 전환된 후 준전시체제를 강화하여 가던 1936년에 이르는 기간중에도 조세수입은 2.5배로, 그 중 국세수입이 2배, 지방세수입이 4.4배로 각각 늘어났다. 또 국세 대 지방세의 비율은 1920년의 57% 대 43%, 1936년에는 59.6% 대 40.4%로 국세의 비중이 다소 높아졌다.

주요 국세의 신장률을 보면 1920~1936년 기간중 소득세가 16배 이상으로 늘어나고 다음이 주세가 7.5배, 사탕소비세가 4.3배로 늘어나고 있으나 지세 및 관세의 증가율은 경제규모의 확대에 따르지 못하고 있다. 소득세의 대폭적인 증가는 주로 1934년에 도입한 일반소득세에 그 원인이 있었다. 개정 전 소득세는 법인소득에 한하여 과세하였으며 1920년도 소득세의 稅收는 1,598천円(1920년 세수의 약 4.6%)에 불과하였다. 법인소득만이 아니라 금융자산소득과 개인소득에 대한 과세의 도입으로 소득세 수입이 급격히 늘어났던 것이다. 주세수입의 증가는 주로 세율의 인상에 기인하였다. 1920년 8월의 주세령 개정에서 하급주를 제외하고 대체로 그 세율이 66%나 인상되었으나 1922년 4월에도 다시 세율이 약 25%가 인상되었다. 이어 1927년에 실시된 제1차 세제정리에서 주세율은 28%(조선탁주)에서 60%(맥주)에 이르는 증률이 이루어졌다. 그후 1934년에 실시된 제2차 세제정리에서 주세율은 약 30%가 인상되었다.

사탕소비세는 1918년 3월에 도입할 당시에는 세율이 낮았으나 1922년 3월에 조세증징을 목적으로 세율을 대폭 인상하였을 뿐만 아

〈表 Ⅴ-3〉 植民地統治 擴充期의 租稅增徵(1920~1936)

(單位 : 천円, %)

	1920	1936	증가배수[1]
1. 조세수입	61,239	126,471	2.5
(1인당, 円)	(3.55)	(5.74)	2.0
국 세	34,901	75,392	2.0
(1인당, 円)	(2.02)	(3.42)	1.5
지방세	26,338	51,079	4.4
(1인당, 円)	(1.53)	(2.32)	3.4
2. 국세 대 지방세(%)	57.0 대 43.0	59.6 대 40.4	
3. 주요국세의 신장[2]			
지 세	11,453(32.8)	13,313(17.7)	1.2
소득세	1,598 (4.6)	12,239(16.2)	16.1
주 세	3,767(10.8)	21,756(28.9)	7.5
사탕소비세	614 (0.2)	3,218 (4.3)	4.3
관 세	9,747(27.9)	16,814(22.3)	1.1
4. 경제규모[3]			
국내총지출	1,747,153	2,480,924	1.4
국내순생산	1,842,732	2,247,273	1.4

註 : 1) 1919~1936년 증가배수.
2) ( ) 내는 구성비.
3) 溝口 등의 추정치.

資料 : 재무부, 『한국세제사(上)』, 서울, 1979. 12.

니라 1927년 3월 제1차 세제정리에서는 甜菜를 원료로 하여 사탕을 제조할 때 생산되는 糖蜜을 제외하고 그 밖의 사탕에 대한 세율을 일본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하였다.

지세의 세율도 1922년 3월에 개정되어 종전 地價의 1.3%에서 1.7%로 인상되었다. 이와 함께 시가지세의 세율도 종전의 0.7%에서 9.5%로 인상되고 1928년 12월에는 시가지세를 지세에 통합하여 1.7%의 세율로 과세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1934년 4월에 일반소득세를 도

입하게 되자 토지소득자의 부담경감을 위하여 지세율을 1.7%에서 1.5%로 인하하였다.

관세수입의 비중이 떨어지고 그 신장률이 저조하였던 것은 舊關稅据置期間이 끝나 1920년부터 통일관세제도가 실시되자 輸出稅와 移出稅가 폐지되고 이출세에 해당하는 出港稅가 신설되었으나 일본이 이입세의 과세품목을 축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나머지 이입세 품목에 대하여도 계속 세율을 인하하였던 데 기인하고 있다.

식민지통치의 확충기라고 할 수 있는 1920~1936년 기간중 제1차 세계대전 후의 경제공황(1920~1936)과 1927년의 금융공황 그리고 金 輸出의 解禁(1930. 1)으로 유발된 만성적 공황의 심화와 세계적 공황의 영향으로 조선에서도 불황이 심화되었다. 그 여파로 국세의 신장은 저조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으나 지방세는 이 기간중에도 시종일관하여 증수가 거듭되었다. 특히 이 기간중에는 세제의 합리화를 위하여 국세나 지방세에 대한 두 차례에 걸친 정리가 실시되었으나

〈表 Ⅴ-4〉 租稅收入의 推移(1919~1936)

(單位 : 천円)

	국 세		지 방 세		비 고
	금 액	지 수	금 액	지 수	
1919	38,518	100.0	11,522	100.0	—
1920	34,901	90.6	26,338	228.6	—
1927	43,363	112.6	37,785	327.9	국세·지방세1차정리
1928	44,633	115.9	38,238	331.9	국세 1차정리
1929	45,988	119.4	39,936	346.6	지방세 보완개정
1934	56,129	145.7	44,296	384.4	국세 2차정리
1936	75,392	195.7	51,079	443.4	지방세 2차정리

資料 :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統計年報』 京城, 各 年度.
朝鮮總督府司政局, 『朝鮮地方財政要覽』, 京城, 1941.

지방세는 지방제도의 개혁을 구실로 苛斂誅求가 극심하였던 것이다.

1920년에 道評議會와 府·面協議會 등을 설치하는 지방제도 개혁을 실시하면서 地方費令의 공포에 따라 종전의 지방비부과금을 지방세로 고치는 한편 지세부가세와 시가지세부가세(1914년 신설)의 세율(제한세율)을 종전의 10%에서 30%로 3배 인상하였다. 뿐만 아니라 1919년에 국세로부터 지방에 이양된 戶稅의 제한율을 1戶 평균 50錢에서 1円 50錢으로 역시 3배 인상하였다. 이와 함께 호세와 같이 지방비에 이양되었던 家屋稅에 대해서도 호세와 같은 정도의 세액을 가옥세 부과지역인 부·면에 배부하였다. 그 밖에 1920년에는 국세였던 漁業稅와 船稅가 지방비에 이양되었다. 이에 따라 1920년 지방세 수입은 1919년에 비해 2.3배로 격증하였다.

道가 지세부가세의 제한율을 인상함에 따라 府나 面도 지세부가세의 제한율을 인상하였고 또 호세와 가옥세의 세율인상은 도세부가세를 과

〈表 Ⅴ-5〉 地方稅의 增收(1919~1936)

(單位 : 천円, %)

	합 계	도 세 (지방세)	부 세	면부과금	학교비 부과금	학교조합 부과금
1919	11,522	3,823	890	5,080	723	1,006
1920	26,338	8,628	1,676	10,013	4,202	1,819
1936	51,079	23,316	7,040	16,059	3,843	821
증가배수 1919~20	2.3	2.3	1.9	2.0	5.8	1.8
증가배수 1919~36	4.4	6.1	7.9	3.2	5.3	0.8
연평균 증가율 1919~36	9.1	11.2	12.9	7.1	10.3	-1.2

資料 :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統計年報』, 京城, 1926, 1940.
朝鮮總督府司政局, 『朝鮮地方財政要覽』 京城, 1926, 1941.

하던 학교비부과금의 세수도 늘리게 되었다.

이상과 같이 3·1운동 후 회유책의 일환으로 실시된 지방제도의 개혁은 지방세부담을 2배 이상으로 끌어올렸던 것이다.

이어 1927년에 실시된 제1차 지방세제 정리에서는 지방세(도세)인 지세부가세의 제한율을 60%(이북 5도는 70%)로 인상하고, 시장세를 폐지한 대신에 특별시장세와 부동산취득세를 신설하였다. 또 부세에 있어서는 국세 영업세의 신설에 따라 부세였던 영업세와 특별시장영업세를 폐지하는 대신에 영업세부가세와 특별영업세를 신설하고, 소득을 표준으로 과세하던 호별세의 과세표준을 자산·소득·생계의 정도로 개정하였다. 면부과금에 있어서도 부영업세의 폐지에 따라 영업할을 폐지하는 대신에 국세에 대한 영업할과 부세에 대한 특별영업할을 신설하였다. 그리고 학교비는 地稅(市街地稅)附加金을 폐지하고, 학교조합비는 영업할, 잡종할, 흥행할을 모두 폐지하였다.

또 1929년에는 제1차 세제정리의 보완조치로서 지방세에 국세부가세인 소득세(법인)부가세와 특별세인 특별소득세(법인)를 신설하였으며 호세의 배당방법을 종래의 납세의무자수에서 2분의 1은 납세의무자수에 의하여 배당하되 나머지 2분의 1은 납세의무자가 조선에서 납부하는 지세 및 영업세액에 의해 안분·배당하도록 하고, 가옥세의 배당률도 호당 2円으로 증률하였다. 부세에 있어서는 특별소득세(법인)를 폐지하는 대신에 도세인 특별소득세(법인)에 대한 부가세를 신설하고, 면부과금에 있어서도 소득세(법인)할, 특별소득세(법인)할이 신설되었다. 끝으로 학교비부과금은 1930년도에 호세부가금 납입의무자 1인평균 80錢(및 가옥세부가금 現住 戶數 1호 평균 80錢)을 90錢으로 인상하고 1932년도에는 이를 1円으로 인상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1934년과 1935년에 걸쳐 지세부과세율이 도세에 있어서는 종전의 60%(이북 5도는 70%)에서 각각 64%(75%), 68%(80%)로, 부세에 있어서는 종전의 60%가 64%, 68%로, 읍면세의 있어서는 종전의 46%가 각각 50%, 53%로 인상되었다. 이 같은 지세

부가세율의 인상은 1934년에 국세체계에 제3종소득세가 도입됨에 따라 토지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지세율이 종전의 1.7%에서 1.5%로 인하되어 지세부가세의 세수가 감소될 것에 대한 대비책으로 실시되었다.

한편 1934년에 실시된 제2차 지방세제 정리에서는 도세로서 영업세부가세와 광세부가세·취인소(거래소세)부가세(수익세)의 신설이 이루어지고, 호세를 폐지하는 대신에 호별세를 신설하였으며 제1종 소득세부가세(종전의 법인소득세부가세)와 특별소득세의 세율을 약 4% 포인트 인상하였다. 부읍면세에 있어서도 국세부가세인 광세부가세와 도세부가세인 가옥세(수익세)부가세, 호별세부가세, 부동산취득세부가세가 각각 도입되고, 도세인 호세와 가옥세(호수기준 부과)의 폐지에 따라 그 부가세도 폐지되었다.

끝으로 학교비부과금이나 학교조합부과금이 1920~1936년 기간중 감소되고 있는 것은 1930년 12월에 공포된 지방제도 개혁으로 府를 구역으로 하는 학교비와 학교조합비가 각각 부의 제2부 특별경제와 제1부 특별경제로 이관되었기 때문이다. 학교비부과금과 府의 제2부 특별경제의 부세수입 그리고 학교조합부과금과 부의 제1부 특별경제의 부세를 합하여 보면 1936년 세수액은 조선인 교육을 위한 부과금이 562만 9천円, 일본인 교육을 위한 부과금이 198만 7천円에 달하였으며 이는 1919년 대비 각각 7.8배, 2배로 늘어난 규모였다. 이는 1920~1936년 기간중 학교비부과금은 연율 12.8%, 학교조합부과금은 연율 4%의 비율로 증가하였던 것을 의미하고 있다.

한편 1936년에 실시된 제2차 지방세제 정리에서는 학교비의 호별세부과금을 종래 現住 戶數 평균 1호당 1円에서 1円 10錢으로 인상하였다.

다. 侵略戰爭期

일본이 1937년에 중국대륙에 대한 침공을 시작하고 1941년 12월

에는 침략전쟁을 동남아, 태평양지역에까지 확대하였다가 1945년 8월에 패망하게 되었던 침략전쟁 기간중 격증하는 군사비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임시조세증징과 특별세의 도입, 거듭된 간접세 및 직접세의 증징 등 戰時 비상조치가 매년 계속되었다. 이에 따라 조세수입은 1937~1943년 기간중 5배 이상의 규모로 늘어났으며 그 중 국세는 6.7배, 지방세는 2.7배의 규모로 각각 늘어났다. 이와 함께 국세 대 지방세의 비율은 1937년의 60.2% 대 39.8%에서 1943년에는 78.8% 대 21.2%로 변화하여 조세의 중앙집중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었다.

특히 이 기간중 주요 국세의 신장률을 보면 임시이득세(1935년 도입)가 무려 70배 이상의 규모로 급신장을 하였다. 즉 1937년부터 매년 1.8배 이상의 규모로 늘어났던 것이다. 이와 함께 소득세 수입도 6.9배 규모로 늘어났으며 그 증가율은 연율 31% 이상에 달하였다. 그 밖에 1943년에 주세와 물품세(1938년 도입), 유흥음식세(1939년 신설)를 합한 주요 간접세의 비중은 국세수입의 41.4%를 점하였으며 주세는 연율 18.6%, 물품세는 연율 59.2%, 유흥음식세는 연율 2.1배씩 늘어났던 것이다.

이 기간중 조세수입의 증징은 연평균 26% 이상에 달하였고, 그 중 국세의 증징률은 연평균 31.2%, 지방세는 15.0%에 달하였으며 동기간중의 추정 국민소득(경상가격)의 연평균 증가율 8.5%를 훨씬 상회하였다.

일본은 만주사변(1931년) 이후 급증하는 군사비를 충당할 재원조달에 부심하여 왔으나 1937년에 이르러 군사비가 49%를 점하고, 1932년도에 비하여 2배 이상 팽창한 예산을 편성하게 되자 응급적 조세증징수단으로서 임시조세증징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조선에서도 임시조세증징령이 1937년 4월부터 시행되었다. 이 임시조세증징령은 제1종 소득세와 자본이자세, 임시이득세를 증징하고 당시 소득세가 비과세되고 있었던 국채이자에 대해서도 과세하도록 하였다. 이

〈表 Ⅴ－6〉 侵略戰爭期의 租稅增徵(1937～1943)

(單位：천円, %, 배)

	1937	1943	증가배수[1]
1. 조세수입	143,608	642,364	5.1
(1인당, 円)	(6.42)	(24.09)	4.2
국 세	86,413	506,412	6.7
(1인당, 円)	(3.87)	(19.00)	5.6
지방세[2]	57,195	135,952	2.7
(1인당, 円)	(2.56)	(5.10)	2.2
2. 국세 대 지방세(%)	60.2 대 39.8	78.8 대 21.2	
3. 주요국세의 신장[3]			
지 세	13,827(16.0)	23,838 (4.7)	1.9
소득세	16,590(19.2)	84,024(16.6)	6.9
임시이득세	2,840 (3.3)	76,101(15.0)	70.0
주 세	24,067(27.9)	72,246(14.3)	3.3
물품세	—	60,619(12.0)	—
유흥음식세	—	76,356(15.1)	—
4. 경제규모[4]			
국민소득	2,785,874	4,000,000	1.8

註：1) 1936～1943년 2) 1943년은 예산치 3) ( ) 내는 구성비
4) 1937년은 요소비용에 의한 국내순생산, 1943년은 국민소득 추정치

資料：재무부, 『한국세제사(上)』, 서울, 1979. 12.
溝口敏行·梅村又次(編), 『舊日本植民地經濟統計』, 東京：東洋經濟新報社, 1988.
大藏省 昭和財政史編集室(編), 『昭和財政史, 第3卷, 歲計』, 東京：東洋經濟新報社, 1955. 9.

와 함께 일본의 세제개혁에 상응하여 1937년 3월에는 법인자본세, 외화채특별세, 휘발유세를 신설하였다.

이에 1937년 7월 중·일전쟁을 일으키게 되자 전비조달을 위해 북지사건특별세를 도입(1937년 8월)하여 시행기한 1년한인 임시세로서 소득세의 증징을 목적으로 하는 소득특별세, 임시이득세의 증징을 위한 임시이득특별세, 주식 등 이익배당 중 비교적 고율인 것에 과세하는 이익배당특별세, 公·社債利子 중 비교적 고율인 것에 과세하는

공·사채이자특별세, 보석류 악기, 사진기 등에 과세하는 물품특별세를 신설하였다.

또한 중·일전쟁이 확대되자 일본은 동년 9월에 임시군사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1938년 3월에는 지나사변특별세법을 제정하여 북지사건특별세는 폐지하였다. 전비는 일본전역에서 조달하여야 한다는 방침에 따라 조선에서도 이 특별세가 시행되었으며 소득세, 법인자본세, 사탕소비세 및 취인소(거래소)세를 증징하는 한편 이익배당세 公債 및 社債利子稅, 통행세, 입장세, 특별입장세, 그리고 물품세를 신설하였다. 이 자나사변특별세는 1939년 3월에 다시 보완되어 소득세를 위시하여 이익배당세, 공채 및 사채이자세, 사탕소비세, 청량음료세, 물품세, 인지세의 증징이 이루어지는 한편 건축세와 유흥음식세가 신설되었다.

〈表 Ⅴ－7〉 侵略戰爭期의 國稅增徵(1937～1945)

(單位 : 천円, %)

	금 액	전년대비 증가율	비 고
1937	86,413	14.6	임시조세증징(1934. 4. 1) 북지사건특별세(1937. 8)
1938	114,491	32.4	지나사변특별세(1938. 4. 1)
1939	150,230	31.2	지나사변특별세개정(1939. 4. 1)
1940	205,005	36.5	제3차 세제정리(1940. 3. 31)
1941	242,386	18.2	간접세 중심 증징
1942	338,331	39.6	직접세 중심 증징
1943	506,413	49.7	간접세 재증징
1944 예산	511,621	(38.8)[1]	조세전반의 증징
1945 예산	683,081	33.5	소득세 등 8개 세목증징

註 : 1) 전년 예산대비 증가율.
資料 : 〈表 Ⅴ－6〉과 같음.

특히 북지사건특별세는 군사비의 재원조달을 위해 신설되었기 때문에 그 세수는 일본의 임시군사비특별회계에 전입하게 되어 있었고, 이 특별세에 대체된 지나사변특별세의 세수와 조선총독부특별회계의 매년도 세계상의 잉여금(약 3분의 2)도 일본의 임시군사비 특별회계에 전입되었다.

한편 중·일전쟁을 일으킨 이후 일본의 국가예산은 군사비를 중심으로 급격히 팽창되었으나 국채소화의 정체와 인플레이션의 심화로 戰局의 진전에 대응하여 조세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탄력성 있는 세제의 수립과 임시조세중징법이나 특별세법의 도입으로 복잡하게 된 세제를 통합·정리하여야 할 필요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일본은 1940년에 소득세를 분류소득세와 종합소득세로 개편하는 등 국세 및 지방세 전반에 걸친 세제의 발본적 개혁을 실시하였다.

이에 상응하여 조선에서도 제3차 세제정리가 실시되었으나 일본과 달리 분류소득세와 종합소득세제도는 신설하지 않고 소득세를 위시한 21개 세목의 세율을 인상하여 세수의 증징을 도모하였다. 그후에도 매년 조세의 증징을 거듭하다가 1944년에 다시 전면적 증세를 단행하였고 패망하기 5개월 전인 1945년 3월에도 소득세를 위시한 8개 세목의 증세가 이루어졌다.

〈表 Ⅴ-8〉 所得稅·臨時利得稅 稅率引上(1938~1945)

(單位 : %)

		1938~1940	1944~1945
소득세 (1940~1945)	제1종(보통소득)	15~20	29~43
	제2종(갑)	1~4	8~12
	제3종	0.4~57(22단계)	1.5~54(16단계)
임시이득세 (1938~1944)	법 인	17.25~30	60~80
	개 인	13	33

資料 : 재무부, 『韓國稅制史(上)』, 서울, 1979. 12.
『朝鮮總督府官報』, 1945. 3. 15.

〈表 Ⅴ－9〉 主要 消費稅 稅率引上(1937～1945)

		1937～1940	1944～1945
주 세 (1940～1945) [1석당 円]	조선탁주	5	60
	조선약주	18	260
	맥 주	41.3	415
	청 주	56	515～960
물 품 세 (1937～1944) [개, %]	과세물건수	10	75
	세 율	20	20～120
유흥음식세 (1939～1944) [%]	유흥음식	10	30～80
	화 대	14	300

資料 : 〈表 Ⅴ－8〉과 같음.

조세증징을 위한 주요세목의 세율 인상폭을 보면 〈表 Ⅴ－8〉, 〈表 Ⅴ－9〉와 같다.

일반소득세를 신설한 1934년 당시의 세율은 제1종소득세의 보통소득에 대한 세율이 5～8%, 제2종소득세는 3～5%, 제3종소득세는 0.3～27%(22단계 초과누진세율)를 적용하였으나 1945년까지의 인상률이 매우 높았던 것을 알 수 있다. 또 1935년 도입된 임시이득세는 당초 법인의 이득에 대해 10%의 비례세율이 적용되다가 1938년 개정에서는 개인이득에까지 과세범위가 확대되었으나 1945년에 이르기까지 그 세율이 약 2.5～3.5배로 인상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은 침략전쟁 기간중 전비조달을 위해 소비과세의 범위를 확대하고 그 세율을 계속 인상하는 증징책을 활용하였으며 〈表 Ⅴ－9〉는 그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침략전쟁 기간중 세원의 중앙집중이 정책적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지방세의 신장률은 상대적으로 떨어졌으나 지방세가 국세 및 도세부가

〈表 V－10〉 地方稅의 增收(1937～1943)

(單位：천円, %)

	합 계	도 세 (지방세)	부 세	읍면세	학교비 부과금	학교조합 부과금
1937	57,195	24,987	8,249	17,466	5,571	922
1943[1]	135,952	39,464	32,641	38,820	23,207	1,820
증가배수 1936～43	2.7	1.7	4.6	2.4	6.0	2.2
연평균 증가율 1936～43	15.0	7.8	24.5	.4	29.3	12.0

註：1) 예산치.
資料：재무부, 『韓國稅制史(上)』, 서울, 1979. 12.

세와 세원이 영세한 독립세로 구성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지방세의 세수가 추정된 경제규모의 성장률보다 2배를 넘는 비율로 늘어났다는 것은 특기할 만하다.

지방단체별로 보면 府稅와 학교비부과금의 신장률이 가장 높았는데 부세의 경우 신세의 도입과 기존 부가세의 세율인상 그리고 부가세 본세의 세율인상 등이 그 원인이 되었고 학교비부과금도 호별세부가금의 세율인상에 기인하였다.

이 기간중 도세로서 특별지세(1940년 신설), 면세지특별지세(1941년)가 신설됨에 따라 부·읍면세로서 동 부가세가 도입되었다. 또 국세부가세인 지세부가세와 사업세(1943년까지 영업세)부가세의 세율이 인상되고, 도의 독립세인 임야세, 면세지특별지세, 부동산취득세 등의 세율이 인상되었다. 이에 따라 부·읍면의 국세부가세나 도세부가세의 세율도 인상되었던 것이다.

한편 1936년 제2차 세제정리에서 호별세부과금으로 단일화된 학교비부과금은 당초 평균 1호당 1.1円이었으나 1939년에는 1.9円으로 인상되었다. 또 1940년 제3차 세제정리에서는 학교비부과금을 資力

표준에 따라 부과하도록 개정하고 부과표준액 1,200円을 부과지수 1개로 하여 1개당 12円으로 정하였으나 다음해인 1941년에는 이를 지수 1개당 15.5円으로 인상하였다. 이같이 학교비부과금의 세율인상이 학교비부담금을 크게 늘리게 되었던 것이다.

3. 租稅負擔의 急增과 그 配分

가. 租稅負擔의 增加趨勢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화한 후 증세 일변도의 조세정책을 추구함에 따라 조선에 있어서의 조세부담액은 급격히 증가되었다. 조선의 인구 1인당 조세부담액은 식민지 통치기반의 확립기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무단통치기(1910~1919)에 3.6배로 늘어나고 그 중 국세는 3.3배, 지방세는 5.1배로 늘어났다.

〈表 Ⅴ-11〉 **朝鮮의 人口 1人當 租稅負擔 推移**(1910~1943)

(單位 : 円, 배)

	국 세		지 방 세		조세합계	
	금 액	배 수	금 액	배 수	금 액	배 수
1910	0.68	1.0	0.13	1.0	0.81	1.0
1919	2.25	3.3	0.67	5.1	2.92	3.6
1920	2.02	3.0	1.53	11.6	3.55	4.4
1936	3.42	5.0	2.32	17.6	5.74	7.1
1937	3.87	5.7	2.56	19.4	6.41	7.9
1943[1]	19.00	27.9	5.10	38.6	24.09	29.7

註 : 1) 지방세는 예산액.
資料 : 〈表 Ⅴ-1〉, 〈表 Ⅴ-3〉, 〈表 Ⅴ-6〉에서 작성.

더욱이 3·1운동 후 식민지조선의 통치방침이 유화·회유정책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었던 1920년에는 제1차 세계대전 후 반동공황 때문에 국세수입의 신장률이 둔화되는 속에서도 지방세는 지방자치의 준비라는 구실을 앞세운 지방제도 개혁의 대가로 일년 사이에 2.3배의 규모로 격증하였다.

식민지통치 기반을 확충하였던 1920~1936년 기간중에는 제1차세계대전 후의 공황과 1930년을 전후하는 세계적인 대공황의 영향을 받아 조선에서도 조세수입의 증가율이 저조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었으며 지방세 수입도 1920~1936년 기간중에는 인구 1인당 기준으로 1.5배로 늘어나는 데 그쳤다.

그러나 일본이 침략전쟁을 일으킨 1937년부터 1945년 8월에 연합군에 完敗하여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함으로써 종결되었던 침략전쟁기에는 1937~1943년 기간 동안에도 인구 1인당 국세부담은 5.6배, 지방세는 2.2배의 규모로 늘어나 조세수입 전체는 4.2배가 늘어났다.

일본에 의한 식민지통치 기간중 이같이 엄청나게 늘어난 조세부담은 결국 강요된 희생이었으며 1920~1943년 기간중 일본의 1인당 국세 및 지방세 부담액이 22円에서 126円으로 5.6배가 늘어난 데 비하여 조선에서는 동 기간중 국세 및 지방세의 1인당 부담액이 3.5円에서

〈表 V-12〉 朝鮮과 日本의 1人當 租稅負擔額 比較(1920~1943)

(單位 : 円, 배)

	조 선			일 본		
	국 세	지방세	합 계	국 세	지방세	합 계
1920	2.0	1.5	3.5	12.4	10	22.4
1943	19.0	5.1	24.1	113.0	13.0	126.0
증가배수	9.5	3.4	6.9	9.1	1.3	5.6

資料 : 大藏省 昭和財政編集室(編), 『昭和財政史, 第5卷 租稅』, 東京 : 東洋經濟新報社, 1957. 3.

〈表 Ⅴ－13〉 朝鮮의 人口 1人當 租稅負擔의 增加倍數(1910～1943)

(單位：배)

	1910～1919	1919～1936	1936～1943	전기간
조세합계	3.6	2.0	4.2	29.6
(국 세)	3.3	1.5	5.6	27.9
(지방세)	5.1	3.6	2.2	38.6
서울도매물가지수	2.9	－0.4	1.9	3.6
서울노임지수	2.1	－0.2	2.0	3.2
국내순생산[1](1인당)	2.7	1.1	1.5	8.2

註：1) 1911～1938년 추정치(경상가격), 1943년은 국가자금계획상의 수치.

資料：조선은행조사부, 『조선경제연보』, 서울, 1948. 6.
溝口敏行·梅村又次(編), 『舊日本植民地經濟統計』, 東京：東洋經濟新報社, 1988.

24.1円으로 약 6.9배로 늘어났던 것은 조세를 통한 식민지 수탈의 일면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1910년 이후 1943년까지의 기간중 격증한 1인당 조세부담액과 물가지수 및 노임지수의 변동, 추정 1인당 국내순생산액(요소비용에 의한 국내순생산)의 추이를 비교하여 보면 〈表 Ⅴ－13〉과 같다. 이에 따라 첫째로 조선의 인구 1인당 조세부담액이 실질적으로도 크게 늘어났고 둘째로 조세부담의 증가율이 경제규모의 명목성장률보다 크게 높았던 것을 알 수 있다. 즉 1911～1943년 기간중 1인당 국내순생산액은 8.2배로 늘어났으나 1인당 조세부담액은 근 30배가 늘어 조세부담률이 3.6배 이상으로 높아졌다.

특히 일본이 침략전쟁을 동남아·태평양지역에까지 확대한 1941년부터 전비조달을 위한 조세의 증징에 박차를 가하게 되자 조세의 예산액 대 징수실적간에는 큰 차이가 생겨나게 되었다. 1941년도에는 조세징수액이 예산액의 27.4%를 상회하였고, 1942년에는 증징률이 22

%에 달하였다가 1943년도에는 37.3%를 상회하였다[1].

나. 租稅負擔의 配分

일본의 식민지 통치하에서 이루어진 조세의 증징은 1910~1936년 기간중에는 지방세에 의해 주도되었으나 주요 세목별로 보면 국세에 있어서는 소득세와 임시이득세 그리고 주세와 물품세, 유흥음식세가 세수를 늘리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1934년에 도입된 일반소득세는 1934~1943년 기간중 연율 36.5%씩 늘어났다.

또 1935년에 신설된 임시이득세는 1935~1943년 기간중 연율 90.5%라는 엄청난 비율로 늘어났다. 한편 주세는 1920년대초부터 국세수입의 20%를 전후하는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1936~1943년 기간중에는 연율 18.7%의 비율로 늘어났다.

이와 함께 북지사건특별세의 일환으로 신설된 물품세는 1938~1943년 기간중 연율 62.1%의 비율로 늘어나고, 지나사변특별세령에 따라 조세증징을 위해 1939년에 도입된 유흥음식세는 1939~1943년 기간중 연율 112.1%의 비율로 세수를 증가시켰다.

〈表 V-14〉 **租稅增徵의 대한 寄與度**(1910~1943)

(單位 : %)

	국 세	지 방 세
1910~1920	42.2	57.8
1920~1936	32.0	68.0
1936~1943	67.1	22.9
1910~1943	77.4	22.6

資料 : 재무부, 『韓國稅制史(上)』, 서울, 1979. 12.

1) 大藏省 昭和財政史編集室(編), 『昭和財政史 第3卷 歲計』, 東京 : 東洋經濟新報社, 1955, p. 550.

〈表 Ⅴ－15〉 直接稅와 間接稅의 比重(1910～1943)

(單位：%)

	1910	1920	1936	1940	1943[1]
직접세	72.1	39.2	42.4	58.0	50.6
(지세)	66.2	32.8	17.7	6.8	5.9
(소득세)	—	4.6	16.2	24.6	21.4
(임시이득세)	—	—	1.4	17.9	15.9
간접세	27.9	60.8	57.6	42.0	49.4
(주세)	1.8	10.8	28.9	12.0	12.9
(연초세)	2.8	17.8	—	—	—
(물품세)	—	—	—	8.5	14.6
(유흥음식세)	—	—	—	5.8	13.8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註：1) 예산치.

資料：재무부, 『韓國稅制史(상)』, 서울, 1979. 12.

〈表 Ⅴ－16〉 主要 地方稅의 比重(1910～1943)

(單位：%)

	1910	1920	1936	1940	1943[1]
지세 계통	35.4	13.3	32.0	28.4	18.3
호별세 계통	—	14.9	25.8	21.5	27.4
가옥세 계통	—	2.3	6.3	6.3	5.2
영업세 계통	—	3.2	4.6	7.9	8.4
호별세부가금[1]	—	15.9	7.5	13.9	17.4
학교조합세입	6.1	6.8	1.6	1.6	1.3
합 계	41.5	40.5	77.8	79.6	78.0

註：1) 특별부과금 포함.

資料：재무부, 『韓國稅制史(上)』, 서울, 1979. 12.

朝鮮總督府司政局, 『朝鮮地方財政要覽』, 京城, 1941. 12.

한편 지방세의 증수는 1910~1920년 기간에는 지세부가세의 증수(5.6배) 도장(도축)세의 증수(2.3배), 시장세의 증수(3.5배)와 함께 府制 및 面制의 실시의 따라 영업세 계통의 조세와 잡종세, 조흥세 등 새로운 세목이 신설되고 그 밖에 학교비부과금으로서 지세·시가지세·가옥세·호세부가금이 신설된 데 연유하고 있다.

또한 1920~1936년 기간에 있어서도 지방세의 증징은 조세수입을 증가시키는 데 국세보다 더 크게 기여하였으나 이는 이 기간중 지세부가세·호별세·가옥세·영업세 계통의 지방세가 3배에서 5배 이상으로 늘어난 데 기인하고 있다.

이어 1936~1943년 기간중에는 호별세 계통의 지방세가 2.8배, 학교비부과금인 호별세부가금이 약 6.2배, 영업세 계통의 지방세가 약 4.9배, 가옥세 계통의 지방세가 약 2.2배로 늘어나 지방세의 증징을 주도하였다.

이상과 같이 침략전쟁기에 조세의 증징은 국세에 있어서는 소득세와 임시이득세, 주세, 물품세, 유흥음식세, 지방세에 있어서는 호별세 계통의 諸稅에 크게 의존하였으나, 그 세부담이 납세자에게 공평하게 배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거듭된 주세의 세율인상이나 성냥, 조미료, 의류, 신발, 기타 신변잡화 등 생활필수품에서 일용품에까지 과세대상이 확대되었던 물품세 그리고 大衆課稅가 될 수밖에 없었던 유흥음식세를 논외로 하더라도 당시의 소득세나 임시이득세가 세제의 누진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이는 군수산업이나 수출품 제조업 등 일부 산업부문의 이득에 대하여 임시이득세까지 부과하게 되었던 경제조건하에서 급격한 부담변화를 회피한다는 구실 아래 제3종 소득세의 세율을 낮게 정한 것이나 면세점 그리고 인적공제 수준을 일본보다 낮게 정하였던 것 그리고 1942년 소득세 개정에서 제3종 소득세의 면세점을 종래의 800円에서 500円으로 인하하였던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대다수의 절대적 소득이 일반적으로 저수준에 놓여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당시 경제여건하에서 면세점을 인하한 것이나 목수나 미장이 등 건축에 종사하는 기능공이나 자동차기사, 속기사 등이 받는 보수나 요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채택한 것 등은 전시의 재원확장으로서 소득세의 대중과세화를 촉진시켰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1936년 이후 제1종 소득세나 임시이득세 등 기업과세의 비중이 크게 높아졌으나 그러한 조세의 전액이 기업이윤에 귀착되었다고 생각할 수는 없으며 그 일부가 가격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전가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전시의 물가통제 아래서도 증세의 대상이 되는 간접세의 과세물건에 대해서는 증징세액에 상당하는 가격인상을 용인하였던 데에서 알 수 있다[2].

한편 지방세는 1920년대부터 호별세 계통의 제세의 의해 증징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나 이에 속하는 戶稅, 도의 호별세, 부읍면의 호별세부가세, 학교비부과금인 戶別稅附加金은 1927년 이전에는 戶數를 표준으로 配當課稅되다가 1927년부터 資力을 표준으로 하는 人稅的 성격을 갖게 되었다. 더욱이 1940년부터는 現住戶數나 단체의 예산총액 등 외형표준에 의한 세율제한이나 府·邑面에 대한 배당과세를 폐지하고 납세의무자의 자력산정기준인 소득을 표시하는 지수의 단위 및 세액에 의해 세율을 제한하는 한편 자력에 따라 누진적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납세의무자의 자력은 소득종류·자산·생계의 정도를 감안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으나 영업소득이나 직업소득에 대하여는 필요경비의 공제도 용인하였고 일정 소득금액 이하에 대하여는 근로소득공제나 인적공제도 용인하여 생계의 정도를 고려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자산의

---

2) 일본은 1941년도 酒稅 등 간접세 증징과 1943년도 간접세 증징에 있어서 증세의 대상이 되는 과세물건에 대하여 증세액에 상당하는 가격의 인상을 용인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조선에서도 취하여졌을 것으로 보아야 한다.
大藏省 昭和財政史編集室(編), 『昭和財政史 第5卷 租稅』, 東京 : 東洋經濟新報社, 1957, p. 598, p. 660.

정도를 감안하기 위하여 자산평가가액의 일정률이나 각종 공제액을 차감한 순소득의 일정비율 이내에서 자산의 정도에 따라 소득금액을 조정하도록 하였다.

호별세는 부과표준액 1,200円을 지수 1개로 하여 지수로 표시한 141단계에 달하는 복잡한 누진세율로 과세되었으나 소득금액이 100円 미만에 대해서도 과세하여 저소득층의 세부담을 높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국세의 부담구조와 함께 대중과세의 성격을 갖고 있었던 지방세의 부담은 총체적 세부담구조를 역진적인 방향으로 규정하게 되었다고 보아도 그릇됨이 없을 것 같다.

다. 朝鮮과 日本의 租稅負擔水準 比較

일본은 1941년 7월에 각의에서 결정된 「재정금융기본방책요강」에 따라 국가자금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으며 이는 「국민경제의 총생산액 기타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國家資力을 개략적으로 정하여 이를 국가목적에 따라 재정, 산업 및 국민소비의 3자에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

〈表 V－17〉 租稅 등 財政資金 調達計劃(1942～1945)

(單位 : 억円, %)

	조 선			일 본		
	국민소득	조세 등	비 율	국민소득	조세 등	비 율
1942	35	6.0	17.14	450	80	17.78
1943	40	7.1	17.75	500	100	20.00
1944	35	10.2	18.55	600	140	23.33
1945	70	12.1	17.29	900	185	20.56

資料 : 조선은행 조사부, 『조선경제연보』, 1948년판, 서울, 1948.
大藏省 昭和財政史編集室(編), 『昭和財政史 第3卷 歲計』, 東京 : 東洋經濟新報社, 1955. 9.

한 조치였다[3]. 이 계획에 제시된 수치에 따라 조선과 일본의 조세부담률을 계산하여 보면 〈表 Ⅴ－17〉과 같이 1942년의 부담률은 거의 같고 1943년부터는 2.25%에서 4.78% 포인트에 이르는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한편 조선과 일본의 1인당 조세부담액과 1인당 국민소득을 비교하여 보면 1941～1943년 기간중 조선과 일본간의 소득격차가 확대되는 가운데 조선의 1인당 세부담액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던 것을 알 수 있다. 즉 일본의 1인당 국민소득에 대한 조선의 1인당 국민소득의 비율은 1941년의 24.4%에서 1943년에는 18.7%로 그 격차가 조선에 불리하게 확대되고 있으나 1인당 조세부담액의 비율은 동 기간중 17.4%에서 19.1%로 높아지고 있다.

〈表 Ⅴ－18〉 朝鮮과 日本의 1人當 租稅負擔額과 國民所得 比較
(1941～1944)

(單位：円, %)

	1인당 조세부담액[1]			1인당 국민소득[2]		
	조 선	일 본	조선/일본	조 선	일 본	조선/일본
1941	13.4	71.1	17.4	121.4	498.2	24.4
1942	17.1	103.0	16.6	132.8	624.4	21.3
1943	24.1	126.0	19.1	150.0	800.4	18.7
1944[3]	(19.8)	(156.5)	(12.7)	212.3	1,107.2	19.2

註：1) 인지수입과 전매익금 제외, 조선은 지방세수입이 예산액
2) 조선의 국민소득은 국가자금계획상의 수치. 일본의 국민소득은 추계치.
3) 조선은 국세예산액, 일본은 국세결산액.

資料：〈表 Ⅴ－17〉과 같음.

3) 大藏省 昭和財政史編集室(編), 『昭和財政史 第3卷 歲計』, 東京：東洋經濟新報社, 1955, p. 456.

물론 국민소득의 추계가 일본은 과대하게 그리고 조선은 과소하게 평가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조선의 조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는 것은 위에서 언급하였던 것과 같이 1941년부터 조선총독부특별회계의 조세예산액에 대한 조세결산액의 비율이 30%를 전후하는 세입초과를 나타내고 있는 데에서도 뒷받침되고 있다.

끝으로 1941~1943년을 대상으로 하여 조선과 일본의 조세부담률을 비교하여 보면 조선의 조세부담률은 1941년 11%에서 1943년에는 16.1%로 5% 포인트 이상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이에 비하여 일본의 경우 14.3%에서 15.7%로 1.4% 포인트가 상승하고 있을 뿐이다.

더욱이 당시 일본이 공포한 국민소득의 추계치에 따라 계산한 조세부담률은 1943년의 경우 조선보다 0.4% 포인트가 낮은 수준이며 이는 국민소득 추계치의 오차문제를 논의로 하더라도 조선에 있어서의 가렴주구가 극에 달하였던 일면을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表 V－19〉 朝鮮과 日本의 租稅負擔率 比較(1941~1945)

(單位 : 백만円, %)

	조 선			일 본		
	조 세[1]	국민소득[2]	부담률	조 세	국민소득[3]	부담률
1941	331	3,000	11.0	5,269	36,900	14.3
1942	451	3,500	12.9	7,740	46,935	16.5
1943	642	4,000	16.1	9,632	61,192	15.7
1944[4]	(512)	5,500	(9.4)	(11,665)	80,910	(14.4)
1945[4]	(683)	7,000	(9.8)	(10,499)	90,000	(11.7)

註 : 1) 지방세는 예산액
2) 국가자금계획상의 추정치 3) 추계액, 다만 1945년은 계획치.
4) ( ) 내는 국세예산액, 단 일본은 결산액.

資料 : 〈表 V－17〉과 같음.

당시의 조선의 인구 1인당 소득수준이 일본의 20% 정도였다고 볼 때 「재정자금조달계획」에서 제시되고 있는 부담률 수준이나 세수실적을 토대로 한 부담률 수준은 총독부가 항상 내세웠던 조선의 특수사정, 즉 民情, 習慣, 經濟力이 일본과 다르다는 점과 이율배반적인 조세정책의 결과를 시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Ⅵ. 評　　價

일본의 식민지통치하에서 조선의 조세제도는 외형상 근대화의 길을 밟았으나 일본의 조세정책은 식민지 경영을 위한 재원조달과 침략전쟁을 위한 전비조달을 위해 시종 조세증징책을 고수하였으므로 조세제도의 근대화도 왜곡될 수밖에 없었다.

일본은 자국에서 그러하였듯이 조선에서도 조세의 증징을 위해 다양한 다수의 세목으로 세제를 구성하였기 때문에 세제가 복잡해졌을 뿐만 아니라 과세의 공평이나 효율성을 저해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전시재정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1940년부터 직접세 중심의 세제와 중앙집권적 재정제도가 확립되었다. 이를 좀더 부연하면 다음과 같다.

1. 多種多樣한 稅目으로 構成된 複雜한 租稅體系

일본의 식민지통치 기간중 국세나 지방세를 막론하고 조세증징을 위한 새로운 세목의 도입으로 조세체계는 매우 복잡하게 되었다.

가. 國稅體系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화할 당시 국세체계는 人頭稅的 성격을 갖는 戶稅 및 가옥세와 지세, 광세와 같은 수익세, 주세·연초세·관세 등 소비세 그리고 수익세의 성격을 갖는 잡종세(어업세, 선세, 염세, 인삼세) 등 10개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일본의 식민지통치 기간중 1927~1928년, 1934년, 1940년에 실시한 세 차례의 세제정리와 1940년 이후 침략전쟁 확대기에

다종다양한 많은 세목이 신설되어 일본의 패전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당시에는 국세체계가 무려 35개 세목으로 구성되는 커다란 변모를 나타냈다.

종전 당시의 국세체계는 소득세 계통이 2개 세목(제1, 제2, 제3종 소득으로 나누어 과세하던 소득세와 특별법인세), 수익세 계통이 5개 세목(지세, 사업세, 광구세, 자본이자세, 취인소특별세), 재산세 계통이 2개 세목(상속세, 법인자본세), 특별소득세 계통이 4개 세목(임시이득세, 외화채특별세, 이익배당세, 공·사채이자세), 소비세 계통이 16개 세목(주세, 청량음료세, 사탕소비세, 전기가스세, 직물세, 골패세, 유흥음식세, 물품세, 입장세, 특별입장세, 특별행위세, 마권세, 광고세, 통행세, 관세, 출항세), 유통세 계통이 6개 세목(취인세, 인지세, 등록세, 조선은행권발행세, 건축세, 톤세)으로 구성되었다.

일본은 1940년 세제개혁에서 소득세를 분류소득세와 종합소득세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한편 종전의 제1종 소득세(법인소득에 대한 과세)와 법인자본세를 통합하여 법인세를 신설하고 종전의 이익배당세와 공채 및 사채이자세를 통합하여 배당이자특별세를 창설하는 등 중요한 개정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분류소득세 및 종합소득세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1].

첫째로 조선에서는 1934년에 제3종 소득세(법인소득과 공·사채이자소득 이외의 개인소득에 대한 과세)가 도입되었기 때문에 官民이 다같이 고도의 직접세 과징에 익숙하지 못하다.

둘째로 분류소득세를 창설하기 위해서는 수익세가 일반적으로 순수한 수익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원칙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나 조선에 있어서는 수익세의 중심이 되는 지세나 영업세가 모두 일종의 외형표준에 따라 과세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순익과세로 개선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

1) 水田直昌(監修), 『總督府時代の財政』, 東京 : 友邦協會, 1974, p. 132.

셋째로 일본은 제3종 소득세가 이미 상당히 높은 세율로 과세되고 있기 때문에 세율의 개정으로 그 이상의 증수를 기대하기가 어려웠으나 조선에 있어서는 그 점이 일본과 다르다.

그러나 1940년에 일본과 달리 소득세를 개정하지 않았던 참된 이유는 「부담의 균형 및 보편화를 도모하고 세제에 탄력성을 부여하는 한편 세제의 간소화를 도모한다」는 세제개혁이 조세수입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잡다한 수익세와 특별소득세를 그대로 존속시킴으로써 과세의 공평과 효율이 저해되더라도 세수증대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나. 地方稅體系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화하였던 당시 지방세체계는 매우 단순하였다. 광역단체인 道는 지세부가세, 시장세, 도장 및 도축세 그리고 漢城府에 한하여 과세하였던 권리취득세(토지가옥 소유권취득세와 저당권취득세)에 의해 소요재원을 조달하였다. 또 面은 戶別割과 地稅割을 賦課金으로 삼았고, 학교비부과금으로서는 戶別割이 있었다. 그 밖에 일본인 거주지역에서는 호별세, 영업세, 토지세, 건물세, 가옥세, 양조세, 잡종세 등이 있었다.

일본은 식민지 통치기간중 식민지재정을 강화하기 위해 府制의 실시(1914. 4), 面制의 실시(1917. 6) 그리고 1927년과 1936년, 1940년의 세 차례에 걸친 지방세제 정리로 지방세체계는 다종다양한 세목으로 구성되는 복잡한 세체계로 변모하였다.

일본의 식민지통치가 종료된 1945년 8월 15일 현재 조선의 지방세체계는 도세 15개 세목, 부세 16개 세목, 읍면세 13개 세목, 학교비부과금 2개 세목, 도합 46개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도세에는 국세인 지세, 사업세, 취인소(거래소)세, 鑛區稅에 대한 附加稅와 함께 11개 독립세(임야세, 호별세, 가옥세, 어업세, 도장·

도축세, 차량세, 부동산취득세, 특별지세, 면세지특별지세, 특별사업세, 입정세)가 있었다.

부세에는 국세인 지세, 사업세, 취인소(거래소)세, 광구세에 대한 부가세(4개 세목)와 도세인 호별세, 가옥세, 차량세, 부동산취득세, 특별지세, 면세지특별지세, 특별사업세에 대한 부가세(7개 세목), 그리고 독립세로서 잡종세, 특별영업수익세, 교통세(京城·釜山), 시가지계획특별세(京城), 府民稅 등 5개 세목이 있었다.

읍면세로서는 국세인 지세, 사업세, 광구세에 대한 부가세(3개 세목)와 도세인 호별세, 가옥세, 차량세, 부동산취득세, 특별사업세, 특별지세, 면세지특별지세에 대한 부가세(7개 세목) 그리고 독립세로서 잡종세와 특별영업수익세, 읍면민세 등(3개 세목)이 있었다.

끝으로 학교비부과금에는 도세인 호별세에 대한 附加金과 독립세격인 특별부과금(이상 2개 세목)이 있었다.

이같이 지방세체계가 복잡다기한 것은 바로 일본의 지방세제를 모방한 데에서 비롯되었다. 해방 전 일본의 지방세제는 국세부가세, 광역단체인 府縣의 독립세에 대한 부가세, 독립세 그리고 목적세로 구성되었으며 부현세가 목적세 포함 14개 세목, 기초단체인 市町村稅가 역시 목적세를 포함하여 22개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더욱이 이 지방세체계는 1940년의 세제개혁을 통하여 조세재원의 총동원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전시체제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으며 팽창하는 전시재정수요를 충족할 목적으로 人稅는 국세로, 物稅는 지방세로 집중시켰던 전시세제의 산물이었다. 이에 따라 지방세체계는 탄력성이 빈약한 세목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었고 지방분여세제도로 인해 지방의 중앙의존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

2. 課稅의 公平과 租稅構造

일본이 세제를 전시세제로 개편한 1937년 이후 국세의 증징은 소득

세를 위시하여 특별법인세, 자본이자세, 법인자본세, 임시이득세와 같은 收得稅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1940년부터 국세에서 점하는 직접세의 비중을 50% 이상으로 높였으나 그러한 것이 반드시 과세의 공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1936~1943년 기간중 임시이득세는 연평균 83.5%라는 놀라운 비율로 증가하여 동 기간중 국세증가액에 대해 17.4%라는 높은 기여율을 나타냈다. 이러한 임시이득세의 기여율은 동 기간중 연평균 31.7%씩 늘어나 국세증가액에 대해 16.7%의 기여율을 기록하였던 소득세의 증징을 웃돌았다. 그러나 임시이득세의 증징은 법인이나 개인의 임시이득을 조세증징을 위해 인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전쟁경기에 따른 초과이윤이 없더라도 부당하게 임시이득세를 부담하게 되었을 공산이 매우 컸다.

또 당시의 소득세는 법인의 소득에 과세하는 제1종 소득세와 공·사채이자, 은행예금이자, 합동운용신탁이익과 비거주자가 조선 내 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자·배당 또는 이익처분으로 받는 상여 등에 대하여 원천과세하는 제2종 소득세, 그리고 제2종에 속하지 않는 개인소득으로서 종합과세되는 제3종 소득세로 구성되어 있었다. 일본은 1940년 세제개혁에서 법인소득에 대한 과세를 분리하여 법인세를 신설하는 한편 종래의 소득세를 분류소득세와 종합소득세로 개편하였으나 조선에서는 특수사정을 앞세워 기존 제도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당시의 소득세는 과세목적을 위해 기업과 개인을 구분하지 않고 있었던 문제점 외에도 개인소득에 대한 과세에 있어서 소득의 종류에 따라 부담의 불균형이 생겨났던 문제가 있었다. 즉 자산소득이나 영업소득을 근로소득과 동등하게 과세하였기 때문에 수평적인 공평을 달성할 수는 있었으나 수직적인 공평을 이룩하는 데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더욱이 1942년 소득세령 개정은 개인소득세의 면세점을 종전의 800円에서 500円으로 인하하여 과세대상을 대폭 확대시켰다. 1941년

에 개인소득세 납세자수는 36만 2,414명이었으나 1942년에는 53만 4,119명으로 47.4%가 증가하였다. 1942년에는 기초공제(부양가족공제 200円, 기타 100円)를 신설하여 모든 납세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부양가족 공제대상에 妻를 추가하였으며, 종전에 개인소득 총액이 1,500円 이하일 때 1인당 60円, 개인소득 총액이 1,500円 초과 3천円 이하일 때 30円으로 정하였던 공제액을 대상소득의 제한 없이 모든 소득자에게 적용하되 공제액을 일률적으로 50円으로 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인적공제의 확대는 면세점 인하에 의해 그 효과가 상쇄되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당시 일본에서는 근로소득의 기초공제를 종전의 720円에서 600円으로 최저생활비를 하회하는 수준까지 인하하였으나 부양가족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2배로 인상하였다. 그리하여 근로소득에 한하여 볼 때 과세최저한은 조선과 일본이 같은 수준으로 되었던 것이다.

한편 조선에서 시행된 소득세는 제2종소득(공·사채, 금융채권 또는 은행예금 등의 이자소득)은 원천징수하였으나 제1종 소득(법인소득)과 제3종 소득(기타 개인소득)은 납세의무자의 신고를 토대로 하여 부과징수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제1종 소득의 경우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부당하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정부조사에 의해 이를 결정하고, 제3종 소득금액은 '소득조사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결정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징세절차가 과세당국의 재량권을 확대시켜 인정과세의 폐단을 증대시켰으리라는 것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1934~1942년 기간중 일본의 법인세액은 약 7.9배의 규모로 늘어났으나 조선에 있어서는 그 증가율이 14배 이상이 되었던 것이나 1935~1942년 기간중 조선에서 세무당국이 개인소득세 납세의무자로 결정한 소득자수가 약 3.1배(연평균 17.5%)로 늘어났던 것, 또는 과세대상 소득금액이 3.2배(연평균 18.2%)로 늘어났던 것이 그러한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당시의 세제는 과세의 공평이나 경제적 효율 그리고 간소화보다 세수의 증대에 절대적인 중요성을 두었기 때문에 조세체계는 수익세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다. 수익세체계는 납세자의 개인적 사정을 고려한다거나 따라서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발생하는 많은 조세저항을 회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체계는 그 취급이 기술적으로 비교적 용이하고 그 과세물건은 어디서나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과세표준도 비교적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체계의 가장 큰 결점은 납세자의 담세력 차이를 과세에서 고려할 수 없다는 것과 특히 누진과세를 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일본에 의한 식민지통치 말기에 조선의 국세체계에는 특별법인세를 위시하여 지세, 사업세, 광구세, 자본이자세, 취인소특별세, 임시이득세, 외화채특별세, 이익배당세, 공·사채이자세 등 10개 수익세 계통 세목이 있었으나 이 중 임시이득세를 제외한 나머지 수익세 계통 세목의 세수 비중은 11.9% (1942)에 불과하였다.

한편 지방세체계는 지역을 단위로 하는 조세체계라는 점에서 수익세 계통의 조세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으나 조선의 지방세체계에 있어서는 세수에서 점하는 비중에 있어서 호별세 계통의 비중이 높았다. 호별세 계통의 지방세는 도세인 호별세와 부·읍면의 호별세부가세, 학교비부과금인 호별세부가금, 학교조합비인 戶別割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1936년 4월 제2차 지방세정리를 통하여 戶稅에 대체된 제3종소득세부가세의 성격을 가미하였던 유일한 人稅인 지방세였다. 이 호별세 계통 지방세는 1936년에 지방세수입에서 도호별세 및 동 부가세가 25.8%, 호별세부가금 및 특별부과금이 7.5%, 학교조합비 1.6% 도합 34.9%를 점하였다. 그러나 1943년도 예산에서는 그 비중이 27.4%, 17.4%, 1.3%로 도합 46.1%로 높아졌다.

호별세는 납세의무자의 資力을 과세표준으로 하였고, 자력은 소득 및 소득의 종류 그리고 자산과 생계의 정도를 감안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소득종류에 따라 필요경비의 공제와 일정한

소득금액의 공제를 용인하고, 생계의 정도를 감안하기 위해 일정금액 이하인 소득자에 대해 인적공제도 용인하였다. 뿐만 아니라 자산의 정도를 감안하기 위해 자산평가가액의 일정비율과 순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차감한 소득액의 일정률 범위 내에서 소득액을 조정하도록 하였다.

이같이 호별세는 개인의 부담능력에 따라 과세한다는 점에서 소득세와 같은 외형을 갖고 있었으나 급부능력에 따라 과세한다는 소득세의 이상에 부합되는 조세는 되지 못하였다. 이는 소득세와 달리 기초공제를 용인하지 않았고, 근로소득에 한하여 일정한 소득수준 이하일 때 일정액의 소득공제를 용인한 것이나 면세점을 府는 300円, 읍은 200円, 면은 100円으로 정하되 3개월 이상 해당지역에 체재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도록 한 것 그리고 100円 미만인 소득에 대한 0.07%(1등급)에서 200만円 이상 소득에 대한 4.24%(제141등급)에 이르는 누진세율 적용으로 과세저변을 확대하였던 것 등에서 입증되고 있다. 즉 보편적인 과세를 표방하였던 호별세는 부과표준액 1,200円 이하의 세민소득에 대하여도 0.07~0.26%에 이르는 누진세율로 가차없이 과세하였던 것이다.

이와 함께 지방세체계가 갖고 있었던 또 하나의 문제점은 세 차례에 걸쳐 실시한 세제정리를 통하여 세민부담이 되는 잡종세를 계속 정리하였으나 1940년 현재에도 수다한 잡종세가 부·읍면에서 징수되어 주민의 불평등한 부담을 격화시켰던 사실이다. 조선총독부자료(『조선지방재정요람』, 1941)에 의하면 1940년 현재 잡종세의 세목은 전주, 금고, 승마, 개(犬), 엽총, 유예선생, 배우, 예기, 舞妓, 興行, 창기, 작부, 배(船), 리어커, 기생 등에 대한 조세로 구성되었다. 또 그 세율은 읍면에서 최고 50錢에서 8円, 최저 20錢에서 1円에 달하였다. 그 밖에 국세인 영업세(1944년부터 사업세)가 부과되지 않는 영세영업에 대한 부·읍면세인 특별영업세(1944년에 특별영업수익세로 개정)라는 것도 있었다.

3. 植民地 統治를 위한 租稅政策의 遺産

가. 租稅道德의 頹廢

일본은 조선을 식민지화하면서 「조선의 조세는 모두 그 과세의 공평을 잃고 있는 정도가 심할 뿐만 아니라 그 징수에 있어서도 담당 관헌의 공정하지 못한 행위 때문에 국민의 부담이 가볍지 못하였다. 그러나 조세제도의 개폐는 곧 국민의 부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주로 부담의 공평을 도모하는 데 주안을 두고 점차 세제의 정비개선을 기하였다」[2]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일본이 식민지 조선을 통치하는 기간중 일관하여 조세의 증징을 조세정책의 주된 목적으로 하여 수다한 세목을 신설하였기 때문에 국세나 지방세를 불문하고 세제의 왜곡된 근대화를 촉진함으로써 국가의 중요한 사회간접자본이라고 할 수 있는 세제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을 높였다.

일본의 식민지통치 기간중(1910~1945) 국세의 세목은 45개가 신설되고 21개 세목이 폐지되거나 지방에 이양되었다. 지방세의 개폐는 이를 능가하였으며 이같이 잦았던 세제의 개편과 거듭된 세율의 인상은 통치자와 피통치자간의 수탈과 희생이란 일반적 관념을 떠나서라도 납세의무자의 조세도덕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조세의 납부에는 세부담의 경중과 납세의 편의, 세부담의 의식 여부 등에 따라 租稅抵抗이 뒤따르게 마련이다. 그런데 납세의무의 이행이 이성을 근거로 하는 선량한 의사를 토대로 하고 있는 데에 대하여 모든 형태의 조세부담에 대한 심리적 저항의 근원은 강제적 公課에 대한 인간 본래의 충동 및 성향 속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일본의 식민통치하에서 일본의 국익을 위하여 강요된 조세부담의 족쇄에 대한

2) 度支部, 『韓國財政施設綱要』, 漢城, 1910, pp. 58~59.

저항은 민족의 영광을 되찾는 영웅적인 행동이라고 생각되었다.

납세의무의 이행은 國權의 존중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국권상실이라는 특수한 조건하에서 가혹한 납세의무의 이행을 강요당하였던 것은 고래의 가렴주구와 다를 바가 없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조세저항을 증대시켰다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식민지통치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국권을 회복한 후에도 국민의 조세부담에 의해 국가의 기능을 수행하게 될 때까지에는 적어도 수세대에 걸쳐 조세도덕을 바로잡기 위한 사회적 교육과 실천이 필요하게 되었던 것이다.

나. 中央集權的 稅制의 確立

일본은 1940년 세제개혁을 통하여 세제를 전시세제로 전환시켰으며 그 특징은 전비조달을 위해 조세체계를 소득세와 법인세 중심으로 형성하고 중앙집중적 세원배분으로 중앙집권적 재정의 기초를 마련한 데 있었다.

조선에서는 특수사정을 내세워 일본의 종용에도 불구하고 분류소득세나 법인세를 창설하지는 않았으나 일정액 이상 소득자의 제2종(갑) 소득(공·사채 등 이자소득)을 제3종 소득세로 종합과세하도록 하는 한편 제1종 소득 중 초과소득을 법인의 임시이득과 통합하여 임시이득세를 과세하는 동시에 금융조합 등 특별법인에 대한 과세를 신설하여 직접세의 과세를 강화하였다. 이와 함께 제1종 및 제3종 소득세 그리고 유흥음식세의 증징에 의해 그 일부를 지방분여세로 하여 지방에 교부하는 한편 지방세 중 국세부가세였던 제1종 소득세부가세(도·부읍면세)와 특별소득세(도세) 및 그 부가세(부읍면세)를 폐지하였다.

일본은 조선에 있어서도 지방세는 당초부터 국세에 대한 부가세나 도세에 대한 부가세로 이루어지는 중앙에 대한 종속적인 세원으로 구성하였다. 이는 지방세를 국가의 강력한 통제하에 두고 교부금이나 분여세 등 재정조정재원의 교부를 통하여 국가가 지방에 위임하고 있는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침략전쟁기에 일본의 지방세체계는 직접세 중심, 人稅와 物稅의 병용(실태는 물세 중심), 부가세와 독립세의 병용(실태는 부가세 중심)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었으며 조선의 지방세체계도 대체로 이를 모방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조선에서는 과세저변의 확대를 위하여 존치된 호별세 계통의 조세인 人稅의 비중이 37~40%(1940~1943)라는 높은 수준을 점하였으나 지방단체의 독립세 및 동 부가세로서는 가옥세, 부동산취득세 그리고 차량세 등이 주요한 세원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1936년과 1940년의 두 차례에 걸친 지방세제의 정리과정에서 국세인 영업세, 취인소세, 광세에 대한 부가세가 도입되고, 국세증징분의 일부를 재원으로 하여 지방재정을 조정하기 위한 교부금제도(1936)나 地方財政調整補給金制度(1940)를 도입함으로써 지방세의 과세제한과 지방채 발행에 대한 엄중한 허가제도와 함께 지방재정은 국가의 강력한 통제하에 놓이게 되었던 것이다. 이는 바꿔 말하면 중앙집권주의와 官治主義의 약진을 의미하였고 또한 명분상 내세우고 있었던 지방차지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일본은 제2차 대전에서 패전한 후 1950년 5월에 실시한 「Shoup」 세제개혁을 통하여 지방세제를 독립세 중심으로 개편하고, 기초자치단체(市町村)를 우선하는 지방재정제도를 확립하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야 지방세의 국세부가세제도를 완전히 폐지할 수가 있었고, 중앙집권적이고 관치적인 지방행정제도를 지방분권적인 행정제도로 전환시키는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하게 되기까지에는 그후 30년이라는 세월이 더 필요하였던 것이다.

〈參考文獻〉

高承濟,『韓國社會經濟史論』, 서울 : 일지사, 1988.

國稅廳,『稅政 100年 略史』, 서울, 1996.

權斗榮,「日帝侵略下의 韓國金融」,『日帝下의 經濟侵略史』, 日帝下의 韓國研究叢書 II, 亞細亞問題研究所, 서울 : 민중서관, 1971.

金文植,「日帝下의 農業」, 上同

김영모,「甲午改革의 法制的 樣相과 日帝의 干涉」,『日本 帝國主義와 韓末의 社會變化』, 韓國의 社會와 文化 第13集, 서울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0.

金玉根,『日帝下 朝鮮財政史論考』, 서울 : 일조각, 1974.

_____,『朝鮮王朝財政史研究 IV』, 서울 : 일조각, 1992.

內務部,『地方稅法令 變遷史』, 서울, 1979.

朴珉植,『內國稅制度의 變遷과 展望』, 서울 : 大韓商工會議所 韓國經濟研究센터, 1979.

朴殷植,『韓國通史(上)』, 서울 : 박영사, 1974.

朴鼎在,『韓國經濟百年』, 서울 : 한국생산성본부, 1971.

邊太燮,『韓國史通論(四訂版)』, 서울 : 삼영사, 1996.

夫貞愛,「韓國海關의 創設經緯」,『韓國史論 1』, 서울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한국사학회, 1973.

申相後,『韓國財務行政의 近代化過程』, 서울 : 신조문화사, 1970.

李瑄根,『韓國史(現代篇)』, 서울 : 진단학회, 1963.

李潤根,「韓國國民所得推計와 그 內容」,『日帝下의 民族生活史』, 日帝下의 韓國研究叢書 V, 亞細亞問題研究所, 서울 : 민중서관, 1971.

李潤相,「日帝에 의한 植民地財政의 形成過程」,『韓國史論 14』, 서울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1986.

李昌世,『韓國財政의 近代化過程』, 서울 : 박영사, 1965.

張炳淳,『韓國稅政史』, 서울 : 보성사, 1973.

財務部,『財政金融의 回顧』, 서울, 1958.

_____,『韓國稅制史(上)』, 서울, 1979.

정태헌,『日帝의 經濟政策과 朝鮮社會－租稅政策을 中心으로－』, 서울 : 역사비평사, 1996.

조기준,『한국경제사 신강』, 서울 : 일신사, 1994.

朝鮮銀行 調査部,『朝鮮經濟年報(1948年版)』, 서울, 1948.

車輔權,「日帝下에 있어서 韓國의 貿易政策」,『日帝의 經濟侵略史』, 日帝下의 韓國研究叢書 II, 亞細亞問題研究所, 서울 : 민중서관, 1971.

_____,『韓國地方財政研究』, 서울 :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4.

崔泰鎬,「日帝下의 韓國水產業에 관한 研究」,『日帝의 經濟侵略史』, 日帝下의 韓國研究 叢書 II, 亞細亞問題研究所, 서울 : 민중서관, 1971.

_____,『開港前期의 韓國關稅制度』, 서울 : 한국연구원, 1976.

崔虎鎭,『韓國經濟史』, 서울 : 박영사, 1970.

韓昌浩,「日帝下의 韓國鑛工業에 관한 研究」,『日帝의 經濟侵略史』, 日帝下의 韓國研究叢書 II, 亞細亞問題研究所, 서울 : 민중서관, 1971.

賀田直治,『朝鮮產業政策研究要綱』, 京城, 1927.

京城府,『京城彙報』, 京城, 1940～1942.

溝口敏行 · 梅村又次(編),『舊日本植民地經濟統計』, 東京 : 東洋經濟新報社, 1988.

農商工部,『韓國通覽』, 韓國 龍山, 1910.

大藏省(編),『明治大正財政史, 第18卷』, 東京, 財政經濟學會, 1932.
大藏省 昭和財政史編集室(編),『昭和財政史 第1卷 總說』, 東京：東洋經濟新報社, 1965.
_____,『昭和財政史 第3卷 歲計』, 東京：東洋經濟新報社, 1955.
_____,『昭和財政史 第5卷 租稅』, 東京：東洋經濟新報社, 1957.
_____,『昭和財政史 第14卷 地方財政』, 東京：東洋經濟新報社, 1954.
_____,『昭和財政史 第16卷 舊外地財政(下)』, 東京：東洋經濟新報社, 1961.
鈴木武雄,「李朝末期に於ける朝鮮の財政」,『朝鮮經濟の研究 第二』, 京城帝國大學 法學會論文 第2册, 東京：刀江書院, 1929.
四方博,『朝鮮社會經濟史研究(上)』, 東京：國書刊行會, 1976.
山辺建太郎,『日本統治下の朝鮮』, 東京：岩波書店, 1971.
小田忠夫,「併合初期に於る朝鮮總督府財政の發達」,『朝鮮經濟の研究 第三』, 京城帝國大學 法學會論文 第10册, 東京：岩波書店, 1938.
小村英夫,『植民地への企業進出』, 東京：柏書房, 1994.
水田直昌(監修),『總督府時代の財政』, 東京：友邦協會, 1974.
野口悠紀雄,『1940年 體制』, 東京：東洋經濟新報社, 1995.
朝鮮總督府,『施政三十年史』, 京城, 1940.
_____,『朝鮮施政方針及實績』, 京城, 1915.
朝鮮總督府內務局,『朝鮮ニ於ケル地方稅整理經過概要』, 京城, 1937.
朝鮮總督府司政局,『朝鮮地方財政要覽』, 京城, 1941.
朝鮮總督府財務局,『朝鮮ニ於ケル國稅及地方的租稅負擔額調』, 京城, 1924.
_____,『朝鮮ニ於ケル租稅負擔額調』, 京城, 1929.
_____,『朝鮮ニ於ケル稅制整理經過概要』, 京城, 1935.
朝鮮行政學會,『朝鮮行政』, 京城, 1940～1943.

度支部,『韓國財政施設綱要』, 漢城, 1910.
海野福壽,『韓國併合』, 東京 : 岩波書店, 1995.

附　　錄

〈附表 1〉 國稅體系의 變遷(1905～1909)

재래세목·신설세목	신설연도	재래세목·신설세목	신설연도
地　　稅	재래세	船　　稅	재래세
戶　　稅	재래세	關　　稅	재래세
驛 雜 稅	재래세	噸　　稅	재래세
渾　　稅	재래세	鑛　　稅	1906
藿　　稅	재래세	水 產 稅	1906
人 蔘 稅	재래세	漁 業 稅	1909
鹽　　稅	재래세	家 屋 稅	1909
庖 肆 稅	재래세	酒　　稅	1909
典當鋪稅	재래세	煙 草 稅	1909

資料：國稅廳,『稅政 100年 略史』, 서울, 1996.

〈附表 2〉 國稅體系의 變遷(1905～1909)

폐 지 세 목	연　　도	사　　유
渾　　稅	1906	수산세로 통합
藿　　稅	1906	수산세로 통합
水 產 稅	1909	어업세로 통합
驛 雜 稅	1908	세외수입으로 대체
庖 肆 稅	1909	폐지

資料：國稅廳,『稅政 100年 略史』, 서울, 1966.

〈附表 3〉 國稅體系의 變遷(1910～1919)

신 설 세 목	신설연도	폐 지 세 목	폐지연도
登 錄 稅	1911	典 當 鋪 稅	1912
朝鮮銀行券發行稅	1911	戶 稅	1919 (지방이양)
市 街 地 稅	1914		
法 人 所 得 稅	1916		
戰 時 利 得 稅	1918	家 屋 稅	1919 (지방이양)
砂 糖 消 費 稅	1919		
印 紙 稅	1919	戰 時 利 得 稅	1919

資料：國稅廳,『稅政 100年 略史』, 서울, 1966.

〈附表 4〉 國稅體系의 變遷(1920～1936)

신 설 세 목	신설연도	신 설 세 목	신설연도
出 港 稅	1920	骨 牌 稅	1931
取 引 所 稅	1921	所 得 稅	1934
取 引 稅	1921	相 續 稅	1934
資 本 利 得 稅	1927	淸 凉 飮 料 稅	1934
營 業 稅	1927	臨 時 利 得 稅	1935

資料：國稅廳,『稅政 100年 略史』, 서울, 1966.

〈附表 5〉 國稅體系의 變遷(1920～1936)

폐 지 세 목	폐지연도 및 사유
漁 業 稅	1920 지방세로 이양
船 稅	1920 지방세로 이양
鹽 稅	1920 전매제로 폐지
人 蔘 稅	1920 전매제로 폐지
煙 草 稅	1921 전매제로 폐지
市 街 地 稅	1928 지세에 통합
法 人 所 得 稅	1934 소득세에 통합

資料：國稅廳,『稅政 100年 略史』, 서울, 1966.

〈附表 6〉 國稅體系의 變遷(1937~1945)

신 설 세 목	신설연도	신 설 세 목	신설연도
법 인 자 본 세	1937	공·사 채 이 자 세	1938
임 시 이 득 특 별 세	1937	물 품 세	1938
소 득 특 별 세	1937	건 축 세	1939
외 화 채 특 별 세	1937	유 흥 음 식 세	1939
이 익 배 당 특 별 세	1937	특 별 법 인 세	1940
공·사채이자특별세	1937	마 권 세	1942
물 품 특 별 세	1937	광 고 세	1942
휘 발 유 세	1937	전 기 가 스 세	1942
입 장 세	1938	직 물 세	1943
특 별 입 장 세	1938	특 별 행 위 세	1943
통 행 세	1938	사 업 세	1944
이 익 배 당 세	1938	취 인 소 특 별 세	1944

資料 : 國稅廳, 『稅政 100年 略史』, 서울, 1966.

〈附表 7〉 國稅體系의 變遷(1937~1945)

세목의 폐지·변경	연도 및 사유	세목의 폐지·변경	연도 및 사유
특별소득세	1938 소득세로 통합	이입세	1941 폐지
임시이득특별세	1938 임시이득세로 통합	취인(거래)소세	1944 사업세로 통합
이익배당특별세	1938 세목변경	영업세	1944 사업세로 통합
공·사채이자특별세	1938 세목변경	鑛産稅	1944 사업세료 통합
물품특별세	1938 세목변경	휘발유세	1944 석유전매로 폐지

資料 : 國稅廳, 『稅政 100年 略史』, 서울, 1966.

〈附表 8〉 國稅體系(1945. 8.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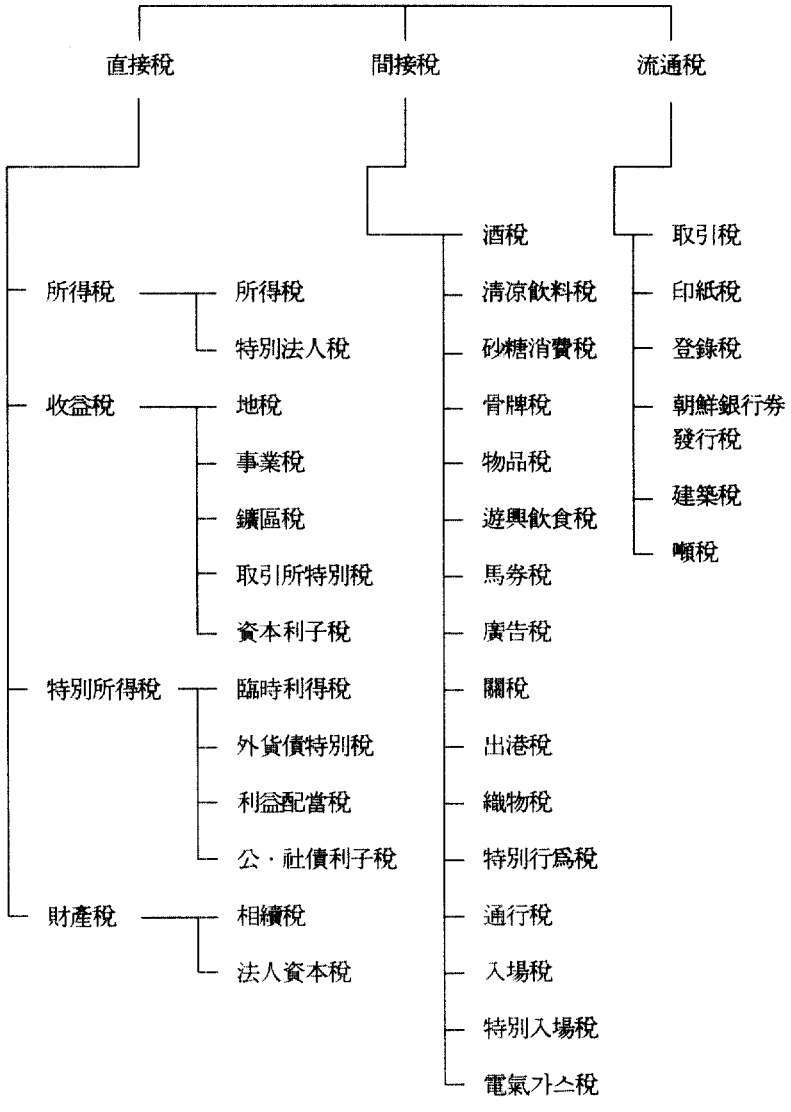

資料：財務部,『韓國稅制史(上)』, 서울, 1979.

〈附表 9〉 地方稅體系(1909年 現在)

	세 목			
지방비부과금 (도세)	지세부가세	시 장 세	屠 獸 稅[1]	권리취득세[2]
일인거주지에서 과징한 세목	호 별 세	영 업 세	토 지 세	건 물 세
	가 옥 세	양 조 세	잡 종 세	

註 : 1) 屠場·屠畜稅
2) 토지가옥소유권 취득세와 저당권취득세, 한성부에 한함. 府制 실시로 1914年에 폐지

資料 : 재무부, 『한국세제사(상)』, 서울, 1979.
度支部, 『韓國財政施設綱要』, 漢城, 1910. 8.

〈附表 10〉 地方稅體系의 變遷(1910~1919)

단체별	세목구분	세목·신설연도	세목·신설연도	세목·신설연도
지방세 (道稅)	부가세	시가지세부가세 (1914)		
	특별세	호별세[1](1918)	호세[2](1919)	가옥세[2](1919)
부 세 (府稅)	부가세	시가지세부가세 (1914)	가옥세부가세 (1914)	
	특별세	호별세(1914)	영업세(1914)	전주세(1914)
		잡종세(1914)	건물세(1914)	소득세(1914)
		특별호별세 (1916)		
면 세 (面稅)	부가세	지세할(1910)	시가지세할 (1918)	영업할(1918)
		어업할(1918)	광업할(1918)	임야할(1918)
	특별세	호별할(1910)	잡종할(1918)	
학교비 부과금		지세부가금[3] (1912)	시가지세부가금 (1914)	가옥세부가금[3] (1912)
		호세부가금[3] (1912)		
학교조합 부과금		호별할(기존)	영업할[3](기존)	잡종할[4](기존)
		흥행(興行)할[4] (기존)	토지가옥할[4] (기존)	

註 : 1) 국세인 호세의 지방이양으로 1919년에 폐지
2) 국세이양
3) 한개 또는 두개 이상 세목의 선택과세
4) 일부조합만 부과

資料 : 재무부, 『한국세제사(상)』, 서울, 1979.

〈附表 11〉 地方稅(道稅)의 新設과 廢止(1920~1936)

	세목구분	세목·연도	세목·연도	세목·연도
신설	부가세	소득세(법인)부가세 (1929)	제1종소득세부가세 (1936)	영업세부가세 (1936)
		취인소세부가세 (1936)	광세부가세 (1936)	
	특별세	어업세(1920)*	선세(1920)*	차량세(1921)
		수차세(1922)	특별시장세(1927)	부동산취득세(1927)
		특별소득세(1929)	임야세(1933)	호별세(1936)
		가옥세[1](1936)		
폐지	부가세	시가지세부가세 (1928)	소득세(법인)부가세 (1936)	
	특별세	시장세(1927)	수차세(1927)	특별시장세(1932)
		선세(1932)	호세(1936)	가옥세[2](1936)

註 : *는 국세이양. 1) 수익세인 가옥세, 2) 호세의 보완세
資料 : 재무부, 『한국세제사(상)』, 서울, 1979.

〈附表 12〉 府稅의 新設과 廢止(1920~1936)

	세목구분	세목·연도	세목·연도	세목·연도
신설	부가세	소득세(법인)부가세 (1921)	취인소세부가세 (1921)	차량세부가세 (1924)
		선세부가세 (1921)	영업세부가세 (1927)	특별소득세부가세 (1929)
		제1종소득세부가세 (1936)	광세부가세 (1936)	호별세부가세 (1936)
		부동산취득세부가세 (1936)	가옥세부가세[1] (1936)	
	특별세	토지평수할 (1921)	특별시장영업세 (1922)	토지증가세 (1923)
		특별소득세(법인) (1922)	매축면세지평수할 (1926)	호별세[2](1927)
		조흥세(1920)	특별영업세(1927)	
폐지	부가세	시가지세부가세(1928)	선세부가세(1931)	소득세(법인)부가세 (1936)
		가옥세부가세[1](1936)		
	특별세	건물세(1920)	영업세(1927)	특별시장영업세 (1927)
		소득세(1921)		
		전주세(1927)	호별세[2](1927)	특별호별세(1936)
		특별소득세(1929)	호별세[3](1936)	

註 : 1) 수익세인 일반가옥세에 대한 부가세로 전환
2) 소득표준에서 자산·소득·생계 정도 표준으로 전환.
3) 호별세부가세로 전환.
資料 : 재무부, 『한국세제사(상)』, 서울, 1979.

〈附表 13〉 邑面稅의 新設과 廢止(1920~1936)

	세목구분	세목·연도	세목·연도	세목·연도
신설	부가세	영업세할 (1927)	소득세(법인)할 (1929)	특별소득세할 (1929)
		차량세부가세 (1931)	가옥세부가세 (1936)	부동산취득세 부가세(1936)
		광세부가세 (1936)	호별세부가세 (1936)	
	특별세	특별영업할 (1927)		
폐지	부가세	영업할 (1927)	광업할 (1927)	시가지세할 (1928)
		임야할(1928)	어업할(1932)	
	특별세	호별세(1936)		

註 : 1931년부터 邑面制 실시에 따라 邑面稅로 바뀜.
1936년 제2차 세제정리에서 기존세목인 지세할이 지세부가세로, 소득세(법인)할이 제1종소득세부가세로, 영업세할이 영업세부가세로, 특별소득세(법인)할이 특별소득세부가세로, 특별영업할이 특별영업세로, 잡종할이 잡종세로 각각 전환되었다.

資料 : 朝鮮總督府內務局, 『朝鮮ニ於ケル地方稅制整理經過槪要』, 京城, 1937.

〈附表 14〉 學校費賦課金·學校組合費의 改正(1920~1936)

	단 체 별	세목·개폐
1927	학 교 비	지세(시가지세)부가금 폐지
	학교조합비	영업할, 잡종할, 흥행할 폐지
1936	학 교 비	호세부가금 및 가옥세 부가금을 호별세부가금으로 단일화, 특별부과금으로 보전
	학교조합비	호별할 존치

資料 : 朝鮮總督府內務局, 『朝鮮ニ於ケル地方稅制整理經過槪要』, 京城, 1937.

〈附表 15〉 地方稅體系의 變遷(1937~1945)

	단체별	세목구분	세목·연도	세목·연도
신 설	도 세	부가세	사업세부가세 (1944)	광구세부가세 (1944)
			취인소특별세부가세 (1944)	
		특별세	특별지세(1940)	면세지특별지세(1941)
			특별사업세(1944)	입정세(1945)
	부읍면세	부가세	특별지세부가세 (1940)	면세지특별지세부가세 (1941)
			사업세부가세 (1944)	특별사업세부가세 (1944)
			부취인소특별세 부가세(1944)	광구세부가세 (1944)
		특별세	읍면특별호세 (1942)	부특별호별세 (1943)
			부읍면특별영업 수익세(1944)	부·읍면민세 (1945)
			시획특별세 (부·읍)(1937)	교통세 — 경성·부산 — (1943)
폐 지	도 세	부가세	제1종소득세부가세 (1940)	영업세부가세(1944)
			광세부가세(1944)	취인소세부가세(1944)
		특별세	특별소득세(1940)	
	부읍면세	부가세	제1종소득세부가세 (1940)	특별소득세부가세 (1940)
			영업세부가세 (1944)	광세부가세(1944)
			취인소세부가세 (1944)	
		특별세	부조흥세(1940)	읍면특별호세(1945)
			특별영업세(1944)	부특별호별세(1945)

資料：『朝鮮總督府官報』, 1941. 2. 25, 1942. 2. 16, 1943. 3. 31, 1944. 3. 31, 1945. 3. 9.

〈附表 16〉 地方稅體系(1945. 8. 15)

道 稅	府 稅	邑 面 稅	學校費 賦課金
國稅附加稅	**國稅附加稅**	**國稅附加稅**	**道稅附加金**
地稅附加稅	地稅附加稅	地稅附加稅	戶別稅附加金
事業稅附加稅	事業稅附加稅	事業附加稅	特別賦課金
取引所特別稅附加稅	取引所特別稅附加稅	鑛區稅附加稅	
鑛區稅附加稅	鑛區稅附加稅	**道稅附加稅**	
獨立稅	**道稅附加稅**	戶別稅附加稅	
林野稅	戶別稅附加稅	家屋稅附加稅	
戶別稅	家屋稅附加稅	車輛稅附加稅	
家屋稅	車輛稅附加稅	不動產取得稅附加稅	
漁業稅	不動產取得稅附加稅	特別事業稅附加稅	
屠場(屠畜)稅	特別地稅附加稅	特別地稅附加稅	
	免稅地特別地稅附加稅	免稅地特別地稅附加稅	
車輛稅	特別事業稅附加稅		
不動產取得稅	**獨立稅**	**獨立稅**	
特別地稅	雜種稅[1]	雜種稅[1]	
免稅地特別地稅	特別營業收益稅	特別營業收益稅	
特別事業稅	交通稅(서울·부산)	邑面民稅	
入亭稅	市街地計劃特別稅(서울)		
	府民稅		
15개	16개	13개	2개

註：1) 雜種稅에는 船稅, 畜犬稅, 俳優稅, 撞球台稅, 傭人稅, 선풍기稅, 電柱稅, 妓生稅, 피아노세, 金庫稅, 給仕稅가 있었다.

資料：재무부, 『한국세제사(상)』, 서울, 1979.

〈附表 17－1〉 府·邑面特別營業稅 課稅率(1940～1942)(Ⅰ)

(單位：萬分率)

營業名	課稅標準	稅率		
		1940	1941	1942[1]
物品販賣業	賣上金額	都賣 갑 2	2.5	3
		都賣 을 4	6	7
		都賣 병 6	9	11
		小賣 갑 8	12	14
		小賣 을 12	18	22
銀行業	資本金額	7	15.1	18.4(11)
	預金額	3	6.7	8.4 (5)
	社債·借入金額	1	1.7	1.7 (1)
保險業	資本金額	7	16.8	20.1(12)
	保險料額	7	16.8	20.1(12)
無盡業	資本金額	7	10.1	11.7 (7)
	無盡賦金	7	10.1	11.7 (7)
金錢貸付業	收入金額	120	150	180
物品貸付業	收入金額	70	100	120

註：1) ( ) 내는 府 課稅率.

〈附表 17－2〉 府·邑面特別營業稅 課稅率(1940～1942)(II)

(單位：千分率)

營業名	課稅標準	稅率		
		1940	1941	1942
製造業	收入金額	갑 0.3 을 0.8 병 1.3	0.3 1.2 2	0.4 1.5 2.4
가스·電氣供給業	收入金額	2.3	5	6
運送·印刷·出版業	收入金額	1.3	2	2.4
運送取扱業	報償金額	7	8	10
倉庫業	收入金額	5.3	7.5	9
鐵道業	收入金額	2	3.5	4.2
請負業	請負金額	1.3	2	2.4
寫眞業	收入金額	1.3	2.5	3.5
貸席·料理店業	收入金額	6.7	7.5	9
旅人宿業	收入金額	4	4.5	5.5
周旋·代理·仲介·都賣業	報償金額	10	15	18
信託業	報償金額	10	15[1]～25.1[2]	18[2]～30.2[1]

註：1) 邑面 課稅率.
2) 府 課稅率.

〈附表 17－3〉 府·邑面特別營業稅 課稅率(1940～1942)(Ⅲ)

(單位：千分率)

營業名	課稅標準	稅率		
		1940	1941	1942[1]
代書·測量業	收入金額	5	8	9
換錢業	報償金額	5	8	18
理髮·美容業	收入金額	5	8	7
沐浴湯業	收入金額	3	8	5
演劇興行·遊技場業	收入金額	5	8	8
遊覽所業	收入金額	5	8	6
藝妓포주집업	收入金額	7	8	10
公娼業(貸座數)	收入金額	6	8	10
不動產貸付業	收入金額	5	8	10
洗濯業	收入金額	1.3	2	2.4
下宿業	收入金額	3	3.5	—
貸家業	收入金額	5	8	—
染色業	收入金額	1.3	2	—
大衆演藝場業	收入金額	5	8	—
飮食店業	收入金額	4.5	—	—
彫刻業	收入金額	N.A.	2	—

註：1) 物品販賣業에서 不動產貸付業까지는 國稅營業稅와 동일한 업종이고 기타 업종은 府·邑面의 과세업종이며, 1942년에 목욕탕업, 이발·미용업, 환전업, 연극흥행, 유기장업, 유람소업, 예기포주집업, 公娼業이 국세영업세의 과세대상에 추가되기 이전에는 府·邑面特別營業稅가 부과되었음.

資料：朝鮮總督府司政局, 『地方財政要覽 1939, 1940』, 京城, 1940.
「邑面特別稅規則準則中改正ノ件」, 內務局長通牒, 1940. 9. 2.
「邑(面)附加稅規則準則竝ニ同特別稅規則準則改正ノ件」, 內務局長通牒, 1941. 2. 24.
「邑面特別稅規則準則改正ノ件」, 司政局長通牒, 地第65號, 1942. 4. 9.

〈附表 18－1〉 府·邑面雜種稅 課稅狀況(1940)(Ⅰ)

(單位：円)

課稅對象	課稅標準	稅率		
		最高	最低	平均
電柱	建立本數 범위내[1], 1本 年額	8	0.1	3.21
	建立本數 초과분, 1本 年額	3	—	3
犬	1頭 年額	3	1	1.92
乘馬	1頭 年額	10	2	7.33
狩獵	1件 年額	5	—	5
獵銃	1정 年額	3	2	2.2
船舶	隻數 1隻 年額	25[2]	2[3]	24.42
	吨數 1톤당 年額	0.3[2]	0.06[3]	0.14
金庫	移動可[4] 1개 年額	15	2	5
	移動不可[5] 1개 年額	15	0.05	3.85
商品券	發行額 1月額	1	0.5	0.75
行商	甲 1人 月額	1	—	1
	乙 1人 月額	0.5	—	0.5

註：1) 1927. 4. 1. 현재
2) 汽船·發動機船·船舶으로 100噸/千石 이상
3) 汽船·發動機船·船舶으로 5噸/50石 이상, 發動機·증기기관이 없는것.
4) 外法體積 40立方尺 以上
5) 內法體積 40立方尺 以上

〈附表 18－2〉 府·邑面雜種稅 課稅狀況(1940)(II)

(單位：円, %, 人分)

課稅對象	課 稅 標 準	稅 率		
		最 高	最 低	平 均
遊藝선생	1人 月額	1	0.3	0.71
幇 間	1人 月額	3	2	2.66
藝 妓	15年 이상 1人 月額	5	0.8	2.86
藝 妓	15年 미만 1人 月額	2.5	0.5	1.68
舞 妓	15年 미만 1人 月額	2	0.75	1.32
娼妓겸 藝妓	1人 月額	2	0.5	1.4
娼 妓	1人 月額	3.5	1	2.65
酌 婦	1人 月額	0.5	—	0.5
諸 興 行	收入金額日額標準(%)	3	1.2	2.1
	단 常設館	2		2
	最高入場料標準(日 人分)	12	4	5.3
	자리값最高額標準(日 人分)	10	3	5.3
	단 常設館 日額	1.5	月25	—
市 場	市場規則 1條 3號해당, 收入금액(%)	2.5	—	2.5
	朝鮮正米市場, 販賣石數 1石當(円)	0.0015	—	0.0015
臨時店鋪	賣上金額(%)	0.5	—	0.5
市場(기타)	收入金額(%)	0.7	—	0.7

資料：朝鮮總督府司政局,『昭和14·15年度 朝鮮地方財政要覽』, 京城, 1940.

〈국문요약〉

日政下 朝鮮의 租稅政策

車 幷 權

본 연구는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화한 후 조선에서 시행한 租稅政策을 개관하고 그 效果分析과 함께 그 특징과 유산을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는 19세기 말엽에 개항(1876)을 전후하여 봉건사회에서 근대사회로 이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개혁을 여러 차례 시도하였다. 그러나 대내적으로 수용태세가 미비하였고 대외적으로는 한반도에서 패권을 잡기 위한 청국과 일본 그리고 러시아의 각축으로 근대화를 위한 개혁은 결실을 맺지 못하고 오히려 개화와 보수의 갈등과 외세의 침략에 대한 민족의 저항을 증폭시켰다.

일본은 군함을 앞세워 조선의 개항을 강요한 후 조선 내에서 각종 경제적 이권을 확대하는 가운데 군사력을 앞세워 內政改革의 추진이나 정변의 강행, 왕궁의 침입, 왕비의 살해 등 각가지 만행을 자행하였고, 청일·러일전쟁을 통하여 조선에서 패권을 잡게 되자 1905년 11월에 조선을 강제적으로 보호국화한 데 이어 1910년 8월에는 조선을 식민지화하게 되었다.

일본의 식민지 조선에 대한 통치는 실질적으로 조선을 보호국화한 1905년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재정고문의 파견과 통감부(Office of Resident-General)의 설치에 이어 조선의 합병에 이르는 기간중 일본은 조선의 재정을 장악하는 데 우선과제를 설정하였으나 식민지 경영을 위한 財源調達의 일환으로 1909년에 가옥세와 주세 및 연초세를 도입하였다.

일본의 식민지 통치가 본격화된 1910년 9월 이후 일본이 연합군에 무조건 항복을 하였던 1945년 8월 15일에 이르는 기간중 일본은 조선에서 식민지통치를 위한 재원조달과 중일전쟁에서 태평양전쟁으로 확대된 침략전쟁의 戰費를 마련하기 위해 일관된 增稅政策을 유지하였다.

헌병을 앞세운 통치로서 악명이 높았던 조선통치의 초기단계(1910~1919)에는 법인소득세, 사탕소비세 등 7개 세목이 신설되고, 지세의 과세표준을 지가로 개정하는 한편 연초세의 세목을 늘리고 주세 및 연초세의 세율을 인상하였다.

3·1운동을 계기로 조선통치정책이 표면상 柔和·懷柔政策으로 전환되는 한편 식민지적 종속경제의 발전을 지향하였던 식민지통치 중기단계(1920~1936)에 있어서는 일반소득세와 상속세, 영업세 등 10개 세목을 신설하고, 주세와 사탕소비세의 세율을 인상하였다. 또한 2차(1927년과 1936년)에 걸친 국세 및 지방세제 정리를 통하여 전반적 조세의 增收에 박차를 가하였다.

일본이 중일전쟁을 일으키고 이어 침략전쟁을 동남아지역에서 태평양지역에까지 확대한 후 패전에 이르렀던 侵略戰爭期(1937~1945)에는 당초 북지사건특별세나 지나사변특별세의 창설로 조세를 증징하였으나 1940년 제3차 세제정리를 통하여 특별세를 모두 독립세로 개정하고, 소득세를 위시한 16개 세목에 대한 증징이 이루어졌다. 그후 1941년부터 1945년까지 매년 직접세 내지 간접세 중심 또는 전면적 조세증징이 이루어졌으며 침략전쟁 기간중 신설된 세목은 법인자본세를 위시하여 휘발유세, 통행세, 입장세, 물품세 등 21개 세목에 달하였다.

일본의 일관된 증세정책은 세수의 증징에 최대의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다종다양한 세목으로 구성된 복잡한 조세체계와 불공평한 조세구조를 형성하게 되어 租稅道德의 頹廢와 中央集權的 稅制의 確立이란 유산을 남기게 되었다.

〈Abstract〉

Tax Policy under the Japanese Rule of Chosun Korea

Cha, Byung-Kwon

This paper aims to give a general overview of tax policies implemented in Chosun Korea following Korea's colonization by Japan, critically analyzing and examining its characteristics and legacies.

At the close of the 19th Century, at about the same time Korea's doors were opened to the world in 1876, various reforms at various times were sought to be implemented in the attempt towards modern society from a feudal one. However, modernization reforms were rendered almost futile as, domestically, there was a general lack of preparation for the reception of such efforts. Further, externally, China(under the Ch'ing Dynasty), Japan and Russia struggled for supremac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so instead, the conflict between civilization and conservatism, and national resistance towards foreign aggression were amplified.

Using its warships to force open the doors of Chosun Korea, Japan further utilized the strength of its military to expand its economic interests in Korea. Under such intimidation, all kinds of atrocities were committed: domestic reforms were pressed for, a change of government forced, sovereignty was usurped,

and the queen, assassinated. Ultimately, Japan was to colonize Chosun Korea in August 1910, having emerged as the victor in the struggle for supremacy over Korea in the Russo-Japanese War(February 1904-September 1905), at which point Korea was made a protectorate of Japan(November 1905).

Japan's colonial rule over Chosun Korea can essentially be said to have begun with the forced signing of the protectorate treaty in 1905. Having dispatched financial advisers and instituted the Residency-General, the annexation of Korea followed. Gaining control over the management of Korea's public finance became a priority for Japan, and revenue to support its colonial rule were procured through the introduction of the property tax, liquor tax and the tobaccco tax in 1909. Further, after the formal assumption of colonial rule in September 1910, and prior to its absolute surrender to the Allied Forces on August 15, 1945, Japan maintained a consistent policy of increasing taxes in order to raise revenue to sustain its colonial government and also to finance the costs of its aggressive assimilation policies that expanded from the Sino-Japanese War(1937-1945) to the Pacific War(1941-1945).

In the early stages of its notorious colonial rule(1910-1919) under the threatening presence of the military police, seven new taxes were established, such as the corporate income tax and the confectionery consumption tax. In addition, the land tax was revised so that the tax measures would reflect the value of the land, items falling under the tobacco tax were expanded, and tax rates on the liquor and tobacco taxes were raised.

While the March 1st Movement(*sam-il undong*) of 1919 pro-

vided the diversion necessary to implement an apparent policy of appeasement, between the years 1920 and 1936, in the intermediate stages of its rule, the general policy on Chosun Korea was directed towards the development of a subordinate colonial economy. Ten new taxes were introduced, such as the general income tax, the inheritance tax and the business tax, and the tax rates on liquor and confectionery consumption were raised. Further, the national and local tax systems were restructured in two phases(1927 and 1936), to accelerate the increase in revenues raised from the whole tax.

Subsequent to the onset of the Sino-Japanese War, Japan initiated a series of aggressive assimilation policies that spread from the South-East Asian region to the Pacific region that ultimately ended in defeat for Japan. During these years of aggression (1937~1945), Japan initially established the imposition of special taxes, specifically relating the *Bukji* incident and the *Jina* disaster. However, in its third restructuring of the tax system in 1940, Japan revised all its special taxes to establish an independent tax system, raising 16 taxes, beginning with the income tax. Subsequently, from 1941 to 1945, both direct and indirect taxes were levied extensively each year. During these years of aggression, up to 21 taxes were secured, from the newly established corporations tax, and further including such taxes as the gasoline tax, transit tax, admission tax and the commodities tax.

Following the colonization of Chosun Korea, through Japan's consistent imposition of policies raising taxes in its concern to maximize tax revenues, a complex and inequitable taxation regime evolved, comprising a complex web of taxes. Thus the leg-

acies remain today in Korea, of a taxation system wrought with the ethics of degeneracy and centralization of power.